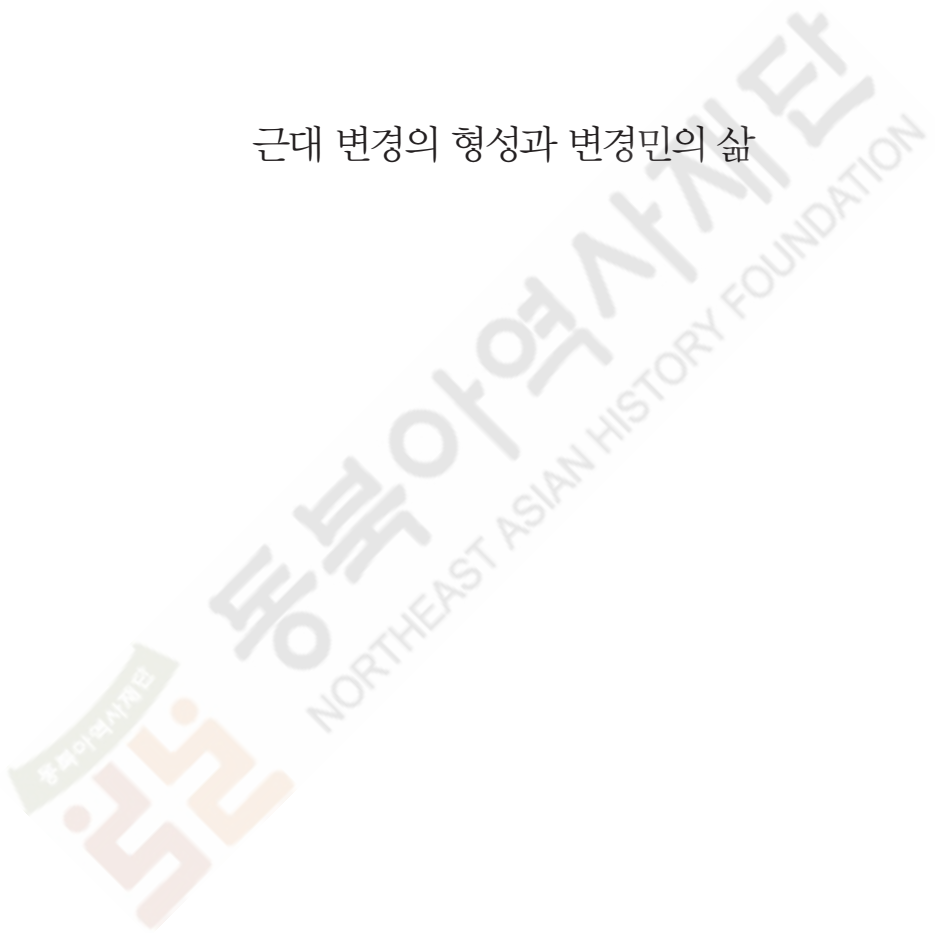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
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난 2008년 9월 25~26일 이틀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는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만국공법 질서가 수용되던 19세기 이래 동북아시아 각국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왔던 변경문제를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생겨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각국의 변경정책의 차이, 중앙과 지방에서의 변경 인식의 차이 등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및 변경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이주민 문제 등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100년이 되는 2009년을 앞두고 개최되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도 문제 논의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더라도 6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국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역사 인식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류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이때, 간도문제를 비롯한 변경문제도 다른 역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변경문제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앞으로도 변경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변경문제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학술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 건설을 위한 터전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8년도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표된 8편의 논문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행본 출간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고를 보완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차 례

- 19세기 성경 동변의 산장의 관리와 조·청 공동회초 구범진
 - 1. 머리말 11
 - 2. 성경 동변의 산장의 카문과 통순 제도 16
 - 3.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 사건 26
 - 1) 도광 22년의 개간 사건 27
 - 2) 도광 26년의 개간 사건 33
 - 4. 선후장정의 제정과 조·청 공동회초 39
 - 1) 선후장정의 제정 39
 - 2) 선후장정의 개정 48
 - 3) 조·청 공동회초 52
 - 5. 맺음말 60

 -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이화자
 - 1. 정제 이후 조선의 지도·지리지에 나타난 토문강과 분계강 68
 - 2. 조선 학자들의 토문·두만 2강 인식의 극복 79
 - 3. 1880년대 이후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의 변화 90
 - 4. 맺음말 98

 -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고승희
 - 1. 머리말-문제제기 103
 - 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국경 문제의 발단 105
- 6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3.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116
4. 1880년대 감계 협상의 성격	130
5. 맺음말	137

•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은정태

1. 머리말	141
2. 내부와 외부의 상반된 접근	144
1) 1880년대 감계 협상의 결과와 오삼갑 상소와의 거리	144
2) 한청통상조약과 '간도 문제'	149
3. 현지 추진세력들 간의 갈등	155
1) 간도 정책 추진의 국제적 조건-의화단 사건	155
2) 간도관리사와 지방 세력들 간의 갈등	162
4. 맺음말	172

•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김춘선

1. 머리말	177
2. '간도협약' 체결 전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 실태	178
1) 조(한)·청·일 삼국의 대 한인 정책	178
2) 한인 이주민 실태	194
3. '간도협약' 체결 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동향	205
1) '간도협약' 주요 내용과 영향	205
2) 청, 일 양국의 대 한인 정책의 변화와 한인사회의 동향	209
4. 맺음말	227

•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최덕규

1. 머리말	233
2. 일본의 만주 침략 정책과 간도 문제의 국제화	237
3. 제국주의 열강의 대일 견제와 간도협약 체결	247
4.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안과 제2차 러일협약	265
5. 맺음말	274

• 화이질서에서의 경계지대와 국제법적 ‘국경’	아키츠키 노조미	
1. 머리말		279
2. 월강에 대한 대응의 변천		280
1) 압록강·두만강의 한계선(1840~1850년대)		280
2) 조선 측으로부터의 월강과 엄벌에 의한 억제(1860년대)		282
3) 쇄환수령·위무정책으로의 전환(1871~1875)		285
4) 월강하여 행한 적극 초래 정책(1876~1880)		289
5) 청국에 의한 봉급정책 전환과 월강 조선인의 호적 편입 기도(1881~1882)		291
3. 화이적 경계관과 국제법의 점진적 수용		294
1) 쇄환에 대한 반발과 감계 회담(1883~1887)		294
2) 감계 회담 당시 국제법 논리의 맹아		296
3) 청국 호적으로의 편입 압력과 ‘치발역복’		298
4) 이범윤·서상무의 월강 주재		302
4. 일본의 침략적 개입		305
1) 일본 간섭의 시작		305
2) 임시 간도와출소 시기의 연구		310
5. 맺음말		314
• 극동지역 한인과 러시아 국경 통과 문제	A. I. 페트로프	317

19세기 성경 동변외 산장의 관리와 조·청 공동회초

구 범 진 (서울대학교)

1. 머리말

청(淸)은 만주(滿洲)의 성경장군(盛京將軍)과 길림장군(吉林將軍) 관할 지역에 속칭 변장(邊牆)이라 불리는 유조변(柳條邊)을 수축하였다. 유조변은 수축 시기에 따라 다시 노변(老邊)과 신변(新邊)으로 나뉜다. 순치(順治) 18년(1661)에 완성된 전장(全長) 약 1,950리의 노변[성경변장(盛京邊牆)]은 다시 봉황성(鳳凰城) 일대에서 시작하여 개원성(開原城) 동북의 위원보(威遠堡)에 이르는 동변(東邊)과, 위원보로부터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서변(西邊)으로 나뉜다. 한편 전장 약 690리의 신변은 강희(康熙) 9년(1670)에서 강희 20년(1681)에 걸쳐 위원보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수축되었다.¹

유조변의 존재 및 기능은 보통 청의 만주에 대한 봉금(封禁)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은 건륭(乾隆) 초년에 기인(旗人)과 기지(旗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주 전역에 걸쳐 한인(漢人)의 이주와 개간을 엄금하는 봉금 정책을 확립하였다.² 여

1 李治亭 主編(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489~490쪽.

2 李治亭 主編(2003), 위의 책, 491~494쪽. 단, 滿洲에 대한 封禁의 확립 시기에 대해서는 異說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李花子(2008), 『朝淸國境問題研

기에는 만주를 기인^[만주인]의 영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의식은 이미 만주에 대한 봉금 정책 확립 이전부터 있었다.³ 게다가 유조변은 봉금 정책 확립 이전에 수축된 것이었다. 따라서 유조변의 존재 이유에는 한인의 만주 이주를 금지한 건륭 이후의 봉금과 ‘무관’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변외(東邊外) 지역, 즉 유조변의 동변에서 압록강(鴨綠江) 서안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한인은 물론이거니와 기인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동변의 산장(山場)에서 생산되는 인삼, 초피, 진주 등의 특산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⁴

지금까지 동변의 지역의 봉금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朝)·청(淸) 국경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경향은 이 지역이 압록강 서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찌 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청 국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18세기의 국경 관련 중요 사안 — 예컨대 ‘망우초(莽牛哨) 사건’과 전책(展冊: 조선의 입장에서는 퇴책(退冊)) 문제 등 — 에 관심이 집중되었고,⁵ 성

究, 集文堂, 66~68쪽 참조.

3 Mark C. Elliott(2000), “The Limits of Tartary :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pp. 617~619 참조.

4 李治亭 主編(2003), 앞의 책, 491~494쪽; 張杰·張丹卉(2005), 『清代東北邊疆의滿族(1644~1840)』,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242~243쪽. 한편, 鴨綠江 서안의 封禁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인 고찰은 張杰(1994), 「清代鴨綠江流域의 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研究』 1994-4 참조.

5 金昶春(1984), 「朝鮮朝 後期の 國境線에 대한 一考: 無人地帶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29; 金昶春(1985), 「鴨綠江下流 朝·淸國境線形成問題考」, 『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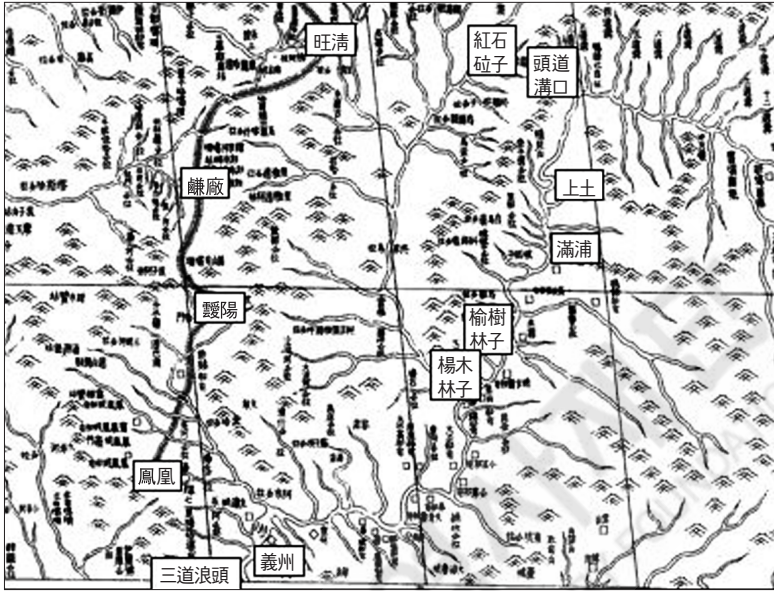


그림 1_ 성경 동변의 일대

※ 출처: 『清廷三大實測全圖集: 乾隆十三排圖』, 北京: 外文出版社, 2007(상자 안의 지명은 필자가 삽입).

경 동변의 산장 자체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김현영(2004), 「조선후기 朝·淸 변경의 인구와 국경 인식」, 노태돈 등,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국사편찬위원회; Seonmin Kim(2006), "Borders and Crossings: Trade, Diplomacy and Ginseng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Duke University; Seonmin Kim(2007), "Ginseng and Border Trespassing between Qing and Chosŏn Korea," *Late Imperial China*, Vol.28, No.1; 張存武(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255~260쪽; 張杰·張丹卉(2005), 앞의 책, 246~253쪽; 李花子(2006), 『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 以越境交涉爲中心』,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41~150쪽; 李花子(2008), 앞의 책, 197~208쪽 등을 참조.

이러한 연구의 부진에는 사료의 부족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도광(道光) 20년대에 불거졌던 압록강 서안 불법 개간 사건의 경우에는 조·청의 실록과 『동문휘고(同文彙考)』에 관련 사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다. 게다가 이 불법 개간 사건 이후 조·청 양국은 정기적으로 관원을 파견하여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을 단속하는 공동회초(公同會哨)를 실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이 사안에 주목하였다. 그 덕분에 불법 개간 사건의 처리 과정과 공동회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조·청 국경 문제의 맥락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통해서 청의 ‘영토주권’이 확인되었다는 결론만을 앞세우는 경우도 보인다.⁷ 이런 결론은 압록강 서안이 어느 일방의 영토로도 확정되지 않은 ‘무인지대’였다는 일부 연구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⁸

필자는 도광 20년대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 사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사료가 비교적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가 관련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었으며, 동변의 지역에 대하여 ‘무인지대’나 ‘구탈(驅脫)’이니⁹ 하는 성격 규정을 시도하기에 앞서 현존 자료를 가능한 한 자세히

6 김현영(2004), 위의 글, 132~133쪽 ; 張存武(1987), 위의 책, 260~264쪽 ; 張杰·張丹卉(2005), 앞의 책, 253쪽 ; 李花子(2006), 앞의 책, 151~160쪽 ; 李花子(2008), 앞의 책, 211~221쪽 등 참조.

7 張杰·張丹卉(2005), 앞의 책, 253쪽 참조.

8 예컨대, 金晷春(1984), 앞의 글 참조.

9 張存武는 東邊外 지역을 ‘片面驅脫’로 규정한다[張存武(1987), 앞의 책, 260~264쪽].

분석하여 사실을 충실하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청의 실록과 『동문회고』에 의존한 것이었지만, 근래 도광 20년대 성경장군(盛京將軍)을 역임했던 혁상(奕湘)의 문서가 영인됨으로써 관련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이로부터 필자는 도광 20년대의 불법 개간 사건을 포함하여 19세기 동변외 지역의 관리 실태 자체를 새롭게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변외 지역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때문에 동변외 산장 지역에는 민간인이 상주(常住)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적이 아예 끊어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간혹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이 이 지역을 여행하기도 하였으며, 허가를 받고 인삼을 채취하는 심마니(劄夫)들도 매우 많았다. 특히 인삼의 경우는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금령(禁令)을 어기고 불법 채삼(採參)을 감행하는 청인(淸人)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삼 채취를 위해 압록강을 건너는 조선인들도 있었다.¹¹ 또한 동변외 산장에서 불법적으로 벌목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청조(淸朝)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동변 일대에 변문(邊門)과 카룬(卡倫: karun, '초소')을 설치하였다. 특히 카룬은 만주에서 몽골을 거쳐 신강(新疆)에 이르는 변경 지대 곳곳에 보편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므로,¹² 동변외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10 『盛京將軍奏摺檔』(北京: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11 朝·淸 국경이나 犯越 문제에서 인삼의 의의를 강조하는 연구로는, Seonmin Kim(2006); Seonmin Kim(2007) 등을 참조.

12 寶音朝克圖(2005), 『清代北部邊疆卡倫研究』,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참조.

지금까지 동변의 산장에 설치된 카룬의 실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 실태에 착목하여, 주로 『동문회고』와 『성경장군주첩당(盛京將軍奏摺檔)』 등에 수록된 관련 문서들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¹⁴ 건륭 이후 동치(同治) 연간까지 이 지역 카룬의 설치 및 그 변화 과정을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서 대체적인 골자가 밝혀진 도광 20년대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 사건, 통순(統巡) 제도, 그리고 조·청 공동회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의 재구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2. 성경 동변의 산장의 카룬과 통순 제도

유조변 곳곳에 설치된 변문에는 팔기(八旗) 관병(官兵)이 주둔하여 변장 내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 중에서 조선 방면에 수축된 동변에는 가장 북쪽의 위원보변문을 비롯하여 남쪽으로 영액(英額) 변문, 왕청(旺淸) 변문, 감창(鹹廠) 변문, 애양(爨陽) 변문, 봉황(鳳凰) 변문 등 여섯 변문(동육변(東六邊))이 설치되었다.¹⁵ 서변의 10개 변문은 성경

13 예건대 寶音朝克圖(2005), 앞의 책에서도 東邊外 지역 카룬의 실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佟冬 主編(1999), 『中國東北史』 제4권,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399~1406쪽; 張杰·張丹卉(2005), 앞의 책, 253~256쪽 등에 카룬 관련 서술이 보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東邊外 카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략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떨어진다.

14 『同文彙考』는 國史編纂委員會의 1978년 影印本을 이용하였다.

15 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清會典事例(八)』, 北京: 中華書局(1991), 965쪽. 이들 邊門의 한자 표기는 사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光緒 『大清會典事例』의 표기를 따른다.

장군의 통할(統轄) 아래 금주부도통(錦州副都統), 의주성수위(義州城守衛), 광녕방수위(廣寧防守衛), 개원성수위(開原城守衛) 등이 나누어 관리하였다. 반면에 동육변은 성경병부시랑(盛京兵部侍郎)에게 관할 책임이 있었고 성경장군에게는 겸관(兼管, 또는 겸통(兼統)) 책임이 부여되었다.¹⁶ 때문에 서변의 경우는 각 변문에 무직(武職)인 방어(防禦) 1원(員)만을 배치하였지만, 동육변에 대해서는 성경 5부의 시랑(侍郎) 가운데 한 명을 관변대신(管邊大臣)으로 임명하는 한편, 각 변문에 성경 5부의 문직(文職) 사원(司員 : 원외랑(員外郎), 주사(主事), 찬례랑(贊禮郎)) 중에서 1명씩을 뽑아 배치하였고, 봉황변문을 제외한 다섯 변문에는 성경장군 속하 주방(駐防)의 방어(防禦, 위원보, 영액, 왕칭)나 효기교(驍騎校, 감창, 애양) 중에서 1명씩을 뽑아 문직 사원과 함께 주둔시켰다. 각 변문의 병력은 원래 31명[만주 6명, 한군(漢軍) 25명]이었으나, 건륭 6년(1741) 성경에서 19명씩을 이주시켜 50명으로 늘어났다.¹⁷

이와 같은 동육변에서의 출입 통제에 더하여, 청조는 동변 안팎의 곳곳에 카룬을 설치하여 산장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관심사는 19세기 동변 내외의 카룬이긴 하지만, 그 전사(前史)로서 18세기 후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건륭(乾隆) 43년(1778)에 완성된 『흠정성경통지(欽定盛京通志)』 권51에 의거하여 동육변 안팎의 카룬 설치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들 카룬은 가장 북쪽의 위원보변문을 제외한 다섯 변문의 관할 구

16 『欽定盛京通志』 권51(文淵閣 四庫全書本), 19a쪽 ; 佟冬 主編(1999), 앞의 책, 1286쪽.

17 『欽定盛京通志』 권51, 16a~22a쪽. 따라서 東六邊에 배치된 병력은 모두 합해서 300명이었던 셈이다. 한편, 東六邊을 관리하는 관원의 임기는, 文職은 2년, 武職은 3년이었다(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965쪽).

표1 동변 내외의 카룬(건륭 40년대)

변문 (邊門)	카룬			
	변내 (10월 1일~4월 1일)		변외 (4월 1일~10월 1일)	
	위치	병력 파견	위치	병력 파견
영액 (英額)	花家溝, 耿家莊, 新臺, 商家臺	개원 성수위	輝發畢喇昂阿, 輝發湖屯, 碗口, 紅石礮子	개원 성수위
왕청 (旺淸)	馬家寨, 三家子, 老鷹營, 石棚溝, 多興阿臺	흥경 성수위	發畢喇, 那哩琿畢喇昂阿, 金道和倫, 二道黃溝, 幹爾敏, 畢什哈達	흥경 성수위
감창 (鑾廠)	哈哩山, 平頂山, 麟廠營	요양 성수위	坎缸溝, 大南溝, 風馬溝	요양 성수위
애양 (愛陽)	瓜坡子營, 邊門, 鐵佛寺, 湯堡城	봉황 성수위	長嶺子, 棋盤嶺, 大江口	봉황 성수위
			三道郎頭, 斜哨	응악 부도통
봉황 (鳳凰)	佛笑島, 沙基子	봉황 성수위	中江	봉황 성수위

※ 출처 : 『欽定盛京通志』 권51, 16a~19a쪽.

역에 각각 속하였는데, 변내(邊內)에 18좌(座), 변외에 19좌 등 총 37좌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카룬에는 관원 1명과 병사 10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영액변문 관할의 카룬에는 개원성수위(開原城守尉) 이하의 관병이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두 달마다 임무를 교대하였다. 단, 카룬에 관병이 1년 내내 주둔했던 것이 아니다. 변내 카룬에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변외 카룬에는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병력이 주둔하였던 것이다.¹⁸ 왕청변문, 감창변문, 봉황변문 관할의 카룬들은, 각각 흥경(興京)성수위, 요양(遼陽)성수위, 봉황

18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성수위가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임무 교대 간격 및 카룬 주둔 기간은 영액변문과 마찬가지로였다. 애양변문의 경우는 봉황성수위가 병력을 파견하였고, 임무 교대 주기가 다른 지역과 달리 한 달이었다. 단, 2좌의 변외 카룬[삼도랑두(三道郎頭), 사초(斜峭)]에는 웅악부도통(熊岳副都統)이 파견한 병력이 주둔하였다.¹⁹

그런데 위와 같은 동육변 안팎의 카룬 설치 상황은 건륭 말년에 적잖은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그 변화는 『청실록(淸實錄)』의 기사를 통해서 일부나마 엿볼 수가 있다.²⁰ 이에 따르면, 변외의 카룬은 건륭 55년(1790) 이래 13좌를 없앴고, 나중에 다른 장소에 6좌를 추가하였다. 변내의 경우는, 역시 건륭 55년에 1좌를 없앴고, 건륭 58년에 5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동육변 안팎의 카룬은 변외 12좌^[7좌 감소], 변내 22좌^[4좌 증가]로 조정되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성경장군이 북경 조정의 재가를 얻지 않은 채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경(嘉慶) 5년(1800) 3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가경제(嘉慶帝)는, 동변외 지방이 조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종래의 카룬들이 모두 국초(國初)에 지세를 헤아려 설치된 것이므로 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건륭 말년의 카룬 설치 변경에 대한 진상 조사를 명하는 한편, 카룬의 설치 지점을 원상 복귀할지 말지를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가경제의 지시에 따라 카룬의 설치 상황에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청실록』에 후속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 탓에 자세

18 이하 이 글의 날짜 표기는 음력을 따른 것이다.

19 『欽定盛京通志』 권51, 16a~19a쪽.

20 『淸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62, 中華書局(1986), 830~831쪽.

히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광서 『대청회전사례(大清會典事例)』에 수록된 동변 안팎의 카룬은 변내에 3좌, 변외에 21좌로 합계 24좌에 이른다. 즉, 변내는 불소도자(佛小島子), 정산괴(頂山拐), 소석봉(小石棚) 등지에, 변외는 소황구(小黃溝), 삼도랑두(三道浪頭, 三道郎頭), 중강(中江), 대강구(大江口), 고하구(古河口), 대아이하(大雅爾河), 두도강구(頭道江口), 육도하(六道河), 광동구(曠洞溝), 홍석자(紅石子), 대라권구(大羅圈溝), 합이민(哈爾敏), 완구(椀口), 휘발괘춘(輝發霍春), 나이훈필랍앙아(那爾軍畢拉昂阿), 모이산(帽爾山, 모아산(帽兒山)), 양림자(楊林子, 양목림자(楊木林子)), 우수림자(榆樹林子), 고성(古城), 소삼도구(小三道溝), 납자구(拉子溝) 등지에 카룬이 설치되어 있었다.²¹ 이 중에서 변외의 세 카룬(모이산, 고성, 소삼도구)은道光 27년(1847)에 추가로 설치된 것이므로(후술),道光 26년(1846)까지 동변 안팎에는 변내 3좌, 변외 18좌의 카룬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이를 건륭 말의 변내 22좌, 변외 12좌와 비교하면, 변내 카룬은 19좌나 감소한 반면에 변외 카룬은 6좌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서 『대청회전사례』의 카룬 위치를 표 1의 카룬들과 비교해 보면, 카룬의 설치 지점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변 안팎의 카룬이 21좌로 재편된 것은 언제였던 것일까?

여기서道光 27년 6월 성경장군 희상이 올린 주접(奏摺)에 보이는 다음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문서들을 조사해 보니, 嘉慶 9년에 전임 將軍 富俊이 일찍이 직접 다

21 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965~966쪽.

22 道光 22년 盛京將軍 禧恩이 올린 상주를 보면 당시 邊外의 카룬 역시 18座였다(『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5a쪽).

니며 두루 조사하여 카룬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실로 정제되어 조리가 있었습니다. 奴才 등이 이번에 길을 나누어 각처로 가서 상세하게 查察하여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논의했는데, 새로 바꾼 것이 완전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옛 章程을 따라서 힘써 만들어 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설치되어 있던 邊内の 카룬 3곳과 邊外의 카룬 18곳은, 예전대로 安設하게 해 주실 것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²³

즉, 도광 27년 당시 존재했던 21좌의 카룬은 가경 9년 성경장군 부준(富俊)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가경 9년(1804) 부준의 카룬 설치는 『청실록』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일부 엿볼 수 있다. 가경 8년(1803) 7월 동변외의 고려구(高麗溝) 일대에서 불법 벌목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²⁴ 이 사건으로 인해 성경장군 진창(晉昌)을 비롯한 관련 관원들이 대거 문책을 당했다.²⁵ 가경 9년(1804)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성경장군 부준(진창의 후임)은 카룬의 재배치[移駐]를 추진하였는데, 당시 ‘삼고천(三股泉) 등처의 네 카룬과 탕보성(湯堡城) 등 스무 군데의 카룬’이 폐지 대상이 되었다.²⁶ 표 1에서 탕보성 카룬의 위치는 변내였으므로, 이 기사에서 ‘탕보성 등 스무 군데의 카룬’은 변내 카룬을, ‘삼고천 등처의 네 카룬’은 변외 카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가경 9년 부준의 카룬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변내 카룬을 대거 정리하는 대신 변외 카룬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상술한 카룬 숫자의 변동과도 부합한다.

23 『盛京將軍奏摺檔』, 319~320쪽.

24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116, 550~551쪽.

25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118, 582~583쪽.

26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131, 776쪽.

한편, 도광 27년 신설 카룬 3좌에 투입할 관원과 병력을 어떻게 조달할지 검토하는 과정을 보면(후술), 몇몇 카룬의 주둔 병력 숫자가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각 카룬의 병력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건륭 연간 각 카룬에 1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가경 9년에 있었던 변화의 요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변내의 카룬을 대폭 줄였다. 둘째, 변외의 카룬을 재배치하였다. 셋째, 종래 변내에 배치되었던 병력을 돌려 변외의 카룬에 추가 투입하였다.²⁷

이에 따라 종래 변내 카룬에 배치되었던 관원도 변외로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광 22년(1842) 성경장군 희은(禧恩)이 올린 주점을 보면, 변외 카룬 중에는 관원이 2원(員) 주둔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변외의 카룬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에 총순관(總巡官) 1원이 파견되고 있었다.²⁸ 총순관의 거점이 되었던 카룬은 소황구(小黃口) 카룬과 두도강(頭道江) 카룬이었는데, 여기에는 총순관을 포함하여 관원이 3원 배치되어 있었다.²⁹

이 무렵 각 카룬의 관병 주둔 기간에도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륭 연간에는 내외 카룬에 1년 내내 관병이 주둔했던 것이 아니다. 변외 카룬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년 10월에서 3월까지의 동절기 5개월 동안은 카룬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

27 嘉慶 9년 당시 카룬 주둔 관병의 전체 숫자는 증가가 승인되지 않았다(『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131, 776쪽). 그러므로 富俊은 카룬과 병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邊外의 병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8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5a쪽.

29 『盛京將軍奏摺檔』, 328쪽.

데 광서 『대청회전사례』를 보면, 매년 4월 1일에 각 카룬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주둔시키고, 1년마다 카룬의 주둔 병력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다.³⁰ 즉 동절기 동안 변외의 카룬을 비워 두었던 건륭 연간과는 달리 변외 카룬에 1년 내내 병력을 주둔시켰다는 것이다. 광서 『대청회전사례』의 기사만으로는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경 9년 부준의 카룬 정리와 함께 이루어진 조치가 아닐까 한다. 변외 카룬의 수를 압도적으로 늘린 상황에서, 내외 카룬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여 하절기엔 변외 카룬에, 동절기엔 변내 카룬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었던 건륭 연간의 방식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통순(統巡) 제도를 살펴보자. 『흠정성경통지』에는 통순 제도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광서 『대청회전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매년 네 계절에 內城[盛京을 지칭 : 인용자] 및 外城의 城守尉, 防守尉, 協領 중에서, 계절마다 각각 1員을 뽑아 官兵을 거느리고 가서 東邊 內外 카룬의 관할 구역을 統巡시킨다. 몰래 벌목을 하거나, 불법으로 인삼을 캐거나, 녹용을 몰래 취하는 賊犯들을 수사·체포한다.³¹

즉, 성경(盛京) 지역의 성수위(城守尉, 정3품), 방수위(防守尉, 정4품), 협령(協領, 종3품) 중에서 계절마다 1명씩을 파견한다는 사계통순(四季統巡) 제도가

30 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966쪽. 光緒 『大清會典事例』의 후속 기사에 道光 28년부터는 카룬의 주둔 병력을 6개월마다 교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966쪽.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계통순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던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동문회고』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문서들을 살펴보니, 東邊 바깥 각 카룬 관할의 목재가 생산되는 山場은 종래 奸民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과거 嘉慶 14년에, 다음 내용을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습니다. “매년 四季로 나누어, 內外 각 성의 尉·協 등 관원 가운데에서 계절마다 관원 한 명을 골라 (東邊 外 山場으로) 파견하여 巡査하고 賊匪를 체포해야 합니다.”³²

이로 보아 사계통순은 가경 14년(1809)에 처음 도입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년 사계에 위(尉)·협(協) 관원을 파견한다는 사계통순은 가경 14년에 시작된 것이 분명하지만, 통순 제도와 같은 ‘감사’ 제도는 이보다 앞선 가경 8년 무렵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도광 27년 5월 성경장군 혁상의 주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과거의 규정에서는 巡査의 임무를, 盛京과 錦州 및 金州의 세 副都統이 돌아가며 맡아서 갔습니다. 나중에 城守尉와 協領을 파견하여 계절을 나누어 邊外로 나가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副都統이 邊外의 카룬을 돌아가며 巡査하는 일은 정지하였습니다.³³

원래는 성경 지역의 세 부도통(副都統, 정2품)이 돌아가며 1년에 한 차

32 『同文集考』原編續 疆界一, 38a쪽.

33 『盛京將軍奏摺檔』, 81~82쪽.

레씩 변외를 순사(巡査)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사계통순의 도입으로 폐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실록』을 보면, 가경 8년 고려구 사건 당시 성경장군으로 부임하는 부준에게, 가정제는 매년 부도통급의 대원(大員)을 돌아가며 파견하여 동변외를 순사시키는 일을 앞으로 마련할 대책에 포함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³⁴

따라서 가경 8년의 고려구 사건은 이듬해 동변외 카룬 재배치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룬 주둔 관병의 임무 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 제도의 도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가정제는 카룬의 위치나 숫자가 아니라 현지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 사건의 근본 원인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는데,³⁵ 매년 부도통급의 대원을 변외로 파견하는 제도는 이 같은 가정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서술에 기초하여 가경 말년 무렵 동변외 산장 일대에 대한 청조의 ‘관리 시스템’을 정리·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조는 불법적인 벌목과 채삼(採參) 등을 막기 위하여 동변외 지역에 18좌의 카룬을 설치해 두었다. 각 카룬에는 관원과 병력(20~40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교체되었다. 또한 이들 카룬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총순관이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총순관의 파견과 정기적인 ‘감사’는 가경 8년의 고려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적인 ‘감사’의 경우는 처음에 부도통급의 고관을 1년에 한 차례 파견하

34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119, 593쪽.

35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권120, 613쪽 ; 권121, 630~631쪽.

는 것이었으나, 가경 14년 이후에는 계절마다 성수위, 방수위, 협령 가운데 1명을 파견하는 사계통순 제도로 변화하였다.

3.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 사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조는 동변의 산장의 봉금을 관철하기 위하여 동변 내외의 곳곳에 카룬을 설치하였다. 또한 이들 카룬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통순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완비가 자동적으로 봉금의 관철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변의 산장의 풍부한 경제적 기회(벌목과 채삼)를 찾아 삼엄한 금령을 무릅쓰고 변외로 들어왔다. 만약 동육변과 카룬을 관리하던 관원과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통순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들과 결탁하는 경우, 카룬과 통순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건륭 말년 이래 관장(官場)의 기강이 문란해졌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가경 8년의 고려구 사건도 사실은 동육변과 카룬의 관병들이 벌목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려구 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감독이 일층 강화되긴 하였지만, 가경 14년 이후 부도통 대신에 위·협을 파견한 사계통순 제도는 당시 관기(官紀)의 문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살펴볼 도광 20년대의 두 개간 사건은 카룬과 통순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첫째, 채삼이나 벌목이 아닌 토지

의 개간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토지의 개간은 사람들이 변외에 상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단기 체류의 성격이었던 채삼이나 벌목과는 문제의 성질이 달랐다. 둘째, 두 사건은 압록강 중·상류의 서안 지역을 무대로 하였으며,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는 물론이거니와 사건의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조선 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변외의 ‘관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청의 ‘국내 문제’였다면, 도광 20년대의 두 사건과 그 사후처리에는 ‘국제 문제’라는 새로운 차원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1) 도광 22년의 개간 사건

도광 22년(1842) 4월, 조선국왕은 평안도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로부터 장계(狀啓)를 받았다. 이 장계의 내용은 강계부(江界府)의 상토진(上土鎭)과 만포진(滿浦鎭) 경내 압록강³⁶ 대안에 청인(淸人)들이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서 상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국왕

36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검토한 道光 이후의 사료에서 압록강은 모두 ‘靉江’으로 표기되고 있다. 上土鎭과 滿浦鎭에 접한 강줄기가 압록강임을 확인을 요하지 않거니와, 道光 27년 5월 欽差大臣 柏葰과 盛京將軍 奕湘이 道光帝에게 개간지가 적발된 지역을 설명하면서, “[旺淸 : 인용자]邊門 바깥 200리쯤에 渾江 [= 佟家江 : 인용자]의 강줄기가 있고, 渾江 동쪽으로 400리 남짓이 곧 靉江이며, 그 東岸은 곧 朝鮮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로부터 문제의 ‘靉江’이 곧 압록강임을 알 수 있다(『盛京將軍奏摺檔』, 89쪽). 한편, 雍正 및 乾隆 연간에 있었던 莽牛哨 사건 관련 사료에 등장하는 ‘靉河’는 鳳凰邊門 근처를 흐르는 압록강의 지류 가운데 하나로, 道光 연간의 사료에 등장하는 ‘靉江’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은 북경의 예부(禮部), 성경장군, 성경예부(盛京禮部) 등에 자문(咨文)을 발송하여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을 엄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강희 53년과 건륭 13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강변 일대의 개간을 금지한 선례(先例)로 인용하였다.³⁷

그런데, 조선에서 인용한 두 가지 선례는 압록강이 아니라 두만강 대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일찍이 강희 53년(1714)과 건륭 13년(1748) 함경도 경원부(慶源府)의 훈융진(訓戎鎭) 경내에서 청인이 두만강 대안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모습이 관찰되자, 조선에서는 강변에 사람이 상주하게 되면 두 나라 사람들의 접촉과 왕래가 늘어날 터이고, 그렇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청에서는 조선국왕의 요청에 따라 강변의 개간을 엄금하였다.³⁸ 이 두 가지 선례에서 조선 측은 두 나라 사람들의 접촉과 왕래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 문제가 된 토지를 개간했던 것은 불법 유민이 아니라 훈춘(渾春) 일대 주방(駐防)의 기인(旗人)들이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강변의 개간을 금지하였던 것은 조선 측이 내세운 논리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청의 이러한 입장은 건륭 11년(1746) 7월 건륭제가 압록강 서안 봉황변문 일대의 전책(展柵)에 관한 논의를 중지시키면서 내린 상유(上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37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1a~2a쪽.

38 『同文彙考』原編 권48, 12a~13a쪽, 13b~14a쪽, 14a~15a쪽, 35b~37a쪽, 37b~38b쪽.

39 張存武(1987), 앞의 책, 253~255쪽.

從前에 達而黨阿가 변방의 경계를 정비하고 토지를 개간해야 한다는 사안으로 奏請한 것을 議准했는데, 朝鮮國王이 이미 鳳凰城 樹柵의 밖은 여전히 空地 百餘 里를 남겨두어, 內外를 격리시킴으로써 人烟이 모여들어 混雜해지고 말썽이 늘어날 우환을 면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奏聞은 오히려 행할 만하니 鳳凰城에서 展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朝鮮國王이 請한 바에 따라 (논의를) 停止시켜라. [밑줄 친 강조 부분은 인용자]⁴⁰

또한, 건륭 11년 9월 중신(衆臣)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망우초(莽牛哨)에 수로(水路) 방汛(防汛)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최종적으로 물리치면서 내린 상유에서도 그런 입장이 다시 천명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防汛을 설치하려는 곳은 원래 정한 界址 이내로 朝鮮의 邊界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朝鮮國王은 世世로 我朝의 國恩을 입고 심히 恭順하였는데, 만일 이 防汛을 설치하였다가 그 나라의 무지한 백성이 禁畝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죄를 얻을까 걱정한 것이니, 이 때문에 奏請한 것이다. 그 防汛을 安設하는 곳이 비록 江灘으로 分界되어 있다 하더라도 兩岸이 불과 1~2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로의 거리가 심히 가깝다. 만일 그쪽에 속한 下人 등이 禁畝를 지키지 않아서 朝鮮國王이 죄를 얻게 된다면 짐의 마음은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朝鮮國王이 정한 바에 따라 莽牛哨 지역에 汛兵을 添設하려는 문제는 정지시키고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그쪽에 소속된 사람들을 엄히 단속하게 하라. [밑줄 친 강조 부분은 인용자]⁴¹

40 『同文彙考』原編 권48, 31a쪽.

41 『同文彙考』原編 권48, 34a쪽.

도광 22년 4월 조선국왕이 인용했던 강희 53년과 건륭 13년의 두 선례는 비록 압록강이 아닌 두만강 연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당시 강변의 개간을 금지했던 취지와 건륭 11년의 두 상유에 천명된 청의 입장에 입각해 보자면, 청으로서는 도광 22년 4월 조선의 고발로 드러난 압록강 서안의 개간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번에는 강희 53년과 건륭 13년의 두 사안과는 달리 봉금을 어기고 변외로 들어온 불법 유민이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점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두만강 연안의 혼춘 일대에서는 강변에서의 개간 ‘행위’가 문제였다면, 압록강 서안에서는 개간 ‘행위’뿐만 아니라 개간 행위의 ‘주체’도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경우는 설사 조선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응당 금지해야 했던 것이다.⁴²

조선국왕의 자문을 접수한 북경의 예부는 조선국왕이 요청한 대로 성경장군과 길림장군(吉林將軍)에게 현지 조사를 명령하고 금령을 어긴 민인(民人)과 관할 지역 관원을 처벌할 것을 주청(奏請)하였으며,⁴³ 도광제는 금령을 어긴 민인과 관할 관원의 처벌을 명한 상유를 내각(內閣)에 내렸고, 북경 예부는 다시 이 사실을 조선국왕에게 알렸다.⁴⁴ 그런데, 도광제는 예부의 주청에 앞서 성경장군 희은(禧恩)과 성경예부시랑 명훈(明訓)이 올린 주점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 주점에

42 당시 盛京將軍 禧恩은 朝鮮國王이 咨文에서 언급한 康熙·乾隆 연간의 선례에 관한 문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吉林將軍에게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吉林將軍의 회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사건을 ‘大干例禁’으로 규정하고 관원을 현지에 파견하였다(『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4a~5b쪽).

43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3a~3b쪽.

44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a~2b쪽.

서 희은 등은, 성경 관할의 동변의 지역에는 18좌의 카룬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우수림자(榆樹林子)와 양목림자(楊木林子)의 두 카룬이 관리하던 산장임을 밝히고, 협령(協領) 오이곤진(烏爾滾珍)과 좌령(佐領) 목등액(穆騰額)을 파견하여 흥경의 성수위(城守尉) 소박린(蘇博麟), 통판(通判) 경상(景祥) 등과 함께 현지로 가서 조사와 처벌을 집행하도록 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 주점을 접한 도광제는 “처음에 파견한 관원이 조사를 마치고 보고한 뒤에, 해당 장군 등이 다시 성실하고 믿을 만한 관원을 가려 뽑아 그곳에 가서 재차 사감(查勘)을 추가 실시하게 하라”는 상유를 군기처(軍機處)를 통해 하달하였다.⁴⁵

성경장군 희은이 현지에 파견했던 위원(委員)들은 우수림자 카룬 관할의 수곡류천(水曲流川) 지역[만포진 여운포(如雲浦)의 대안]에서 와봉(窩棚) 12곳, 초방(草房) 56간(間), 간전(墾田) 51단[段, 합계 약 1,200여 무(畝)], 모이산 카룬⁴⁶ 관할의 석호구구(石湖溝口) 지역[상토진(上土鎭) 변흥동(卞崟洞)의 대안]에서 와봉 6곳, 초방 27간, 간전 6단[합계 약 1,000여 무], 역시 모이산 카룬 관할의 화피전자(樺皮甸子) 지역[상토진 하서해평(河西海平)의 대안]에서 와봉 10곳, 초방 15간, 간전 7단[합계 약 1,100여 무] 등을 적발하고, 와봉·초방·간전을 모두 파괴하였다. 그러나 금령을 어긴 범인들은 이미 도망을 간 뒤여서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였다. 다만 우수림자 카룬 관할의 태평구구(太平溝口)와 양목림자 카룬 관할의 피조구(皮條溝) 등지에서 당인(唐仁), 강문채(江文彩), 강관(姜寬) 등 3명을 체포하였을 뿐이었다. 희은은 후속 조치로서 두도강구(頭道江口)와 모이산의 카룬 관원들에게 도망친 범인들을 추적하도록

45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4a~6b쪽.

46 여기서 말하는 帽爾山 카룬의 실제 위치는 帽爾山이 아닌 紅石砬子였다(후술).

명령하였다. 또한 도광제가 상유에서 지시했던 사감(查勘)은 협령 적륙창아(緝轄障禦)를 도광 22년 동계통순으로 파견하여 맡기기로 하였다. 끝으로 이 지역의 불법 개간 사실을 ‘실찰(失察)’한 관원들의 명단을 병부(兵部)에 넘겨 처벌하도록 하였다.⁴⁷

도광 22년의 개간 사건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단락되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지적했듯이 동변외 지역을 무대로 한 민인의 불법 행위가 채삼이나 별목을 넘어서서 개간과 상주의 형태로까지 ‘진화’하였음이 드러났다. 둘째, 강희·건륭 연간의 교섭을 통해서 두만강 북안의 개간 및 주민 상주(常住)에 관한 금령을 확인시킨 바 있었던 조선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압록강 서안에서도 동일한 금령을 재확인시킬 수 있었다. 셋째, 후술하는 도광 26년의 경우와 달리, 도광 22년의 사건 처리 과정에는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의 관원은 단속이 모두 끝난 후에 희은이 파견한 위원의 요청에 따라 강을 건너와서 애초에 적발했던 개간지가 모두 파괴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을 따름이다.⁴⁸ 넷째, 약 3천 무(畝) 이상의 넓은 개간지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당인, 강문채, 강관 등 3명이 체포되긴 하였지만, 이들은 애초에 조선 측이 고발한 지역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었다. 도광 26년의 단속 실적(후술)과 비교할 때, 현지의 관원들이 범인들과 유착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단속 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광 22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지

47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7b~12a쪽.

48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9b쪽.

의 관병과 유민 간의 유착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했으며, 도광 26년의 개간 사건은 이를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도광 22년의 개간 사건으로 변외의 사계통순 제도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희은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봄과 가을의 두 계절에 통순을 맡는 성수위·협령이 모두 해당 지역에 직접 가서 자세하게 사감”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광제는 이 제안을 승인함과 동시에 “수시로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원”을 파견하여 통순의 부실을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⁴⁹ 이는 종래의 사계통순이 압록강 서안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반증해 준다고 하겠는데, 불과 4년 뒤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개간 사실이 재차 적발됨에 따라 도광제가 우려했던 통순의 부실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

2) 도광 26년의 개간 사건

도광 26년(1846) 5월 평안도 강계부의 좌채(左寨)·중채(中寨)·우채(右寨)와 상토진 관내 여염(閭閻)·사파(四把) 등지의 대안(對岸)에서 청인들이 또 다시 토지를 개간하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도광 22년의 사건이 있는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개간지는 무려 40군데가 넘었다. 조선에서는 도광 22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경예부와 성경장군에게 자문

49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10b쪽, 11b쪽.

을 보내어 금령의 조속한 집행을 요청하였다.⁵⁰

도광 26년 6월 17일 조선국왕의 자문을 접수한 성경장군 혁상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여 6월 21일 도광제에게 상주하였다. 여기에는 위원과 병력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개간지의 파괴와 범인의 체포 및 개간 실태의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관원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여 문책을 실시하며, 장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혁상의 보고를 접하고 크게 진노한 도광제는, 6월 30일의 상유를 통해서 혁상에게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하는 한편, 도광 22년의 사건을 처리했던 희은과 그 후 통순을 맡았던 관원 및 카룬의 관원들에 대한 문책을 특히 강조하였다.⁵¹

도광제에게 상주를 올린 이튿날, 혁상은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발송하여 조선에서도 관원과 병사를 파견하여 이번에 적발한 개간지를 함께 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⁵² 이는 도광 22년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후 압록강 서안에 대한 조·청 공동회초의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후 혁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외 각지로 위원과 관병을 파견하여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무려 300여 명이나 되는 범인들을 체포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50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12b~13b쪽.

51 『盛京將軍奏摺檔』, 153~162쪽.

52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13b~14b쪽. 이 요청을 접수한 朝鮮에서는 朝鮮의 관원이 강을 건너가려면 황제의 諭旨가 있어야 한다는 咨文을 보낸 바 있다(『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14b~15a쪽). 당시 朝鮮이 요구한 황제의 諭旨가 언제 朝鮮에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면 다음과 같다.⁵³ 먼저 조선 측이 적발한 개간지가 위치해 있던 지역에는 성수위 풍존(豐存)을 북로위원(北路委員)으로 파견하였다. 풍존 일행에는 좌령 송희(崇禧)와 통판 문필(文弼) 등의 관원과 100명의 병력이 포함되었다. 왕청변문을 경유하여 변외로 진입한 북로위원 일행은 8월 12일 압록강 서안에 도착하였다. 여운포(如雲浦)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 측 관원 이지식(李之澁) 등이 강을 건너와서 이들과 합류하였고, 9월 10일까지 공동 사찰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화피전자[樺皮甸子, 상토진 대안], 대리자구[大李子溝, 좌채 대안], 위산하[葦山河, 중채 대안], 동제탑[東堤塔, 우채 대안] 등지에 자리한 42곳의 개간지를 파괴하고 범인 21명을 체포하였다. 일행은 계속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오도구(五道溝) 일대까지 사찰을 진행하였으며, 사도구(四道溝) 등지에서 건물 25채를 발견하여 불태웠다.⁵⁴

혁상은 또한 성수위 기서(耆瑞)를 남로위원(南路委員)으로 파견하였다. 역시 100명의 병력을 거느린 기서의 임무는 봉황변문을 통해서 변외로 진입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혁상은 강안(剛安, 驍騎校)과 모등원(茅騰遠, 未入流)을 압록강 하구의 삼도랑두 일대로 밀파하였다. 강안의 임무는 불법 벌목에 종사하는 범인들과 그들의 목재를 가능한 한 많이 체포·압수하는 것이었다. 7월 중순에는 봉황성 성수위 영개(英凱)에게 강안에 대한 병력 지원을 지시하

53 이하 奕湘의 단속 실적에 관한 서술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盛京將軍奏摺檔』, 187~194쪽;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18b~20a쪽, 20a~20b쪽, 21b~25b쪽 등에 근거한 것이다.

54 北路委員 일행은 귀로에 朝鮮人 2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盛京으로 압송되었다가 석방되어 귀국하였다(『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2b~25b쪽;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一, 21a~24a쪽).

였다.⁵⁵ 기서를 비롯한 남로(南路)의 위원들은 벌목 범인 122명을 체포하고, 목재 3,855건을 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8월에 들어서도 혁상은 좌령 기릉아(奇凌阿), 지현 흥태(興泰), 좌령 액이덕은포(額爾德恩布), 방어 달춘(達春), 효기교 유여청(劉汝淸), 찰고나(扎庫那) 등을 잇달아 변의 각지로 파견하여 벌목 범인 98명을 체포하고 목재 4,485건을 압수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문책 대상에 오르게 된 “성수위, 협령, 방수위 등 총 15명이 모두 경비(經費)를 스스로 갖추고 변외로 나가서 힘써 노력함으로써 속죄(贖罪)하겠다”고 청하자, 동지(同知) 만제(萬濟)를 이들과 함께 파견하였다. 이들은 범인 82명을 체포하였고, 목재 3,715건과 인삼 20냥(兩)을 압수하였으며, 16곳의 개간지를 파괴하였다.

혁상이 도광 26년의 개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광 22년의 경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혁혁한 체포 및 압수 실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도광 22년 이후 변외 지역에서 벌목이나 개간 같은 불법 행위가 갑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역시 도광 22년의 사건 처리와 그 이후의 카룬 및 통순의 단속이 ‘총체적 부실’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듯한데, 이러한 ‘총체적 부실’의 배후에 일부 관원들의 근무태만 내지 뇌물 수수가 자리하고 있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도광 26년에 체포된 범인들은 왕청, 감창, 애양, 봉황 등의 변문을 통과하여 변외 지역으로 들어갔음이 밝혀졌으며, 육도하와 고하 카룬의 관원 2명과 병사 34명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⁵⁶

55 『盛京將軍奏摺檔』, 775~778쪽.

또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혁상의 현지 관원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다.⁵⁷ 6월 20일 흥경성수위 풍존 등에게 보낸 문서에서 혁상은, 도광 22년의 사건 처리가 대충 사건을 덮어버리는 정도 [含混了事]로 처리되었음을 지적하였고,⁵⁸ 7월 11일 역시 풍존 등에게 보낸 문서에서는 흥경 주방(駐防)의 협령 광록(廣祿)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⁵⁹ 혁상이 삼도랑두 일대에 강안을 따로 밀파한 일이나, 8월에 다른 위원들과 함께 찰고나를 파견하면서 찰고나에게 위원들의 부정을 감시하라는 밀명(密命)을 내렸던 일⁶⁰ 등은 혁상의 현지 관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혁상은 변외의 개간이나 별목은 단순히 가난한 유민들의 범법 행위가 아니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배후의 전주(錢主)를 검거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는데,⁶¹ 이는 전주들과 일부 관원들의 유착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광 26년 혁상의 ‘단속 작전’에서 두드러지는 두 번째 특징은 조선 측에서 개간지를 적발한 압록강 중·상류만이 아니라 삼도랑두 일대

56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3b~24a쪽.

57 奕湘은 廣州將軍으로 있다가 道光 25년 9월 禧恩의 후임으로 盛京將軍에 임명된 자였다(錢實甫 編(1980), 『清代職官年表』, 中華書局, 2368쪽). 따라서 6월 17일 朝鮮의 咨文을 접했을 당시 道光 22년 사건 처리의 실상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6월 19일 奕湘은 遼陽城守衛 耆瑞를 급히 盛京으로 불러들였다(『盛京將軍奏摺檔』, 763쪽). 耆瑞는 道光 22년의 사건 처리 과정이나 統巡에 관계했던 자였다(『盛京將軍奏摺檔』, 768~769쪽). 奕湘은 耆瑞로부터 道光 22년의 사건 처리 과정 및 東邊外에서 벌어지고 있던 불법 행위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58 『盛京將軍奏摺檔』, 764~765쪽.

59 『盛京將軍奏摺檔』, 769~771쪽.

60 『盛京將軍奏摺檔』, 780쪽.

61 『盛京將軍奏摺檔』, 772~773쪽, 781~782쪽.

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 하류 유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찰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사실 혁상은 조선 측의 고발로 문제가 된 압록강 중·상류 연안의 북로 지역보다도 오히려 남로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불법 개간보다는 오히려 불법 벌목의 단속 실적이 훨씬 컸다. 이것은 “삼엄(森嚴)하기 이를 데 없었던” 도광제의 상유를 의식하여,⁶² 변외에서 가능한 한 많은 범인을 체포하고, 그 실적을 앞세워 도광제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취했던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혁상은 당시 문책 대상에 오른 15명의 관원들을 변외로 파견하여 그들에게 이번의 단속 실적으로 지난 과오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⁶³

다른 한편으로 혁상이 남로 지역에 단속 역량을 집중시켰던 것은 당시 변외의 개간과 벌목 사업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도광 26년 7월 강안이 남로 지역에서 체포한 자들을 심문한 결과를 보면, “산장에서 목재를 몰래 벌목하여 강을 통하여 하류로 운반하고, 또 강안(江岸)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서 식량을 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자가 있었는데, “동변으로 나갔을 때 곧바로 강안으로 가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했으며, 수확한 양식은 벌목한 범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자도 있었다.⁶⁴

지금까지 도광 26년 5월 조선국왕의 자문을 계기로 불거진 압록강

62 『盛京將軍奏摺檔』, 769쪽, 770쪽.

63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23b쪽. 奕湘은 문책 대상에 오른 관원들에게 문책 사실을 통보하였거니와(『盛京將軍奏摺檔』, 774~775쪽), 邊外에서 많은 단속 실적을 거두어 지난 과오를 속죄할 것을 직접 독려하기도 하였다(『盛京將軍奏摺檔』, 781~782쪽).

64 『盛京將軍奏摺檔』, 191~192쪽.

서안의 개간 사건에 대한 혁상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서술할 차례가 된 듯한데, 이 문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선후장정의 제정과 조·청 공동회초

1) 선후장정의 제정

도광 26년의 개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현지 사찰, 개간지 파괴, 범인 체포, 책임 관원 문책]가 일단락된 도광 26년 9월, 도광제는 화사납(花沙納)을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임명하여 성경장군 혁상과 함께 동변의 지역을 직접 사찰하라는 상유를 내렸다.⁶⁵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감(查勘)의 임무를 성경장군이 선발하여 파견하는 관원에게 맡겼던 도광 22년의 경우와 달리 흠차대신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도광제가 성경 현지의 관원들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미 계절이 한겨울에 접어들었으므로 흠차대신과 자신의 변의 사찰은 이듬해 봄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혁상의 의견을 받아

65 『盛京將軍奏摺檔』, 305~307쪽. 당시 花沙納은 戶部右侍郎이었다[錢實甫 編 (1980), 앞의 책, 487쪽]. 花沙納은 道光 25년(1845) 王妃 冊封使로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다[丘凡眞(2004), 「19세기 전반 淸人の 朝鮮使行: 柏蔭(1844년)과 花沙納(1845년)의 경우」, 『史林』 제22호, 123~125쪽].

들여, 도광 27년 봄에 흠차대신과 성경장군을 파견하여 변의를 사찰하라는 상유가 내려졌다.⁶⁶ 도광 27년 정월이 되자 혁상은 흠차대신의 파견을 주청하는 한편,⁶⁷ 조선 측에 관원을 파견하여 길 안내를 맡아달라는 자문을 보냈다.⁶⁸ 도광제는 백준(柏俊, 호부좌시랑)과 명훈(明訓, 공부우시랑)을 흠차대신에 임명하고, 혁상과 함께 변의를 사찰한 뒤 향후 불법 개간을 방지하기 위한 선후장정(善後章程)의 제정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혁상에게는 변의의 카룬 문제를 검토할 것을 명하였다.⁶⁹ 조선에서는 호조참판(戶曹參判) 이경재(李經在), 병조참판(兵曹參判) 이희경(李熙綱), 만포첨사(滿浦僉使) 허즙(許楨) 등을 파견하기로 하였다.⁷⁰ 백준 일행은 3월 하순 성경을 출발하여 4월 16일 모이산에 도착하여 조선의 이경재 일행과 합류하였다. 이들의 공동 사찰은 4월 29일까지 계속되었다.⁷¹

5월 초 성경에 돌아온 백준과 혁상은 5월 8일 사찰의 결과와 선후장정 6조(條)를 포함한 주점을 올렸다.⁷² 선후장정 6조의 내용은 뒤에서

66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5a쪽.

67 『盛京將軍奏摺檔』, 19~23쪽.

68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6a~26b쪽.

69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7a~28b쪽; 『盛京將軍奏摺檔』, 23쪽, 57~69쪽. 柏俊은 道光 24년(1844) 王妃 諭祭使로 朝鮮에 파견된 바 있으며[丘凡眞(2004), 앞의 글, 121~123쪽], 明訓 또한 內閣學士 시절인 道光 17년(1837)에 副使로 朝鮮을 방문한 바 있다[丘凡眞(2008), 「청의 조선사행 인선과 '대청 제국체제」, 『인문논총』 제59집, 219쪽].

70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8b쪽.

71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29a~29b쪽; 『盛京將軍奏摺檔』, 71~73쪽.

72 『盛京將軍奏摺檔』, 75~88쪽. 이 주점과 아울러 매년 統巡 때마다 吉林將軍에게도 압록강 서안 일대로 관원을 파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奏片이 함께 상달되었다(『盛京將軍奏摺檔』, 89~92쪽). 이 주청은 이후 善後章程의 제정 과정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지만, 그 요점만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압록강 서안에 카룬 3좌 증설, ② 춘·추 통순의 실시, ③ 3년마다 성경부도통의 순사(巡査), ④ 조선과 공동회초(公同會哨) 실시, ⑤ 변문 출입 관리의 강화, ⑥ 삼도랑두 카룬의 병력 증가 등이었다.

도광제는 군기대신(軍機大臣)에게 이 선후장정에 대한 검토를 명하였고, 군기대신 목창아(穆章阿) 등은 5월 25일 백준과 혁상의 원안에 찬동하는 내용의 상주를 올렸다. 그러나 도광제는 5월 25일에 내린 상유에서 3년마다 성경부도통에게 순사를 맡긴다는 제3조를 특별히 수정하여, 성경장군(叅1품), 성경 5부의 시랑(正2품), 부도통 가운데에서 황제가 1명을 골라 순사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바꾸었다.⁷³

6월 12일 성경장군 혁상과 성경부도통 경주(慶柱)는, 동변 내외 카룬의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선후장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주하였다.⁷⁴ 이로써 선후장정 6조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다.⁷⁵

(1) 카룬의 증설과 운영 방법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변 내외에는 모두 21좌의 카룬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압록강 서안의 약 1천 리에 이르는 지역에 설치되었던 카룬은 원래 세 곳(모이산, 유수립자, 양목립자)이었다. 그나마 모이산 카룬은 일찍이 압록강에서 멀리 떨어진 흥석립자로 옮겨졌기 때문

73 『盛京將軍奏摺檔』, 93~109쪽.

74 『盛京將軍奏摺檔』, 315~339쪽.

75 이하 善後章程의 내용에 관한 서술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盛京將軍奏摺檔』, 75~92쪽, 93~109쪽, 315~339쪽 등에 근거한 것이다.

에, 도광 26년 당시 압록강 서안의 카룬은 두 곳에 불과했다.⁷⁶ 이에 강변 일대에 3좌의 카룬을 증설하기로 하였다. 먼저 상류 지역의 두도구구(頭道溝口)에 모이산 카룬을 설치하였다. 이 카룬에는 관원 2명과 병사 30명이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소삼도구와 고성에 카룬을 새로 설치하고, 각각에 관원 1명과 병사 20명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세 카룬을 신설함에 따라 관원 4명과 병사 70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병사 70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좌의 카룬과 일부 외성(外城)에서 차출되었다. 압록강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변외 카룬의 병력을 돌려 압록강 서안에 많은 병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변내 각 성(城)으로부터도 일부 병력(20명)을 차출하여 압록강 서안에 추가 투입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카룬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역 전체의 관병(官兵)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신설 카룬을 담당할 4명의 관원은 종래 총순 카룬으로 지정되어 각각 3명의 관원이 배치되어 있던 소항구와 두도강으로부터 1명씩을, 그리고 종래 2명의 관원이 배치되어 있던 홍석립자에서 1명을 차출하는 한편, 성경에서 좌령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하였다. 모이산 카룬에 배치되는 이 좌령에게는 압록강 서안의 신·구 카룬들에 대한 총순 임무가 맡겨졌다. 이로써 변외의 총순 카룬은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동변 일대 내외 카룬에 주둔하는 관병의 차출은 특정 성(城)의 주방(駐防)에서 전담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다(표 1 참조). 이처럼 같은 카룬에 매년 같은 성의 관병이 파견되다 보니 뇌물을 받고 그 관할 구역에

76 善後章程 제정 이전의 사료에 등장하는 帽爾山 카룬은 紅石砬子 카룬을 가리키므로, 善後章程에 따라 설치된 帽爾山 카룬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2 신설 카룬의 병력 차출

구분	기존 병력	차출 병력	차출 후 잔존 병력
홍석립자(紅石砬子) 카룬	30	15	15
광동구(礦洞溝) 카룬	20	10	10
대이이하(大雅爾河) 카룬	20	10	10
소황구(小黃口) 카룬	30	5	25
두도강(頭道江) 카룬	40	5	35
고하(古河) 카룬	20	5	15
기타 외성(外城)	-	20	-
계		70	

※ 출처 : 『盛京將軍奏摺檔』, 327~330쪽.

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폐해가 발생하기 쉬웠다. 이에 혁상은 각 카룬에 파견하는 관병의 출신지를 매년 바꿈으로써, 전임의 부정을 후임이 감시하도록 하였다.

(2) 춘추통순의 실시

가경 14년 이래 계절마다 성수위, 방수위, 협령 가운데 1명을 파견하여 변외 카룬의 관할 구역을 순시하는 통순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계통순에서 도광 22년에 개간지가 발견된 지역은 통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도광 22년 사건 이후 성경장군 희은은 봄과 가을의 통순 범위에 이 지역을 포함시킨 바 있었다(전술). 도광 26년의 선후장정에서는 통순관을 아예 봄과 가을 두 계절에만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봄과 가을에는 통순관 일행의 여행이 여름·겨울에 비해 수월할 뿐만 아니라 파종과 수확 시기에 맞추는 것이

불법 개간을 사찰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춘계 통순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추계통순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로 정해졌다.

한편 춘추통순은 기존 연 4회였던 통순을 연 2회로 줄임으로써 매 회 통순관 일행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었다. 즉 종래의 사계의 통순에는 매년 은 800냥, 즉 매회 200냥의 경비가 배정되었는데, 춘추통순에서는 매회 250냥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통순 경비를 매년 300냥 줄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순사(巡査) 경비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3) 3년마다 흠차대신의 순사

과거 성경장군 휘하 세 부도통이 돌아가며 변외를 순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가경 14년 사계통순을 실시하면서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도광 22년과 26년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계통순의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고위 관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통순의 부실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졌다. 백준과 혁상이 처음에 제안한 것은 성경부도통에게 3년마다 순사를 맡긴다는 것이었지만, 도광제는 성경장군, 성경 5부의 시랑, 부도통 중에서 1명을 황제가 직접 골라 흠차대신 자격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는 순사 업무가 성경부도통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통순 관원들이 그에게 미리 손을 써서 순사가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흠차대신의 순사 경비는 매회 은 600냥으로 책정되었는데, 사계통순을 춘추통순으로 바꾸면서 절약하게 된 경비(매년 300냥)를 재원으로

로 삼았다. 또한 흠차대신이 파견되는 해에는 춘계통순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흠차대신과 동행하는 관병들의 수당으로는 춘계통순 경비(250냥)를 전용하기로 하였다.

(4) 조선과 공동회초 실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장군 혁상은 도광 26년 압록강 서안에서 조선과 공동 사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광 27년 4월에도 백준과 혁상은 조선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공동 사찰을 벌인 바 있었다. 선후장정에 서는 이를 제도화하여 춘추통순 때마다 조선에서도 지방관을 파견하여 공동회초(公同會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광 27년 6월 혁상은 공동회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그 실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璦江의 西岸 일대에는 실제로 험한 절벽이 강변에 있어 人馬가 지날 수 없는 곳이 있으므로, 鳳凰 邊外의 中江에 예전부터 水路가 있어 비적들을 체포할 때 역대로 朝鮮의 선박을 빌려 사용했던 전례를 따를 것을 청합니다. 앞으로, 邊外를 巡査하는 관원들이 높은 절벽과 산골짜기 등, 人馬가 지날 수 없는 곳을 만나게 되면, 역시 朝鮮의 선박을 빌림으로써 병사들을 거느리고 승선하여 水路로 강을 따라 수색하여 체포하기 좋도록 한다면, 匪犯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⁷⁷

즉 압록강 서안의 지형이 험악한 지역에서는 조선 쪽에서 선박을 제공하여 강을 따라 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77 『盛京將軍奏摺檔』, 336쪽.

이 방안에 대하여 도광제는 도광 26년 7월에 내린 상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두루 다니며 巡査할 때 朝鮮의 선박을 빌려야 한다는 一節에 대해서는, 이후 매번 巡査하기 전에 盛京禮部侍郎으로 하여금 미리 朝鮮國王에게 알려 선박을 豫備하게 하라. 반드시 강변에 험한 절벽이 있어 人馬가 실로 지나기 어려운 곳을 만났을 때에만 해당 무관과 병사들이 배에 타는 것을 허락하며,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巡査한다는 핑계로 안일을 도모하는 빌미를 삼아서는 안 된다.⁷⁸

이는 조선 선박의 차용을 허가하되 지형이 험악하여 수로를 통한 수색만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할 것을 지시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제공할 선박의 숫자는 선후장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광 27년 6월 성경장군 혁상은 조선에 대선(大船) 4~5척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⁷⁹

(5) 변문 출입 관리의 강화

도광 26년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동변의 산장에서 체포된 자들은 모두 변문을 거쳐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는 “종래 인삼을 캐는 포부(刨夫) 및 식량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각 변문을 거쳐 변외로 나갈 때에는, 원래 장부를 두어 인수(人數)를 등기(登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들어 행한 지가 오래 되어 소홀함과 누락됨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

78 『盛京將軍奏摺檔』, 324쪽.

79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29b~31a쪽.

에 유민들이 숨어서 변외로 나가 이를 빌려 이익을 취하는 자가 나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⁸⁰ 포부의 변문 출입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변외로 나갈 때에는 모두 몇 명이었는지를 한 명씩 기입하고, 변내로 들어올 때에는 역시 한 명씩 자세히 계산해야 합니다. (일행 중에 일부가) 혹 병들거나 혹 죽었다면, 인삼을 캐는 해당 일행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모두 변내로 들어올 때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여,⁸¹ 변문을 출입하는 인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포부를 고용한 상인[소과(燒鑄)]에게는 포부가 변문을 출입할 때마다 보증서[감결(甘結)]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6) 삼도랑두 카룬의 병력 증가와 추가 재원

압록강 하구의 삼도랑두 일대는 별목한 목재를 운반할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요충지였고, 변외 지역에서 불법 개간을 하던 유민들은 별목업자들과 일종의 공생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불법적인 별목과 개간을 막기 위해서는 삼도랑두 일대의 길목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종래 삼도랑두 카룬에 배치되어 있던 인원[관원 2명과 병사 30명]으로는 완전한 방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백준과 혁상은 병력의 증가를 제안하였다. 단, 카룬의 상주 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얼지 않는 기간인 2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8개월 동안만 감시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즉, 각각 관원 1명[佐領 또는 防禦]과 병사 10명으로 구성된 2개 조를 단속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80 『盛京將軍奏摺檔』, 84쪽.

81 『盛京將軍奏摺檔』, 85쪽.

혁상은 이상과 같은 선후장정 6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경비 가 매년 546냥에 이를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카룬에 배치되는 관원과 병사들에게 특별 수당(염채은량(鹽菜銀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모이산 카룬에 배치될 총순관(좌령)에게는 특별 수당을 매년 100냥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압록강 서안 카룬에 투입하기 위하여 각 성(城)에서 차출되는 병사 20명에게 매년 16냥씩의 수당(합계 320냥)을 지급해야 했다. 끝으로 삼도랑두 일대에 8개월 동안 투입되는 두 조에 대해서는, 관원은 1인당 8냥, 병사는 1인당 5.5냥을 지급하여, 총 126냥이 추가로 필요했다.⁸²

2) 선후장정의 개정

도광 27년 제정된 선후장정에 따른 춘추통순과 조·청 공동회초는 같은 해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도광 27년 가을의 통순관으로는 용악(熊岳)방수위 복록(福祿)이 파견되었다. 모이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일곱 군데에서 별목업자 12명을 체포하는 실적을 올린 복록은 9월 5일 두도구구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복록은 신설 모이산 카룬의 총순관으로 파견된 위협령(委協領) 해명(海明), 조선에서 파견된 방어사(防禦使) 이현서(李玄瑞) 등과 수로를 이용한 공동회초를 실시하였다. 복록 일행은 호로투(胡蘆套) 등지에서 와봉(窩棚) 15곳을 발견하여 강기슭에 상륙하였으나, 범인들은 이미 모두 달아난 상태였기 때문에 와봉만을 불태웠다.⁸³

82 『盛京將軍奏摺檔』, 338~339쪽.

83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34b~37a쪽. 그 뒤로 帽爾山 카룬에 주둔했던 해

공동회초를 마친 복록은 이현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강가 근처에 집 짓고 개간한 42곳에 대해서, 예전에 欽差大臣께서 盛京將軍과 함께 곳곳마다 모두 철거해 주셨으며, 가을의 統巡이 두루 다니며 상세히 조사할 때까지 실제로 다시 개간한 곳이 없었습니다. 혹 소략하게 지은 곳이 있었다 해도 가을 統巡이 조사하여 철거해 주셨으니, 매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⁸⁴

복록은 확인서를 받고 귀로에 올랐다. 이처럼 조선의 관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는 일은 도광 26년의 사건 이후 계속된 것인데, 이후의 모든 공동회초에서 하나의 절차로 확립되었다. 한편, 통순에서 돌아온 복록의 제안으로 이후 공동회초의 기일은 춘계통순은 4월 20일, 추계통순은 8월 20일로 정해졌다.⁸⁵

도광 28년의 춘계통순으로는 협령 영기(榮琪)가 파견되었다.⁸⁶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춘계통순의 공동회초에 참여한 조선 관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계통순의 공동회초에 참여한 사람이 도광 27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이현서였던 것으로 보아,⁸⁷ 영기의 춘계통순에서도 이현서가 함께 했던 듯하다. 한편, 수암성수위(岫巖城守衛) 경령(慶領)이 파

명은 무려 170군데에서 유민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同文彙考』原編續疆界一, 51a~51b쪽).

84 『同文彙考』原編續疆界一, 35b~36a쪽.

85 『同文彙考』原編續疆界一, 38b~39a쪽.

86 『同文彙考』原編續疆界一, 39a쪽.

87 『同文彙考』原編續疆界一, 50a쪽. 단, 여기서 李玄瑞의 이름이 李元瑞로 표기된 것은 康熙帝의 이름을 避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견된 추계통순에서는 몰래 별목을 하거나 인삼을 캐던 범인 14명을 체포하는 실적을 거두었음이 보고되었다.⁸⁸

그런데, 도광 28년의 추계통순이 진행 중이던 도광 28년 7월 말 성경장군 혁흥(奕興, 奕湘의 후임, 도광 27년 8월 임명)은 카룬과 통순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도광제는 8월 2일 군기대신에게 이 방안의 검토를 명하는 상유를 내렸다. 그 뒤 확정된 개정안은 도광 28년 10월 말 조선에도 통지되었다.⁸⁹

혁흥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⁹⁰ 첫째, 카룬 관병의 임무 교대 간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 혁흥은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奉天의 東邊 바깥 일대는 땅이 넓고 산이 깊어, 모두 奸民이 이익을 탐하는 지역입니다. 東邊 내외의 중요한 곳에는 新舊 카룬 24곳이 있으며, 해마다 돌아가면서 관병을 파견하여 賊匪를 단속하고, 다음 해에 기한이 되면 바꾸도록 하였으니, 그 立法은 본래 주도면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래에 靉江 西岸에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한 범인들이 窩棚을 지었기에 (이를) 철거하였지만, 모두 깨끗이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 각 카룬의 관원이 때때로 몰래 東邊으로 나가 체류하는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情形을 몸소 사찰해 보니, 해당 카룬을 지키는 관병들이 기한이 너무 길어서 오래되자 나태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不肖한 무리들은 이를 빌미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東邊 내

88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50a쪽.

89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42b~43b쪽.

90 이하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42b~43b쪽, 44a~46a쪽에 근거한 것이다.

외의 新舊 카룬 24곳의 카룬을 지키는 관병들을 두 班으로 새로 나누어,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하도록 청하고자 합니다.⁹¹

혁흥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군기대신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카룬을 지키는 관병들은 본래 奸匪들을 단속하기 위해 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나 나태함이 발생하여, 東邊으로 나가 체류하면서 혹 이를 빌미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다면, 단속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將軍 등이 6개월에 한 번씩 班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防禦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봄에 머물면서 墾田하는 것을 허락받은 자도 秋收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겨울에 밭대로 목재를 몰래 벌목한 자도 또한 여름을 기다려 운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대할 때 폐단을 두절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둔 일수가 적어지면 오히려 각자 정신을 진작하여 힘써 사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班의 관병에게 앞 班 관병이 밭대로 눈 감아 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하여 조사하게 하여, 수시로 각서대로 보고하게 하면, 저절로 대신 은닉해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⁹²

이는 카룬에 주둔하는 관병과 ‘간비(奸匪)’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혁흥의 제안처럼 6개월마다 카룬 관병을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에 찬동한 것이었다.

둘째, 춘추통순(春秋統巡)을 종래의 사계통순으로 복귀시켰다. 혁상은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91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44a~44b쪽.

92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44b쪽.

奸匪들이 목재를 벌목하여 운반하는 것은 대부분 겨울철입니다. 벌목하고 (이를) 잘라서, 얼음이 얼었을 때를 틈타 목재를 끌면서 운반하여 邊內로 들어오는 자도 있고, 여름철에 물이 불어났을 때를 틈타 목재를 밀고 당기면서 邊內로 들어오는 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은 奸匪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⁹³

즉, 목재의 운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봄·가을이 아니라 여름·겨울이므로 오히려 이 시기에 통순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계통순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통순 경비는 매회 200냥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공동회초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두 차례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조·청 공동회초

도광 28년(1848) 선후장정의 개정이 있긴 했지만,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조·청 공동회초에는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단, 도광 28년까지는 춘추통순 때에 공동회초가 이루어졌지만, 도광 29년 이후는 하계와 추계의 통순관이 공동회초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사계 통순관의 임기가 매년 정월부터 3개월씩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광 29년(1849)은 윤년(윤 4월)이었기 때문에 각 계절의 통순 기간을 월수가 아닌 일수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93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45a쪽.

따라 춘계통순은 정월 1일부터 4월 8일, 하계는 4월 9일부터 6월 16일로 임기가 정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회초는 4월 20일로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4월 9일 임기가 시작되는 하계통순관이 4월 20일에 두도구구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동회초 날짜는 5월 1일로 변경되었다.⁹⁴ 하지만 이듬해인 도광 30년은 윤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날짜를 4월 20일로 변경하였다. 그 뒤로 한 동안 하계통순관의 공동회초 기일에는 해마다 변화가 있었던 듯하지만, 결국에는 5월 1일로 정착되었다.⁹⁵

도광 28년의 개정 장정에 따른 사계통순은 도광 29년부터 동치 6년(1867)까지 중단 없이 실시되었으며, 성경예부는 통순을 실시할 때마다 그 사실을 조선에 통보하였다. 이는 『동문회고』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

94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46b~49a쪽. 단 두 번째 公同會哨 기일인 8월 20일의 경우는 춘계통순관의 임기 개시 시점(6월 17일)부터 상당한 여유가 있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95 公同會哨 기일이 다시 4월 20일로 정해졌던 道光 30년의 경우에도 실제 公同會哨는 4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欽差大臣으로 파견된 盛京兵部侍郎 恒毓이 큰 비가 내린 탓에 4월 25일에야 頭道溝口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54b~55b, 56a~57a, 57b~59a쪽). 咸豐 원년과 咸豐 2년의 경우는 사료의 부족으로 날짜가 확인되지 않지만, 欽差大臣이 파견되는 해였던 咸豐 3년에는 公同會哨 날짜가 원래 4월 25일로 정해졌던 것이 확인된다(『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63a~64a쪽). 이는 아마도 道光 30년 恒毓의 실제 여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欽差大臣이 아닌 일반 春季統巡官의 경우도 公同會哨 기일을 4월 25일로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公同會哨 날짜가 확인되는 咸豐 7년 이후를 보면, 公同會哨는 모두 5월 1일에 개시되었고(『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74a~75b, 78a~79b, 83b~85a, 85b~87a, 90a~91b, 95b~97a쪽), 欽差大臣이 파견되었던 咸豐 6년의 경우 欽差大臣 富呢雅杭阿가 頭道溝口에 도착한 날짜가 4월 27일이었던 것으로 보아(『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71b~73a쪽), 적어도 咸豐 6년 이후에는 5월 1일이 公同會哨 기일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동문회고』 원편속(原編續) 강계일(疆界一)과 강계이(疆界二)에 수록된 문서 중에서 도광 29년의 춘계통순 이후 동치 6년까지의 통순 관련 문서를 분류·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 표시가 붙은 것은 해당 통순의 실시 혹은 그 결과 보고와 관련 있는 문서의 제목 및 원문이 『동문회고』에 수록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 표시는 『동문회고』에 해당 문서의 제목만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공동회초와 무관한 춘계와 동계의 통순도 조선에 통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동회초가 이루어지던 하계와 추계통순에 대해서는 통순의 결과까지 조선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원문이 남아 있는 경우[※ 표시]가 오히려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 문서로부터 도광 29년부터 동치 6년까지의 공동회초에 관계한 양국 관원의 관직과 이름을 찾아서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3 『동문회고』 원편속의 통순 관련 문서 (도광 29년~동치 6년)

연도	춘계통순	하계통순 (회초)	추계통순 (회초)	동계통순	하계통순 결과 통지	추계통순 결과 통지
도광 29년	※	○	○	○	※	○
도광 30년	○	※(欽派)	○	○	※	○
함풍 원년	○	○	○	○	※	○
함풍 2년	○	○	○	○	○	○
함풍 3년	○	※(欽派/代派)	○	○	○	
함풍 4년	○	○	○	※	○	○
함풍 5년	○	○	○	○	○	○
함풍 6년	○	※(欽派)	○	○	※	○
함풍 7년	○	○	○	○	※	※
함풍 8년	○	○	○	○	※	※

연도	춘계통순	하계통순 (회초)	추계통순 (회초)	동계통순	하계통순 결과 통지	추계통순 결과 통지
함풍 9년	○	※(欽派)	○	○	※	
함풍 10년	○	○	○	○	※	※
함풍 11년	○	○	○	○	※	※
동치 원년	○	※(欽派)	○	○		
동치 2년	○	○	○	○	※	
동치 3년	○	○	○	○	○	○
동치 4년	○	※(欽派)	○	○		○
동치 5년	○	○	○	○	○	
동치 6년	○	○	○	○		

※ 출처 :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51a~97b쪽 ;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二, 1a~13b쪽.

표 4 공동회초에 참여한 조·청 관원 (도광 29년~동치 6년)

연 번	시기	청		조선	
		통순관	흠차대신	회초관	흠차 영접
1	도광 29년 하계	恒泰(협령)	-	李玄瑞	-
2	도광 30년 하계	-	恒毓 (성경병부시랑)	李熙吉 (강계부사)	任泰錫 (동부승지)
3	함풍 3년 하계	德安(협령)	(晝元) (성경형부시랑)	?	(林永洙) (좌승지)
4	함풍 6년 하계		富呢雅杭阿 (성경병부시랑)	李種華 (강계부사)	李在鶴 (좌승지)
5	함풍 7년 하계	那揚阿 (성수위)	-	柳之濬	-
6	함풍 7년 추계	宗室額圖輝 (성수위)	-	成燾	-
7	함풍 8년 하계	喜安(협령)	-	成燾	-

연 번	시기	청		조선	
		통순관	흠차대신	회초관	흠차 영접
8	함풍 8년 추계		-	成燾	-
9	함풍 9년 하계	-	訥爾濟 (성경병부시랑)	權奎容	?
10	함풍 10년 하계	果勒明阿 (방수위)	-	金相德	-
11	함풍 10년 추계	桂齡(협령)	-	金相德	-
12	함풍 11년 하계	恒泰(협령)	-	金相德	-
13	함풍 11년 추계	恩齡(협령)	-	金相德	-
14	동치 원년 하계	-	雙福 (성경예부시랑)	?	寬楹 (동부승지)
15	동치 2년 하계	文絡 (성수위)	-	寬楹	-
16	동치 4년 하계	-	清安 (성경예부시랑)	?	安益善 (동부승지)

※ 출처 : 1.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이하 '疆界一' 로 약칭], 52a~53b쪽; 2. 疆界一, 54b~55b쪽, 55b~56a쪽, 57b~59a쪽; 3. 疆界一, 61a~62b쪽, 62b~63a쪽, 63a~64a쪽, 64a~64b쪽; 4. 疆界一, 69b~71a쪽, 71a쪽, 71b~73a쪽; 5. 疆界一, 74a~75b쪽; 6. 疆界一, 76a~77b쪽; 7. 疆界一, 78a~79b쪽; 8. 疆界一, 80a~81b쪽; 9. 疆界一, 81b~83a쪽, 83b-85a쪽; 10. 疆界一, 85b~87a쪽; 11. 疆界一, 87b~89a쪽; 12. 疆界一, 90a~91b쪽; 13. 疆界一, 92a~93a쪽; 14. 疆界一, 93b~95a쪽, 95a쪽; 15. 疆界一, 95b~97a쪽; 16.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二, 1b~3a쪽, 3a쪽.

표 3과 표 4에서 함풍 3년(1853) 하계의 흠차대신 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해 둘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먼저 표 3으로부터 함풍 3년에 흠차대신의 파견에 관한 문서가 『동문회고』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함풍 3년의 흠차대신으로 임명된 성경형부시랑 서원(書元)이 출발 직전에 와병하는 바람에 흠차대신의 파견은 취소되고 말았다. 당시 성경장군 혁흥은 협령 덕안(德安)을 대신 파견하여 약속된 공동

회초를 마치도록 하였다.⁹⁶ 조선에서는 흠차대신의 파견에 대응하여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임영수(林永洙)를 파견하였으나, 흠차대신의 파견이 취소됨에 따라 그의 파견도 철회되었다.⁹⁷ 때문에 표 4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서원과 임영수의 이름을 괄호 안에 넣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도광 29년부터 동치 6년까지의 19년 동안 총 38회 실시되었던 공동회초의 단속 실적은 어땠을까? 먼저 『동문회고』에 통순 결과표를 통지하는 문서의 원문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자. 이들 문서를 통해서 공동회초의 단속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는 단 두 차례에 그치고 있다. 첫째는 도광 29년의 하계통순으로 벌목 범인 13명을 체포하였다.⁹⁸ 둘째는 함풍 6년 여름에 파견된 흠차대신 일행의 실적인데, 이들은 변외의 여섯 지역에서 사금을 채취하거나 벌목을 하던 범인 14명을 체포하였다.⁹⁹

다음으로 『동문회고』에 문서의 제목만 남아있는 경우를 보자. 이런 문서의 내용은 전혀 알 도리가 없긴 하지만, 단속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에 ‘인범(人犯)’의 체포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도광 29년의 추계, 도광 30년(1850)의 추계, 함풍 원년(1851)의 하계와 추계, 함풍 2년(1852)의 하계와 추계, 함풍 3년(1853)의 하계와 추계, 함풍 4년(1854)의 하계와 추계, 함풍 5년(1855)의 하계와 추계, 함풍 6년(1856) 추계 등에서 발견된다.¹⁰⁰ 구체적 단속 실적이 확인되는 위의 두 사례와 문서

96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61a~62b쪽, 63a~64a쪽.

97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62b~63a쪽, 64a~64b쪽.

98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52a~53b쪽.

99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71b~73a쪽.

제목을 통해서라도 단속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을 종합해 보면, 함풍 6년까지는 거의 매회 변외에서 범인의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풍 7년(1857) 이후로 통순과 공동회초에 의한 단속 실적은 전무하였다. 공동회초를 실시할 때마다 조선 관원은 불법 개간지가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의 통순관은 변외에서 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동치 6년(1867) 2월 민인(民人) 하경명(何慶名) 등의 자수를 통해서 왕청변문 바깥의 육도하(六道河) 등지에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간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백 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¹⁰¹

본고에서는 대규모 개간에 관한 진실의 ‘폭로’ 이후 변외의 개간 문제를 둘러싼 청의 정책 변화 및 조선과 청의 교섭 등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지면의 제한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치 6년 이후 동변외 지역의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¹⁰² 다만 이 글에서 자세하게 고찰한 문제들, 즉 변외의 카룬, 흠차대신의 순사,

100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一, 54a, 59b, 60a, 60b, 61a, 66a, 66b, 68b, 69a, 69b, 73b쪽.

101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二, 4b~5b쪽, 5b~9a쪽. 그런데 淸朝는 늦어도 同治 2년(1863)에 東邊外 지역에 불법 개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선불리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경우 의외의 돌발 사태가 발발할까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못하였다[『淸實錄：穆宗毅皇帝實錄』 권64, 中華書局(1987), 263~264쪽; 권85, 768쪽].

102 丘凡眞(2006), 「淸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駐防體制’에서 ‘州縣縉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 14, 97~104쪽 참조.

통순 제도, 조·청 공동회초 등의 ‘최후’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두도록 하겠다.

먼저 카룬 문제를 보자. 동치 6년 청조는 동변 내외의 24개 카룬 가운데 15개 카룬을 없앴고, 광서(光緒) 원년(1875)에는 7개 카룬을 추가로 철폐하였다. 이로써 동변 내외의 카룬은 단 두 곳만 잔존하게 되었다. 그 두 카룬은 압록강 하류의 중강(中江) 카룬과 상류의 모이산 카룬이었다.¹⁰³ 다음으로 흠차대신의 파견은 동치 7년(1868) 성경장군 도흥아(都興阿)의 제안에 따라 일단 중지되었다가,¹⁰⁴ 결국에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¹⁰⁵ 한편, 동치 7년과 8년에는 공동회초는 물론이거니와 사계통순까지 중지되었다. 사실 청조가 변외의 개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이상 통순과 공동회초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치 8년(1869) 말 청조는 동치 9년(1870)부터 사계통순 및 공동회초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¹⁰⁶ 이는 아마도 조선의 요청에 따라 압록강으로부터 30~50리까지는 계속해서 개간을 금지하기로 했던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⁷ 그리고 『동문회고』에는 동치 9년부터 광서 7년(1881)까지 사계통순 및 공동회초와 관련하여 오고간 문서의 제목이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¹⁰⁸

103 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966쪽.

104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二, 13b~14a쪽.

105 光緒 『大清會典事例』 권722, 966쪽.

106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二, 24b쪽, 24b~26a쪽.

107 『同文彙考』 原編續 疆界二, 20b~21b, 21b~22a, 23b~24a, 24a~24b쪽. 단, 淸은 압록강에서 30~50리 이내의 개간 금지를 결국에 가서는 포기하고 말았다[李花子(2008), 앞의 책, 220쪽].

5. 맺음말

청대 유조변의 동변에서 압록강 서안에 이르는 지역은 일찍부터 허가 받지 않은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청조는 동변의 지역의 봉금 관리를 위하여 곳곳에 변문과 카룬을 설치하였다. 가장 북쪽의 위원보을 비롯하여 영액, 왕청, 감창, 애양, 봉황 등 여섯 군데에 설치되었던 변문에는, 문·무 관원 각 1명(단, 봉황변문에는 문직 관원만 주둔)과 50명씩의 병사들이 배치되어, 동변 내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동변 일대에는 18세기 후반 변내 18좌, 변외 19좌 등 총 37좌의 카룬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 카룬에는 관원 1명과 병사 10명이 배치되었다. 개원, 흥경, 요양, 봉황, 웅악 등지에서 파견되었던 카룬의 주둔 병력은 한 달 또는 두 달마다 교체되었으며, 변내 카룬에는 10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변외 카룬에는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병력이 주둔하였다. 건륭 말에는 변외의 카룬 숫자를 줄인 적이 있지만, 가경 8~9년에 변외의 고려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벌목 사건을 계기로 변내의 카룬을 3좌로 대폭 줄였고, 변외의 카룬은 재배치를 거쳐 18좌로 정리하였다. 종래 변내 카룬에 배치되었던 관원과 병사들은 변외 카룬에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중요 카룬에는 관원이 2명씩 배치되었으며, 카룬의 병력도 많게는 40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소항구와 두도강에는 총순관이 추가로 파견되어 변외 카룬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카룬의 주둔 기간도 변경되어 각 카룬에는 1년 내내 관병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주둔 병력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교체되었다.

108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二, 26a~52b쪽.

또한 가경제의 지시에 따라 변외 카룬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제도가 도입되어, 성경 지역에 있던 부도통 세 명이 번갈아가며 1년에 한 번씩 변외 카룬을 순사(巡査)하였다. 그러나 부도통의 순사는 가경 14년에 이르러 사계통순으로 변경되었다. 사계통순은 성수위, 방수위, 협령 중에서 한 명을 골라 계절마다 변외로 파견하는 제도였다.

변문, 카룬, 그리고 통순 등의 제도 완비가 동변외 지역의 봉금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광 20년대 압록강 서안 지역에서 불법 개간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도광 22년 압록강 중류의 상토진과 만포진 대안에서 불법 개간지를 적발한 조선 측이 불법 개간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자, 청에서는 압록강 서안에 관원을 파견하여 적발된 개간지를 파괴하였고, 사후 조치로 매년 봄과 가을의 통순관에게 압록강 서안 일대를 사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과 4년 뒤인 도광 26년 조선에서는 또 다시 압록강 중·상류의 서안 일대에서 무려 42군데의 개간지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청에 알렸다. 사건의 재발은 도광 22년의 사건 처리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며, 현지 관원들과 개간민 사이에 모종의 유착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었다. 도광제가 크게 진노한 것은 당연하였다. 당시 성경장군 혁상은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여 300명이 넘는 범인을 체포하였는데, 압록강 서안에서는 혁상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이 공동 사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인 도광 27년 흠차대신 백준과 성경장군 혁상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후장정(善後章程) 6조를 제안하였다. 도광제의 수정을 거친 선후장정 6조는, ① 압록강 서안 지역에 카룬 3좌[관원 4원, 병사 70명] 신설, ② 사계통순을 춘추통순으

로 변경, ③ 3년 주기로 흠차대신의 순사, ④ 매년 2회 조선과 공동회초(公同會哨) 실시, ⑤ 변문의 출입 관리 강화, ⑥ 삼도랑두(三道浪頭) 일대에 병력 추가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선후장정에 따라 압록강 중·상류 서안의 카룬은 종래 2좌에서 5좌로 늘어났고, 매년 두 차례씩 예정된 압록강 서안에 대한 통순에는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이 4~5척의 선박을 제공하면서 공동회초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또한 보통 성경의 5부 시랑 가운데 황제가 지명한 한 사람이 3년에 한 번씩 흠차대신으로 압록강 서안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그때마다 조선에서는 승정원 관원을 추가로 특파하여 흠차대신을 영접하는 한편 공동회초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 선후장정은 도광 28년에 일부 개정되어, 카룬 주둔 병력의 임무 교대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고, 춘추통순이 다시 사계통순으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조·청 공동회초는 매년 두 차례씩 계속 이루어졌으며, 공동회초의 개시 일자는 약간씩의 변동을 거쳐 5월 1일과 8월 20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계통순과 공동회초는 점점 형식화되었고, 함풍 7년 이후에는 아무런 단속 실적도 없는 통순과 공동회초가 반복되었을 따름이다. 그 동안 동변외에서는 유민의 개간이 점차 확대되어, 동치 연간에 이르러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급기야 동치 6년 대규모 개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 후 청조는 동변외의 개간을 공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변외의 카룬 대부분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대거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였고, 광서 연간에 이르러선 단 2좌의 카룬만이 남게 되었다. 사계통순과 공동회초는 명맥을 유지하긴 하였지만, 이제는 동변외 지역 전체가 아닌 압록강 서안의 강변 일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건륭 이후 동치 연간까지 성경 동변의 산장에 대한 관리 방식이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았다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동변의 산장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감안할 때, 사실이 질문은 조·청 국경 문제라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고찰하지 않은 수많은 이슈들까지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조·청 국경 문제에 관한 한 문외한에 불과하므로 이 질문에 답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오직 이 글에서 고찰한 내용에만 근거하여 청대의 동변의 산장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지대를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필자는 현재 한반도의 허리에 놓인 ‘비무장지대’가 청대의 동변의 산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무장지대’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금되어 있지만, 대성리 주민들처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북방 한계선 이북의 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으며, 생태 환경에 대한 조사도 군사 당국의 허락을 얻는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비무장지대’의 이러한 특성은 인삼 채취 허가를 받은 심마니들에 한해서 출입이 허가되었던 동변의 산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의 사전적 정의는 본래 군사시설이나 병력의 배치가 없는 지대이지만, 현실의 한반도 ‘비무장지대’에는 엄연히 감시초소(GP : Guard Post)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감시초소는 동변외에 배치되었던 카룬에 비견될 수 있겠는데, 감시초소와 카룬은 주둔 병력이 일정 기간마다 교체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물론 동변의 산장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사이에는 차이점도 엄연

히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비무장지대’에서는 ‘봉금’이 철저히 집행되고 있지만, 동변의 산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동변의 산장의 봉금을 위한 규제와 감시는 외형상 갈수록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들어오는 유민의 거대한 흐름을 전혀 막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의 남·북 모두에 설정되어 있지만, 동변의 산장과 같은 성격의 지대는 압록강 서안에만 존재하였다. 혹자는 이 때문에 ‘편면구탈(片面驅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경우 조선 후기 폐사군(廢四郡) 지역이 군현(郡縣)이 아닌 군진(軍鎭) 위주의 행정 체제 아래에 있었으며, 고종 6년(1869)에 가서야 동변의 지역의 봉금을 사실상 포기한 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후창군(厚昌郡)과 자성군(慈城郡)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편면구탈’이라는 말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이 화 자 (중국사회과학원)

서문
서문

서문

동북아시아사학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에서는 두만강을 토문강(土門江) 또는 도문강(圖門江)이라고 칭한다. 청(淸)초에 토문강이라고 칭하다가 건륭 49년(1784) 『성경통지』에서부터 도문강이라고 개칭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비록 한자가 변경되더라도 중국어 발음은 똑같이 ‘투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만주어를 음차한 것으로서 숫자 ‘만(萬)’ 또는 ‘만호(萬戶)’를 뜻한다. 조선에서는 이 강을 줄곧 두만강(豆滿江)이라고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두만이란 만주어의 숫자 ‘만’을 뜻한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토문·도문·두만이 모두 만주어를 음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세종대로부터 두만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을 강역으로 확보하였다. 고려말부터 북진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초 세종대에 이르러 두만강 남안에 경원·회령·경흥·중성·온성·부령 등 육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여진인이 수시로 습격하여 육진 지역이 항상 불안하였다. 17세기 초 누르하치가 흥기하여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을 흥경지방으로 철거해 감에 따라 조선은 육진 강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712년(강희 51) 청에서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하여 사계(査界)를 진행하고 백두산 천지 동남쪽 분수령에 비를 세우고 비문에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고 기록하여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영토상의 안전이 확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지도와 지리지에 두만강과 구별되는 토문강이 나타나고 분계강(分界江)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18·19세기 조선의 지도와 지리지에 나타나는 토문강·분계강 인식을 살펴보고 18세기 토문·두만 2강 인식이 1강 인식으로 극복되는 과정과 1880년 이후 두만강 이북 개간지의 확대와 더불어 2강 인식이 다시 살아나는 양상 및 조선의 국경 인식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정계 이후 조선의 지도·지리지에 나타난 토문강과 분계강

조선 초기 지도에는 북부 강역이 대부분 소략하게 표현되었고 압록강·두만강 흐름도 정확하지 못하였지만, 압록강·두만강 경계는 명확하였다. 토문강 명칭이 조선에 전해진 것은 청 강희 연간 사계 때였다. 1712년 조선은 청 예부(禮部) 자문(咨文)을 통해 청에서 말하는 토문강이란 두만강을 가리키며 장백산이란 백두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사를 접대하기 위한 ‘차관접대사의별단(差官接待事宜別單)’에 주의 항목으로 기입하였다.¹

현존하는 지도 자료를 놓고 볼 때 1740년대 정상기(1678~1752)가 만든 『동국지도(東國地圖)』에 가장 먼저 두만강과 구별되는 토문강을 표기하였는데 분계강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강도 등장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

1 『備邊司謄錄』 64책, 숙종 38년 3월 5일.

구에 의하면, 『동국지도』는 조선후기 지도 제작사에 있어 획기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 지도에 묘사된 한반도의 모양이 현대 지도와 가장 가깝고 압록강·두만강을 포함한 북부 강역의 윤곽이 처음으로 현대 지도에 접근하였으며 처음으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대축척을 고안해내어 많은 지리 정보를 담게 되었다고 한다.²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객관성과 과학성과는 별도로 이 지도에는 두만강 이북에 존재하지도 않는 ‘토문강원(土門江源)’을 표기하고 하류에 ‘분계강(分界江)’이라고 표기하였다(지도 1 참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정상기는 문자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아 그의 글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이 지도가 1712년 정계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제작되었고 처음으로 ‘분계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므로 백두산 정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다른 지리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신경준(申景濬, 1712~1781년)은 영조대 저명한 지리학자로서 많은 지리방면의 저술을 남겼다. 『강계고(疆界考)』·『사연고(四沿考)』·『도로고(道路考)』·『산수고(山水考)』·『군현지제(郡縣之制)』·『가람고(伽藍考)』·『차제책(車制策)』 등이 있으며, 국가의 대형 유서(類書)인 『동국문헌비고』 편찬에 참여하여 『여지고(輿地考)』 부분을 편찬하였다. 또 왕명에 의해 전국지도인 『동국여지도』 제작에 참여하였다.³ 신경준은 전라도 순창 사람으로서

2 오상화(194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제작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2006), 「정상기의 동국지도 해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편, 『정상기의 ‘동국지도’-원보계통의 필사본』.

3 신경준에 관한 연구는 양보경(1992),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3권 3호와 「여암신경준의 지리사상」,

1754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후 사도(仕途)에 진입하여 승문원 기주관·성균관 전적·사간원 정언·사헌부 장령 등 청요직에 나갔다. 그는 정상기와는 교류 관계가 없지만 정상기의 아들 정항령(鄭恒齡, 1700~?)과 친분이 두터웠다. 정항령은 1743년 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집의·사간원 사간 등을 맡았다. 1770년 신경준이 왕명으로 『동국여지도』를 만들 때 정항령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지도 즉 그의 부친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를 채용하였다. 이처럼 뛰어난 민간 지도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교보와 수정을 거쳐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열읍도 8권, 팔도도 1권과 전국도 족자(簇子) 1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⁴ 이로 보아 신경준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상기 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계고』는 신경준의 이른 시기 작품으로서 1756년에 완성하였다. 『강계고』 백두산조에 보면, 토문강이 백두산 천지에서 동류하는 두만강 정파(正派)임을 고증하였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문과 두만은 음이 비슷하여 혹자는 토문은 즉 두만이며 각기 다른 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주에 이르기를 “토문이 두만강 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경원부까지 60리이고 서쪽으로 상가하(常家下)까지 1일정이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회령부에서 북쪽으로 하루를 가면 아적낭귀(阿赤郎貴)에 이르고 또 하루를 가면 상가하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토문강 역시 백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회령 바깥쪽 멀리에서 흐르다가 하루에 이르러 두만강에 합류하는 것이다. 두 나라 경계를 정하려면 마땅히 백산 꼭대기 못에

『월간국토』, 1999년 5월호 참조.

4 申景濬, 『旅菴遺稿』 권5, 동국여지도발.

서 흘러나오는 곳을 계한으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이다. 그러나 백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두만강에 흘러드는 물이 매우 많아 오늘날 어느 것이 못에서 나오는 정파(正派)인지 알 수 없다. 『명일통지』에 이르기를 백산 꼭대기 물이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 아야고강이라고 하였다. 아야고라는 명칭이 없으며 고금의 칭호가 다른 것이다. 동방 지지(地誌)에 이르기를 백산 꼭대기 물이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라고 하였다. 그럴 경우 아야고가 두만강임이 틀림없다. 동쪽으로 흘러 두만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목극등이 정제한 물을 보면 백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가장 멀리에서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못에서 나온 정파라고 할 수 없는 듯하다. 후자가 이르기를 수원이 비록 남쪽으로 흐르지만 결국은 동쪽으로 흐르게 되며 지지(명지와 승람을 가리킴)에서 말하는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압록강을 놓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서쪽으로 흐르지만 지지에서 남쪽으로 흐른다고 한 것은 원류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라 하고 한다. 이로 보아 두만 원류도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다.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토문이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정파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강계를 정하는 일은 국가의 대사이며, 목극등이 박(朴權을 가리킴)·이(李善溥를 가리킴)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였어도 두 사람은 물러나 군관과 역관배에게 말기지 말았어야 한다. 김응현·조태상이 물길을 찾아볼 때 날이 저물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보지 않고 돌아와 물이 과연 동쪽으로 흐른다고 한 것은 얼마나 소홀한 처사인가? 황량한 곳이기에 얻으나 잃으나 상관이 없다고 한데 대해 식자들은 크게 비난하고 있다.⁵

5 申景濬, 『旅菴全書』 권7, 강계고, 9~10쪽(경인문화사 1976년 영인본), “土門與豆滿音相似 故或謂之土門即豆滿而非二水也 然而龍飛御天歌註云 土門在豆滿江之北 南距慶源府六十里 西距常家下一日程 又云 自會寧府北行一日 至阿赤郎貴 又行一日 至常家下 然則土門江亦出於白山東 由會寧邊外頗遠 而其下流合於豆滿江者也 若欲定兩國之界 則當以白山巔潭水所流處爲限 此天所以分南北也

위 인용문은 첫째로, 『용비어천가』를 근거로 두만강 이북에 토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명일통지』와 『동국여지승람』에 근거하여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아야고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목극등이 정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천지에서 흘러 나오는 정파가 아니라고 하였다. 문헌 근거로서 『명일통지』에 백두산 천지 물이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 아야고하라는 것은 원류를 상세히 기록한 것임을 들었다. 넷째로, 지리에 밝은 자의 말을 인용하여 토문이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정파일지 모른다고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목극등이 정계할 때 조선측 담당자였던 박권과 이선부의 소홀함을 비난하였다. 여기서 신경준은 한 가지 중요한 정계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목극등이 정계할 때 지정한 두만강 수원이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동류하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송화강에 흘러들어가는 물이다.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조선에서 수원의 잘못을 발견한 후 목책과 토돈을 이어놓은 이른바 두만강 제2파 수원이다.⁶

신경준은 또 다른 지리서 『사연고』에서 토문·두만에 대해 더 상세

然而水之出於白山東入於豆滿者甚多 今不能知何者爲山潭正派 而明一統志并云 白山巔水 南流爲鴨綠江 東流爲阿也苦江 而并無阿也苦之名 古今稱號之異也 東方地志云 白山巔水 南流爲鴨綠江 東流爲豆滿江 然則阿也苦之爲豆滿江無疑矣 皆曰東流爲豆滿 而今以穆克登定界之水觀之 出於白山南流最遠而始東流 似非山潭正派也 或曰其源雖南流 而其終乃東流 志之稱東流以此云云而然 而鴨綠之流 其終卽西流 而志必曰南流 則蓋記其源流之甚詳也 以此觀之 豆滿之源非南流 而乃東流者也 明於地理者皆曰 土門是山潭正派而亦未可知也 定疆界國之大事 穆克登雖不許朴李兩人之行 而兩人不宜退坐 委之於軍官舌人輩矣 金應澍趙台相之往審水道 以日暮未及究竟而還 只云水果東流 何其漫忽也 一片荒翳之地 得失非關 而識者之譏深矣.”

6 이화자(2009), 「백두산 정계문제와 조·청 관계」,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문화로 보는 한국사 5-세계속의 한국사』.

히 기술하였다. 『사연고』는 『강계고』보다 좀 늦게 완성된 작품으로서 조선의 동서남북 네 면의 도로와 각 읍의 노정을 기록하였다. 북쪽으로 먼저 압록강을 기록하고 이어 두만강을 기록하였으며, 팔도의 연해, 중국과의 해로, 일본과의 해로, 섬·조석 등을 기록하였다. 두만강조에는 발원지의 여러 갈래 수원, 강이 흘러 지나가는 읍 명칭, 강의 흐름과 방향 등을 기록하였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만강은 사전(祀典)에서 북독(北瀆)에 속한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남류(南流) 즉 복류(伏流)하며 복류처에 토돈·목책을 설치하여 두 나라 경계를 나눈다. 땅속에서 흘러나와 천평에서 삼산사(무산부 서쪽 120리)에 이르며 허향령 동쪽 물과 합친다. 동쪽으로 흘러 무계사(무산부 북쪽 70리)에 이르며 굴곡을 이루는 것이 마치 고리 모양과 같다. 풍산진(무산부 북쪽 85리)·불하진(회령부 서쪽 60리)을 경유하여 회령부성에 이르며 북쪽으로 꺾어 북류한다. 종성계의 북쪽을 경유하여 분계강[분계강은 피지에 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대각봉 북쪽에서 동류하여 토문강이 된다. 토문이라는 것은 백여 리를 북류하다가 다시 흠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이다. 동쪽으로 흘러 해란하가 되고 또 동쪽으로 흘러 분계강이 되며 미전진 서남쪽에서 두만강과 합친다. 토문강인즉 백두산 꼭대기 큰 못의 정파(正派)이며 하늘이 두 나라 경계를 계한 것이다. 목극등이 천평수(天坪水)로써 정계한 것은 잘못이다. 『강계고』에 나옴]과 합친다. 유원진(온성부 서쪽 18리)에 이르러 서쪽으로 꺾어 동류한다. 온성부성 북쪽을 경유하여 미전진(온성부 동쪽 26리)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황척파보(온성부 동쪽 27리)를 지나 혼용진(경원부 북쪽 20리) 서계(황척파로부터 8리)에 이르러 동류한다. 고이도 북쪽(혼용진 동쪽)에 이르러 남쪽으로 흐른다. 아산보(경원부 동쪽 70리)를 지나 동남쪽으로 흐르며 무이보(경흥부 북쪽 20리)에 이르러 동쪽으로 꺾어 남류한다. 경흥부성 동쪽을 지나

동남쪽으로 50리를 흐르다가 녹둔도를 지나 5리가량 나뉘어 흐르다가 동해로 흘러들어간다.⁷

위 인용문은 두만강이 백두산 천지에서 남쪽으로 복류(伏流)하다가 천평에서 땅 위로 솟아나오며 무산·회령·중성·온성·경원·경흥 등 육진 지역을 경유하여 녹둔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그 사이 중성 북쪽에서 분계강이 흘러들어온다고 기록하였다. 또 분계강에 대해서는 피지(彼地, 청경내)에 있으며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원류부분을 토문강이라고 칭하고 동쪽으로 흘러 해란하가 되고 또 동쪽으로 흘러 분계강이 된다고 기록하였다. 토문강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땅속에서 백여 리 복류하다가 흙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분계강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토문강이 백두산 꼭대기 못에서 흘러나오는 정파이고 하늘이 양국 경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강계고』에서 신경준은 토문강이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정파

7 申景濬, 『旅菴全書』 권8, 사연고, 3~4쪽. “豆滿江 祀典係北濱 源出白頭山 南流卽伏流 伏流處設土墩木柵 以定兩國之界 復流 由天坪中至三山社(在茂山府西一百二十里) 與虛項嶺以東之水合 東流至茂溪社(在茂山府北七十里) 彎曲如環 歷豐山鎮(在茂山府北八十五里) 芟下鎮(在會寧府西六十里) 至會寧府城 北折而北流 歷盡鐘城界北 與分界江(分界江在彼地 源出白頭山 由大角峰北東流爲土門江 土門者以其伏流百餘里 復流出於土中故名 又東爲海蘭河 又東爲分界江 至美錢鎮西南合豆滿江 土門江卽白頭山頂大潭正派 而此天所以限兩國之界者 穆克登以天坪中來之水爲定界誤矣 詳見疆界考)合 至柔遠鎮(在穩城府西十八里) 西折而東流 經穩城府城北 至美錢鎮(在穩城府東二十六里) 折以南流 歷黃拓坡堡(在穩城府東二十七里) 至訓戎鎮(在慶源府北二十里)西界(自黃拓坡至此八里) 折以東流 至古珥島北(在訓戎鎮東) 折以南流 歷阿山堡(在慶源府東七十里) 轉而東南流 至撫夷堡(在慶興府北二十里) 東折而南流 歷慶興府城東 東南流五十里 至鹿屯島 分流五里許 入於東海.”

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증하였지만, 『사연고』에서는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토문강이 존재하며 이를 해란하 또는 분계강이라고 칭한다고 단언하였다. 이로 인해 후세에 해란하가 백두산에서 발원하며 양국의 경계를 나눈다는 잘못된 지리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동국문헌비고』(1770년에 완성)는 관찬 유서(類書)로서 신경준이 『여지고』 부분을 편찬하였다. 『여지고』 두만강조에는 청 측에서 흘러들어오는 지류 가운데 토문강이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만강은 백두산 남쪽 갑산 천평(天坪)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어운강이 되며, 오른쪽에서 보다회천이 흘러들어오고 장판석교를 지나 오른쪽에서 서북천(길주 원산 가이봉에서 발원한다)이 흘러들어오고 임강대고성을 지나 오른쪽에서 박하천(경성 장백산에서 발원한다)이 흘러들어온다. 무산 서쪽을 지나 오른쪽에서 성천(장백산에서 발원한다)이 흘러들어온다. 양영·풍산·운두의 보(堡)를 지나 오른쪽에서 불하천이 흘러들어온다. 회령 북쪽에 이르러 오른쪽에서 알목하(속칭 성천이다)가 흘러들어오며 하류에 진입한다. 북쪽으로 꺾어 흘러 고령진·방원보·종성부를 경유하여 동관진에서 압강탄을 이루며 왼쪽에서 토문강(오늘은 피지에 속한다)이 흘러들어온다. 동쪽으로 흘러 온성부 북쪽을 경유하며 가하리하(피지)가 흘러들어온다. 또 동쪽으로 꺾어 흘러 구암·유진·어정탄을 이루며 미진보를 지나 왼쪽에서 삼한천(피지)이 흘러들어온다. 남쪽으로 꺾어 흘러 황척파에 이르러 입석탄을 이루며 훈용진을 지나 고이도·경원부 동쪽에 이른다. 안원보에 이르러 왼쪽에서 후춘강(피지)이 흘러들어온다. 용당고성을 지나 건원보에 이르러 오른쪽에서 오룡·농경천이 흘러들어온다. 무이진을 감돌아 왼쪽에서 팔지수(피지)가 흘러들어온다. 경흥부 동쪽에 이르러 적지(赤地)를 지나 수빈강을 이룬다. 또 동쪽으로 조산을 지나 녹둔도에 이르러 바다에 흘러들어간다.⁸

위 인용문은 두만강이 백두산 남쪽 천평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 어윤강이 되고 육진 지역을 경유한 후 녹둔도에서 바다에 흘러들어간다고 기록하였다. 그 사이에 많은 지류가 양국 경내에서 흘러들어오는데, 온성 전과 후에 두 갈래의 지류 즉 토문강과 가하리하(가야하)가 청측에서 흘러들어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현대 지도와 비교할 경우 온성 근처에서 서쪽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해란하-부르하통하이 고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가야하이다. 이 두 강이 합친 후 여전히 가야하라고 부르는데 매우 짧으며 두만강에 흘러들어간다. 이처럼 합류한 부분이 짧기 때문에 위 인용문에서는 토문강·가하리하가 각기 달리 두만강에 흘러들어오듯이 기록하였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는 두만강 서쪽과 북쪽의 모든 지류, 예컨대 토문강·가하리아·후춘하·팔지(八池)를 피지라고 함으로써 양국이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나타냈다.

『산수고』는 신경준의 좀 늦은 시기 작품으로서 두만강조 내용이 『동국문헌비고』, 『여지도』와 비슷하다. 두만강이 백두산 남쪽 천평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어윤강이 되고 압강탄 근처에서 왼쪽으로부터 토문강이 흘러들어오는데 피지에 속한다고 하였다. 토문강조를 보면,

8 『增補文獻備考』 권20, 여지도 8, 31~32쪽(고전간행회편, 동국문화사 1959년 영인본). “豆滿江源出自頭山之陽甲山天坪 東流爲魚潤江 右過寶多會川 經長板石橋 右過西北川(源出吉州圓山之加伊峰) 經臨江臺古城 右過朴下川(源出鏡城長白山) 經茂山之西 右過城川(源出長白山) 經梁永 豐山 雲頭之堡 右過甫乙下川 至會寧之北 右過幹木河(俗稱城川) 入下川 折而北流 經高嶺之鎮 防垣之堡 鍾城之府 潼關之鎮爲壓江灘 左過土門江(今屬彼地) 東流經穩城府北 左過噶哈里河(彼地) 又折而東流爲龜巖 柳田 漁汀之灘 經美錢堡 左過三漢川(彼地) 折而南流 至黃拓坡爲立石灘 經訓戎之鎮 至古耳之島 慶源之府東 至安原堡 左過後春江(彼地) 經龍堂古城 至乾元堡 右過五龍 農耕之川 環撫夷之鎮 左過八池水(彼地) 至慶興府東 經赤地爲愁濱江 又東流 經造山 至鹿屯島 入於海.”

“백두산 대택(大澤, 천지를 가리킴)에서 발원한다. 300리를 복류하여 동쪽으로 분계강이 되고 압강탄(鴨江灘)에서 두만강에 흘러들어간다”고 기록하였다.⁹ 이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나타난 ‘토문강원-분계강’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로써 정상기 지도에서 토문강원과 분계강 사이를 끊어놓은 것은 물이 땅속에서 복류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홍세태의 『백두산기』에 나오는 “토문 원류가 중간이 끊겨 땅속에서 복류한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⁰

토문강·분계강 인식에 있어서 신경준은 정상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상기가 『동국지도』에서 백두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원-분계강을 표시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만강 수원이고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는 뜻을 표한 것이었다. ‘토문강’이 아닌 ‘토문강원(土門江源)’을 표기한 것은 수원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정상기는 실지 답사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정계 내막을 아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백두산 정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홍세태의 『백두산기』를 통해서였다. 이 책을 통해 목극등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정하였고 이 물이 땅 밑에서 복류하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나오며 ‘토문강’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세태의 『백두산기』에는 두만강이라는 명칭이 없고 토문강이라는 명칭만 나오기 때문이다. 신경준 역시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토문강이라고 칭하고 이것이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두만강 정파이며 하류에 가서 분계강이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이 점에

9 申景濬, 『旅菴全書』 권13, 산수고, 24~25쪽.

10 洪世泰, 『白頭山記』, “土門源流間斷 伏行地中.”

있어서는 정상기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신경준은 토문강이 비록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정파이지만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고 보지 않았다. 토문강·분계강을 피지 즉 청 경내에 속한다고 하였다. 백두산 남쪽 천평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으로 경계를 나누며 목책과 토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점이 바로 관학자로서의 신경준과 민간 지리학자로서의 정상기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2. 조선 학자들의 토문·두만 강 인식의 극복

정상기·신경준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다른 학자들은 토문·두만을 다른 강으로 보지 않고 같은 강으로 보았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李瀼, 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토문은 두만이다. 옛날에 운관이 속평강까지 강역을 넓혀 비를 세운 것이 여전하다. 그러나 김종서에 이르러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았으니 나라 사람들은 운관 비로써 쟁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명을 받은 자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옛날에는 북로가 모두 말갈 땅이었으며 지금은 경계가 정해진 지 오래다. 쓸모없는 땅을 두고 쟁단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여 논쟁의 불필요성을 일깨웠다.¹¹

11 李瀼, 『星湖僿說』 권2, 천지문, 백두산(민족문화추진회 1982년 영인본 59쪽).
“土門者豆滿也 昔尹瓘拓境至速平江 遺碑尚在 至金宗瑞 以豆滿爲境 國人猶恨不能以尹碑爭執 爲奉命者之失 然最古則北路皆是靺鞨之地 以今則疆定久矣 何必更賭無用之地 惹動爭端乎.”

홍양호(1724~1802)는 영·정조대 저명한 지리학자로서 그의 활동 시기는 신정준과 비슷하다. 그는 이조판서·사간원대사간·홍문관과 예문관 양관 대제학을 맡았으며 동지겸사은사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그는 저서 『북새기략(北塞記略, 1794)』, 『백두산고』에서 중국의 역사서와 지리서를 이용하여 백두산의 고금 명칭, 주위의 산세와 수세 및 백두산 남쪽 입비처(立碑處)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백두산고』의 토문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두산 꼭대기 중간이 패여 못을 이루었다. 둘레가 40~50리이고 깊이가 백여 길이다. …… 북쪽이 터져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고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이다. 동쪽 일파가 겹겹 봉우리와 바위 사이를 숨어 흘러 토문강이 되는데 즉 두만강 상류이다.¹²

위 인용문에서는 두만강 상류의 은류(隱流, 숨어 흐름) 부분을 토문강이라고 칭하고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는 정계비 동쪽의 건구(乾溝) 즉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골짜기를 토문이라고 칭하였는데 실은 위와 같은 뜻이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에 건구(乾溝, 마른 골짜기)가 있는데 남안에 돌이 쌓여 있다. 혹은 10 무(武, 한 발짝의 거리, 三尺임)가 한 무더기가 되고 혹은 20여 무가 한 무더기가 되는데 정계의 표석이다. 골짜기를 따라 서쪽으로 몇 십 무를 가고 또 평지에서 북쪽으로 꺾어 50~60무를 가면 골짜기 골

12 洪良浩, 『耳溪外集』 권12, 북새기략, 백두산고, 26~27쪽. “白頭山頂中陷爲澤 周四五十里 深百餘丈…… 壻其北 西流爲鴨綠江 北流爲混同江 東一派隱流於層峰巖石之間 始爲土門江 卽豆滿江上流也.”

에 닿는데 비가 있다. …… 동서로 각각 건구가 있으며 서쪽을 도난(逃難)이라고 불러 압록강에 흘러들어가고 동쪽을 토문이라고 불러 두만강과 합류한다.¹³

이밖에 아래 글에서는 백두산 천지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 원류를 토문강 또는 토문강원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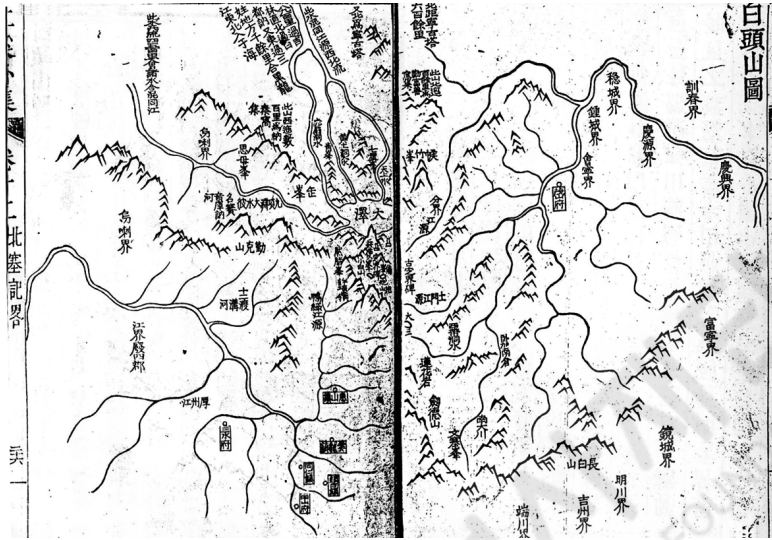
대택(大澤)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 토문강이다. …… 토문강원은 백두산 동쪽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북증산(北甌山) 앞에서 두만강으로 흐르며 동남쪽으로 바다에 흘러들어간다.¹⁴

이상 홍양호는 정계비 동쪽에 퇴책이 설치된 골짜기와 연결된 물줄기 즉 다시 말하여 두만강이 숨어 흐르는 부분과 땅 위로 솟아나오는 부분을 토문강 또는 토문강원이라고 칭하여 기타 물줄기와 구별하였으며 두만강 수원임을 나타냈다. 이밖에 그는 백두산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온성 근처에서 두만강에 흘러들어가는 분계강을 상정하였는데(지도 2 참조), 정상기나 신경준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다.

1790년 정상기의 후손으로 생각되는 황운석(黃胤錫, 1729~1791, 字 永叟,

13 洪良浩, 『耳溪外集』 권12, 북새기략, 백두산고, 26~27쪽. “山有乾溝 溝南岸累累石塊 或十武一堆 或二十武一堆 此爲定界標石 循溝而西數十武 從平地折而北上五六十武 溝盡而碑在焉 …… 東西各有乾溝 西曰逃難 而入於鴨江 東曰土門 而與豆江會.”

14 洪良浩, 『耳溪外集』 권12, 북새기략, 백두산고, 26~27쪽. “大澤之水東流爲土門江 …… 土門江源出白頭山卯方 流至坤方北甌山前 流爲豆滿江 東南流入海.”



지도 2_ 홍양호 『백두산고』, 『백두산도』

號 頤齋)에 의해 『팔도지도』가 교보(敎補) 제작되었다. 『팔도지도』, 『함경 북도도』(지도 3 참조)를 보면, 두만강 상류 부분에 “토만강원은 즉 두만강 이다(土門江源即豆滿江)”고 기재하였다. 또 지도 아래쪽 지문에는 청의 지도와 지리지를 널리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지도는 하동 정씨 고 사간 항령(恒齡) 어른이 만든 것으로서 범례를 단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근래에 좌랑 해주 정후조(鄭厚祚)는 고 판서 운유(運維)의 아들이며 그의 형 문관 철소(哲祚)로부터 역법과 서화 및 연(硯)에 밝았다. 후조는 특히 중국·서역·청해·몽고·성경지도를 널리 상고하였으며 본국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였다. 그가 하동본에 근거하여 증수하였는데 이를 능가하였다. 영수(永叟, 황운석) 역시 『청일통지』를 읽어봄으로써 그 대략을 알게 되었으나 해주



지도 3_ 황윤석, 『팔도지도』, 1790년

신본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하동본에 근거하여 교보했음을 기록하는 바이다. 승정 3 경술 3월 대진(大盡) 이재(頤齋, 황윤석)¹⁵

즉 정상기의 아들 정항령이 만든 하동본에 근거하여 『팔도지도』를 교보하였으며, 또 하동본에 근거하여 해주신본을 만들었는데 원도를 능가하였으며, 해주 정후조가 중국의 여러 지도를 보았고 황윤석 자신도 『청일통지』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18세기 후반 중국의 지리지와 지도가 조선에서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7년(강희 36년) 조선은 연행사 편에 『성경통지』(강희 23년, 1684)를 수입한데 이어,¹⁶ 영조대에 『청일통지』(강희일통지, 건륭 8년 완성)를 수입하였다. 청대에 편찬된 이러한 지리지 특히 그 속에 들어있는 성경도와 길림도는 조선 학자들에게 서북 변경에 관한 상대적으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였고 토문·두만강 인식에 극복하는 데 유리하였다.

위 황윤석 교보본에 나타난 분계강은 정상기 원도와 달랐다. 지도 3(『팔도지도』)을 보면, 종성·온성 사이에서 두만강에 흘러들어오는 ‘분계강’이 있지만 매우 짧은 지류이고 백두산에서 발원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분계강은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는 별로 없다. 두만강 중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지류에 불과하며 단지 이 강이 해란하나 부르하통하라는 것을 몰랐을 따름이었다.

15 黃胤錫, 『八道地圖』 지문. “此圖本僉樞河東鄭故司諫恒齡大人所作 而附以凡例者 在我國前無此 比近佐郎海州鄭厚祚故判書運維之子也 自其兄文官哲祚已精於曆西書畫及硯 而厚祚尤博考中國西域青海蒙古盛京地圖 以至本國一以貫之 因河東本增修 遂出其上 永叟亦嘗閱清一統志 得其涯略 而海州新本未及傳覽 爰據河東本頃所校補者 識之以俟 崇禎三庚戌三月大盡 頤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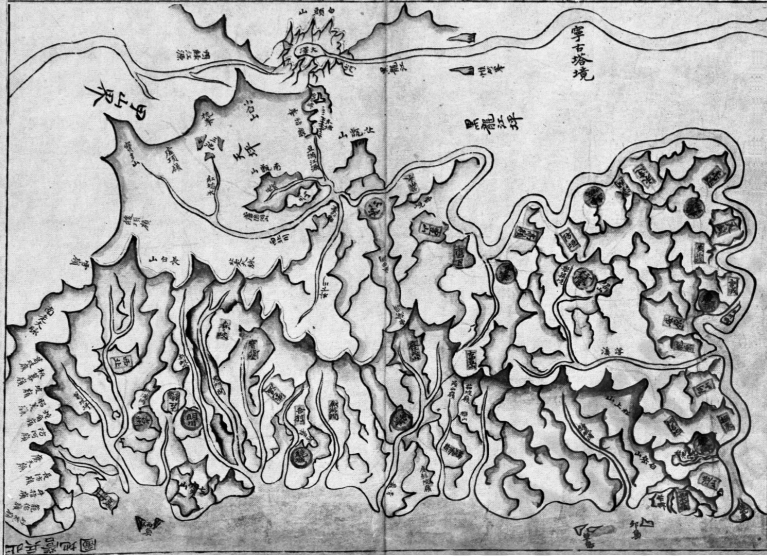
16 『肅宗實錄』 숙종 23년 5월 정유.

『여지도서』는 영조대 관찬 읍지로서 1757년 홍양한의 주청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를 위해 팔도감사로 하여금 각도 읍지를 올리도록 명하여 1765년에 완성하였다.¹⁷ 이는 국초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대한 속편으로서 이때까지 축적된 지리 정보를 담아내어 내용면에서 훨씬 풍부해졌다. 체제상으로는 방리·도로·부세 등을 증가하였고 또 각 읍지의 맨 앞에 채색지도를 첨부하여 도와 서가 결합함으로써 『여지도서』라고 불렀다.

『여지도서』 관북읍지의 두만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두만강이 함경도의 북계이고 조청 양국의 경계라고 하였다. 즉 “함경도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북쪽으로 두만강에 이르며 서쪽으로 평안도 영원(寧遠)계에 이르고 남쪽으로 강원도 회양계에 이른다”, “두만강은 부(叡)의 서쪽 1리에 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바다에 흘러들어가며 피아의 경계이다”라는 것이다. 둘째로 두만강이 백두산 남쪽 천평에서 발원한다고 기록하였다. 즉 “두만강은 백두산 아래 천평에서 발원하여 육진을 감돌아 흐르며 경흥 녹둔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¹⁸ 앞의 신경준의 해석대로라면(『사연고』) 이 천평수가 목책·토돈과 연결된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이다. 또한 이는 조선에서 수원의 잘못을 발견한 후 퇴책을 이설해놓은 두만강 수원이기도 하다. 관찬 지리서로서 『여지도서』가 이 천평수를 정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셋째로 토문강조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분계강 명칭도 없다(지도 4 참조). 두만강 안쪽 지류를 상세히 표시한 반면 바깥쪽 지류를 표시하지

17 『英祖實錄』 영조 33년 8월 무진.

18 『輿地圖書』 관북읍지, 감영·무산·회령·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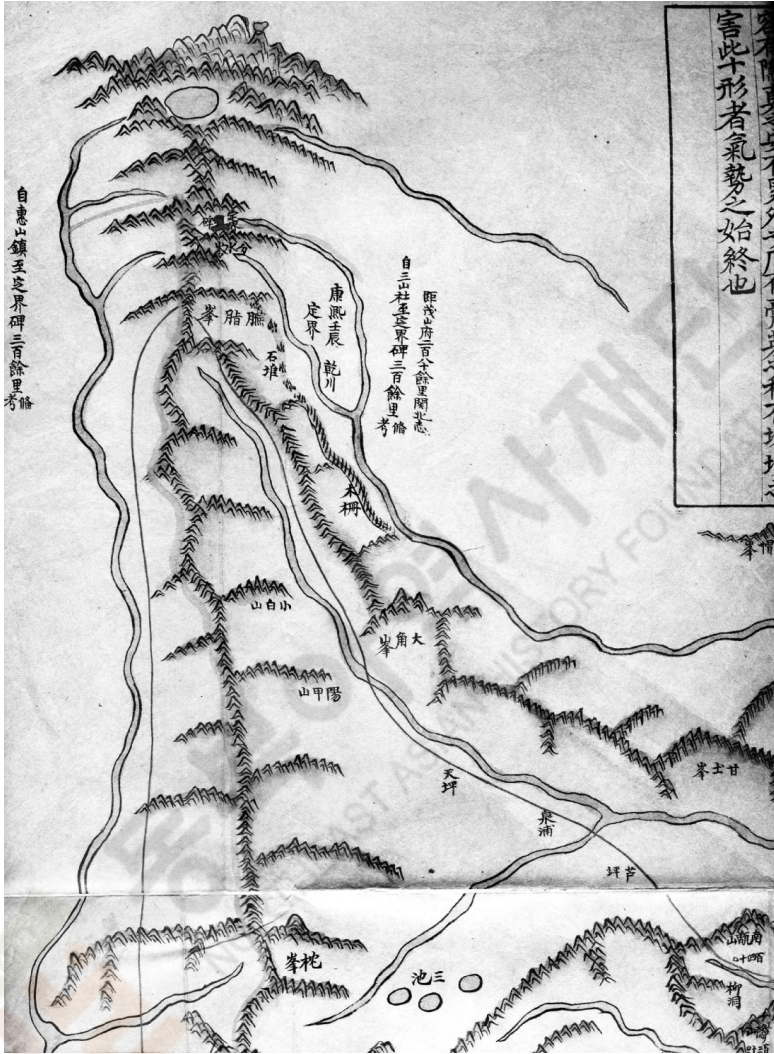


지도 4_ 『여지도서』의 『북병영지도』, 1765년

않음으로써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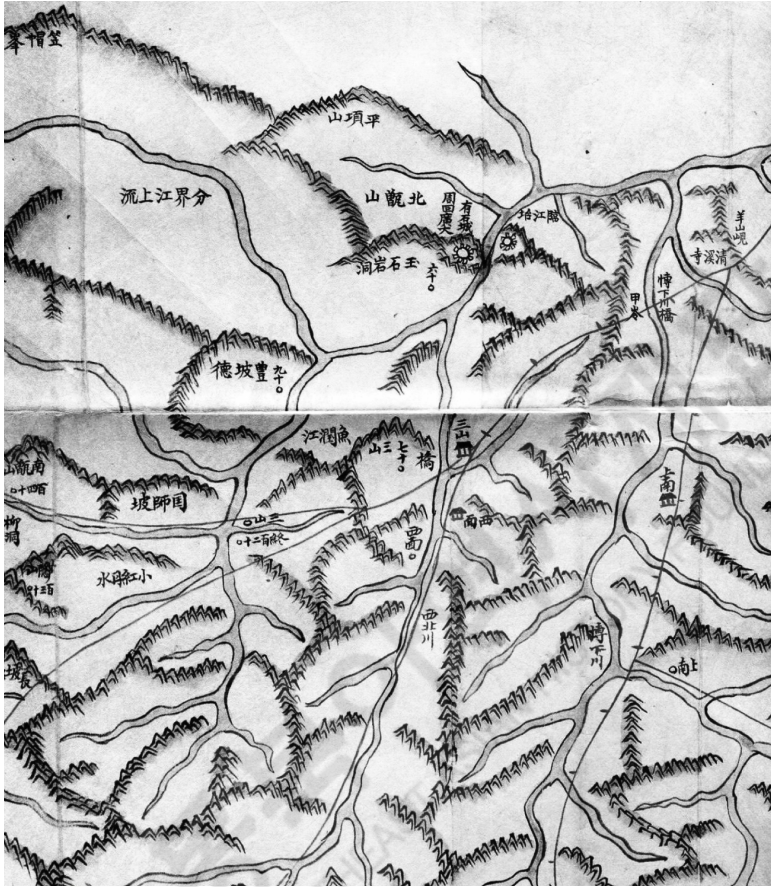
조선후기 지리학의 집대성자인 김정호(金正浩)에 의해 편찬·제작된 『대동지지』와 『동여도』(1850년대)에서는 토문·두만이 각기 다른 강이 아니라 동일한 두만강을 가리키되, 토문강·분계강으로써 상류의 부동한 물줄기를 구별하였다. 『대동지지』 무산조를 보면, “보다회산천(寶多會山川)이 상류에서 대홍단수이고 하류에서 소홍단수이며 동쪽으로 흘러 어윤강이며 즉 토문상류이다”라고 하였다.¹⁹ 지도 5·6을 참조하면, 풍파덕(豊坡德) 근처에 두 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서남쪽 삼지연과 천평 쪽에서 오는 물줄기가 ‘어윤강’이며, 『대동지지』에서 말하는 ‘토문상류’이다. 서북쪽에서 오는 물줄기가 ‘분계강 상류’인데, 『대동지지』에는 “물

19 金正浩, 『大東地志』 권20, 무산.



지도 5_ 김정호, 『동여도』, 1850년대

이 분수령에서 발원하며 복류하여 흔적이 없다. 강희 임진 분계 시 이 물을 분계강 상류라고 칭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⁰ 지도 5·6에서 분계강 상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목책·석퇴·건천이 나오고 계속 올라



지도 6_ 김정호 『동여도』 2

가면 분수령상의 정계비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가 나온다. 이로 보아 분계강 상류란 정계비·퇴책과 연결된 두만강 상류 즉 땅속에서 복류하다가 다시 땅위로 솟아나와 두만강을 이루는 물줄기를 말한다. 이로써 경계를 나눔으로 분계강 상류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20 金正浩, 『大東地志』 권20, 무산.



지도 7_ 김정호, 『동여도』 3

더 재미있는 것은 『대동지지』와 『동여도』에 ‘분동강(分東江)’이라는 두만강 지류가 있다. 『대동지지』 온성 강의지(江外地)조에 보면, “분동강은 유원진 서쪽 30리에 있으며 두만강에 흘러들어간다”고 기록하였다.²¹ 지도 7의 『동여도』를 살펴보면, 대탄(大灘) 근처에 북쪽으로부터 두만강에 흘러들어오는 짧은 지류가 있는데 ‘분동강’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분동강을 자칫하면 분계강의 오류로 볼 수 있지만, 전술했듯이 두만강 상류에 경계를 나눈다는 뜻의 분계강 상류가 존재하므로 그 오류가 아니다. 저자 김정호는 유원진 서쪽에서 두만강에 흘러들어오는 지류 분동강과 두만강 상류에 있는 분계강을 명백히 구분하였던 것이다. 다

21 金正浩, 『大東地志』 권20, 온성.

시 말하여 분동강은 분계의 뜻이 없다. 다만 이 지류가 해란하—부르하
통하 또는 가야하라는 것을 몰랐을 따름이다.

3. 1880년대 이후 조선의 토문강· 분계강 인식의 변화

1869·1870년 조선에 보기 드문 자연재해 즉 ‘기경대재’가 발생하였다. 조선의 서북 변민들은 청 측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압록강 상류 지역에 넘어가 생활을 영위하는가 하면, 1880년 ‘경진개혁’을 계기로 대규모로 두만강 이북에 넘어가 땅을 개간하고 입주하였다. 두만강 이북 월경 개간민에 대하여 청은 운남·귀주 묘(苗)민의 예에 따라 토지집조를 발급하여 납세하고 귀화 입적(歸化 入籍)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월경 개간민을 쇠환할 것을 요구하여 청에서는 1년을 기한으로 쇠환하도록 하였다.²² 청 돈화현 지사는 종성·회령 부사에게 보낸 조회문에서 토문강(두만강을 가리킴) 이북 동쪽 온성으로부터 서쪽 무산에 이르기까지 월간 유민을 추수 후에 일률로 쇠환할 것을 요구하였다.²³ 이때 월경 개간민들은 토문과 두만이 별개의 강이며 두만강 이북에 토문이 있으며 조청 양국은 두만강을 경계로 하지 않고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종성 부사가 돈화현 지사에게 보낸 조회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楊昭全·孫玉梅(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234~241·248~249쪽 참조.

23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編(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제4권, 1913쪽.

종성·온성·회령·무산민 첩장에 이르기를 “민 등은 비록 경작을 업
 으로 하고 있지만 어찌 나라 법에 전연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민 등
 이 개간한 땅은 토문 이남입니다. 동방에서 입국한 지 가장 오래된 것
 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본디 토문강을 경계로 하지만 물
 러나 두만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문·두만 양강 사이는 황
 지로 두어 민이 들어가 입주하는 것을 금한 것은 변환을 걱정한 것입
 니다. 상국이 일어난 후로부터 우리나라 동북이 무사하여 강희 임진
 에 이르러서는 오라총관 목극등 어른이 황지를 받들고 번계를 조사
 하여 토문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
 계로 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돌을 새겨 놓았습니다. …… 백두산 입비
 (立碑)처에 사람을 보내 살펴보았더니 비의 동쪽에 토퇴·석퇴·목책
 이 설치되어 경계를 나누었으며 그 아래에 토문이 있었는데 양안(兩
 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치 문의 모양과 같았고 돌이 아닌 흙이었
 으며 그 아래에 물이 나왔는데 다른 파를 이루었습니다(두만강에 흘
 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임-저자). 이 물의 합류처까지는 강안이 길
 이 막히고 배로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종성 맞은 편 90리 감토산 아
 래에 분계강이 있는데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카포(卡鋪,
 경비처)가 분계강 북안에 있으므로 상국의 경계가 이곳에서 머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토문은 분수령 정계처에 있으며 두만은 우
 리나라 경내에서 발원하므로 상국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 이로
 써 돈화현에 알려 사계를 행함으로써 민이 경작에 안심하도록 할 것”
 을 요구한 문구였습니다. 중외 계한을 살펴보면 토문으로써 경계를
 나누었으며 본국은 두만 외에 토문 별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
 며 옛 지도가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원류에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열읍의 민인들이 사사로이 원류에 갔다 와서 고하더라도 이들의 사사
 로운 말로써 근거를 삼을 수 없었으므로 관원을 파견하여 백두산 분
 수령에 올라가 강희 연간 목총관의 비문을 탁본하고 토문 원류를 답
 사하도록 하였더니 민인이 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강안이 모두 가파
 른 절벽이었으며 황구령까지 갔다 되돌아왔습니다. 새로 지도를 그려

왔는데 옛 지도와 비교해 보면 토문과 분계강을 경계로 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²⁴

위 인용문에서 토문이란 정계비 동쪽 토퇴 모양이 문과 같다 하여 붙여진 것이며 그 아래에 연결된 물이 토문강이며 비문의 ‘동위토문’이란 이를 가리키며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이라고 하였다. 분계강은 종성 맞은 편 90리에 있는데 양국이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 이러한 상황은 개간민들이 직접 가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였다. 요컨대 위 인용문은 조청 양국이 두만강을 경계로 하지 않고 그 북쪽에 있는 토문강·분계강을 경계로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문강에 대해서는 두만강에 흘러들어가지 않는 별개의 강이라고 하였을 뿐 이 강이 송화강인지 아니면 다른 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4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編(1972), 『清界中日韓關係史料』 제4권, 1910~1913쪽. “據鍾城穩城會寧茂山民人等牒狀內 民等雖耕鑿爲生 豈全昧國家經法 民等所墾之土卽土門以南也 粵在東方 立國最久者惟本國耳 本國之地本以土門江爲界 而乃退守豆滿江 土門豆滿兩江之間作爲荒地禁民入居者 慮有邊患故也 一自上國龍興 東土東北無事 而至康熙壬辰 烏喇總管穆克登大人奉旨查邊 亦以土門江爲界 西爲鴨綠 東爲土門 勒石爲記於白頭山分水嶺矣 …… 乃派人往審白頭山立碑處 碑東連置土堆石堆木柵爲限 下有土門 兩岸對立如門 而非石而土 其下有水發源 另作別派 此水合流處 則江岸路絕 不能船浮 又於鍾城越邊九十里 甘土山下有分界江 江之以分界爲名者 可知其以此江分界者也 有卡鋪亦在分界江北岸 則上國邊界之止於此亦審矣 …… 土門則在分水嶺查審定界處 豆滿則源出本國界內 非上國之所知也 …… 請以此意會於敦化縣俾卽查界 使民安於耕作之地爲辭 查中外界限向以土門爲界 本國只知豆滿之外更有土門之別派 按有故地圖爲據 實未嘗往遡源流 今此列邑民人私往窮源歸以爲告 不可遽以民人私言爲憑 乃派弁往審白頭山分水嶺 拓得康熙時穆總管碑記 踏審土門源流 果與民人所告相符 濱江皆懸崖陡壁 乃至黃口嶺而還 繪有新圖 與舊圖較閱 則土門與分界江之爲界分之處無疑.”

이윽고 조청 양국은 1885(을유)·1887(정해)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감계(勘界)를 실시하여 백두산정계비와 압록강·두만강 수원지를 답사하였다. 제1차 을유감계 때 조선 감계사 이중하(李重夏)는 비변사 관문에 근거하여 비문에 ‘동위토문’이란 두만강을 가리키며 서로의 발음이 다를 뿐이며, 정계비 동쪽에 설치된 퇴책이 목극등이 잘못 지정한 송화강 상류에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 상류 홍토산수에 연결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홍토산수에 연결된 목책이 다 썩어 없어지고 송화강 상류에 연결된 토퇴·석돈 만이 남아 있어 토문이 두만이 아니라는 논쟁이 일게 되었음을 알았다.²⁵ 2년 뒤 제2차 정해감계 때 조선은 토문·두만이 같은 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정계비-퇴책-홍토산수를 경계로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측 대표는 천지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소백산-홍단수를 경계로 할 것을 주장하다가 한발 물러서 소백산-석을수(홍토산수의 남쪽 지류)를 경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측은 홍토산수·석을수 합류처 이하의 두만강 본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지만 합류처 이상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담판이 무산되었다.²⁶

비록 조선 감계사 이중하가 두만강 일대의 변금을 강화하여 변민들의 월강 개간을 엄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²⁷ 조선은 재해민들이 강북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고 또 이들을 쇠환하여 안치시킬 방

25 李重夏, 『을유추후별단』(『土門勘界』, 규 21036).

26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한국근대사료편찬실 편(1972~1974), 『구한국의 교관계부속문서』 제8권, 194~195쪽[楊昭全·孫玉梅(1993), 앞의 책에서 재인용].

27 李重夏, 『정해별단초』(『土門勘界』, 규 21036).

도도 찾지 못하였다. 1902년에 이르러 두만강 이북 개간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왕은 새로운 개척지에 관원을 파견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여 이범윤(李範允)이 간도시찰사(壘島視察使)로 임명되었다.²⁸ 그는 두만강 북안에서 민호 27,400여 호, 10만여 구를 조사해냈으며, 사포대를 건립하여 개간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²⁹

한편 이범윤의 지지하에 1902년 경원 유사(儒士) 김노규(金魯奎)가 두만강 이북 지역이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는 『북여요선(北輿要選)』을 만들어냈다.³⁰ 『북여요선』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며 상편에는 백두고적고(白頭古迹考)·백두구강고(白頭舊疆考)·백두도본고(白頭圖本考)·백두비기고(白頭碑記考)가 있고 하편에는 탐계공문고(探界公文考)·감계공문고(勘界公文考)·찰계공문고(察界公文考)·사계공문고(查界公文考)가 있다.³¹ 그 내용을 내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 이북 알동(幹東) 등지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다. 둘째, 두만강 이북은 고구려·발해의 구강으로서 고려 장군 윤관이 선춘령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으며 선춘령은 소하강변 즉 송화강변에 있다. 셋째, 토문이란 분수령 정계비 동쪽 양안의 흠벽이 문

28 壘島(간도) 또는 間島(간도)라고 한다. 조선에서 이범윤을 파견할 때는 壘島視察使(간도시찰사)로 임명하였다.

29 이범윤이 간도시찰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金魯奎, 『北輿要選』 서(序)를 참조[양태진(1992), 『한국국경사연구』, 법경출판사, 부록에 수록됨]. 이범윤의 사포대 건립 과정 및 활동 양상에 관해서는 楊昭全·孫玉梅(1993), 앞의 책과 류병호(2002), 「재만한인의 국적문제 연구(1881~1911)」,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30 金魯奎, 『北輿要選』 서문.

31 ‘探界公文考’는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종성 사람 金禹植을 파견하여 탐계한 사실, ‘勘界公文考’는 이중하의 두 차례의 감계, ‘察界公文考’는 함경북도 관찰사 조준우의 담판 5조, ‘查界公文考’는 함북관찰사 이중관이 경원군수 이일헌을 파견하여 사계한 사실 등을 기록한 내용이다.

과 같다 하여 칭해진 것이며 그 아래에 이어진 물이 토문강이다. 토문강은 500~600여 리를 흐르다가 송화강에 흘러들어가며 동쪽으로 흑룡강에 이른다.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 바다에 이르기까지 동쪽은 당연히 계한(界限) 내의 땅이다. 넷째, 두만강은 본국 경내에서 발원하므로 상국에서 알 바가 아니다. 다섯째, 분계강은 하반령(下畔嶺)에서 발원하는데 부르하통하라고도 칭한다. 분계강이라는 명칭은 잘못 얻은 것이며 토문강 하류가 아니다. 즉 해란하를 토문강 또는 분계강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토문강이란 송화강-흑룡강을 가리키며 이로써 경계를 나눔으로 토문강 즉 송화강 안쪽에 있는 간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조청 양국이 두만강이나 해란하를 경계로 하지 않고 토문강 즉 송화강을 경계로 함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토문강은 18세기 두만강 상류를 가리키던 데로부터 송화강 상류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 내면에는 새로운 개간지 즉 간도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송화강에 흘러들어가는 토문강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 지리지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았다. 1907년 이원규(李源規)가 편찬한 『대한신지지』 두만강조를 보면, “동관진에 이르러 압강탄(壓江灘)을 이루며 왼쪽에서 토문강이 흘러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북간도(北間島)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토문강이 피지(彼地)로부터 조선의 북간도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장지연(張志淵)이 편찬한 『대한신지지』(1907년) 북간도(北壘島)조를 보면, “간도(間島)라고도 한다. 백두산 동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육진과 두만강에 접하고 북쪽으로 토문강을 계한으로 청국 길림성 돈화현 등과 경계를 나눈다. 동북쪽으로 러시아령 오소리포염사덕(烏蘇里鋪鹽斯德) 등지와 경계를 나눈다”고 기록하였다.³² 즉 북간도의 북쪽 계한이 토문강이라는 것이다. 이 토문강

이 어떤 강인지를 알기 위해 지도 8 『대한신지지』 함경북도도를 참고로 보면, 백두산 천지 동쪽 토퇴·석퇴·건천과 이어져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 토문강이라고 표기하였다.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이며 비록 송화강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백두산 3대 수계 중에 압록강·두만강을



지도 8_ 장지연, 『대한신지지』, 함경북도도, 1907년

32 張志淵, 『大韓新地誌』 권2, 139쪽.

제쳐놓고 송화강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송화강에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이 물이 바로 목극등이 잘못 지정한 두만강 수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8세기 조선 사료를 통해 비문의 ‘동위토문’이란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단지 정계비·퇴책이 송화강에 연결되었다고 하여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며 그 안쪽에 있는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미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압록강·두만강 이북에 한광지(閑曠地)가 존재한다는 설이 나오게 되었다. 1897년 함북관찰사 조존우(趙存禹)의 답판 5조의 제5조를 보면, “이 땅(두만강 이북)은 수백 년간 한광(閑曠)되어 있었으며 양국에서 서로 금하였다. 청인이 군사를 파견하여 불사르고 몰아내어 쇠환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간혹 들어가면 울에 따라 효시하고 징벌하여 금단하였다. 근래에 청에서 금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금하지 않아 서로 뒤섞여 개간하는 것을 보면, 주객이 현격히 차이 나고 이상 없이 고용하고 있으니 어찌 역울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다.³³ 즉 강북 지역이 청에 속하지도 않고 조선에 속하지도 않는 버려진 땅이며 양국에서 공동으로 금하는 구역이라는 것이다. 당시 두만강 이북에서 개간하는 유민 중에 90%가 조선인이었다. 그럴 경우 이러한 한광지설을 전제로 청에서 압록강 이북 황지를 조사하고 세금을 거두듯이 조선도 두만강 이북에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은 드디어 두만강 이북 개간지를 관리하고 본국의 행정체제로 편입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다.

33 金魯奎, 『北輿要選』, 칠계공문고.

4. 맺음말

조선의 지도·지리지에 토문·두만을 각기 다른 강으로 표시하고 분계강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나타난 것은 1712년 백두산 정계 이후이다. 현존하는 지도 자료를 놓고 볼 때 정상기가 1740년대에 제작한 『동국지도』가 가장 먼저 선례를 열었으며,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원’과 ‘분계강’을 표기하였다. 즉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이야말로 진정한 두만강 수원이며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 지도에서 토문강원과 분계강 사이를 끊어놓은 것은 물이 땅속에서 흐르다가 다시 땅위로 솟아나온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신경준의 토문강·분계강 인식은 정상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준 역시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토문강이라고 칭하고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정파라고 보았다. 문헌적 근거로서 『명일통지』에 백두산 천지 물이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 아야고강(두만강)이라는 데 두었다. 『명일통지』에 대한 신경준의 고식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신경준은 매우 중요한 정계 사실을 착각하였다. 즉 목극등이 잘못 지정한 두만강 수원이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북쪽으로 송화강에 흘러들어가는 물이며,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조선에서 수원의 잘못을 발견한 후 목책과 토돈을 이어 놓은 두만강 제2파 수원이었다. 또한 그는 지리서에서 두만강 이서·이북의 지류에 피지(彼地)라고 표기함으로써 조청 양국이 천평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나타냈다. 이 점에 있어서 관학자인 신경준과 민간학자인 정상기가 구별되었다.

조선후기 더 많은 학자들은 토문·두만이 같은 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2강 인식을 극복하였다. 이익의 『성호사설』, 홍양호의 『북새기략』, 황윤석의 『팔도지도』, 김정호의 『대동지지』·『동여도』에는 토문이 두만이라고 하였거나 토문강원이 두만강이라고 표기하였으며, 토문강으로써 두만강 상류 입지복류 부분을 표하였다. 김정호의 경우 정계비·퇴책과 연결되어 두만강을 이루는 물줄기에 분계강 상류라고 표기하여 이로써 경계를 나눔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류에서 두만강에 흘러들어가는 지류에 분계강이라고 표기하였지만 경계를 나눈다는 뜻보다는 짧은 지류에 불과하였으며 단지 이 지류가 해란하나 부르하통하 또는 가야하라는 것을 몰랐을 따름이었다. 청대 지리지 『성경통지』(강희 23년)·『대청일통지』(건륭 8년) 및 중국의 지도를 통해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문·두만 2강 인식을 극복하였다.

영조대 관찬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토문강이나 분계강 명칭이 나오지 않고 두만강 명칭이 나올 뿐이었다. 두만강으로써 피아의 경계를 나누며, 두만강 상류가 백두산 남쪽 천평에서 발원하여 육진 지역을 경유하여 녹둔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기록하였다. 관찬 지리서로서 『여지도서』가 목책·토돈과 연결된 천평수를 두만강 정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1880년대 조선 북도민들이 대규모로 두만강 이북 지역에 넘어가 개간하고 입주함에 따라 조선의 국경 관념에 동요가 생겼다. 월경 개간민과 북도 관원들은 강희 연간 정계 사실과 조청 양국이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계비·퇴책과 연결된 송화강 상류를 토문강이라고 하였다. 비문에 있는 ‘동위토문’이 이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토문강을 경계로 하지 두만강을 경계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계 당시와 그 이후의 조선 사료를 통해 목극등이 두만강 수원을 정하려고 하였으나 송화강 상류를 잘못 지정하였고, 목극등이 귀국한 후 조선에서 목책과 토돈을 두만강 제2과 수원에 이어 놓은 사실이 명백함으로 1880년대 당시 퇴책이 송화강 상류에만 남아 있다고 해서 송화강 상류가 토문강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간도가 조선땅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미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압록강·두만강 이북에 한광지가 존재한다는 설이 나왔다. 이는 함북관찰사 조준우의 담판 5조에 들어 있었다. 이를 전제로 조선은 압록·두만 양강 이북에 관리를 파견하고 본국의 행정 체제 속에 편입시키려는 조취를 취하였지만 청정부 연길청의 반대 및 길강군(吉强軍)의 반격 그리고 조선을 지지하던 러시아 세력이 만주 지역에서 철거함으로 부득불(不得不) 강북에서 관리를 철수하게 되었다.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고승희 (수원대학교)

동북아
연구재단

동북아시아 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 문제 제기

19세기 말 조선과 청 사이에 제기되었던 국경 문제는 양국이 모두 전통적 왕조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출발이 18세기 초 왕조 국가인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정계’였기 때문에 국경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백두산정계비에 근거를 둔 조선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 이 같은 연구 경향에 대해 감계 회담 당시의 한중 관계가 조공 관계에 입각한 종래의 중화론적 질서에서 근대적 조약 관계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적 질서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

1 19세기말 조선의 영토인식 및 국경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200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사연구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한철호의 「근대 한중 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 현황과 과제」는 19세기의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백두산 정계를 둘러싼 조선후기의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고성훈의 「조선후기 조·청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검토 - 백두산정계비를 중심으로」에 망라되어 있으며, 중국측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춘선의 「조선인의 동북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 동향 -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에 정리되어 있다.

국경은 한 국가의 주권이 효력을 지니는 범위인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국경 분쟁은 민족의식의 발달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경 문제를 개항 이후 조선이 근대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³ 국경 문제를 단순히 지리 인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양국이 근대국가로 체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들 연구는 국경 문제가 제기된 1880년대가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계 협상 과정에서 조선은 자기 주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국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청일전쟁 이후 민족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문제는 1883년에 두 나라가 육로통상장정을 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규정에 따라 북방 국경지대의 육로통상 원칙을 논의하던 중 두만강 이북 지역의 영토 귀속권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는 두만강 월변개간지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주장이 대청 자주와 근대 개혁을 추진하던 개화 관료들에 의해 수용되어 양국의 외교 쟁점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따라서 감계 협상은 1880년대 조선의

2 한철호(2003), 위의 글, 285쪽.

3 백동현(2005), 「한말 민족의식과 영토관 -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의 논설에 나타난 영토관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 ; 하원호(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국경문제를 중국의 근대국가로의 변모 과정과 관련지어 보는 연구로는 구범진(2006), 「청대 '滿洲' 지역 향정체제의 변화 - 『駐防體制』에서 『州縣縉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 14가 있다.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880년대 조·청 간의 감계 협상을 개항 이후 조선이 근대국가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국경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계 제의의 기본 논리였던 지역 주민의 국경 인식이 지배층에 미친 영향과 협상 과정에서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는 감계 협상의 쟁점을 파악하여 1880년대 당시의 국경 문제가 양국 근대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국경 문제의 발단

백두산 정계 이후 조선과 청이 양국의 국경에 대해 관심을 다시 기울이게 된 것은 1880년대 초의 일이었다. 1880년대에 들어서 조선은 대외관계를 만국공법적 관계로 전환하고 대외통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개화자강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구미열강과의 통상조약뿐 아니라 청나라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사대관계를 변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에 대해 불간섭 정책으로 일관하던 청은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 재발과 일본의 유구 병합 등으로 대외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종래의 속방관계를 강화하여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화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의 통상조약 체결 제의를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⁴

4 「조청수륙무역장정」의 체결 과정과 성격에 대해서는 김종원(1999), 『근세 동

조선은 1882년 봄에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을 천진에 파견하여 통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⁵ 통상 협의의 주요 안건은 해금(海禁)을 해제하고 통상장정을 체결하는 것, 변경의 개시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것, 사대 사행을 폐지하고 외교사절을 북경에 주둔시키는 것 등이었다. 특히 사행 파견을 중지하고 북경에 외교사절단을 주둔시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비 절감이 이유였으나 양국관계를 만국공법체제에 맞는 독립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⁶ 그러나 청은 통상장정이 속방(屬邦)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통상장정 안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어윤중은 사대관계 규정이 구미제국에 원용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였으나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조선은 기왕의 사대관계를 활용하여 청을 서구세력의 압박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으로 삼은 채 내부의 근대화, 즉 부국강병을 추진한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조청통상문제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이하 무역장정으로 약칭함)」의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무역장정에서는 기존의 개시무역을 철폐하는 대신 변경지대의 육로 통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지를 답사한 뒤 논의하도록 하였다. 육로통상장정을 강정하기 전에 변경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시아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아삼국교역을 중심으로, 해안; 구선희(1999),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5 어윤중, 『從政年表』 3, 壬午(1882) 2월 14일.

6 구선희(1999), 앞의 글, 322쪽.

7 구선희(1999), 앞의 글, 326~328쪽.

양국 국경지대의 월경 조선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에 백두산 정계를 통해 국경을 확정한 후 조선은 적극적으로 북방 영토를 개척하여 19세기 중반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개발과 행정구역 편제를 완료한 상태였다.⁸ 그러나 청은 정계 직후 두만강 하류 대안의 와이객(瓦爾客) 거주 지역에 혼춘협령(琿春協領)을 주차시켰을 뿐⁹ 국경지대 전역을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광지대로 남겨 두었다. 이후 인삼, 초피 등의 특산물 채집을 위해 일정 기간 갑군(甲軍)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이 일대 특산물의 이익을 취하려는 조선 주민들과 마찰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 모두 엄격한 범월물로 단속하였으므로 국경지대에서의 분쟁은 특정 시기에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상시적으로 국경지대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19세기 중반 이후 변화하였다.

1860년대 말부터 조선 서북 변경지대 주민들이 새로운 개간지를 찾아 강을 건너는 범월 개간이 증가하여 국경지대의 범금 문제가 양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69~1870년에 함경도 일대의 심각한 흉년과 기근을 계기로 두만강 연안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강을 건너가 개간 정착하는 일이 빈발하였다. 1860년의 북경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때의 범월 문제는 청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범월 방지와 함께 월강 이주민을 쇄환하여 안주시키는 것이 북방 지역의 급선무가

8 백두산 정계 이후 북방영토의 개척 상황에 대해서는 강석화(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참조.

9 『吉林通志』 권12, 沿革 下, 琿春城.

되었다.

청은 북경조약 이후 만주일대에 압력을 가해오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만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중화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지배 방식으로는 변경지대를 자국 영토로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자 청은 근대적 국제질서 속에서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러시아 세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주 지역에서 확고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 지배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¹⁰ 이는 명목상 청의 속국으로 남아있던 조선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 조선 간섭 정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청의 정책 변화는 만주 지역의 봉금 해제 조치로 가시화되었다. 1860년대에 요동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1880년대에는 두만강 대안의 길림성 남부 지역에 대한 개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881년 혼춘에 초간국(招墾局)을 설치하고 두만강 동북안 일대에 청인의 이주와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였으며¹¹ 적극적인 만주 개발 정책으로 많은 청인이 압록강~두만강 일대의 공광지대에 유입하자, 이 지역을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편제하였다. 1876년 봉황청과 안동현의 설치를 시작으로 1877년에 압록강 대안에 관전현, 통화현, 회인현, 봉화현, 회덕현

10 근대적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의 만주지역 지배 체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구범진(2006), 앞의 글 참조.

11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10월 19일. 청 도경예부에서 자문을 보내어 토문강 건너편의 개간 사실을 조선에 통보하며 소속 변경 지역에서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두만강 대안지역에 대한 청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권석봉(1995), 「청말 간도지방의 월간한민책연구(상)·(하)」, 『인문학연구』 23·24, 중앙대학교 참조.

을 두었으며 1879년 해룡청, 1880년 강평현을 봉천성 관할지역에 설립하였다. 길림성 관할지역에도 1881년에 이통주, 쌍성청, 빈주청, 오상청, 돈화현을 설치하고 훈춘협령을 부도통으로 승격시켰으며, 1888년에는 농안현을 신설하였다.¹² 이 가운데 두만강 대안의 돈화현 지역이 국경분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초간국 설치 후 청은 두만강 대안에 많은 조선인이 월경 정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1882년 봄 조선 정부에 조선인의 범월을 금할 것을 요구하였다.¹³ 또한 조선인이 개간한 땅에 지권을 발급하여 징세하겠다고 통보하였다.¹⁴ 고종은 월경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쇠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¹⁵ 1883년 초 청과 육로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견하는 어윤중에게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의 직함을 주어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월경지대 조선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유민 쇠환과 월경 방지를 위한 육진 지역의 폐단 시정 임무를 함께 맡겼다.¹⁶ 1860년대 말부터 조선인의 월경 개간이 증가하자 지방 차원에서 강북 지역을 탐사한 일은 있었으나¹⁷ 고종이 직접 월강 이주민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강변 일대

12 구범진(2006), 앞의 글, 91~93쪽.

13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4월 6일.

14 『高宗實錄』 권19, 고종 19년 8월 7일.

15 『高宗實錄』 권19, 고종 19년 8월 11일.

16 『高宗實錄』 권19, 고종 19년 10월 12일 ;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2월 10일 ; 魚允中, 『從政年表』 3, 癸未(1883) 1월 28일.

17 1870년대에 압록강 상류 지역의 월경 조선인의 상황을 정탐한 보고서인 『江北日記』나 연해주의 상황을 정탐 보고한 『俄國輿地圖』가 작성된 일이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식적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때에는 고종이 직접 어윤중을 불러 이 일대의 조선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쇠환 후 안집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의 지형을 탐문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¹⁸ 고종이 국경 지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69~1870년 경원과 경흥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범월 사태 이후였다. 당시 유민들은 혼춘을 거쳐 주로 러시아 경내로 유입되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청에서 감지하고 조선에 유민 쇠퇴환을 요구한 뒤 이 일대 상황에 대한 고종의 관심이 증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주된 관심은 월경민 쇠퇴환 방안이었을 뿐, 이를 국경 문제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양국의 국경 문제로 비화된 것은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위한 무역장소를 답감하던 과정에서의 일이었다.

1883년 초에 어윤중은 의주에서 청의 동변병비도(東邊兵備道) 진본식(陳本植)과 만나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무역 장소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의주(義州)와 중강(中江)으로 정하였으며 조선은 의주 서성(西城) 밖에, 청은 중강 부근의 구련성에 세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¹⁹ 이후 어윤중은 함경도 회령에 가서 청의 형부낭중(刑部郎中) 팽광예(彭光譽), 훈부도통(璦春副都統) 의극당아(依克唐阿)와 면담하고 두만강을 건너 무역장소를 답감한 뒤 「회령통상장정(會嶺通商章程)」을 체결하였다.²⁰ 개시무역을 혁파하고 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이 변경지대를 답감한 것은 무역 방식의 변화 때문이었다. 기존의 개시무역은 청의 관원과 그들이 이끌고 온 상단을 조선이 접대하고 물자를 증여하는 형식이었으며 이는 모두 조선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육로

18 당시 고종은 어윤중에게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의 상황도 살펴볼 것을 지시하였다[魚允中, 『從政年表』 3, 癸未(1883) 1월 28일].

19 『高宗實錄』 권20, 고종 20년 12월 3일.

20 魚允中, 『從政年表』 3, 癸未(1883) 2월 10일~6월 6일.

통상은 양측에 교역 장소를 지정하고 상인들이 상호 왕래하는 것이었으므로 무역 대상지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했다. 조선에서는 기존에 개시가 열렸던 평안도 의주와 함경도 회령·경원을 무역 장소로 정하였으나 청은 새로 설치한 행정구역의 지리 정보가 부족하였으므로 대안 지역의 적당한 장소를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두만강 월변지대에 형성된 조선인 촌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월경 조선인 처리 문제가 육로통상장정 체결 이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된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범월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부터였다. 이 시기의 범월은 주로 압록강 중상류인 벽동~강계 일대에서 청인과 조선인이 서로 강을 넘나들며 마을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상호 범월 형태였다. 이는 봉천성 일대의 봉금이 이완되면서 발생하는 국경 치안의 문제로서 양국의 금법을 확인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두만강 일대의 범월은 주로 두만강 하류의 경원과 경흥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경원은 청의 혼춘 지역과, 경흥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경계를 인접한 곳으로 이 지역의 범월 문제는 조선인이 일방적으로 청과 러시아 국경지대로 넘어가 장기 거주하는 형태였다.

청의 봉금 조치가 늦게까지 유지되었던 두만강 중류 지대의 범월 문제는 1880년대에야 등장하였다. 이는 이 지역에서 범월이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범월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만강 대안 지역에 대한 봉금 해제는 1881년에야 이루어지지만 청 유민의 유입은 그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1870년대 초 무산부에서 녹용 진공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녹용 산지인 백두산

일대의 사냥터에 최근 수십 년 동안 번호(藩胡)들이 유입하여 목책을 설치한 결과 조선인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어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²¹ 이는 초간국 설치 이전부터 두만강 중상류 대안에 청인이 유입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청인의 유입이 있기 이전에는 무산 지역 주민들이 백두산 일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산의 동쪽에 위치한 회령에서도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두만강을 넘나들며 경제활동을 하였다.²² 그러나 조선인들이 이 일대를 자신들의 배타적인 활동 영역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으며 강을 건너는 것 역시 금법(禁法)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의 월경 행위에 대한 제재는 조선이나 청 어느 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은 두만강 하류의 훈춘지역으로 월경할 경우에는 조선에 통보하여 쇄환하도록 하거나 금령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중성, 회령, 무산 대안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진 지역에서는 범월 행위를 지역 향임들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지방관들도 경제활동 여건의 악화로 발생하는 월경 행위를 사실상 제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강수기(降水期)의 범람 등으로 인해 강안의 지형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강안 개발을 스스로 합법화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중성(鍾城) 동관진(潼關鎭)에서는 성곽 서문 밖 두만강 줄기가 나뉘는 곳의 공한지 개간을 허용하였으며, 나아가 개간지에 세목(稅目)을 설치하여 진의 재정에 보태기도 하였다.²³ 이 일대가 양

21 『咸鏡道各邑事錄』 同治 13년(고종 11년 ; 1874) 甲戌, 茂山(『각사등록』 46, 551쪽).

22 『咸鏡道各邑事錄』 同治 13년(고종 11년 ; 1874) 甲戌, 會寧(『각사등록』 46, 559쪽).

국이 모두 봉금하는 땅임은 알고 있었으나²⁴ 주민들은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갔으며, 관할 관청 역시 강 건너편의 불법 개간지를 인정하고 세를 거두었던 것이다.²⁵ 이같이 1870년대부터 두만강 중류 지역에서 조선인의 월경 개간이 활발하였으나 이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은 이 지역을 그들의 생활 터전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지방관들도 그들의 관할구역으로 여겨 징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이 이 일대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편제하고 조선인 쇄환과 편적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하였다.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위해 함경도를 방문한 어윤중과 청의 길림 관원에게 두만강 연변읍 주민들은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양국의 국계는 두만강이 아닌 토문강 즉, 분계강이므로 분계강 이남의 조선인 거주와 농경을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였다.²⁶ 특히 중성 부민들은 백두산정계비를 탐사하고 비문(碑文)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주민들의 청원을 받은 어윤중은 중성 사람 김우식과 오원정을 파견하여 백두산정계비와 분

23 『自吉州慶興至廉記』(『각사등록』 45, 620쪽). 이후 중성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징세권을 장악하여 府와 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自吉州慶興至廉記』의 작성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회령부의 기록 내용을 볼 때 1874년 압행어사 조병세의 보고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24 1872년에 제작된 『北關邑誌』에도 육진읍의 경계는 두만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문제를 제기하였던 중성부읍지에도 계사년 오라총독을 보내어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25 1883년 4월 27일에 두만강 일대 島田 개간지를 인정해 달라는 중성 부민의 소장에 의하면 1876년에 안무사로 파견되었던 김유연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鍾城郡公文書』, 「民邑民訴艸」·「香面民訴艸」(『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005, 77~79쪽)].

26 『鍾城郡公文書』, 「大國派員呈狀」·「大人閣下呈狀」(『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79~81쪽).

계 근원을 탐사하도록 하고, 무산부에 공문을 보내 정계비를 탐본해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어윤중은 종성 부사에게 돈화현에 공문을 보내 국경 문제에 대해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²⁷ 이로써 청과의 새로운 외교 안건, 즉 국경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고 돌아온 어윤중에게 고종은 분계강 이내를 경계로 정하는 일의 성사 여부를 물었다. 어윤중은 두만강 북쪽에 토문강의 근원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백두산에 사람을 파견하여 계한(界限)을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로 정한 무역장정에서 무역 지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별개의 강이며 두 강 사이의 지역은 청의 영토가 아님을 확신하였다.²⁸

어윤중이 파견한 지역민들이 백두산 일대의 상황을 탐사하고 보고한 시점은 이미 「회령통상장정」이 강정된 뒤였다.²⁹ 「회령통상장정」에는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吉林)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령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육(和龍峪)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

27 『北興要選』 下, 「探界公文攷」(『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394~396쪽.)

28 魚允中, 『從政年表』 3, 癸未(1883) 10월 4일.

29 「회령무역장정」이 강정된 것은 1883년 6월 6일이었으나 『從政年表』 3, 癸未(1883) 6월 6일. 어윤중이 김우식 등의 보고를 받은 것은 6월 1일이었으나 무산부의 탐본과 조사 보고가 도착한 것은 7월 1일이었으나 『北興要選』 下, 「探界公文攷」. 즉, 어윤중은 국제 문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역장정을 체결한 것이다.

하고, 길림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도록 하며 회령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를 편리하게 해준다. 길림에서는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 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도록 한다. 혼춘과 경원부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게 한다”³⁰라고 하여, 양국의 무역 장소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어윤중은 이 조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은 국경에 대한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윤중은 통상장정 강정과 동시에 청에 국경 문제를 확정하지는 조회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같이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토문강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청은 토문강과 두만강을 동일한 강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어윤중은 중성 주민들의 청원과 자신이 파견한 김우식의 보고를 바탕으로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청에서 두만강 대안에 설치한 돈화현성이 토문강 혹은 분계강이라고 확신하는 해란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상장정에서 명시한 무역 장소인 화룡읍(和龍邑) 역시 회령에서 110리 떨어진 해란강가이므로³¹ 어윤중은 청이 무역 장소를 자국 영토 내에 설정하고 그 남쪽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결말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은 “양국의 국계는 토문강이다”라는

30 『高宗實錄』 권21, 고종 21년 5월 26일.

31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續附 北間島境界.

사실을 명기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두만강 국경을 확인하였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해 조선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후 감계 과정에서 조선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이용하게 되었다.

국경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에서 어윤중은 무역 장소를 명시한 통상장정의 체결을 중지하거나 미루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북도 개시의 중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함경도민의 폐막을 제거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과 직결된 것이므로 지연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어윤중은 통상장정 체결과 국경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아 따로 논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약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후 감계 협상 과정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3.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어윤중에게 국경 문제를 제기했던 종성 부민들이 제시한 근거는 1712년 백두산 정계의 내용이었다. 1712년 목극등이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는 조선과 청의 동쪽 경계를 ‘토문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두만강과는 다른 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 정계 당시에는 목극등이나 조선 모두 토문강과 두만강을 동일한 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은 이를 근거로 두만강 연안까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³² 이후 북방 고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백두산 정계로 인해 강역을 잃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두만강과 토문강을 별개의

강으로 보고 국경이 두만강 이북에 있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분계강국경설(分界江國境說)이다.³³

이는 백두산으로부터 두만강과는 다른 수원에서 나와 만주 지역을 흐르다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분계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계비의 위치는 두만강 수원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정계비에서 이어지는 토퇴와 목축에 연결된 물줄기는 사실상 송화강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송화강은 청의 길림 일대를 감싸고 흑룡강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만주 일대가 그 안쪽에 포함된다. 따라서 두만강 북쪽의 영토 연구권을 주장할 경우에도 두만강 하류의 혼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한 조선의 영토는 두만강 북쪽의 일정 지역으로 한정되어야만 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북류하는 물줄기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무산~온성의 북쪽에서 두만강과 나란히 동류하는 해란강의 존재는 이 같은 인식에 확신을 주었다. 특히 이 주장이 함경도의 지방관을 지냈거나 이 지역을 답사한 인물들 사이에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분계강설이나 북방고토에 대한 인식이 그 지역의 회복을 실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만강을 건너 공광지대를 개간하고 정착한 주민들이나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내의 주민으로 파악하고 있던 지방관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논리로 굳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어윤중에게 두만강과 분계강 사이의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32 백두산 정계 이후 지역 개발에 대하여는 강석화(2000), 앞의 책, 제3장 1절 ‘인구증가와 개간지 확대’ 참조.

33 분계강 국경설에 대해서는 강석화(2005),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111~113쪽 참조.

수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분계강 국경설은 어윤중을 비롯하여 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간섭에 반발하고 있던 개화 관료들과 만국공법체제 하의 근대국가로 성장하려는 개혁 구상을 지니고 있던 고종을 자극하여 국경 설정의 모호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은 1880년대부터 청에 통상조약 체결, 사대 사행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통적인 조공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조공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청에 대한 조선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견하는 문익관 어윤중과 이조연에게 고종이 “사대의 범절은 성의껏 해야 하나 형식에 구애되어 백성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을 구레라고 하여 그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교한 것은 조선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³⁴ 또한 국경 문제가 제기된 후 청과의 감계 교섭 창구를 사대관계를 담당하는 예부(禮部)가 아닌 북양아문(北洋衙門)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도 조선이 더 이상 대청 관계를 화이질서 내에서 설정하지 않으려 하였음을 보여준다.³⁵ 조선의 태도 변화에 대해 청 내부의 반발은 거세었다. 특히 기존의 조청 관계를 직접 관리해 오던 봉천과 길림 지역 관원들의 저항은 더욱 강하였다. 조선의 통상 요구에 대해 성경장

34 조선은 1887년에도 貢道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에 改道를 요구하였으며, 1890년대 조대비 서거시에도 告訃使를 파견하지 않고 조선주재 총리통상사 원세개에게만 알리는 등 사대체제를 형해화시키고 있었다[서영희(2006), 『韓淸通商條約 이후 한중외교의 실제와 상호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3, 188~189쪽].

35 秋月望(1989), 「朝中勘界交渉の發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報』 132, 92~93쪽.

군 승기(崇綺)와 봉천부윤 송림(松林)은 중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래의 호시제도를 고수하고 변금을 강화하여 교역 왕래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하였다.³⁶ 「중강무역장정」 체결 이후에도 성경병부에서는 중강의 말 무역은 기존의 관례대로 시행한다는 찰문(札文)을 조선에 보내³⁷ 무역장정 체결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청의 고압적인 태도는 청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조선의 방침에 큰 장애가 되었다. 고종을 비롯한 일부의 인사들이 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대 개혁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러시아를 주목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원세개의 내정간섭이 심화된 이후 반청 성향의 정치세력에 의해 대표적인 친청파 관료로 지목되었던 어윤중조차 통상장정 체결 과정에서 보여준 청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주, 자강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윤중은 자신의 사적 견해를 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그의 의식이나 사고의 변화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여론에 대한 관심과 민중 친화적 태도는³⁸ 종성 부민들의 청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은 그동안 청에 눌러왔던 자강, 자주 의식을 더욱 고취시켜주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윤중은 백두산정계비문의 내용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두만강 이북의 개간지가 청의 영토가 아

36 김중원(1966),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 『역사학보』 32, 157쪽, 163쪽.

37 『高宗實錄』 권21, 고종 21년 2월 17일.

38 어윤중의 민중 여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한철호(1998), 「시무개화파의 개혁구상과 정치활동」,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67쪽 참조.

님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확신은 고종으로 하여금 이 땅을 확보하는 것을 국경 협상의 원칙으로 하여 청에 감계를 제의하도록 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의 국제감정(國界勘定) 제안에 대해 청은 월경 조선인의 쇄환을 독촉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1884년 5월 길림성 돈화현에서 토문강 북쪽 강변 개간지의 조선인 쇄환을 재차 요구하였다.³⁹ 이는 전 해에 황제의 특지로 쇄환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다. 1885년 봄에는 혼춘 아문에서 토문강 경계를 사사로이 경작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관병을 파견하여 단속하겠다고 통보하고, 무산에서 종성부에 이르는 두만강 연강 일대의 조선인 농막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⁴⁰ 이에 조선은 재자관을 파견하여 청에 공식적으로 감계를 요청하는 자문을 전달하였다.⁴¹ 1885년 7월 청이 토문 감계 문제로 관원을 파견한다고 통보하였다. 조선은 안변 부사 이중하를 토문 감계사로 임명하고 교섭아문 주사 조창식을 감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⁴² 이로써 조청 간의 1차 감계 협상(乙酉勘界)이 시작되었다.

청은 총리아문의 주의(奏議)에 따라 청과 조선의 동쪽 경계는 도문강, 즉 두만강이며 감계의 주목적은 도문강 강역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협상에 임하였다. 조선의 협상 원칙은 분명하지 않으나, 어윤중의 보고를 기초로 ‘두만강 이북 분계강을 국경으로 설정하는 것’

39 『高宗實錄』 권21, 고종 21년 5월 14일.

40 『勘界使摺錄』 上, 乙酉 4월 9일~4월 18일, 「按撫營 報告」(『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18~123쪽).

41 『高宗實錄』 권22, 고종 22년 4월 20일, 4월 21일.

42 『高宗實錄』 권22, 고종 22년 7월 30일.

이 기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하는 백두산 정계 때에 조선과 청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정하였으므로 감계는 백두산정계비를 탐사하여 토문강이 양국의 경계임을 재확인하고 토문강의 근원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였다. 청은 두만강과 토문강(도문강)은 동일한 강이며, 감계는 무산 서쪽 강 상류의 흐름이 분명하지 않은 곳을 확정하기 위해 두만강 수원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고집하였다. 결국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청이 두만강 수원으로 지목한 서두수와 홍단수, 그리고 조선이 두만강 수원이라고 지목한 홍토수를 거슬러 올라가 백두산정계비를 사감(査勘)하기로 하였다. 약 1개월에 걸쳐 정계비와 부근의 지형, 퇴석의 흔적까지 조사한 뒤에도 청은 백두산 정계에 대한 청측의 증거 문서가 전혀 없으며, 정계비를 조사하는 것은 총리아문에서 결정한 도문강 사계(査界)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조선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이 지목한 토문강이 두만강과는 전혀 무관한 북류하는 물줄기라는 점을 들어 조선이 청의 강역을 침범하여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었다. 결국 감계 협상은 결렬되었다.⁴³

협상 과정에서 이중하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입장에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 조항을 청에 주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토문강원이 두만강이 아닌 분계강에 이어지는 물줄기임을 백두산 정계 당시의 경계 표시 흔적을 근거로 확인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토문강으로 지적한 물줄기는 송화강으로 흘러드는 것으로서 두만강은 물론

43 1차 감계 협상의 쟁점과 과정은 『勘界使謄錄』上, 「啓草」와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87~192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계강과 이어지는 경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토퇴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목책을 설치하였다는 곳은 전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에서는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토문강을 국경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 조선측의 저의를 의심하였다. 청을 설득시켜 조선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목극등이 정계비를 설립할 당시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중하의 북병영에 보관되어 있는 「강희임진정계등록(康熙壬辰定界謄錄)」을 통해 백두산 정계 당시에 두만강을 경계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변사(備邊司) 관문(關文)에 ‘토문강은 화음(華音)으로 곧 두만강’이라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⁴⁴ 그는 추후 별단을 올려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조선은 감계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4 『土門勘界』, 「追後別單」(『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3쪽) “其後穆克登出來定界, 而伊時事蹟, 俱在於北營, 康熙壬辰定界謄錄中是自乎所, 其時往來之路, 論難之語, 專以豆滿江爲限是自遣, 備邊司關文有曰, 土門江華音卽豆滿江, 以此知悉次, 推此一句, 豆滿爲界, 又分明是自齊.” 『土門勘界』는 1885년과 1887년의 감계회담 자료를 모아 편집한 것으로 편자와 연대를 알 수 없으나 판심에 ‘외부’라고 인쇄된 것으로 보아 외무아문이 외부로 개칭된 1895년 이후 편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강석화(2005),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해설]. 이 가운데 「別單草」는 을유감계 이후 이중하의 별단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서술된 것으로 보아 「追後別單」 역시 동일 시기에 이중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5 이중하가 「追後別單」을 올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1885년 12월 이중하의 감계 보고 직후 영의정 심순택이 원세개에게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조희를 보냈다[하원호(2006), 앞의 글, 18쪽]. 청은 1886년 2월 재감계 원칙을 통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선의 답변은 그 해 9월에야 나왔다. 이 때 김윤식은 두만강과 토문강을 동일한 강으로 인정하고, 별도로 관원을 파견하여 답감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중하의 추후 별단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차 회담이 결렬된 후 청은 1886년 봄에 원세개를 감계 교섭 창구로 하여 재감계를 요구하였다. 원세개는 조선의 주장에 따라 경우 길림 현이 조선 경내에 편입되므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으나, 유민 문제는 조선이 청 황제에게 요청하여 ‘차지안치(借地安置)’하는 방안도 있음을 시사하였다.⁴⁶ 같은 해 9월 원세개는 재감계를 위한 관리 파견을 재차 요구하는 조회를 보냈다. 이에 대해 외무독판 김윤식은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른 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감계를 위해 따로 관리를 파견할 필요는 없다는 변화된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⁴⁷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뒤 청과 마찰을 야기하는 감계 협상을 중단하려 하였던 것이다. 감계 중단을 원하는 김윤식의 회담에 대해 이홍장은 변계를 획정한 뒤 조선 유민의 편적을 서두르도록 거듭 지시하였다. 결국 조선도 재감계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⁸

재감계가 확정된 뒤 조선은 협상 원칙을 재조정하였다. 2차 감계에 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만강 수원을 확정하는 일과 두만강 이북에 정

46 『統署日記』 1, 고종 23년 丙戌 3월 23일, 이 시기 월강조선인에 대한 ‘借地安民’ 방안에 대해서는 秋月望(1989), 앞의 글과 하원호(2006), 앞의 글 참조.

47 『李鴻章全集』 電稿 1, 光緒 12년 9월 27일. 조선측의 답변이 늦어진 것은 추후별단 이후 조선의 입장 재조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외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윤식의 거취 문제도 답변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신정변 이후 원세개를 내세운 청의 정치적 압력에 반감을 갖게 된 민씨 척족세력이 김윤식을 친청파로 몰아 정계에서 축출하려 하였다. 그 결과 1886년 4월 김윤식과 어윤중이 박영효의 부친인 박원양의 장례를 지낸 사실로 탄핵을 받아 사임하고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김윤식은 원세개의 도움으로 10월부터 외무독판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었다[한철호(1998), 앞의 글, 70~71쪽 참조]. 그러나 그 사이에도 김윤식은 원세개와 만나 국경감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8 『統署日記』 1, 고종 23년 丙戌 10월 22일 ; 秋月望(1989), 앞의 글, 97쪽.

주한 조선 유민을 쇄환하는 일, 두 가지였다.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확인한 이상, 두만강 상류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원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직접 발원하는 강이 아니다. 두만강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곳으로부터 100여 리 떨어진 곳에서 발원하는 홍토산수와 무산고원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는 홍단수, 서두수 등의 물줄기가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따라서 무산 내지를 흐르는 서두수와 홍단수를 수원으로 정할 경우 무산 일대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백두산정계비에서 동쪽 경계라고 지정한 토문강원과 두만강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조선은 회담의 쟁점을 두만강 발원처를 찾는 것으로 바꾸되, 백두산 정계당시에 토문강이라고 지적하고 계한을 표시하기 위해 쌓은 토퇴의 흔적에서 가장 가까운 홍토산수를 두만강의 수원으로 지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된 뒤에는 강 이북의 월간 조선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김윤식은 원세개가 제시한 ‘차지안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차 회담이 열리기 전인 1887년 2월 김윤식은 원세개를 만나 ‘차지안민’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두만강 이북이 청의 영토임을 인정하되 월간 조선인의 정주를 허용하고 육진 지역에서 수세 대행권과 소송,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⁴⁹ 김윤식이 원세개의 차지안민 제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두만강과 토문강이 동일한 강임을 확인한 뒤 조선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49 『李鴻章全集』電稿 1. 光緒13년 2월 13일 ; 秋月望(1989), 앞의 글, 98쪽.

19세기 말 월경 조선인의 문제는 청나라와의 사이에서만 제기된 외교 안건이 아니었다. 두만강 일대 주민들의 월경 이주는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1870년대부터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쇠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⁵⁰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월경 조선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일은 없었다.⁵¹ 러시아는 1883년부터 우수리스크 변강주 내로 이주한 조선인을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있었으며 1884년에 조선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까지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조선인을 사실상 러시아 국민으로 받아들였다.⁵² 조선은 원칙적으로 월경 조선인을 쇠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인 쇠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 영내로 이주한 조선인 문제의 해결 방안은 러시아와의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1870년대 이후 조선은 두만강을 건너 이주한 조선인에 대한 쇠환 조치를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실효를 보지는 못하였다. 쇠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다시 강을 건너 이주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⁵³ 이는 개간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월경 조

50 1870년에 러시아와 청의 국경지대를 탐문하였던 길림아문에 의해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의 쇠환문제가 제기되었던 일이 있었다. 『승정원일기』 2749책, 고종 7년 3월 23일;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 2, 「禮部陳會逃越俄界民人飭令本國邊界官領回奉土諭咨」(『동문회고』 4, 3368쪽).

51 송금영(2004),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정책(1860~1905)』, 국학자료원, 155~164쪽.

52 A. I. Petrov (2008), 「극동지역의 한인들과 러시아 국경통제 문제」,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창립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157쪽.

53 감계사 이증하의 조사에 의하면 1877년에 간도 일대의 월경민을 쇠환하는 조

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개간지에 정착하려는 조선인들의 열망은 청과 러시아의 국경 협상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86년에 두만강 하류의 러시아령 포시에트 지역을 둘러싸고 청과 러시아의 국경 재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때에 러시아 소속의 조선인 거주지인 사벨로브카가 청의 영토로 판명됨에 따라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귀속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조선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청의 관할에 편입되는 쪽을 선택하였다.⁵⁴ 이는 월경민의 쇠환이 사실상 어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당시 조선 정부에 알려졌는지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경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과 러시아의 국경 협상은 조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윤식은 조선인을 쇠환하는 대신 개간지에 그대로 정착시키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또한 구래의 대청 관계에 기대어 청의 은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윤식의 차지안민책은 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세개는 수세와 정령 관할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⁵⁵ 결국 조선은 유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2차 감계에 임하게 되었다.

감계사로 재임명된 이중하는 1차 협상 때와 달리 감계의 목적이 ‘옛

치가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국경을 넘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勘界使臚錄』上,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1~192쪽)].

54 A. I. Petrov(2008), 앞의 글, 156쪽.

55 秋月望(1989), 앞의 글, 98쪽.

경계를 다시 밝히고 유민을 찾아 안착시키는 일'임을 확인하고, 상소를 올려 옛 경계가 수원과 일치하지 않은데다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는 또 유민 쇠환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아 어렵지만 쇠환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의 토지를 차지(借地)하여 그대로 정착시킬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이 역시 난관에 봉착하였다며, 묘당에서 도지(圖誌)를 통해 옛 경계를 확인하여 유민을 안착시킬 지역의 경계를 충분히 토의하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⁶ 협상 원칙이 분명히 수립된 후에 감계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2차 감계(丁亥勘界)는 1887년 4월에 시작되었다. 이증하는 기존의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른 강이라는 주장의 잘못을 시인하고 감계의 목적이 구계(舊界)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이라고 지적한 수원과 두만강이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하여 비를 더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또 백두산정계비가 두만강 수원이 아닌 토문강 수원에 세워지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비록 잘못이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결정된 국경을 인정하고 목극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서 설치한 옛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홍토산수를 경계로 정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청은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는 조선인이 옮긴 것이고 토퇴와 목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청에는 없으며 백두산정계비는 변경 지역을 조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정계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조선을 압박하였다. 청은 두만강 수원에 대해서도 조선 내지에서

56 『高宗實錄』 권24, 고종 24년 3월 4일. 이증하가 감계사로 재차 임명된 것은 1월 16일이었다(『高宗實錄』 권24, 고종 24년 1월 16일).

발원하는 서두수를 지목하였다. 이중하는 서두수와 홍단수는 조선 내 지인 무산 경내에서 발원하는 것이므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계비 건립 당시의 정황과 합치하는 것은 토퇴가 끝나는 곳과 가장 가까운 홍토산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선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청은 홍토산수의 지류인 석을수를 지목하여 두만강 수원으로 삼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중하와 길림 파원은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상을 그림으로 그려 총리아문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⁵⁷

2차 협상에서도 경계를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유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 이중하는 감계 협상 과정에서 양국 모두 조선 유민 문제의 해결책으로 ‘차지안삽(借地安插)’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은 김윤식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인의 정착을 허용하는 것이 길림 지역 개간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 없으며, 조선에서는 쇠퇴가 불가능한 주민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하는 조선으로서 백성을 잃는 일이므로 권도(權道)의 방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다행으로 여길 일은 아니라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다.⁵⁸ 그는 협상이 진행

57 2차 감계의 쟁점과 과정은 『勘界使謄錄』 下, 「啓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251~253쪽)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58 『土門勘界』,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5~196쪽). “但年來邊民, 以彼岸一帶之地, 依爲性命, 若一朝斷絕, 則其勢猝難支保, 故彼此之議 皆以借地安插爲計矣. 臣於今行, 屢議華員, 則其意亦以借安爲主, 此在吉林, 誠不害爲招民墾荒, 而我國則實是失民之尾閭穴也. 寧不得已權宜行之, 斷不可以此爲幸.”

중인 두만강변 현지에서 조선인의 월경 행위가 여전히 활발한 것을 목도하고 변경지대의 공지화 현상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월경을 단속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⁵⁹ 그러나 감계 협상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현지의 조선인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중하는 조선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길림 파원에게 유민 안접 장정을 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길림 파원은 안접 장정은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조정에서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 청인이 월간 조선인을 침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⁶⁰ 이로써 2차 감계 협상도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1888년에 청에서 또 다시 감계를 요구하는 자문을 보내었으나 이후 감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⁶¹

59 『勘界使臚錄』上,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2쪽).

60 『勘界使臚錄』下, 「啓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253쪽).

61 일반적으로 1888년의 감계협상은 이중하의 지연 요청으로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시 감계사로 재차 임명된 이중하는 감계 문제로 오고가 는 사이에 6진읍의 피해가 크니 환국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을 뿐 감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였다(『高宗實錄』 권25, 고종 25년 3월 11일). 고종이 국경을 획정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자 내무부는 감계문제를 이미 移咨하였으니 회신을 기다렸다가 조치하겠다고 하였을 뿐 감계에는 응하지 않았다(『高宗實錄』 권25, 고종 25년 5월 17일). 『照會談草』 무자년(1888) 기록(『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290~199쪽)에도 청의 감계 요청 조회는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선측의 답변은 실려 있지 않다.

4. 1880년대 감계 협상의 성격

감계 협상 과정에서 국경 문제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분화되었다. 감계 문제가 제기되었던 1883년 당시의 육진 주민을 비롯한 함경도 지역민과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어윤중의 분계강설에 근거한 국경 인식과 감계 협상 과정에서 동쪽 국경이 두만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변화된 김윤식, 이중하 등 중앙정부 관료의 국경 인식으로 나누어졌던 것이다.

육진 지역민들은 조선후기 이래의 분계강설을 수용하여 두만강 이북의 분계강, 즉 해란강을 조선의 국경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근거는 백두산 정계비의 문구와 정계비가 두만강 상류가 아닌 토문강 상류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었다. 또 북관개시를 마친 뒤 조선에서 청인의 물품을 두만강 건너편 분계강가까지 운송하던 관습도 근거로 제시되었다.⁶² 북관개시는 회령에서 열리는 단시(單市)와 회령·경원 두 곳에서 열리는 쌍시(雙市)로 나뉘는데, 단시년에는 청인들이 교역을 마친 후 회령부 서북쪽의 오산(龜山)과 오산 북쪽 두만강변의 오룡초(五弄草) 사이를 경유하여 귀환하지만, 경원개시가 열리는 해에는 회령에서 경원으로 가는 도중 짐을 종성에 보관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찾아 종성에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때에 청인들은 자신들의 짐을 강 건너 150리 거

62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6월 17일; 『勘界使臚錄』上, 「別單草」(『조·청 국경 회담 자료집』, 191쪽). 1차 협상 당시 이중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종성부에서 90리 떨어진 帽子山 아래까지 조선에서 물자를 운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청 관원을 압박하였다.

리에 있는 패가토(字加土) 지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중성부의 고질적인 폐막이 되었다. 따라서 1763년(영조 39년)에 개시 원칙을 개정하면서 월강하는 것은 피차의 대금법(大禁法)이므로 청의 정식(定式)이 없을 경우 허락할 수 없다고 청인들에게 알리고 폐습을 금하도록 규정하였다.⁶³ 그러나 이후에도 대국의 위세를 빙자한 청인의 압박에 의해 화물을 운반하는 일은 관례적으로 계속되었다. 이는 양국의 국경 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년 가까이 행해온 관습은 지역민들에게 이곳까지 조선의 관할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외에 「회령무역장정」 체결 후 청이 분계강 북안에 세관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도 분계강설을 주장하는 새로운 근거로 받아들여졌다.⁶⁴

육로통상장정 체결로 국경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두만강 대안의 개간지를 영토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 분계강 국경설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월강 이주도 증가하였다. 분계강 이남이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금하는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꺼렸던 사람들이 국경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이다. 또한 감계로 인해 개간지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주 현상을 부추겼다. 감계 협상을 주도하였던 이중하는 간도 지역에 중성민들이 들어가 개간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감히 드러나게 월강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1883년 교계를 논변한 이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

63 『會源開市定例』, 送歸. 북관개시의 귀환 절차에 대해서는 고승희(1997), 「조선 후기 북관개시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 134쪽 참조.

64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6월 17일.

리낌 없이 가족을 이끌고 월강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육진이 빌 지경이라며 월경 이주를 금할 것을 요청하였다.⁶⁵ 감계 논의가 지역 주민의 분계강 국경설에 확신을 주어 범월한다는 죄의식 없이 월경 개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윤중의 감계 요청 사실은 지역 주민의 월경 개간 욕구를 용인하고 지역 재정을 확보하려는 지방관들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2차 감계가 결렬된 뒤에도 회령과 종성에서는 월간 조선인에게 인표를 발부하여 징세하며 이 일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⁶⁶ 또한 감계 협상은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화파 관료들의 의식을 자극하여 국경 개척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884년 함경도 출신의 부호군 지견룡(池見龍)이 국경 개척과 둔전 확보를 시무(時務)로 규정하고 분계강 이남을 영토로 확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러시아와 청이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러시아가 1천여 리의 영토를 확보한 사실을 거론하며, 세계 각국이 교섭하는 시대에 조선만 가만히 앉아서 영토를 잃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 열강은 부강한 나라인데도 토지를 넓히는 데 힘써 국력을 키워간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계강 이남 지역을 확보하여 개척할 것을 주장하였다.⁶⁷

1880년대는 개항 이후 자국적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부국강병을

65 『勘界使摺錄』上,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2쪽).

66 『咸慶道關草』 제2책, 己丑(1889) 3월(『각사등록』 42, 419쪽); 『承政院日記』, 고종 26년 7월 8일.

67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6월 17일.

우선적인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열강과 통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경주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부 관료들 사이에는 근대적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으며,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배타적 주권 영역으로서의 국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그 같은 인식의 저변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 확장 노력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러시아가 새로운 접경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과 러시아의 영토 분할 사실은 조선에 국경 재설정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북방 경계, 즉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연결하는 국경에 대해 재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다.

분계강을 국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계 협상을 직접 담당하였던 실무 관료들은 북방 국경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감계의 목적이 ‘구계(舊界)를 확인하여 본지(本地)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감계 문제는 어윤중이 지역 주민의 말만 듣고 형편을 확인하거나 문헌을 상세히 살피지 않아 시작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⁶⁸ 이에 따라 2차 감계 협상에서는 정계 이후 확보한 영역을 고수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바꾸었던 것이다.

조선이 국경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국경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청은

68 『土門勘界』,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6쪽), “此事本經略使臣魚允中之北行也, 聽一二居民之言, 送人搨來碑文後, 更不詳攷文獻, 周察形便, 遽謂豆滿江北是我地, 乃自製民狀, 使鍾城民人呈于鍾城府使, 遽民狀照會于敦化縣, 彼此往復爭下.”

시종일관 조선이 제시하는 증거를 불신하며 조선 내지의 수원을 국경으로 정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조선을 속방화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화하려는 의도와 달리 조선이 만국공법체제에 근거하여 국경 문제를 제기한 것이 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북방지역에 대한 근대적 영토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청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속방인 조선이 국경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대외적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조선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만주지역 지방관들은 조선의 태도를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따라서 감계 회담 과정에서 길림장군 아문은 줄곧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다.⁶⁹ 경계 획정 문제가 자신의 관할지역에 입거한 조선인의 처리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개간지를 둘러싼 길림 아문의 대결의식은 더욱 강고하였다.

조선이 국경 획정의 근거로 제시한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 주장과 정계비 동변의 국경 제한의 흔적이 송화강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조선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조선에서 경계라고 주장하는 토문강은 실제의 토문강이 아니라 일정 지역 북류하다 방향을 틀어 동류하는 가상의 강이었다. 이는 두만강 북쪽의 일정한 지역을 포괄하며 다시 두만강에 합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토문강이었다. 그러나 청의 입장에서 볼 때, 분계강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정계비가 지적하는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 중 하나

69 이중하는 감계회담에서 청이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길림장군의 誣告 때문이라고 보았다[『土門勘界』, 『別單草』(『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95쪽)].

인 오도백하(五道白河)의 상류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길림 지방 전체를 조선의 영토라고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다.⁷⁰ 따라서 이중하의 논리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은 정계비 가짜설, 이동설 등을 들어 비난리적으로 대응하며 강국의 우월성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청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철저히 사실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정계비 건립 당시의 불명확한 두만강 수원을 확인하여 그동안 조선이 개척한 북방 내지를 완전하게 보존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자신의 영토 주권을 지키려는 근대적 영토 인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영토 인식과 외교적 대응 태도가 청의 내정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1880년대 감계는 청의 내정간섭으로 조선에 불리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조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감계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감계 문제는 청의 내정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먼저 제기한 것이며 청의 감계 요구에도 분명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응하였다. 청의 위협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두 차례의 감계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청이 먼저 감계를 재요청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는 근대적 국가로서의 조선의 외교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경 문제를 근대 국제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래의 대청 관계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방법론적 한계도 드러내었다. 유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차지안민’책은 결국 조선의 요청에

70 『統署日記』 1, 고종 23년 3월 23일,

대해 청이 은전을 베풀어주리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청의 지원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당시 지배집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⁷¹ 이 같은 이중성은 분계강설을 주장한 지견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견룡은 백두산 아래 분수령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한 것은 청나라이므로 조선이 까닭 없이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선 백성이 들어가 경작하는 것이 신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청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던 러시아도 영토를 확보하였으니 청과 오랜 의리를 지켜온 조선이 간청한다면 정의상 냉담할 수 없을 것이며, 청으로서는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땅을 떼어 주는 것이므로 손해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또 청이 대 러시아 방어를 위해 훈춘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시기에 개간지에서 군사를 양성하여 도와준다고 협상한다면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적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분계강 이남의 영토 확보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또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간과하였던 것이다.

1880년대 당시 지식인들은 자국의 국경을 어디로 보는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적 대청관계에 기대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였다. 종속관계에서 탈피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자립하려는 의지가 국경 담판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협상 전략에 있어서는 기존의 양국관계에 의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시 조선 지식층이 근대국가로의 변모를

71 김윤식을 비롯한 1880년대 전반 친청세력의 개화정책에 대해서는 한철호(1998), 앞의 글 참조.

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근대화, 의식의 근대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맺음말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문제는 1880년대 초 두 나라가 중화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 형식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선은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과 서양세력의 개항 요구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사대관계를 근대적 통상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에 통상장정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에 대한 기존의 종주권을 재확인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화하려는 청의 의도에 의해, 속방 조항이 명시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로 귀결되었다. 자주국으로서의 면모는 오히려 후퇴되었으나 조선은 기존의 대청 관계 틀 속에서 부국강병을 추진해 나간다는 근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내정간섭을 통해 드러난 청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단계적, 점진적 근대화의 과정을 선택한 조선의 반청의식을 자극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감계 협상은 조선과 청의 근대국가 추진 전략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감계 협상의 직접적 발단은 육로통상장정 강정을 위해 현지 답사를 하던 중 두만강 월변 조선 이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인 어윤중에 의해 제기된 국경 사감(査勘) 요구였다. 조선후기 이래 확산된 분계강국경설

을 근거로 두만강 월변지대를 개척하고 정주한 육진 주민들은 청의 배타적인 영토 지배권 행사에 반발하여 자신들의 개간지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정확한 지리 지식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으나 자국 영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조선은 국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史實)을 확인하고 조선후기 이래 확보한 두만강 이남의 영토를 확고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감계 협상 원칙을 수정하였다. 또한 증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성숙한 외교적 대응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만국공법체제하의 자주국가로서 국제관계를 운영하려는 근대적 정치의식의 발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적 중화질서하에서 지속되어 온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청의 은전에 기대어 유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근대적 자주국가로서의 의식이 완전히 내면화되지 못한 미숙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근대적 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만주 지역의 지배체제를 변혁하고 있던 청은 조선의 감계 요청을 양국간 영토 주권의 마찰이라기보다는 속방국의 이탈 위기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조선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협상을 결렬로 이끌고 말았다.

1880년대에 조선과 청 사이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계 협상은 청의 내정간섭을 받는 가운데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조선이 근대 국민 국가의 요건인 영토 주권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동시에 전통적 사대관계에 의지하는 전근대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는 자주적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던 조선이 1880년대에 도달한 근대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은 정 태 (역사문제연구소)

한민족문제연구소

한민족문제연구소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한국인들에게 ‘간도 문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청국에게 넘겨주었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일본의 만주정책 속에서의 간도’라는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생산한 자료가 적극 이용되었다. 그러한 관점은 일본의 조선·만주 침략정책 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시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도 문제’의 주체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명되지 않는 문제가 눈에 띈다. 즉, 대한제국은 ‘간도 문제’를 왜, 어떻게 접근하였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간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하지만,¹ 우선 전제할 것은 ‘간도 문제’는 고종대에 비로소 제기된 근대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1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한철호(2004), 「근대 한중 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이성환(2006), 「간도 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76 ; 김종진(2007),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東北亞歷史論叢』 18 ; 배성준(2008), 「한·중의 간도 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東洋學』 43 참고.

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고조선 이래의 역사적 연원이거나 17세기 조선 정계비의 함의를 ‘간도 문제’ 제기의 중요한 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자체가 ‘간도 문제’의 출발은 아니다. ‘간도 문제’의 출발은 조선후기 이래 비워두었던 곳에 고종대에 접어들어 조선인과 청국인이 거주하면서부터이다. 그곳이 비어 있는 한 영토 문제로서의 ‘간도 문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자, 이들과 이들이 개간한 토지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했던 것이 1880년대 이래의 ‘간도 문제’였다. 따라서 ‘간도 문제’는 근대의 현상이었다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간도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대한제국이 취한 간도 정책의 성격을 ‘제국’의 영토 정책과 이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식민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² ‘제국성’과 관련된 대한제국의 성격 논의나 한국의 영토 민족주의의 기원 혹은 한국인의 청(淸)국관에 대한 논의에도 제국의 ‘식민화’라는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를 이어서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추진 주체 간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간도 정책 추진의 내외적 조건으로, 1880년대 감계 협상 논리의 극복 과정과 함께 의화단 사건으로 비롯된 간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라 ‘간도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간도 정책 추진에는 내부와 외부로 비롯한 중앙정부, 간도관리사·변계경무서·진위대 등 현지 지방관 등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간도 문제’의 대처

2 은정태(2007), 「대한제국기 ‘간도 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 참고.

를 두고 상당한 인식상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각각 내부(內部)와 외부(外部)가 이를 대표하였는데, 내부가 적극적이었다면, 외부는 소극적이었다. 갈등은 간도 현지에서도 드러나, 내부를 통해 파견된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외부의 지휘를 받던 변계경무관과의 갈등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대한제국이 간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1902~1904년까지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간도 정책 추진 구조를 밝히면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배경이나 그 논리의 접합 지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도 정책의 내외적 조건과 추진 주체들간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면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으며 추진 세력들이 결코 단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간도 문제가 담긴 역사성에 대한 판단, 정보 공유의 미비, 러시아와 청국에 대한 상이한 인식의 흐름 등이 작용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국'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은 우선, 이범윤을 파견하기까지 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간도 정책의 논리와 내용이 어떻게 확보되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880년대 조선과 청국 간의 공식적인 감계 협상 결과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었는지 주목하였다. 아울러 한청통상조약과 의화단 사건이 '간도 문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화단 사건은 한청 국경선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간도 문제가 다시 전면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도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자였던 이범윤의 파견 및 사포대의 결성, 그 과정에서 현지 지방 관리들과의 갈등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재적 조건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간도 영유권은 직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주체들의 ‘간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현실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간도 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간도 문제’에 대한 각 주체들의 논(論)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물론 간도 관련 자료의 성격 때문이다. 참고한 자료는 『황성신문』 등의 신문류, 규장각 소장 of 대한제국 정부 자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이다.

2. 내부와 외부의 상반된 접근

1) 1880년대 감계 협상의 결과와 오삼갑 상소와의 거리

1883년 경략사(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보고로 촉발된 ‘간도 문제’는, 조선과 청국 양국이 1885년과 1887년 두 번의 감계 회담을 통해 두만강을 양국 경계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현지인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제기한 어윤중의 분계강 경계설을 포기한 조선 측의 입장 전환에는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의 보고가 결정적이었다. 분수령 위의 토문강이 실지로는 송화강으로 이어지며, 목극등(穆克登)이 정계할 때는 그것을 두만강 원류라 간주했으며,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는 목극등이 돌아간 지 몇 년 후에 공사를 하여 정계비 동쪽에 토퇴와 석퇴를 깔기도 했다고 고종에게 보고하였다.³ 당시 외아문

독판 김윤식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외아문(후일 외부)의 일관된 논리가 되었다.⁴

당시 조선과 청국은 간도 지역을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해 나가는 데 각기 어려움이 있었다. 청국은 백두산정계비가 영토 획정을 명기한 비석이 아니라거나 이를 누군가가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정계비가 말하는 ‘서로 압록, 동으로 토문’이라는 텍스트의 효과를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곧, 청국으로서는 백두산정계비의 존재가 약점이었고, 이를 보완하는 논리로 토문=두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경우에는 정계비를 정계의 근거로 하면 송화강 이남이 모두 조선 땅이 되고 만다는 청국의 지적에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백두산정계비 동쪽으로 토퇴와 석퇴 및 목책이 이어지는 토문강은 이른바 분계강과는 실제 무관하였다.⁵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는 급변하였다. 모든 외교

3 『土門勘界』(奎 21036), 「追後別單」.

4 김윤식(1960), 『續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579~580쪽. “지금 遺跡을 살펴보니 間島는 의당 본국에 속하여 이런 뜻을 禮部에 조회하여 중국인 관리를 파견하여 我國 관리를 踏勘審定하게 하였다. 우리 조정은 덕원부사 李重夏를 파견하여 무산에 가서 會同踏勘하였다. 이 영감은 무릇 다시 돌아와 會審하니 비로소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님을 알았다.” 실상 정계비를 설치할 당시에도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강역으로 확보하였다는 것을 정계의 성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덮어두고 말았다고 한다[강석화(2005),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인식」, 『한국사연구』 129 참고].

5 1880년대 조선정부가 주장한 紅土水說은 후일 일본과 ‘간도 문제’를 협상하던 청국에게 유리한 논거로 활용되었고, 반면 정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1904년 6월 양국 지방관 차원의 韓中邊界善後章程은 후일 간도협약을 앞두고 있었던 청국의 협상 관리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곧 정계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1887년 丁酉勘界에 참여했던 청국 관리의 후일의 논란을 우려하여 정계비를 없앨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독립신문』 등에서는 문명론에 기초하여 청국을 멸시하는 시각의 논설과 기사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의 출범 전후에는, 『공법회통(公法會通)』에서 언급한 분쟁지 해결의 원칙에 따라 ‘간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의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하였다.⁶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찰사의 자발적인 보고로 보이는데, 이는 ‘간도 문제’를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영토 문제로 접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도 문제’가 아직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80년대 외아문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실 인식과 주장이 나와야 했다.

첫 시작은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함경도 거주 현지인들이 알렸다. 1898년과 1899년 간도 주민들을 보호할 관리의 파견과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청국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종성(鍾城) 유생 오삼갑(吳三甲)의 상소문은 대한제국 정부 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제국이 주청공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오삼갑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1898년 8월 31일에 1차 상소를 올렸다.⁷ 이 상소가 처리되는 과정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오삼갑의 상소가 고종에게 올라가자 고종은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품처(東處)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의정부에서는 회의를 거쳐 표제 다수(可)하다는 의견을 모아 고종에게 다시 상주하였다. 이에 고종은 의정

6 金魯奎, 『北輿要選』; 宋教仁(1909), 『間島問題』, 432~433쪽 참조.

7 『經議疏本存案』(奎 17233).

8 『通牒』 3책(奎 17822); 『議政府來去文』 6책(奎 17793); 『皇城新聞』 1898년 9월 6일 잡보 派官護民; 1898년 10월 20일 別報.

표 1 『光武 2년 9월 23일 의정부회의 - (안건 : 前 副護軍 吳三甲 등 상소, 批旨 : 疏辭令政府稟處事)

의정		공석
참정	尹容善	외부로 하여금 該員을 불러들여 논의 후 조치
궁내부대신	李載純	불참
내부대신	李根命	병으로 불참
외부대신 서리	朴齊純	定界 문제는 이미 몇 년 전에 파원하여 勘定한 일이 있으므로 지금 갑자기 조사를 요청하기 어려우며 백성을 위무하여 불러들이는 일은 시행할 수 있음(定界一款 已有年前派員勘訂 則今難卒然請查 至於撫民招集 事屬可行)
탁지부대신	閔泳綺	定界 문제는 몹시 신중해야 하며 파원하여 진무하는 것은 긴급한 임무이니 외부에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할 듯함(定界一款 大加審慎 派員鎮撫 係是緊務 自外部附協商 恐宜)
군부대신	沈相薰	병으로 불참
법부대신	申箕善	과거의 경계는 확증할 수 없으나 갑자기 강역을 넓히는 일을 논의하기 어려움(舊界未得確證 恐難遽議拓疆)
학부대신서리	高永喜	감계는 중대하므로 갑자기 논의할 수 없음(勘界重大 不可遽議)
농상공부대신	李道宰	사신을 변경으로 보내어 우리 백성을 쇄환하는 것이 옳음(派使行邊 刷還吾民爲可)
찬정	徐正淳	병으로 불참
찬정	李鍾健	갑자기 논의하기 어려움(猝難議)
찬정	閔丙奭	일을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외부와 내부로 하여금 널리 의견을 물어 헤아려 보는 것이 마땅함(事係難辦 先令外部內部 博採物議 妥商爲宜)
찬정	李允用	불참
찬정	金明圭	외부로 하여금 각별히 헤아려 보게 하는 것이 옳음(使外部 另行商妥爲可)
참찬	權在衡	먼저 외부로 하여금 該員을 불러들여 그 便否를 깊이 살펴보고 다시 널리 의견을 구한 후에 좋은 계획에 따르는 것이 옳음(先令外部 招致該員 爛商便否 更加博採物議 然後從長計劃爲可)
進參 10인, 不參 5인 / 可 8, 否 2		

부의 의견대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다시 내렸고, 의정부는 오삼갑의 상소의 처리 방향에 대해 9월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0명의 참석자 가운데 8명이 가(可)표를 던졌다. 대체로 파원감계(派員勘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으로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였다. 외부와 내부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구하되 특별히 오삼갑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하라는 요구였다. 다만, 관리를 파견하여 간도민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로서도 자국민의 보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⁹ 이를 놓고 볼 때, 파원감계는 쉽사리 국정의 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외부대신 박제순의 발언인데, 감계사 이중하의 활동을 상기하면서 그 일로 실상 감계는 종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는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게 된다.

의정부 회의 결과에 따라 오삼갑의 상소에 대해 조치하라는 의정부의 조처에 대해 외부는 11월 1일의 회답에서, 오삼갑이 주장하고 있는 분계강설에 대해 강력하게 논박하였다.¹⁰ 1885, 1887년 감계사 이중하가 청국 파원과 감계한 결과, 우선, 두만강 토문은 동강이음(同江異音)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두만강 발원처가 양국의 국경이지만 당시 어느 수원(水源)으로 할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는데, 새삼

9 오삼갑의 상소가 논의된 이날 의정부 회의에는 海蔘崴(블라디보스토크)에 보호 관리를 파견해달라는 경흥 幼學 趙致龍의 상소문도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可표를 던졌다.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12월 9일 해삼위에 통상사무관을 설치하는 칙령이 반포되었다[『各部請議書存案』 9책(奎 17715) ; 국회도서관 편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 427쪽].

10 『外部來文』 2책, 奎 17770.

스럽게 두만강 북쪽에 별도의 토문강이 있다는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은 앞 시대의 오류를 답습하는 것으로 전혀 실상을 모르고 올린 해망한 상소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중하의 계본(啓本)과 별단(別單)에 근거하여 오삼감의 상소에 몇 가지 지리 정보의 오류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외부는 전후 관계를 알고 있는 국왕 고종의 뜻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의정부에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이때 올린 오삼감의 상소는 이중하의 감계 보고에 근거한 외부의 논리로 인해 정부 내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하였다. 외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분계강설과는 다른 논리와 세력이 나와야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토문강-송화강 경계설이었고, 그 계기는 한청 통상조약이었다.

2) 한청통상조약과 ‘간도 문제’

한청통상조약은 1899년 1월 국서 봉정식을 위한 예비회담부터 시작하여, 1899년 9월에 체결하고, 12월에 비준 교환되었다. 조약안 마련을 위해 모두 8차례의 공식회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간도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것은 1~3차 회담과 8차 회담에서였다. 이미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서는 1899년 1월말 청국 전권사신 서수봉(徐壽朋)의 도착을 알리면서, 청국과의 국경선 획정이 중요한 안건의 하나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바로 이때 ‘치관진민(置官鎮民)’을 주장하는 오삼감의 2차 상소가 외부와 내부에 각각 올라왔다.¹¹

외부는 앞서와 다름없이 “국경선 획정은 과거 감계사가 고금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산수 형편을 답사 조사하여 이미 수차 국왕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다만 ‘안민(安民)’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을 주었다. 그런데 내부의 반응은 이와 전혀 달랐다. 내부는 “경계의 획정이 몹시 신중한데, 지금 민소(民訴)에 의거하여 바로잡을 수는 없으므로, 이에 훈령하니 양국이 땅을 접하는 연계(沿界)를 각 군수 가운데 전고(典古)에 익숙한 자를 뽑아 보내어 정계비가 드러난 지형을 살펴본 후 보고하게 하고, 또한 노인들의 전설(傳說)과 연변 각읍의 지지(地誌) 중 근거할 만한 문적을 다시 널리 찾아 소상히 적어 속히 보고하라”고 함경북도 관찰사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내부대신은 이건하(李乾夏)로서, 정부 내에서 큰 반항을 얻지 못할 것 같던 오삼갑의 상소가 한청통상조약 협상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내부의 지시를 받은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은 경원 부사 박일헌(朴逸憲)을 사계파원(查界派員)으로 정하고 관찰부주사 김응룡(金應龍)을 함께 보내어 그 해 4월부터 한 달간 현지 조사(백두산정계비, 분계강원(分界江源), 산세, 수류, 간도)를 하게 하였다.¹² 이윽고 6월에 함경북도 관찰사가 내부에 정계비의 탁본과 지도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박일헌과 김응룡이 조사한 최대 성과는 분계강이 토문강과는 무관하며, 토

11 『外衙門日記』(1899년 2월 21일자)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편, 664쪽; 『時事總報』 1899년 3월 2일 잡보 祖宗疆土.

이건하는 1902~1903년 동안 이범윤의 간도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北興要選』(1903)에 서문을 쓰면서 토문강 곧 송화강 이남은 곧 대한제국의 관도라고 하였다.

12 『北興要選』, 「查界公文攷」; 『時事總報』(1899. 6. 24 잡보); 『독립신문』(1899. 6. 26 잡보).

문강은 송화강과 합류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간다는 분명한 지리 정보를 제공한 점이다. 분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간 이와 같은 답사는 처음이었다. 이를 계기로 후일 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간도 문제’를 언급할 때 분계강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신 토문강-송화강-흑룡강 경계론이 강하게 대두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1897년 조준우의 보고서에는 토문강 이동과 증산 이남이 한국 영토라는 경계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1899년 이종관의 보고서를 보면 답사를 바탕으로 두고 백두산정계비의 문면을 그대로 해석하는 경계론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9년의 보고서는 한청통상조약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백두산정계비의 비문과 지세를 근거로 최대치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¹³

내부 차원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의정부 차원에서도 ‘간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해 4월 18일 의정부는 오형섭(呂衡燮)과 오삼갑의 상소를 거론하면서 참고한 근거와 진술 및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전말 등을 고려할 때 완전히 가공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한청통상조약 협상 시 ‘파원감계(派員勘界)’ 조항을 둘 것을 외부에 요구하였다.¹⁴ 외부는 당초 마련해두었던 ‘월간민 안업(安業)’ 조항에다 자신들의 뜻과는 다른 ‘파

13 『北興要選』에 있는 실린 채색지도와 이를 베낀 『朝鮮定界碑疆域略圖』(규 15504)는 이때 박일헌이 제작하여 보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분계강과 토문강을 분명히 구분하고 토퇴·석퇴·목책 등을 토문강-송화강으로 연결하고 있다. 반면, 1883년 경계문제가 불거진 이후의 여타의 지도들은 이를 구분하면 서도 토퇴·석퇴·목책 등을 애써 분계강으로 연결하거나 경우에 따라 두만강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4 『議政府來去文』 7책(奎 17793).

원감계' 조항을 반영한 초고를 준비하여 협상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청국측 '월간민 안업' 조항은커녕 향후의 '월간엄금(越鵝嚴禁)' 조항을 주장하였으며, 현재의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분명하므로 파원감계는 후일 육로통상장정 체결시에 논의하고 이번에는 반영하지 말자는 역제안을 하였다. 결국 외부는 '파원감계' 조항을 포기하는 대신에 '월간민 안업'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¹⁵ 이러한 타협은 후일 이범윤의 파견을 두고 '월간민 안업'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와 '월간엄금' 조항을 강조하는 청국 간에 조약문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 정부는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심화, 전통적 화이관의 변화 등을 매개로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갔다. 이때 내부는 보고 체계에 있는 함경도 지방관이나 현지 지식인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갔다. 그러나 외부의 원칙적 접근도 만만치 않았다. 1880년대 감계사 이중하의 보고와 원세개와 협상한 외아문독판 김윤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경계론을 일관되게 계승하려는 의지가 분명하였다. 그래서 현지인 보호정책 추진 정도가 외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면,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간도 문제'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1880년대 감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시기 두만강 국경설을 부정하는 여러 주장에는 1880년대 감계

15 은정태(2005),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歷史學報』 186, 44~45쪽.

협상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만강 경계를 합의하였고, 다만 무산부터 백두산까지 즉 두만강 상류 가운데 어떤 물줄기로 할 것인지만 미정이었다. 이러한 정보의 미공유 현상은 외부 내에서조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01년 2월 변계경무서를 설치할 당시 외부 내에는 두 가지 경계론이 있었다.

하나는 교섭국장(交涉局長, 당시 李應翼으로 1898. 4~1903. 7까지 재임)의 설로서, 즉 “지금부터 십수 년 전 어윤중이 경계획정위원(境界劃定委員)으로 청국 관리와 회동 상의할 때 간도는 옛날부터 한국 백성만 주거했던 곳이므로 한국 영토에 편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청나라 위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한청 양국 간에 왕복한 문서에 양국의 경계는 북쪽은 두만강,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삼는다고 기록한 일이 있다. 지금 간도의 위치를 보면 본류(本流)는 간도와 회령, 경성 두 군 사이로 흘러들고 반대쪽에는 겨우 한 가닥 지류가 있을 뿐으로 거의 육지와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청령(淸嶺)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외부대신(당시 朴齊純으로 1898. 10~1902. 9까지 재임)은 “이 섬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 주민이 고래(古來)로 한인(韓人)이었을 뿐 아니라 청국으로부터 물건을 보내올 때 항상 간도까지 갖고 와서, 여기서부터는 한국 영토라고 하여 이 섬에서 주고받은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¹⁶

1880년대 협상의 주체이자 관리자였던 외부 내에서조차 이러하다면 내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 미공유 문제는

1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415쪽(發 제6호, 1901년 2월 1일, 林 公使 → 外部大臣, 露兵의 間島占領에 관한 件).

내부가 간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 조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판적(版籍)과 호구(戶口)를 관리하는 내부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 근대국가는 자기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변경 지역의 토지와 인민에 대한 조사·파악은 그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내부가 1898년 압록강 대안으로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 서상무(徐相懋)를 파견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고, 1899년 12월 울릉도에 시찰사 우용정(禹用鼎)을 파견하고 그 후 울릉도 현지 사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곧, 정보의 미공유와 내부의 의지, 그리고 ‘간도 문제’가 갖는 역사성이 결합한 결과가 내부의 적극적인 간도 정책 추진의 내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의 이러한 판단에는 의정부 차원의 지지도 힘이 되었다. ‘파원감계’ 조항을 담아 청국과의 협상에 임하라고 의정부가 외부에 지시함으로써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방향은 분명해졌으며, 다만 그 시기만 미정인 채로 남겨진 셈이었다.

대한제국이 간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인 조건과 함께 국제 환경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의화단 사건 이후 간도 현지인들의 관리 파견과 주민 보호라는 절절한 청원이 이어지면서 후일 육로통상조약 협상시에 ‘파원감계’하자는 한청 양국간의 합의를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간도 정책 추진의 새로운 주체로서 진위대와 변계경무서 그리고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등장하였다.

3. 현지 추진세력들 간의 갈등

1) 간도 정책 추진의 국제적 조건-의화단 사건

1900년 의화단 사건과 만주로의 확산, 러시아의 만주 장악과 청국 지방권력의 붕괴, 의화단의 비적화, 국경 방어의 필요, ‘만주보호(滿洲保護)에 관한 러시아와 청국간의 밀약(密約)’,¹⁷ 청국 지방 권력의 회복 과정에서 간도 한인들에 대한 치발역복(雉髮易服) 강요, 현지인들의 지속적인 설관보호(設官保護) 요청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현지 주민들의 처지 악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간도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¹⁸

의화단 사건으로 러시아 군이 간도 지역을 장악한 직후 현지 지식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901년 1월 간도 거주 채동은(蔡東殷)이 함경남북도 관찰사에게 올린 소장이 흥미롭다. “비록 토문강을 한청 두 나

17 『皇城新聞』 1901년 1월 28일 외보 滿洲保護에 關한 密約. 물론 이 밀약은 서양의 압력에 의해 폐기되고 1902년 4월 「露清滿洲還付條約」이 체결된다.

18 지금까지 대한제국기 연구에서 의화단 사건이 미친 영향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광무개혁으로 통칭되는 대한제국의 황제중심의 근대화 사업은 대부분 의화단 사건 이후였다.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국경방비를 위한 대규모 군사력의 증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관협상이나 대대적인 세금 증徴이 이루어졌다. 궁내부로부터 내장원의 독립, 지방관에 대한 收稅 독촉과 징계 위협 등은 모두 1900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격심하였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중립화안에 대한 모색이나 이를 위한 서양각국에의 외교관 파견도 의화단 사건이 던진 충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간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도 의화단 사건으로 인한 러시아 군의 만주장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라가 다투고 있지만 지금은 두만강 이서(以西)와 만주 전 지역이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토문강 이남(以南)은 청국 경계로 인정되어 병탄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연추(延秋)에 있는 러시아 관리에게 그동안 한청 양국 간의 국경 협상과 관련된 문서와 지도를 보내어 실지(失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곧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에는 러시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훨씬 조금 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이은 상소문이 올라오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외부의 회답은 강역 문제는 따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상소를 무마시켰을 뿐이었다.

러시아 세력의 대두에 따른 위기감은 국왕 고종에게도 드러났다. 즉 “한국 북변(北邊)에 황야가 많고 인구가 적음을 이용하여 야심을 뻗쳐 이미 회령군 관하의 간도에 러시아인을 이주시켜서 토인(土人)의 회유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지방은 자연히 러시아의 판도로 돌아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어떠한 비용과 곤란에 봉착하더라도 이를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⁰는 판단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청국 간의 밀약은 만주 각성(各省)에 러시아인을 지방관으로 임명하고 러시아 정체(正體)로서 행정한다고 알려져 있었다.²¹ 이렇게 되면 ‘간도 문제’의 해결에는 커다란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의화단 사건이 발발하자 대한제국은 즉각 국경선 방비를 위한 증병 조치를 취하였다. 1900년 6월 평안북도 의주와 강계, 함경남도 북

19 『咸鏡南北道來去案』 1책(奎 17983).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1901년 1월 26일, 機密 제10호, 山座 臨時代理 → 加藤 外務大臣.

21 『皇城新聞』 1901년 2월 25일 외보 俄清密約의 實施.

청, 함경북도 종성에 각각 진위대대를 증설하였다. 당초 200명에 불과하던 종성 지방대는 회령에 100명, 온성에 200명, 종성에 100명, 무산에 200명, 행영(行營, 회령~종성 사이)에 400명을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종성 진위대대는 모두 1천여 명의 군사가 배치되어(1개 중대 2백 명) 당초 종성 지방대보다 다섯 배 이상 증강된 것이다. 그러나 실재 군사 활동은 두만강변에 10여 곳의 초소를 설치하여²² 월경하는 청비를 단속하는 데 그쳤을 뿐, 두만강을 건너갈 수는 없었다. 러시아 관리는 종성 진위대에게 “간도 거주 인민은 인정 풍속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간도는 “러시아가 점령하여 이미 러시아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간도 인민에 대해서는 진위대가 어떠한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견제하였다. 당시 혼춘에는 러시아 정무관(政務官)이 주재하며 정무를 집행하였고 그곳에는 러시아병 800명이 수비하고 있었다.²³ 주한 청국 공사관에서도 국경선을 넘지 말 것을 대한제국 정부에 요청하였고,²⁴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진위대와 관찰부에 ‘청비’ 진압 과정에서 월경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²⁵ 때문에 간도 현지인의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1901년 2월에 설치된 변계경무서는 바로 간도 현지인 보호를 목적

22 『高宗實錄』 光武 6년 7월 20일.

23 이상 진위대 증병과 러시아의 동향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권, 1901년 3월 22일, 機密京 제3호, 城津分館 主任 川上立一郎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24 『元帥府來去文』 3책(奎 17809).

25 종성진위대는 러일전쟁 과정 중인 1904년 11월 러시아군에 의해 무기를 탈취당하면서 해산되었다(『高宗實錄』 光武8년 11월 28일 및 『官報』 광무 9년 6월 3일). 러시아군에 자발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범윤의 사포대가 의병화되는 과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으로 등장한 관서였다.²⁶ 회령에 설치된 변계경무서는 책임자로 경무관 2명이 순검 200명을 지휘하였고, 상강(上江, 무산)과 하강(下江, 종성)에 각각 분서를 두었다. 설치 당시 변계경무서는 위생, 행정, 사법 등에서의 변민(邊民) 보호를 목적으로 경부(警部)의 지휘를 받았지만, 그해 12월 변계경무관이 교계관(交界官)을 겸하게 하여 교계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보고, 지휘를 받았다. 1901년 11월경에 러시아의 ‘간도공치(間島共治)’ 제안을 배경으로 청국과의 교계(交界) 문제가 한·청·러 삼국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자, ‘간도 문제’에 외부가 적극 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계경무서의 임무를 확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청국이 한청통어장정(韓淸通漁章程) 체결을 요청하자, 외부는 그 전제로 육로장정 체결을 제안해놓은 것도 한 배경으로 보인다.²⁷

변계경무서는 북간도를 북도소(北都所)·종성간도·회령간도·무산간도·경원간도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도(都)·사(社)·촌(村) 등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간도 한인의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는 과거 군수가 담당하던 것에서 변계경무서가 담당하였고, 간도 주재 청국 지방관과는 영사재판제도와 동일하게 이른바 청심(聽審)제도하에서 청국 지방관의 재

26 변계경무서 순검은 모두 대체로 함경도 출신이었고, 경우에 따라 간도 현지인들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그 운영경비는 연 2만 3천여 원이었는데, 각도 관찰부 소속의 경무서 예산에 비하면 4~5배 정도였다. 이 경비는 모두 함경도 각 군으로부터 外劃되었다. 변계경무서 설치, 고시, 구체적 활동, 해산 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자료가 있다[『日省錄』 光武4년 12월 28일; 『外部各官廳來去文』 1책(奎17818); 『統監府文書』 4권, 1907년 12월 14일, 來電 제152호, 齋藤 派出所長 → 曾禰 副統監; 「邊界警務署 鍾城分署日記」(일본 아세아역사자료센터 인터넷자료); 『奏本』 100책(奎 17703)].

2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8 光緒 27년 12월 7일, #3789, 「出使大臣許台身函稱」 5448~5453쪽.

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로 통제, 잡기(緝支) 단속을 하였고, 이를 위해 강을 건너 정기적으로 순찰하였다. 물론 호구 조사와 보고는 기본적인 업무였다. 변계경무서의 설치는 분명히 의화단 사건이 던진 선물이었다.

이런 중에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야심을 가지고 대한제국을 회유하는 데에 부심하였고, 한국인도 러시아의 세력을 이용하여 ‘간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러시아는 마산포의 조차를 조건으로 간도를 한국에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²⁸ 이후 러시아의 개입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1901년 8월부터 만환교환설이 유포되는 가운데, 의화단 난민의 간도 진입에 따라 간도민 보호를 위해 변계경무관 이경순(李敬順)이 혼춘 주재 러시아 교계관에게 한청 양국의 ‘간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11월 러시아령 포셋 주재 사무관 유진 스미르노프(Eugene Smirnov)가 서울에 와서 경흥과 러시아와의 전선연결 문제를 제안할 때,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는 고종에게 한청 양국의 ‘간도공치(間島共治)’를 제안하였다. 그는 주한 청국 공사관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는 모두 거절하였다. 파블로프의 이런 제안은 현지 외교관 차원의 독자적 아이디어로, 당시 경흥과 연추 간 전선선 연결을 해결하는 대가로 ‘간도 문제’에 대한 거중 조정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었다.²⁹

28 條田治策(1938), 『白頭山定界碑』[신영길 역(2004),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38쪽].

29 이 시기 러시아의 ‘간도 문제’ 개입의 흔적은 여러 자료에서 눈에 띈다. 주한 일본공사관이 남긴 자료로는 1901년 11월 15일, 機密 제122호, 林公使 → 小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된 계기는 1901년 7월 이후부터 간도에서 청국의 지방 권력이 차츰 회복되면서 이루어진 한청 양국 간 간도 현지에서의 충돌 때문이었다. 이 충돌의 한국 측 주체는 바로 변계경무서였는데, 상당한 곤경에 처하였다. 순검이 간도 지방을 순찰하며 간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는 곧 한계가 드러났다. 현지인들은 그에 맞서는 물리력, 즉 진위대 군사가 두만강을 건너갈 것을 요구하거나 주재관리의 파견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³⁰ 1902년 4월 ‘노청만주환부조약(露清滿洲還付條約)’ 체결 전후로 청국은 한인들에게 다시 치발역복(雞髮易服)을 강요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하였다. 청나라 군사나 청비와의 대적에 변계경무서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간도 문

村 外務大臣(『공사관기록』 17권, 206쪽) ; 1901년 11월 15일, 機密 제123호, 林 公使 → 外務大臣 小村壽太郎, 露公使韓帝へ謁見內奏ノ件(『공사관기록』 16권, 359쪽) ; 1901년 11월 21일, 林 全權公使 → 東京 小村 外務大臣, 間島問題에 관한 件(『公使館記錄』 16권, 505쪽) ; 1901년 11월 22일, 林 全權公使 → 東京 小村 外務大臣(『공사관기록』 16권, 506쪽) ; 1901년 11월 30일, 機密 제128호, 林權助 在韓特命全權公使 → 小村壽太郎 外務大臣, 清韓國境爭議ニ關シ露國代理公使停調ノ件(주한일본공사관기록 16권, 362쪽) ; 1901년 12월 11일, 機密 제134호, 林 公使 → 小村 外務大臣, 清韓國境爭議ニ關シ露國代理公使停調ノ件(『공사관기록』 16권, 368쪽) 등이다. 주한일본공사관에 의해 파악된 정보는 1902~1903년 한국과 만주지역의 지리조사를 하였던 小藤文次郎이 1906년 『東亞同文會會報』에 이를 기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국측 자료로는 『清季中日韓關係史料』 8 光緒 27년 12월 7일, #3789, 「出使大臣許台身函稱」, 5448~5453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간도공치’ 제안의 내용이 보인다. 주한일본공사관에서 남긴 자료와 대동소이하다. 제안의 당사자였던 러시아 측 자료로는 국내에 번역 소개된 朴鍾洙 編譯(2002), 『러시아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0 『황성신문』 1901년 7월 22일 잡보 巡難禦匪 ; 『皇城新聞』 1901년 9월 13일 잡보 咸北流民寄書 ; 『皇城新聞』 1901년 9월 14일 잡보 請設事務官.

제'에 임하는 수준과 자세를 묻는 사안이었다. 국경선을 방비하고 있을 뿐인 진위대 군사를 두만강을 건너 주둔 혹은 활동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제국으로서는 새로운 모험이었다. 그런 선택지에 바로 이범윤의 간도 정책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국경선을 넘지 말고, 국경선을 넘어오는 청비를 단속하도록 관찰부와 지방대에 지시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청조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유보되었던 '간도 문제'가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기된 셈이었다. 중국 지방 권력의 붕괴와 러시아 군사력의 주둔에 따른 권력 공백에 따른 간도 현지인의 절박한 처지와 지방민의 지속적인 상소, 러시아 군과 '청비'의 등장으로 인한 국경선의 위기라는 내외적 조건에 따라 대한제국은 진위대를 증병하고 변계경무서를 설치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간도 정책의 논리는 '청비'의 월경이나 그 진압을 이유로 러시아 군이 국경선을 넘어 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그쳤다. 그런데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간도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그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도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함경도 지식인들이 올린 여러 청원서를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러시아의 간도 정책에 맞서 사포대의 설치와 주재 관리의 파견, 더 나아가 러시아 지방 관리와의 직접 협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³¹

31 『皇城新聞』 1901년 3월 1일 잡보 請願設隊; 『皇城新聞』 1901년 3월 5일 잡보 無失民地; 咸鏡北道會寧 幼學 吳壽濬 獻議書(1902. 3)(『照會原本』 奎17234); 咸鏡北道鏡城前主事六品 呂衡燮 獻議書(1902. 5)(『照會原本』 奎17234).

2) 간도관리사와 지방 세력들 간의 갈등

1902년 5월 대한제국은 이범윤(李範允)을 북간도시찰사(北間島視察使)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그의 파견은 앞서 진위대의 증병이나 변계경무서의 설치와는 달리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이듬해 시찰사에서 관리사로의 파견은 글자 그대로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주재 관리로서 통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간도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³²

한 달의 노정 끝에 1902년 6월에 간도로 진입한 이범윤은 자신을 영사와 다름없이 이해하였다. 그는 한청조약 12조의 ‘월간민안업(越墾民安業)’ 조항³³을 한청 양국이 변민을 상호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사호봉적(查戶封籍)과 수세업무(稅務)를 정당화하였다. 이에 대해 주한청국공관과 간도의 현지 청국 관리는 각기 경계를 지키는 것이

32 1902년 대한제국의 적극적인 간도 정책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 보호라는 명분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제국을 선포한 대한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간도를 단순히 ‘故土’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아울러 간도주민들을 ‘犯越者’가 아닌 ‘移民者’로 간주하는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었다. 곧 이민과 그들의 보호는 근대 국가가 해외로 세력을 팽창해 가는 중요 수단이자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대한제국의 당연한 사명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이범윤 등을 파견하여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인구와 토지의 조사 및 사법행정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은정태(2007), 앞의 글 참고.

33 1899년 9월 11일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12조의 “邊民으로서 이미 월간한 자는 갖기 직업에 안착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며, 이후에 만일 몰래 邊界를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금지시켜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邊民已經越墾者。聽其安業。保生命財產。以後如有潛越邊界者。彼此均應禁止。以免滋生事端)는 내용을 말한다.

타당하다며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1902년까지 외부는 간도 현지에서의 치발역복 강요를 중지하라고 청국공관에 항의하는 수준이었다. 외부가 청국공사에게 항의할 때, 청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를 역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국공관도 이범윤을 자국 땅에 온 손님으로 이해하였다. 즉 외부는 청국에 이범윤을 빈례(賓禮)로 대우하기를 요구할 뿐, 영사장정(領事章程)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³⁴

시찰의 파견을 주도한 내부가 결국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범윤은 중성의 김노규(金魯奎)의 집에 머물면서 부하들을 보내어 호구 조사와 호적의 작성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 이런 상황은 1903년 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범윤은 김노규 등 현지 지식인들과 접촉하면서 간도 문제의 역사적 지리적 연원에 대해 깊이 탐색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³⁵ 차츰 영토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제 거꾸로 간도 및 함경도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간도 정책’을 견인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공급

34 간도시찰사의 파견을 주도한 것은 내부였다. 당시 내부대신은 李乾夏로 1902~1903년 동안 이범윤의 간도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1899년 내부대신으로서 울릉도에 시찰을 파견하여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고, 1903년 후술할 『北興要選』이 출간되었을 때 그 서문에다 토문강 곧 송화강 이남은 곧 대한제국의 판도라고 하였다. 내부는 이범윤의 보고에 기반하여 외부를 거쳐 주한청국공사관과 관리 파견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내부는 이범윤이 내부의 지휘를 받는 지방관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5 『皇城新聞』 1903년 6월 22일 잡보 北興要撰. 이범윤은 『吉林通誌』, 『關口誌』 등을 바탕으로 백두산 토문이 조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北興要撰』(편집본 상태)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범윤은 정부가 이를 간행하여 토문 이하 두만 이북의 간도가 조선영토임을 각국에 알리고, 各府部와 신문사 학교 및 주일공관과 邊郡에도 반포하기를 기대하였다. 이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梅泉野錄』에는 『北興要覽』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게 된다.

이런 중에도 현지인들은 수차의 청원을 통해 “간도에 월간한 것이 비단 곡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의 구강(舊疆)이 결국에는 우리 대한에 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루 이틀을 기다려 지금에 이르렀으며”, “당당한 제국으로서 북간도를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며 간도 정책을 대한제국의 ‘제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³⁶

결국 1903년 8월 내부대신 임시대리 김규홍(金奎弘)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황화(皇化)를 선포하지는 상주문을 올렸다. 이때 내부 지방국장대판(地方局長代辦) 우용정(禹用鼎)의 간도민 보호에 관한 의견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³⁷ 그는 분수령 정계비 이하 토문강 하반령(下畔嶺) 이남 등지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한 뒤, 여기에는 이범윤의 간도 주차(駐紮)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후 현지 관리들 사이에는 ‘본도간도(本道 墾島)’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은 1903년 봄부터 공세적인 간도 정책을 취하였으며, 이범윤의 관리사 임명은 그 정점에 이른 조치였다.

이범윤이 간도 정책을 추진한 시기는 1902~1904년까지였다. 시기 별로 시찰사 시기, 관찰사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1903년 11월부터 1904년 4월까지의 이범윤이 조직한 사포대를 배경으로 청국 지방관과 군사적 충돌을 불사한 시기로 이범윤의 간도 활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종성에 머물면서 간도 주민들의 상황이나 호구 조사 등 온

36 『皇城新聞』 1903년 5월 9일 및 1903년 5월 16일. 이때 소장을 올린 북간도 유생들은 대체로 이범윤 계열이라 할 수 있다.

37 『皇城新聞』 1903년 7월 16~17일 별보.

건한 모습을 유지하였던 이범윤이 1903년 말부터 사포대를 조직하고 청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간도 지역에 있던 관리사, 종성진위대, 변계경무서 등 관련기관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성진위대와 변계경무서의 설치 당시에는 현지 관리들 간에는 뚜렷한 갈등이 보이지 않았다. 변계경무서의 설치가 현지 간도민들의 지속적인 청원 요구였고, 이전 함경북도 관찰사와 변군(邊郡)의 군수가 하던 일을 보다 집중적으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도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이범윤의 파견을 계기로 현지 관리들 간에는 갈등이 노정되었다.

1902년 7월 이범윤이 내부에 올린 첫 보고에서, 변계경무서 순검이 청비(淸匪)가 두려워 절대 강을 건너지 않고, 진위대는 상부의 지시가 없다며 진위대 병사와 순검이 간민 보호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변계경무서와 진위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이범윤은 수시로 간도에 군사를 주둔·순찰하도록 하거나, 자신에게는 군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³⁸ 그러나 이것은 원수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끝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이범윤은 그 대안으로 사포대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범윤은 확보된 물리력을 바탕으로 청군과의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였다. 1904년 2월 이범윤은 ‘현재 도민(島民)이 이미 아적(我籍)으로 편입되었고 가사(家舍)·전결(田結)·부동물부(不動物簿)가 모두 아첨부(我政府)와 연관되어 관리설관(管理設

38 『皇城新聞』 1902년 9월 5일 별보; 『統監府文書』 2, 「間島問題에 關한 書類, 別紙3의 附屬書4」 李範允內部報告(1902. 7. 4), 311쪽

함은 외국이 모두 듣고 아는 바'라며 청국과 파원감계(派員勘界)할 적기라고 주장하였다.³⁹ 공세적인 간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간도 문제'의 해결을 제기한 것이었다.

반면, 변계경무서는 1904년 초 양국의 군사 충돌이 정점에 이르자, 관리 이범윤의 여러 조치는 득지(得地)에서 나온 것이지만 감계는 관리의 계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포의 월강(越江)은 형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결과적으로 간도민들이 약탈을 당하고 방곡령으로 함경도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면서, 간도의 현재 상황에서 정계(定界)하기 전에는 이범윤이 주재하여 '아민아리(我民我理)'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⁴⁰

관리사, 진위대, 변계경무서, 각 군수 등 현지 관리들이 청국 지방관과 맺는 관계도 달랐다. 이범윤은 청국 지방관을 '청비'와 다름없는 존재로 파악하여 전혀 교류가 없었던 반면, 변계경무서와 진위대는 청국 지방관과 문서를 주고받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조사를 위해 협상에 임하였고, 경우에 따라 '청비'를 공동으로 진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간도 문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현지 관리들 간 간도 정책의 차이로 이어져 내부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이범윤으로서는 물리적 기반을 갖는 것과 함께 중앙의 내부와 연계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던 것이다.⁴¹

39 『咸鏡南北道來去案』 2책(奎 17983).

40 『朝會』 4책(奎 17823).

41 시찰사로 파견된 이후 이범윤은 내부에 상당한 양의 보고문을 올렸다. 내부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혹은 외부를 통한 청국공사관과의 공문을 주고받을 수

이범윤이 사포대를 조직하는 과정은 용이주도했지만, 그 활동에는 많은 반발이 뒤따랐다. 1903년 11월 초순부터 종성군에 머물면서 간도의 각동에 훈령하여 호당 장정 1명씩을 뽑아 모두 1천명의 포수를 마련하였다.⁴² 종성에는 임시 훈련소를 설치하여 매일 조련하였으며, 간도의 모아산(帽兒山) 마안산(馬鞍山) 두도구(頭道溝) 등에 영소(營所)를 설치하였다. 훈련을 거친 부대는 영장(領長)·부장(副長)·참리(參理)·참무(參務)·총무(總務)·검찰(檢察)이라는 직책을 두었는데, 이들을 각 마을에 두고는 의대(義隊)라 칭하였다. 이 설치를 위해 4개월 비용이라며 간도 주민 호당 한전(韓錢) 6냥 5전씩 거두어 들였으며, 이를 가지고 군장과 무기류를 장만하였다. 아울러 이범윤은 각 동에 위원을 보내어 호구를 조사함과 아울러, 치발역복한 한국인을 붙잡아 ‘아청배한(阿淸背韓)’한 죄로 엄히 다스리기도 하였다. 청국이 임명한 향장(鄕長)을 포박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청국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범윤의 사포대 조직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거의 3개월 만에 부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이후 사포대와 청국 군사와의 충돌 과정에서 간도 거주 한인들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으로 일반화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 보호 요청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기에 빠뜨린 꼴이었다. 관리사 이범윤과 갈등을 보이고 있던 변계경무서에 올린 간도주

있었다. 변계경무관이 외부로 올린 보고서와 청국 지방관이 본국을 통해 주한 청국공사관으로 전달한 보고문은 이범윤이 내부에 올린 보고서와 함께 간도 현지에 대한 상황파악과 대책의 원천이었다. 내부로서는 이범윤의 보고에 의거하여 외부와 청국공사관의 주장에 맞설 수 있었다.

42 사포대의 조직과정에 대해서는, 『議政府來去文』 10책(奎17793) ; 『咸鏡南北道來去案』 2책(奎 17983) 참고.

민들의 말은 이런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관리(管理)가 종성군에 와서 머문 지 4년 동안에 강을 앞에 두고 도(島)를 바라보고 ‘득지(得地)’라고 말하나 하나도 성취한 효과가 없음을 보았고, 쓸데없이 청인에게 가슴에 맺히게 하여 피해가 백성들에게 미쳐 보존하기 어려운데, 이에 사포(私砲)를 더하여 양국의 신뢰할 문적도 없이 갑자기 왕래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의 기운을 스스로 재촉하고 마을마다 막아 집집마다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간하여 곡식을 키운 한민(韓民)이 도리어 침탈의 화를 받았다”는 이해를 보여주었다.⁴³

이범윤의 사포대와 청병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904년 1월 외부에서는 청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범윤의 소환과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⁴⁴ 즉, 청국과의 교제는 병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게다가 “러시아 군사를 빌려 청국의 속지(屬地)를 관할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비단 청국과의 돈독한 교의(交誼)를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권을 손상함이 심한” 것이었다.⁴⁵ 그러나 내부는 곧바로 반박하면서, 간도는 결코 청국의 영토가 아닌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이범윤의 보고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포대의 월간은 청병의 간도민 억압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이며, ‘각리각민(各理各民)’하고 있는 이범윤을 소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당시 주한청국공사관은 이범윤의 월강은 불법으로 즉시 소환해야 하며, 육로통상조약 체결까지 월강해서는 안 된다

43 『議政府來去文』 10책(奎17793) ; 『咸鏡南北道來去案』 2책(奎 17983) 참고.

44 당시 외부에는 1880년대 감계사였던 이중하가 협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로서는 과거 자신이 내린 결론을 쉽게 수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고 보인다.

45 내·외부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內部來去文』 16책(奎17794) 참고.

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수부는 양국 군사가 경계를 넘지 않도록 진위대에 지시하면서도, 이범윤의 보고에 따라 설병규칙(設兵規則)을 마련하여 상주·반포 하는 등,⁴⁶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에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사포대의 충돌과 한인들의 피해 속출 상황은 간도 현지 지방관들에게 감계 협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이나 주청한국공사, 그리고 주한청국공사로부터도 해결책 모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마침내 1904년 5월 14일 내부대신과 외부대신은 감계 협상을 청국 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을 공동으로 의정부에 청의하였다.⁴⁷ 그리고 외부대신은 6월에 변계경무서의 보고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의정부 회의에 이범윤의 소환을 요청하였다. 즉 “관리 이범윤이 자의로 망동하여 강을 건너 일을 일으킨 것은 아민(我民)에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청 변계(邊界)에 혼단(罅端)을 열게 하였으니 감계하기 전에는 계속 주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⁸ 감계 협상을 위해서라도 분쟁을 일삼는 이범윤의 소환이 전제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이

46 『皇城新聞』 1903년 12월 5일 잡보 墾島設兵.

47 『皇城新聞』 1904년 5월 17일 잡보 勘界案獻議. 감계 협상 제안은 1898년 오삼갑의 상소로 필요성이 최초 제기되고, 한청통상조약 협상에서 다시 대두되었던 사안으로, 그동안 감계 협상을 육로통상조약 체결시에 논의하자고 했던 외부가 자신들의 뜻을 포기한 결과였다.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현의가 나오자마자 주한일본공사 林權助가 외부대신 이하영과 접촉하여 러일전쟁의 종결 이후 일본의 중재 하에 ‘간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조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말았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3권, 1904년 5월 21일, 往電 제486호, 林公使 → 小村 外務大臣, 257쪽.

48 『議政府來去文』 10책(奎17793).

범윤의 소환은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904년 말까지도 외부가 의정부에 이범윤 소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간도 정책 추진의 상징적 인물 이던 이범윤에게 소환령을 내리는 것은 간도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특히 이범윤 파견을 주도했던 내부로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한편, 한청 양국의 현지 지방관들은 1904년 6월 이른바 ‘변계선후장정(邊界善後章程)’을 체결하였다.⁴⁹ 이범윤의 본국 소환과 ‘간도 문제’의 현상유지책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진위대대장과 변계경무관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8월 청국 외부부의 요청 형식을 밟아 러일전쟁을 이후로 감계 협상을 늦출 것을 공식 결정하였다.⁵⁰ 이로써 이범윤과 변계경무서 및 진위대대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다. 이범윤은 자신의 포군이 청병과 싸우다 후퇴하던 중 변계경무서 순검에게 총을 맞았다고 법부에 고소할 정도로 양자의 관계는 격앙되었다.⁵¹

이범윤은 더 이상 간도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소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조직한 사포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의화단 사건으로 시작된 대한제국의 적극적인 간도 정책은 지방차원에서의 합의와, 8월 중앙정부 차원의 파원

49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관 차원의 협의로, 간도지역에 형성된 독특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경계미확정으로 인한 양국 충돌의 부담, 청국의 방곡령으로 간도 미곡에 의지하던 함경북도의 곤경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50 『外部議政府來去文』 10책(奎 17793).

51 『司法稟報(乙)』 45책(奎 17279).

감계 유보조치 합의에 따라 재차 현상유지책으로 되돌아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범윤이 파견되어 시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포대를 조직하여 청병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방 권력과의 충돌은 고조되었다. 그 갈등의 두 축은 간도관리사와 변계경무서였다. 변계경무서의 현지 보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범윤의 소환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⁵² 간도관리사와 변계경무서의 충돌이 간도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었지만, 이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간도 영유권 의지를 뚜렷하게 견지하였던 내부와 이범윤이 현상유지책을 견지하였던 외부와 변계경무서의 충돌이었다. 특히 내부와 이범윤의 적극적인 간도 정책은 문명담론에 기반한 팽창적 ‘제국’ 의식⁵³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한국인들이 ‘간도 문제’에 투영한 역사적 의미와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능력 간의 간극에 대한 판단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추진 주체들 간의 갈등은 대한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정책, 문명담론의 확산 과정, 국권의 향배에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추를 옮겨가기도 했지만, 충돌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1905년부터 일진회가 ‘간도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이나 1907년부터 통감부에서 간도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위의 내부와 이범윤의 논리가 적극적으로 원용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이후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간도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52 『照會』 4책(奎 17823).

53 『독립신문』 1899년 2월 28일 잡보 유지각자의 의견 ; 『帝國新聞』 1901년 5월 25일 논설 ; 『황성신문』 1902년 6월 6일 논설 西北沿界疆土居民 ; 『황성신문』 1903년 8월 20일 논설 新任壘島管理에게 보내는 편지 ; 『황성신문』 1903년 8월 21일 논설 間島民人들에게 고향. 은정태(2007), 앞의 글 참고.

복잡한 민족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4. 맺음말

이 글은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에서 그 내외적 조건과 함께 추진 주체들 간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간도 정책 추진의 내적 조건은 1880년대 감계 협상의 결과에 대한 불충분한 공유와 간도 영유권 주장, 변경 지역에 대한 토지와 호구의 파악이 근대국가의 사명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내부의 주장은 차츰 힘을 가지게 되었다. 보호를 요청한 간도 지방민의 상소는 이러한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900년 의화단 사건과 그 진압 과정에 간도 지역에 권력 공백이 생기고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 추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러시아와의 협상 주장이나 지방관의 파견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내외적 조건하에 간도 현지에는 다양한 기구와 인물이 나서서 간도 문제에 접근하였다. 종성진위대, 변계경무서, 그리고 간도관리사 등으로 이들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현지 사정을 각각 보고하였다. 그러나 내부의 지휘를 받던 간도관리사와 외부의 지휘를 받는 변계경무서 간에는 충돌이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전자는 팽창적 ‘제국’의식을 견지하며 간도 영유 의지를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 과정은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하였으며, 이들은 갈등 구조 아래

에 놓여 있었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간도 정책 추진의 논리와 현실 인식 등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언론이었다. 주민들이 청국 지방관이나 ‘청비(淸匪)’들로부터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을 보호·관리하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리고 간도는 단기(檀箕) 이래 조선의 영토이며, 백두산정계비의 문면을 보건대 현재 청국이 부당하게 간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범윤의 보고서는 여과 없이 『황성신문』에 실렸다. 여기다 언론은 간도가 지닌 경제적 가치와 국방상의 의미도 부각시킴으로써 이범윤의 간도 정책을 대한제국이 근대 문명국가로서의 자기사명을 드러내는 지표로 내세웠다. 간도 현지인들의 주장에 불과하던 간도 담론들이 차츰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간도 주민들을 보호하고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언론도 기본적으로 내부와 간도관리사의 논리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런 구도하에서 내부와 외부로 상징되는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의 두 흐름은 전자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국권 상실기에는 ‘잃어버린 간도’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워갔다. 그 내적인 논리의 점점 과정에 식민지를 거치면서 대한제국기 외부가 취한 논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간도 정책 추진 방향이 대한제국 혹은 한국에 대한 자기 평가와도 관련된 사안이 되면서, 후자의 논리는 오늘날 한국 정부의 현상유지 방향의 간도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김 춘 선 (연변대학교)

동북이민사
FOUNDATION

동북이민사
FOUNDATION

NORTHEAST ASIAN HISTORY

1. 머리말

1880년대 청 정부가 북간도 지역에서 이민실변(移民實邊)을 실시하면서부터 조·청 양국은 북간도의 영유권과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 후 1885년의 을유감계, 1887년의 정해감계, 1904년의 「중한변계선후장정」 그리고 1909년에 이르러 마침내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국경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과 청 정부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국내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간도협약’ 체결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 당시 조(韓), 청, 일 삼국의 대 한인 정책과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간도협약’이 북간도 한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간도협약’ 체결 전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 실태

1) 조(한)·청·일 삼국의 대 한인 정책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후 청 정부는 1714년에 두만강 하류 북안 혼춘(琿春)지역에 혼춘협령(琿春協領)을 설치하였다. 그 후 혼춘협령은 1859년에 부도통(副都統)급 협령으로, 그리고 1881년에는 부도통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혼춘협령(혼춘부도통)은 주로 국경수비와 각종 위장을 관리하는 군사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1881년 북간도 지역의 이민실변과 더불어 혼춘에 별도로 초간국(招墾局, 1881~1892), 무간국(撫墾局, 1893~1901) 등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간황사무를 처리하였다.

(1) 초간국 시기

1860년 「청·러북경조약(淸·露北京條約)」에 의하여 청국과 러시아의 국경은 호포도(瑚布圖) 하구로부터 혼춘하를 따라 도문강 입구로 획정됨으로써 북간도는 조(朝)·청(淸)·러(露) 삼국의 접경지역으로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후에도 수시로 군대를 파견하여 두만강 하구인 흑정자(黑頂子) 지방에서 국경 문제를 도발하여 청조의 봉금정책에 막대한 곤란을 가져다 주었다.¹ 이러한 실정에서 청 정부는 1880년 오대징(吳大澂)을 길림변무독판으로 임명하여 북간도에 파견하였다. 그 후 오대징과 길림

1 『琿春鄉土誌』 卷1；『寧安縣誌』, 軍備, 268쪽.

장군은 정변군(靖邊軍)을 증설하여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한편 장구지책으로 북간도 지역에서도 초전간봉(招佃墾種)을 실시할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하였다.² 이에 근거하여 1881년 청 정부는 혼춘협령을 부도통으로 승급함과 동시에 남황위장(북간도)의 봉금을 폐지하고 혼춘에 초간총국, 그리고 남강(南崗, 지금의 연길)·혼춘·동오도구·흑정자³ 등지에 분국을 설치하고 이민실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초간총국은 4개 분국 산하에 23개 간황사(墾荒社)⁴를 설치하고 간황사 내의 민인들을 통일적으로 편적(編籍)한 후 고려령(高麗嶺)을 분계선으로 둔화현과 혼춘에서 분할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간도 간황(墾荒)에 필요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산동의 등주(登州)·채주(棗州)·청주(靑州) 등지에서 한인(漢人) 농민 2백여 명을 모집하여 북간도로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개간에 필요한 토지와 모든 생산도구 식량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⁵ 그러나 청조의 이민실변 정책은 초간총국의 상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문제와 이주 한인들의 농업 기피 경향으로 말미암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手書信稿』, 「復張振軒制軍書」, 6月 13日.

3 1887년 靖邊營에서 둔전으로 개간, 1890년에 병영이 철거하고 둔전지를 민지로 사용하면서 흑정자분국이 설치되었다(『琿春史誌』, 길림문사출판사, 장백총서 제4집, 1991년 111쪽).

4 남강분국: 志仁社·尙義社·崇禮社·勇智社·守信社·明信社 등 6사, 개간한 토지 18,939상(垧); 혼춘분국: 春和社·春芳社·春華社·春陽社·春明社·春融社 등 6사, 개간한 토지 5,620상; 동오도구분국: 春仁社·春義社·春禮社·春智社·春信社 등 5사, 개간한 토지 2,024상; 흑정자분국: 春耕社·春云社·春黎社·春雨社·春郊社·黑頂子社 등 6사, 1907년의 통계에 의하면 상술한 23개사의 속지는 57,057상에 달했다.

5 馬汝珩, 馬大正 主編(1994), 『清代的邊疆政策』,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13쪽.

한편 이 시기 두만강 북안은 이미 한인 이주민들에 의해 대량 개척되고 있었다.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洪南周)의 계획하에 추진된 경진개척(庚辰開拓)은 한인들의 북간도 이주와 개척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⁶ 결과 1881년부터 두만강 북안의 길이 500리, 너비 40~50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은 한인 월간민들에 의해 재빨리 개척되었다. 조선관부는 이 지역에 관원을 파견하여 그들이 개간한 토지를 조사, 등록한 후 토지대장을 만들어 간황 면적에 따라 지세를 거두었다. 경진개척을 계기로 북간도로 이주하는 한인 수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혼춘초간사의(揮春招墾事宜) 이금용(李金鏞)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가야하(嘎呀河)에서 고려진에 이르는 연강 지역에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월간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개간한 속지는 무려 2천여 상에 달한다고 하였다.⁷

이러한 실정에서 길림장군과 오대징은 이미 북간도 개척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한인 월간민들을 이민실변에 적극 이용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이른바 ‘영조납조책(領照納租策)’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즉 한인 이주민들이 개간한 토지를 매상에 압황전(押荒錢) 2,100문과 지조 660문을 받고 그들에게 토지집조를 발급하며, 압황전과 지조는 방황위원(放荒委員)이나 혹은 조선관원들이 대수(代收)하여 혼춘부도통에 교부한다는 것이었다.⁸ 이와 같이 영조납조책은 당시 관내지역 한인(漢人) 이주민들에

6 尹政熙(1991), 『間島開拓史』, 「庚辰開拓과 間島의 命名」, 『韓國學研究』 3, 별집, 인하대학교, 14~16쪽.

7 朱壽朋 纂, 『光緒朝 東華錄』 2卷, 光緒 7年 10月 辛巳條, 「銘安等奏」, 上海大東書局 印本, 1198쪽.

8 朱壽朋 纂, 위의 책, 1198쪽.

의한 초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관원들이 월간 한민들을 적극 회유하여 이민실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영조납조책은 한인들의 국적 문제와 행정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청 정부에서 윤택하지 않았다. 당시 청조는 만주 지역에서 저들의 왕공귀족(王公貴族)의 특권을 보호하고, 또 기인(旗人)과 민인들의 혼거(混居)로 인한 민족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내의 원주민들을 기인(旗人), 민인(民人), 변민(邊民), 몽민(蒙民)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즉 지방 기인과 팔기병에 대하여서는 팔기제도를 적용하고, 한인민호(漢人民戶)⁹에 대하여서는 주현제도(州縣制度), 길림변민¹⁰에 대하여서는 성장제도(姓長制度),¹¹ 동부 몽고인에 대하여서는 맹기제도(盟旗制度) 등 다양한 관리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북간도 지역에는 혼춘부도통을 제외하고는 기타 민인관리체제가 전혀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청 예부(禮部)는 단순한 영조납조책보다는 한인들을 귀화 입적 시켜 청국의 판도(版圖) 내에 편입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었다.¹² 이에 따라 1882년 1월 길림장군은 기존의 영조납조책을 대폭 수정하였는데, 본 방안에서는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치발역복이 강요되고, 간항위원(墾荒委員)이나

9 清朝建立 이후 滿洲開發을 위하여 關內地域에서 모집해 온 漢人 移住民을 民戶라 하였다.

10 吉林將軍管轄下의 三姓副都統과 寧古塔副都統地域에서 생활하고 있는 少數民族을 清朝에서는 吉林邊民이라 불렀다.

11 『清朝文獻通考』卷270, 「與地三」; 清朝는 邊民들에 대하여 “各設姓長, 鄉長, 分戶管轄”이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관할방식은 “邊民以戶, 一年每戶納貂皮一張”이었다.

12 朱壽朋 纂, 앞의 책, 1198쪽.

조선관원이 아닌 혼춘과 돈화현에서 직접 분할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영조납조책은 초기 지방관원들에 의하여 이민실변의 목적에서 시도되었으나 중국에는 한인 이주민들에게 귀화 입적, 편갑승과(編甲升科) 등이 강요됨으로써 한인들을 완전히 청국민화하려는 민족동화 정책으로 변질되어 갔다.

1882년 3월 8일 청 예부는 조선 정부에 월경간민은 본래 징관(懲辦)해야 할 것이나 개간한 지 오래되고 인수가 많기 때문에 관대히 처리하여 기왕(既往)을 불문하고 호적을 사명(查明)하여 혼춘과 돈화현에 귀속시킨다는 자조(諮照)를 보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동년 8월 월간 한민들은 풍토와 습관이 청국인과 달라 만약 청 측에 편적(編籍)될 경우 사단의 야기가 우려되며, 또 북쪽의 러시아와 동쪽의 일본에서도 모두 ‘천조(天朝)의 예(例)를 따라 한인들을 귀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인들의 쇠환을 요구하였다.¹³ 또 이듬해에는 토문강·두만강 ‘양강설(兩江說)’을 제기하면서 북간도 지역의 월간 한민들은 쇠환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1884년 11월에 이르러서는 청 정부에 공동으로 국경사감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885년과 1887년 조·청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 두만강(토문강) 국경에 대한 감계를 진행하였다.

1885년 을유감계가 시작되자 혼춘부도통은 군대를 동원하여 북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청조의 구축 조치로 진퇴양난에 처한 한인들은 부분히 초간총국에 귀화 입적을 요구하였다.¹⁴ 이에 대하여 당시 청 정부는 이는 “한인들이 남강

13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卷, 태동문화사, 972~973쪽.

14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위의 책, 1765~1766쪽.

일대를 저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축발귀순(蓄髮歸順)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¹⁵으로 부득이 취한 행동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축 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청 정부의 한인 구축은 ‘쇄환’이란 미명하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한인들에게 치발역복을 강요하여 ‘청국판도(淸國版圖)’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한편 이 시기 청 측의 구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북간도 이주는 조선 정부의 묵인과 방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북간도 지역에서는 경작지와 재물을 둘러싼 양국인들 간의 마찰과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여 외교문제화 되기도 하였다.¹⁷ 그리하여 청 정부는 1884년 훈춘부도통에 방관길림변방사의(伊辦吉林邊防事宜)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외사와 한인 이주민의 월간사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인의 대부분이 해란강 남안인 회령, 중성 대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수백 리 떨어진 훈춘 관서에서는 사실상 효과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청 정부는 해란강 남안지역에 통상총국을 설치하여 양국 간의 외교와 한인 이주민들의 간황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1885년 11월 청 정부는 『길림조선 상민무역지방장정』에 근거하여 화룡육(和龍峪, 지금의 용정시 지신진)에 통상총국을, 그리고 서보강(西步江, 지금의 훈춘시 삼가자향 고성촌)과 광제육(光霽峪, 지금의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에 통상분국을 각각 설치하였다.¹⁸ 이후 통상총국은

15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4卷, 1915~1918쪽.

16 李澍田 主編(1991), 『長白叢書』 5集, 「琿春副都統衙門檔案選編」 中册, 吉林文史出版社, 320쪽.

17 徐世昌(1911), 『東三省政略』 5集, 「邊務 延吉附件：延吉廳建設之沿革」, 5쪽.

1893년 무간국으로 전환되기까지 무역보다는 오히려 양국 간의 외교 교섭과 한인 이주민들의 간황사무를 처리하는데 주력하였다.

(2) 무간국 시기(1893~1901)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친 감계에서 양국은 비록 무산 이하 두만강(도문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두만강 상류 즉 원류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사이 당시 조선의 국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원세개는 1886년 김윤식(金允植)에게 이른바 ‘차지안치책(借地安置策)’을 건의하였다. 즉 조선 정부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에 대한 쇄환이 어려울 경우 잠정적으로 청국에 차지안치를 제안하여 월간 한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⁹ 이에 조선 정부는 감계 기간 월간 한인들을 잠시 차지안치하더라도 청국은 지계(地界)만 획정하여 관할할 뿐 기타 조세(租稅)를 비롯한 소송 및 모든 정령(政令)은 한국 관리들이 조종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⁰ 그러나 이홍장(李鴻章)은 조선 정부가 감계 기간 잠시 땅을 빌려 한인들을 안치하는 것은 인가할 수 있으나 한국 관리들이 직접 징조(徵租)와 소송(訴訟) 및 정령(政令)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였다.

사실 조, 청 양국의 두만강·토문강에 대한 국경분쟁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인 동시에 한인들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조선 측의 지방 관리들은 청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들을 파견하여 한인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면서 관할권

18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4卷, 1763~1764쪽.

19 『統署日記』 第1, 362쪽, 高宗 23年 丙戌 3月 23日條.

20 『李文忠公全集』 電稿 卷7, 47쪽, 光緒 12年 9月 27日.

을 행사하고 있었다.²¹ 그러나 1887년 정해감계에서 무산 이하 두만강 북안 지역이 청국의 영토로 인정되자, 청 정부는 우선 이 지역에 ‘한인 월간구역(한인전간구역)’을 설치하여 한인 이주민들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1889년 12월 길림장군은 조선상무유길보용지부(朝鮮商務有吉補用知府) 엽련갑(葉聯甲)을 청장월간사무(淸丈越墾事務)로 임명하고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귀화 입적과 편감승과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엽련갑은 치발역복을 전제로 1890년 3월부터 1891년 7월 사이 한인들이 개간한 토지를 일률로 청장(淸丈)·승과(升科)한 후 토지집조를 발급하였으며, 「통성장정(通省章程)」에 근거하여 토지 1상에 대조(大租)와 소조(小租) 도합은 (銀)1전 9분 8리를 징수하였다. 그리고 두만강 북안 지역에 진원보(鎭遠堡, 흑정자, 지금의 훈춘시 경신향 금당)·영원보(寧遠堡, 지금의 용정시 개산툰진 팡소)·수원보(綏遠堡, 계사처, 지금의 용정시 삼합)·안원보(安遠堡, 장목대기, 지금의 화룡시 남평) 등 사보(四堡)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39개 사(社)와 124개 갑(甲), 415개 패(牌)를 설치하여 한인들을 통일적으로 편입시켰다. 이때 사갑에 편입된 한인 수는 4,308호, 2만 899명이었고, 청장(淸丈)된 속지는 15,442.76상, 징수된 지조 금액은 대조은(大租銀) 2,779량에 달했다.²²

4보 39사 설치 후 청조는 통상총국을 무간국(撫墾局)으로 개칭하여 길림, 조선 간의 교섭과 월간 한인의 무간(撫墾)을 관리하는 행정기구로 전환시켰다. 또한 청조는 ‘이한제한(以韓制韓)’의 방침하에 4보 39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귀화 한인을 선발하여 향약(鄉約)으로 임명하였으며, 화인과 한인들의 거주 지역을 획분하여 분할 관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21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6卷, 3295쪽.

22 金春善(1998), 「1880~1890년대 청조의 ‘이민실변’정책과 한인 이주민 실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8집, 25쪽.

초간국에서 설치한 23개의 간황사 지역을 초간구역으로 무간국 산하의 39개사 지역을 월간지역으로 획분하여 한인들의 초간구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화인들의 월간구역 내의 이주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러한 획분은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 북간도 지역을 잡거구와 비잡거구로 획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이주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 측의 4보 39사 설치와 한인들에 대한 치발역복을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²³ 그러나 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원세개에게 자문을 보내어 월간 한민들을 길림변지에 차지안치(借地安置)하고 지정징과(地丁徵課)와 법률, 정령은 모두 청국의 것을 따르게 하되 그들의 한적(韓籍)과 의관축발(衣冠蓄髮)만은 보류해 달라는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또 거부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조선 정부는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3) 연결청 시기(1902~1909)

1900년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을 빌미로 동북에 출병한 후 한·청 간에 마찰을 빚고 있던 두만강 국경분쟁을 이용하여 북간도 지역을 강점할 음모를 꾸몄다. 이에 따라 한국 주재 러시아공사 웨베르는 한국 외무대신 이도재와 비밀협정을 맺고 북간도 지역에 이른바 독립적인 주(州)를 설치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²⁴ 그러나 본 협정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마산포를 조차해 주는 것을 전제로

23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淸案』 第1, 高宗 27年 7月 12日, 723쪽.

24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9卷, 5737~5738쪽.

하였는데 한국 측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 후 러시아는 계획을 바꾸어 1901년 청국에 『토문강압록강변계청한양국인민사단약서(土們江鴨綠江邊界清韓兩國人民事端約書)』²⁵를 제출하여 한·청 양 정부는 각기 교계관을 변계에 파견, 주둔시키며 양국 경내에 이주한 본 국민에 대하여 영사의 직책을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청 정부는 이는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므로 절대 유히할 수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북간도 분할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러시아의 침입으로 한인사무를 전담하던 무간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실정에서 혼춘부도통은 길림장군에게 북간도 지역에 하루빨리 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²⁶ 길림장군도 황태후(皇太后)에게 현재의 화룡육 무간국의 설치 운영이 장구지책이 아니므로 연집강(煙集崗, 남강, 지금의 연길)과 화룡육에 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청 정부는 1902년 가을 남강에 연길청(延吉廳)을, 1903년 2월에는 대랍자(大輦子, 지금의 용정시 지신진)에 화룡육분방경력(和龍嶺分防經歷)을 각각 설치하였다.²⁷

청 정부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주로 그 지역의 호구 수, 토지면적, 사무의 경중, 지리적 위치 등 여러 면을 종합 분석한 후 충(中)·번(繁)·피(疲)·난(難) 등 4개 부류로 등급을 나누었다. 여기에서 충(中)은 지리의 중요성, 번(繁)은 정무의 다과(多寡), 피(疲)는 관원들의 노고(勞苦) 정도, 난(難)은 민치(民治)의 어려움을 의미하였다.²⁸ 당시 청 정부가 북간도 지

25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8卷, 5448~5453쪽.

26 李澍田 主編(1981), 『長白叢書』 5集, 「琿春副都統衙門檔案選編」下, 吉林文史出版社, 139쪽.

27 吉林邊務處檔案, 「屯墾雜件」, 〈5-2-273〉, 光緒 34年 9月, 延邊檔案館所藏.

역을 충·번·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곳에 특별행정기구인 연길청을 설치한 것은 청 정부가 삼국 국경에 위치한 북간도의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한인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연길청 설치 후 혼춘부도통은 주로 기인(旗人) 관리와 변강 업무를 책임지고, 기타 민인들의 토지·조세·소송 및 민사 안전에 대하여서는 연길청이 관리하였다. 그런데 연길청은 월간 지역과 한인들의 관리는 화룡육분방경력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혼춘부도통과 연길청은 변강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길강군(吉強軍)을 국자가에 주둔시키고 연길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산 대안과 같은 변추(邊陲)지역에는 회용(會勇) 혹은 단련(團練)을 조직하여 국경 수비에 임하게 하였다.²⁹

한편 1897년 대한제국 수립 후 한국 정부는 청의 종속국이 아닌 자주독립국으로서 한·청 국경 문제와 한인 이주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1900년 8월 한국 정부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생명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두만강 연안의 6군에 진위대(鎭衛隊)를 주둔시켰으며, 1901년에는 회령군에 변계경무서를, 무산과 종성 양군에는 분서를 설치하여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³⁰ 변계경무서는 순검(巡檢)들을 북간도 지역에 파견하여 각 마을을 순회하였으며 한인들의 소송을 직접 접수하여 재판하기도 하였다.³¹ 그후 한국 정부는 1902년 종삼품 이범윤(李範允)을 간도

28 田志和·潘景隆 編著(1990), 『吉林建置沿革概述』, 吉林人民出版社, 106~107쪽.

29 國會圖書館 編(1975), 『間島領有權關係沿革文書』 상, 255쪽.

30 國會圖書館編(1975), 위의 책, 92~97쪽.

31 김춘선(1999), 「'북간도' 지역의 한인사회의 형성 연구」, 국민대학교국사학과 박사논문, 103~104쪽.

시찰사로 임명하였다. 이범윤은 중성에 본부를 설치하고 수원(隨員)들을 수시로 북간도에 파견하여 한인들의 호적을 조사, 등록하였다. 그리고 1903년 5월 정부에, 북간도 지역에 즉시 “관서를 설치하고 병영을 주둔시킬 것”³²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에서 간도관리사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주한청공사(駐韓淸公使) 허태신(許台身)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 승격되자 독자적으로 무력을 조직하여 한인 보호에 주력하였다. 국내 지역에서는 충의대(忠義隊)를 모집하여 무산군(茂山郡) 작대동(作隊洞)에서 훈련시켰으며, 북간도에서는 사포대(私砲隊)를 조직하였다. 그 후 사포대는 국경 지역의 진위대와 경무서의 배합하에 수시로 북간도의 상화(尙化)·선화(善化)·숭화(崇化)·덕화(德化) 등 4사(社) 지역에 침입하여 당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사포대는 1903년 12월 20일을 기하여 관리사(管理使)가 직접 북간도 지역을 ‘도강 관리(渡江管理)’할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1904년 7월 청 외무부는 한국 정부에 이범윤의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혼춘부도통에서는 길강군(吉強軍)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범윤의 활동을 제지시켰다.³³ 같은 시기 연길청에서도 방곡령(防穀令)을 반포하여 북간도와 한국과의 양곡 매매를 금지시켰으며, 두만강 도구(渡口)를 봉쇄하여 한인들의 왕래도 엄격히 통제하였다. 청 정부의 상술한 조치, 특히 방곡령의 실시는 당시 절대 대부분의 식량을 간도(間島)에 의존하고 있는 조선의 무산·회령·중성 등 두만강 이남 변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곤

32 國會圖書館(1975), 앞의 책, 317~318쪽.

33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9卷, 5820쪽.

란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변계경무서에 찾아와 이범윤을 비롯한 관리소 일원들을 하루빨리 북간도에서 철거시킬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³⁴

한편 이범윤으로 인하여 변계 지역에서의 분쟁이 심화되자 양국의 변계 관리들은 빈번히 회합하여 해결방안을 토의하였다. 결과 1904년 음력 5월 2일(6월 15일) 양국 지방관리들 간 이른바 ‘한중변계선후장정(韓中邊界善後章程)’이 체결되었다.³⁵ 장정 제1조에서는 “양국에서 파월하여 감계하기 전까지 두만강을 계선으로 각각 신지를 지킨다”고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고간도는 향래 종성 한민의 조종(租種)을 허락해 왔으므로 금후도 구(舊)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고간도를 포함한 북간도 지역에 대한 청국의 관할권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 제2, 3, 4, 5조는 모두 이범윤의 축출에 관한 조항들이다. 본 「장정」에서 경무서 지방관원들이 이범윤의 철거에 대한 청 측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마 당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의존하여 간도 문제를 해결하려던 기존 방침을 금후 일본의 중개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사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 측에서 볼 때, 이범윤의 철거는 한국의 간도 영유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세력에 의한 간도 문제 해결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범윤이 철거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변계경무서를 통하여 여전히 북간도 지역 한인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다 하겠

34 國會圖書館 編(1975), 앞의 책, 108쪽.

35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9卷, 5952~5953쪽.

다.³⁶

‘한중변계선후장정’은 국제법에 근거한 전형적인 조약의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양국 지방관원 간의 약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장정의 체결은 일시적이거나 한·청 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북간도에 거주하는 양국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토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은 일제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간도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또 다시 청·일 간의 대립과 분쟁에 휘말려 들어갔다.

일찍부터 대륙 침략의 야심을 품고 있던 일본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자 곧 ‘간도협약’을 맺어 저들의 대륙 침략 정책에 이용하고자 서둘렀다. 통감부는 1906년 의정부 참정대신 박재순(朴齊純)에게 간도 거주 한인들의 보호를 통감에게 요청하도록 사촉하였고,³⁷ 동년 11월 박재순의 ‘요청서’가 통감부에 제출되자, 일본 정부는 1907년 2월 북간도에 통감부 출장원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청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동년 8월 20일 일제는 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郎)를 비롯한 수십 명의 관원과 경찰을 북간도에 파견하여 용정촌에 이른바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를 설치하였다.

일제는 간도파출소 설치 후 혼춘과 북간도 서부를 제외한 지역을 북도소(北都所)·회령간도(會寧間島)·중성간도(鍾城間島)·무산간도(茂山間島) 등 네 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41개 사(社), 290개 촌(村)을 설치함으로써

36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9卷, 6287쪽.

37 奎章閣圖書, 圖書番號 17858, 「統別往復案」 2, 間島案 照會 第102號, 光武 10(1906)年 11月 18日.

이른바 ‘도사장제’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³⁸ 또한 북간도의 주요한 지역에 14개 분견소를 설치하여 무력으로 도사장제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북간도에는 청국의 향약제와 통감부의 ‘도사장제’, 즉 두 개의 대립된 행정체제가 병존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간도파출소의 시정 방침은 1)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 2) 한인은 청국의 재판에 복종하지 말 것, 3) 청국 관헌이 징세(徵稅)하는 일체 조세에 대하여 파출소는 인정하지 않음, 4) 청국 관헌이 반포한 모든 법령을 파출소는 인정치 않음, 5) 청국 관헌이 임명한 도향약, 향약 등도 일반 한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³⁹ 이외에도 간도파출소에서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생활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보통학교 설립, 간도 자혜병원 및 우전국 창설, 통신망 구축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륙 침략의 발판을 넓혀갔다.

일제의 간도 침입에 맞서 청 정부는 외교부를 통하여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국자가에 길림변무공서를 설치하여 일제의 침략에 적극 대항했다. 변무공서는 간도파출소에서 분견소를 설치한 지역과 한인 집거지 등 15개 지점에 파관처(派辦處)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 내의 행정권·사법권·군사권·외교권 등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⁴⁰ 변무공서의 대응 방침은 1) 두만강 이북은 청국의 영토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시설을 경영함, 2) 다수의 병력으로 일본 파출소의 행동을 저지함, 3) 광산·벌목·농업에 관한 이권은 일본인이 전혀 획득하지 못함, 4) 한

38 金正柱·吳世昌 編(1968), 日帝秘錄(1) 『間島問題』, 韓國史料研究所, 100쪽.

39 吳世昌·金正柱 編(1968), 앞의 책, 432~439쪽, 「憲兵分所長ノ會議」.

40 徐世昌 等編(1911), 『東三省政略』 卷1, 「邊務 延吉篇」, 29쪽.

인의 재판 관할은 모두 청국의 권리로 한다는 것이었다.⁴¹

주지하는 바, 간도 문제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국경 교섭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간도 문제를 저들 대륙 침략 정책에 이용하자 간도 문제는 조·중 간의 국경 교섭보다 오히려 일제의 대륙 침략과 중국 정부의 주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중일 간의 간도 분쟁도 표면상으로는 국경 문제, 즉 간도 지역이 한국령이냐 아니면 중국령이냐 하는 영토 분쟁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이권 확보와 이에 대항한 중국 정부의 주권 보호가 핵심 문제였다. 특히 당시 북간도 지역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한인들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는가가 실제에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토지가 있다 하여도 한민들이 아국 판도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 통치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길성동남의 절반은 실로 일한의 식민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⁴²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변무공서는 무력으로 파출소의 침략 행위를 제지시킴과 동시에 각종 법령을 통하여 한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고 귀화 입적을 강요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1) 연길은 개방하지 말 것, 2) 한민들의 계속적인 입경을 금지시킬 것, 3) 금후 한인들의 토지 구입을 막을 것, 4) 무릇 토지를 소유한 한인들은 일률적으로 귀화인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본적의 무효를 선포하고 중국인과 똑같이 취급할 것, 5) 토지를 분여 받은 한인들은 규정에 따라 치발역복하고 중국 지방관원들의 관할을 받

41 金正柱·吳世昌 編(1968), 앞의 책, 164~165쪽, 「我施設に對する妨害」.

42 徐世昌 等編(1911), 앞의 책, 94쪽.

아야 하며, 만약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분여한 토지를 회수할 것, 6) 월간지역에서 자기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한인들은 중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국의 법률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³ 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비록 한인 이주민들을 이용한 일제의 대륙 침략 음모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취해진 조치였지만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막대한 곤란을 가져다주었다.

2) 한인 이주민 실태

‘간도협약’ 체결 전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실태는 대체로 1902년 연길청의 건립을 기준하여 전, 후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기는 다시 봉금 시기와 이민실변 시기, 후기는 간도관리사 파견 시기와 간도파출소 설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봉금 시기 조선 북부 지역의 일부 변민들이 두만강 이북 지역을 개간, 경작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춘결농막 추첩철귀(春結農幕 秋輒鐵歸)’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국내에 집을 그대로 두고 개척지에 간편한 움막집을 지어놓고 임시 거주하는 방식을 취했다.⁴⁴ 그리고 살길을 찾아 ‘범월’한 이주민들은 대체로 청인의 고용인이나 양자로 들어가거나 혹은 오지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 중 청인의 양자나 고용인으로 된 한인들은 귀화 입적하여 생계는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었으나 민족의식은 상

43 徐世昌 等編(1911), 앞의 책, 109쪽.

44 李澍田主編(1991), 『琿春副都統衙門檔案選編』(中), 『長白叢書』5集, 吉林文史出版社, 322~323쪽.

실되어 갔다. 즉 그들은 “조선에서 생(生)하였으나 금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청국인과 다를 바 없고 본인도 청국인으로 자임하며 그것을 이주 선인에 자랑할 뿐 조금도 선인을 위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⁴⁵ 그리고 오지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일단 청 측에 발견되면 ‘범월죄’로 효시되거나 강제로 조선 정부에 인도되었다. 1876년 안무사(按撫使) 김유연(金有淵)에 의해 초환(招還)된 281명의 쇄환자 중 절대 대부분이 북간도의 대항성(大荒城)·훈춘(琿春)·마두강(馬豆江)·남강(南崗)·목과산(木峽山)·옥전(玉田)·삼두동(三頭洞)·탑성(塔城) 등지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이었다.⁴⁶ 이와 같이 봉금 시기에 이주한 한인들은 청국에 귀화 입적한 후 자연 동화되거나 혹은 오지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과했다.

이민실변 시기 청 정부는 주로 초간국 및 무간국 등 간황기구를 통하여 한인 이주민들을 관할하였으며 한인들은 치발역복을 전제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 월간지역 내에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기 한인들의 이주와 개척은 두만강 상류 지역인 무산대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류 지역인 회령, 종성, 온성대안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초기 이 지역의 한인 촌락과 이주민 수를 살펴보면, 무산대안에 촌락 5개, 130여 호, 회령대안에 촌락 6개, 340여 호, 종성대안에 촌락 13개, 980여 호, 온성대안에 촌락 2개, 100여 호, 경원대안의 고이도(古弼島)에 10여 호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이는 이 시기

45 國史編纂委員會(1983), 『韓國獨立運動史』 2卷, 521~523쪽.

46 『北兵營啓錄』, 光緒 2年10月初7日, 11月11日, 12月初9日, 同3年2月26日.

47 『六鎮沿岸對岸情形目錄』, 咸鏡道觀察使李重夏의 調查報告; 高永一(1982), 『朝鮮族歷史研究』, 遼寧人民出版社, 73~74쪽.

한인 촌락이 주로 두만강 상류 지역인 무산대안과 중류 지역의 회령, 종성대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1890년대 청 정부가 4보 39사(월간구역 혹은 한인전간구역)를 설치하면서 한인들의 이주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주민들의 출신지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 청 정부는 북간도 지역을 월간구역과 초간구역으로 구분하여 한인들의 초간구역으로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한인 촌락은 초간지역인 남강·북강·서강·가야하 등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⁴⁸ 그리고 이주민들의 출신지도 육진 지역을 비롯하여 그 남방의 경성(鏡城)·명천(明川)·길주(吉州)·단천(端川)·부령(富寧) 등지로 나타났다.⁴⁹ 그리고 이 시기 청 정부는 귀화 입적을 전제로 한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간황지의 경우 5년간은 매상에 대조(大租, 국세) 600문에 소조(지방세) 150문, 합계 750문을 납부하면 황지를 개간, 경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6년째부터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치발역복한 사람은 무상으로 토지증서를 받아 본인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으며 매년 1조 600문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었다. 그리하여 1881년 이민실변 초기 한인들이 개간, 소유한 토지는 불과 2천여 상에 지나지 않았으나, 4보 39사 설치 후인 1893년에는 혼춘 지역에 9백여 상, 동오도구에 2천 4백여 상, 그리고 남강 지역에는 무려 3천여 상에 달했다.⁵⁰

이 시기 한인 이주민 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894년의 약 4만, 1909년에는 18만

48 통감부출장원사무소, 『간도산업조사서』, 명치 43년, 32~35쪽.

49 김춘신(2001),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研究』, 길림민중출판사, 87~88쪽.

50 楊昭全·孫玉梅 著(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380~381쪽.

4,867명으로 증가하였다.⁵¹ 특히 회령·종성·무산 등 대안 지방은 한인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⁵² 이에 대해 오록정은 『연길변무보고』에서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본래 청인들의 용노(傭奴)였으나 점차 소작인, 나아가 자작농이 되었으며, 그들의 거주지도 초기의 무산대안에서 점차 전 북간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금에 와서는 마치 손님이 주인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당시 청조가 북간도 지역에서 실시한 대 한인(對韓人) 정책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 첫째는 광서 초 한민들의 월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광서 8년 조선 황제가 쇠회환을 요구할 때 인정을 봐서 한민들을 수용한 것이며, 셋째는 광서 11년 두만강 북안에 한민들의 전간구역(田間區域)을 설치하고 우대정책을 실시한 것이며, 넷째는 광서 16년에 치발역복을 전제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지방관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오록정은 상술한 원인으로 하여 현재 북간도 지역에는 한인(韓人)들이 5만여 호나 되지만 한인(漢人)은 불과 4분의 1도 못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수백년래 청조에서 경영하던 이 지역이 마치 조선의 식민지로 변화된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⁵³ 한마디로 오록정은 청조가 북간도 개척에서 한인들에게 베푼 지나친 관용과 ‘이한실변(以韓實邊)’ 정책이 결국에는 ‘간도협약’과 같이 국경분쟁까지 유발하는 화근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4보 39사 설치 후 청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귀화 한인을 향약과 사

51 「延吉廳同知呈所管各事宜選具清冊」, 1쪽.

52 金松園, 『關北大觀』[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上, 140쪽에서 재인용].

53 吳祿貞, 『延吉邊務報告』4, 「韓民越墾之始末」.

장으로 선발, 임명하였다. 4보 39사는 공식적인 민인 관리기관이 아니라 간황사와 같은 임시기구에 불과하였다. 향약과 사장은 관할지역 내의 주민들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봉록을 해결하였으며, 그들의 주요 임무는 관청의 지시를 전달하고 관아를 도와 세금을 징수하고 주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약제는 한인전간구역 내 대부분 사무를 한인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한인의 독자적인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4보 39사 설치 후 두만강 북안 지역에 정착한 한인들은 전 시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국내외의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00년 8월 한국 정부가 두만강 연안 6군에 진위대를 주둔,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 설치, 1902년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는(1903년 간도관리사로 승격)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자, 청 정부도 1902년 11월 국자기에 연길청을 설치하고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변계경무서는 설립 초기 북간도 지역 한인 촌락을 순회하면서 민사 및 형사 소송사건을 처리했으며, 이범윤도 간도관리사로 임명되자 북간도 지역 한인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진행하고 지방관리를 선발, 임명하였으며 매 호당 호전(戶錢)으로 엽전 1조 620문(1조는 1,000문, 대략 중전 713문에 해당함)을 징수하였다. 이범윤은 월간구역뿐만 아니라 혼춘의 흑정자와 동오도구 등 초간구역의 4개 사도 8개 사로 재 획분한 후 762호의 한인들로부터 매 호당 호전 1조 100문씩 징수하였다. 한국 정부의 적시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1903년 2월까지 이범윤은 여비, 잡비, 납

적비 등으로 무려 7만 3,956량 2전 5푼(백은)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당시 한인 이주민들로부터 징수하였다. 이외에도 이범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북간도의 동부와 서부 방면으로 이주한 농호에게서도 매 호당 백은 1냥 1전 5푼씩 도합 1만 1,487냥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매개 사의 영장(領長)들에게 호전으로 매 호당 6냥 5전 2푼, 군량으로 좁쌀 6말씩 징수하여 1904년 1월 26일까지 중정부관서에 보낼 것을 명령하였다.⁵⁴ 특히 이 시기 이범윤의 사포대와 경무서 및 진위대들은 수시로 두만강 상류 일대를 점거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화, 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1904년 7월 길림장군의 보고에 의하면 1903년 8~9월 사이 상화사(尙化社)·선화사(善化社)·송화사(崇化社)·덕화사(德化社) 등 4사 211호의 화한(華韓) 백성들이 한국 병사들에 의해 입은 손실액이 무려 은 19,546량에 달하는데, 그중 한인 이주민 126호에서 입은 손실 총액은 5,159.98에 달했다.⁵⁵

이와 같이 이 시기 한국 정부가 변계경무서, 진위대, 간도관리사 등을 통하여 북간도 지역 한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을 시도함으로써 한인들은 청국과 한국의 이중적 통치와 착취를 받게 되었다. 특히 청 정부가 이범윤의 침략 세력을 몰아내고 그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한인들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대안 지역 조선 변민들의 생활마저 궁지로 몰아갔던 것이다. 결과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은 변계경무서나 이범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으며 조선국 내의 변민들은 오히려 변계경무소와 지방관청

54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1, 『개척』, 민족출판사(1999), 제198쪽.

55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편(1972), 앞의 책 9卷, 5881쪽.

에 이범윤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후 1907년 일제의 간도 침입은 청 정부는 물론이고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이 시기 북간도 지역에는 연길청을 중심한 향약제와 간도파출소를 중심한 도사장제가 병존하는 국면이 나타났으며 한인사회도 점차 친일 세력과 친중 세력으로 양분되어 갔다.

친일 세력은 주로 도사장제에 의해 임명된 도사장, 사장, 촌장 등과 일진회 회원 및 시천교 교도들로 구성되었다. 도사장과 사장의 기본 임무는 파출소의 지시와 명령을 전달하고 또 한인들의 모든 상황을 파출소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즉 파출소는 도사장, 사장, 촌장 등을 통하여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감시, 감독하였으며 한인들의 일거일동을 알아서도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파출소는 오히려 도사장제는 성격상 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한인들에게서 징수하였다. 북도소는 매년 매호에 27전, 종성간도와 무산간도는 20전을 징수하였으며 한인 집중 지역인 회령간도에서는 매호 52전을 징수하였다.⁵⁶

일제는 저들의 침입을 정당화하고 도사장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 국내로부터 친일파인 일진회 회원들을 북간도로 끌어 들였다. 1905년 러일전쟁 후 윤갑병(尹甲炳)은 회령 일대에서 시찰 중에 있는 주한 일본군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에게 ‘간도주권 수복’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⁵⁷ 한국 정부는 1907년 그를 함경북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그

56 『間島事情』, 동양척식주식회사(1918), 102~104쪽, 「都社社長村長職務規定」.

57 中井錦城(1915), 『朝鮮回顧錄』, 東京糖業研究會出判部, 129~209쪽.

리고 동년 7월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함경도를 일진회의 근거지로 간주한다면 간도 개척이 일진회에게는 생사존망이 걸린 대사(大事)”라고 보고하면서 일진회의 간도 진출을 제안한 바 있다.⁵⁸ 1908년 5월 사이토(齋藤) 소장은 경성에서 일진회 간부들을 만나 그들의 북간도 이주를 권장하였으며, 통감부에서도 이들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⁵⁹ 일제의 종용 하에 일진회는 용정촌에 지부를 설치하고 윤갑병을 지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북간도 각 지역에는 분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일진회는 도사장제 내의 각 사에 십가장, 백가장을 두어 한국인의 동태를 수시로 파출소에 보고하였다. 간도파출소는 일진회를 이용하여 친일적인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나아가 한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청국의 지방 행정에 대항하도록 종용하였다.⁶⁰

친중 세력은 주로 일찍 북간도에 이주하여 이미 귀화 입적한 친중 반일적인 유지들과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해 북간도로 망명한 반일 친중적인 민족운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친중 반일 세력의 대표 단체는 연의회(捐義會, 일명 演義會)였다. 그들은 북간도 지방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이곳의 한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국 관헌의 보호를 받아 왔으므로 간도파출소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약 3백여 명에 달하는 연의회 회원들은 강연회 개최, 청원서 제출 등 각종 활동을 통하여 간도파출소의 간도 침입에 조직적으로 대항하였다. 1907년 말 연의회는 총대를 길림에 파견하여 일본 관

58 市川正明編(1978), 『韓國合併史料』 제2권, 원서방, 591쪽.

59 內田良平(1967), 『日韓合邦秘史』 上, 原書房, 568~569쪽.

60 國會圖書館(1975), 앞의 책, 63~165쪽.

헌에 복종할 의사가 없으니 청국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⁶¹ 1908년 1월에는 서상은(徐相闇)·백남수(白南秀) 등이 길림순무에게 ‘의견서’를 올려 일본의 간도 침입은 결코 한국을 위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은 동삼성(東三省)을 엿보기 위함이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륙 침략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한인 보호를 재요청하였다. 그리고 3월초에는 봉천 총독에게 한인들에게 공자묘(孔子廟)와 학교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연의회는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밀단체들을 조직하여 일진회원과 도사장들에게 하루빨리 각성하여 친일 활동을 중지할 것을 무력으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각 지방의 도사장들은 분분히 사직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간도 파출소 사이트 소장은 정부에 “각지 도사장들이 모두 예측키 힘든 재난이 있을까 봐 겁내고 있다. 회령간도 도사장은 이미 사직했고 북도소 수십 명 사장들도 연이어 사직하고 있다. 지금 오직 상을 하사하고 수매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설복시켜 억지로 유임시키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하였다.⁶² 일제는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고자 길림순무에게 의견서를 올린 연의회(捐義會) 회원 서상은과 연길청(延吉廳)에서 총향약으로 임명한 현덕승(玄德勝)을 체포하여 함흥재판소에 넘겨 판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반일 정서는 계속 고조되어 갔다.

연의회 외에도 북간도의 적지 않은 한인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제의 간도 침입을 반대하였다. 1908년 12월 육도구의 한민 김관선(金官先)은 일제가 친일 학당 창설을 강요하자 차라리 치발역복하여 중화지민

61 金正柱·吳世昌 編(1968), 앞의 책, 315~316쪽.

62 金正柱·吳世昌 編(1968), 앞의 책, 104쪽.

(中華之民)이 되겠다고 관아에 귀화를 신청하였으며,⁶³ 1909년 5월 김장희(金長喜)는 연길청에 상소를 올려 한국이 일제에게 강점 당한 후 일제의 선동으로 하여 많은 한인들이 일본에 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양귀일 내실준화(外樣歸日 內實遵華)’라고 하였다.⁶⁴ 특히 1909년 5월 국자의 한인 백성 대표는 변무독판(邊務督辦)에게 밀서를 보내어 만약 당국에서 무기만 준다면 수천 명을 모집하여 일진회와 일제를 소멸할 것이라고 하였다.⁶⁵

반일 친중 세력인 민족운동가들은 주로 사립학교를 무대로 일제의 간도 침입에 대항하였다. 이민실변 시기 근근히 서당 교육을 통해 천자문을 습득하던 북간도 지역의 한인 교육은 1906년 이상설이 용정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면서부터 근대 교육과 반일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07년 이상설이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후 서전서숙은 재정난에 봉착하자 통감부 간도파출소에서는 회유정책으로 서전서숙에 매월 20원의 보조금을 줄 터이니 계속 서숙을 운영하라고 권유하였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도파출소에서는 윤갑병을 내세워 서전서숙 교사를 사들여 1908년 그 자리에 간도보통학교를 설립하고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강한 반일 감정과 민족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북간도 지방 한인들은 보통학교에 통학하는 한인 아동과 학부형들을 일제의 앞잡이,⁶⁶ 혹은 ‘민

63 延吉廳歷史檔案, 「鄭安邦查該處金官先被日人逼迫請願薙頭歸化請示由」, 「5-2-265」, 光緒 34年 12月 16日, 延邊檔案館所藏.

64 延吉廳檔案資料, 「處理韓民雜件」, 「5-2-423」, 宣統元年 5月 22日, 延邊檔案館所藏.

65 吉林東南路道檔案資料, 「密書」, 「5-2-423」, 宣統元年 5月, 延邊檔案館所藏.

66 嶋田道彌(1935), 『滿洲教育史』, 대련 문교사, 419쪽.

족의 변절자'로 경멸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통감부의 보통학교에는 교원이 17명이나 되었지만 입학한 학생은 겨우 54명에 불과했다.⁶⁷

이와는 달리 서전서숙이 폐교된 후 그 운영자 및 교사들은 연변 각지에 흩어져 명동학교, 정동학교, 창동학교, 광성학교 등 사립학교들을 세워 서전서숙의 교육이념과 민족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한인 사립학교들은 그후 종교의 포교와 더불어 반일 교육의 요람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한인 촌락들을 한데 모으고, 혈연과 지연에 얽매어 있던 한인들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한마디로 일제의 간도 침입과 통감부 간도파출소 설치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에게 아무런 보호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중통치와 압박이라는 고통만 안겨주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간섭만 없었더라면 그곳에 농부와 광민들이 그 전부터 친밀하던 청국 정부의 방해와 박해를 받을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장구히 태평을 누릴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통감부에 의해서 간도 거주 한인들과 청국과의 관계가 이간되고 분열되었으므로 통감부의 간도 진출은 한인들이 청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67 한생철, 「용정교육개황」, 『연변문사자료』 제2집, 3쪽.

3. ‘간도협약’ 체결 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동향

1) ‘간도협약’ 주요 내용과 영향

일본은 1907년 용정촌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인구본위(人口本位) 정책을 취하면서 청조와 강경한 대책으로 맞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1908년부터는 간도 문제를 저들의 대륙 침략 기회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급전시켜 나갔다. 동년 4월 일본 외무성은 주청 공사에게 “간도 문제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거쳤는 바 현재 한국 측의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薄弱)하여 결국 두만강을 국경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국 측으로 하여금 일,한인이 동 지방에 잡거토록 허락할 것과 국자가에 일본영사관을 설치하고 기타 주요한 지점에 영사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한국인의 재판을 일본영사관에서 행한다는 3가지의 조건을 승낙받고, 나아가 길장철도를 회령까지 연장하고 천보산의 광산 채굴에 일본국민이 착수하는 2가지 권리를 승인받는 조건에서 본 문제를 해결하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확정하는 것을 최후의 방법으로 제시하되 이 방법이 채택될 때까지 당분간은 종래의 방침대로 청국 정부에 대항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⁶⁸

그후 1909년 2월 6일부터 일본대표 일본공사 이슈인 히코키치(伊集院)와 중국대표 외부상서(外部尙書) 양돈언(梁敦彥)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간도

68 日本外務省 編(1908), 『日本外交文書』 41卷 1冊, 437~439쪽, 「明治 41年 4月 7日 林外務ヨリ在淸林公使宛 電信」.

문제에 대한 답안이 진행되었다. 결과 동년 9월 4일 청일 양국 대표는 북경에서 「중한도문강계무조약(中韓圖門江界務條約)」과 「만몽5안건(滿蒙五案件)」에 관한 청일조약을 체결하였다.⁶⁹

‘간도협약’은 모두 7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한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은 제 3, 4, 5조라고 볼 수 있다. 한인의 거주권에 대하여 조약 제3조에서는 “청국 정부는 종래(從來)와 같이 도문강북(圖門江北)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민(韓民)의 거주를 승인한다”고 규정하였다. 한인에 대한 재판권에 대하여서는 조약 제4조에서 “두만강북지방(豆滿江北地方)의 한민(韓民)은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고 청국지방관의 관할 재판으로 귀속한다. 청국관헌은 우(右) 한민(韓民)을 청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게 한다. 한인에 대한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은 청국 관헌이 청국의 법률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하며 일본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약 제5조에서는 “도문강북(圖門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민소유(韓民所有)의 토지가옥(土地家屋)은 청국 정부에서 청국 인민의 재산과 같이 완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간도협약’에서 청국 정부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거주권, 토지소유권 및 보호권, 국경자유왕래 및 자유무역 등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간도협약’에서 규정된 거주권, 토지소유권 등은 엄격히 제한된 것이었고 그것도 기정사실을 법적으로 재차 인정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먼저 한인들의 거주권에 있어서 ‘간도협

69 金正柱·吳世昌 編(1968), 앞의 책, 387~389쪽.

약'에서는 부도(附圖)를 별도로 정하여 이른바 '간지'의 범위를 남은 도문강, 동은 가야하, 북은 노야령(老爺嶺)부터 서남으로 합이파령(哈爾巴嶺)·황구령(黃溝嶺)·와집령(窩集嶺)·북증산(北甌山)·홍기수령(紅旗水嶺)을 지나 정계비(定界碑)에 이르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연길현(延吉縣)·화룡현(和龍縣)·왕청현(汪清縣)·춘융향(春融鄉)의 일부 지역과 안도현의 홍기하사지방(紅旗河社地方)에 해당됨으로 당시 왕청현의 대부분 지역과 혼춘현은 제외되었던 것이다.⁷⁰ 다음으로 청조는 협약에서 규정한 '한민(韓民)이 소유(所有)한 토지(土地)'에 대하여 이는 "한민이 무주지(無主地)를 자체로 개간하여 종전부터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토지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귀화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비귀화 한인들은 토지소유권을 향유할 수 없었던 것이다.⁷¹ 그렇다면 '간도협약'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인에 대한 재판권 문제였다. 즉 일본은 한인에 대한 재판입회권, 지조(知照)권, 복심청구권 등을 승인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간도협약'은 한인들에게 아무런 법적 '혜택'을 주지 못한 반면 오히려 일본 측에 한인들을 대륙 침략 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수 있다.

사실 간도 지역 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간도협약' 체결 전 중·일 양국 간의 교섭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1909년 8월 7일 중국 측이 '만주 5안'을 승인하자 일본 측은 8월 12일에 간도 영유권과 한인 재

70 東亞經濟調査局(1928), 「東部吉林省經濟事情」, 『經濟資料』第14卷 第2號, 6쪽.

71 天野元之助(1931), 「間島朝鮮人の條約上の權利」, 『間島に於ける朝鮮人問題に就いて』, 中日文化協會, 50~53쪽.

판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두만강북 일대의 땅을 청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해당 지방의 한일 양국민의 잡거와 영업을 인정하고 그 풍속의 개량을 강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장래 한인의 잡거지역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하여 현재 한민의 조밀(稠密)한 지역에 한할 것이다. 즉 동은 가야하 북은 노야령, 서는 노야령으로부터 정계비 일대에 이르는 지역이며 서간도 전부와 가야하 이동의 지역은 한인이 잡거하더라도 장래 잡거계 내에서 획출할 것이다. 2) 청국 정부는 용정촌·국자가·두도구·백초구·하천평·동불사 등 6개소를 개방하여 통상지로 한다. 일본은 용정촌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기타 지방에 영사 분관을 설치한다. 또 통상지 이외의 각 지방에 경찰서 및 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하여 잡거한민을 보호 관리한다. 이중 경찰서 설치의 건은 철회할 수 있다. 3) 두만강북 일대 지방에서 일반인민이 종래 획득한 재산과 이미 착수한 사업은 청국 정부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상술한 제안에 대하여 청 정부는, 첫째, 연길 간지의 한민으로서 청국의 국적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서 장래 상부지 외에 거주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재판 관할에 귀속시키고 중국 관리는 한민과 화민을 똑 같이 취급한다. 2) 모든 납세의 의무는 화민과 같이 하고 일체 행정상 처벌과 위경죄(違警罪) 및 보통안건은 모두 청국 관리의 처분에 의한다. 다만 한민 간의 소송 혹은 한민이 피고일 때 그 죄가 감금(監禁) 10년 이상, 민사소송에서 10만 원 이상의 안전에 대하여서는 중국 관헌이 판결한 후 일본 영사에게 지조(知照)하고 일본 영사가 합법적이지 아니라고 인정할 때 복심(覆審)을 청구하고 영사가 입회할 수 있다. 둘째, 청국에서는 2, 3처의 상부지를 개하고 부내에 각국 영사관의 설립

을 윤택하고 행정, 경찰 및 각 공정은 청국이 자행판리(自行辦理)하되 영사관 내에 사법 경찰을 설치하여 해국 거류민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협약'은 일제의 대륙 침략의 이권을 확보하게 하였을 뿐 한인의 법적 권리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간도협약'은 한인들의 기존 권리마저 상실케 했으며 한인들에게는 정치상의 2중적 통치와 경제상의 2중적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간도협약'이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은 첫째, 치발역복·귀화입적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둘째, 한인의 이주와 토지소유권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셋째, 한인들의 거주 지역이 잡거지역으로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넷째, 한인들을 일제의 대륙 침략의 선봉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섯째, 북간도 지역이 간흔(間屯)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여섯째, 간도 지역이 일제의 대륙 침략 기지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

2) 청, 일 양국의 대 한인 정책의 변화와 한인사회의 동향

(1) 청, 일 양국의 대 한인 정책의 변화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는 협약에 근거하여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철폐하고 그 대신 용정춘에 총영사관을, 국자가, 두도구, 배초구, 훈춘 등지에는 영사 분관과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병' 후 한인들의 북간도 이주가 대폭 증가하자 이른바 한인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경찰소를 14개소, 경찰 144명으로 증가하였다.

일제는 ‘간도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할 때부터 한인들의 거주 지역과 상부지의 범위 문제를 교묘히 이용하였다. 즉 조약에서 북간도 지역을 잡거지역과 비잡거지역으로 나누고 상부지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잡거지역으로 확대시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재판권(관할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협약」 제4항에 한인에 대한 일체 재판은 “일본 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사실상 한인에 대한 재판입회권, 지조권, 복심권 등을 교묘하게 취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협약」 체결 후에는 이를 근거로 잡거지에 거주한 모든 한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한일합병’ 후 북간도 거주 한인들의 국적 문제에 대하여 조선 통감은 1910년 7월 일본내각에 “1) 간도 거주 한인은 의연히 ‘간도협약’에서 규정한 지위를 향유한다. 2) 이미 외국에 귀화하였지만 의연히 이중국적을 보류하고 있는 자는 일본 국적법이 조선에 적용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연히 일본 신민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제안하였다.⁷² 이는 잡거구역뿐만 아니라 비잡거구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이중국적자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세력 범위를 한인이 거주한 북간도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11년 3월 3일 일본 중의원은 만주 영사 재판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간도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안건은 모두 조선총독부 지방재판소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북간도 한인에 대한 영사 재판권을 조선의 식민통치와 연계시켰다. 이에 따라 동북에 있는 영사관도 외무성과 조

72 山本四郎 編, 「寺內正毅關係文書」, 『京都女子大學叢書』 9, 180쪽.

선충독부의 이중 지휘를 받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이 같은 정책은 ‘간도협약’ 체결 후, 특히 일제의 조선 강점 후 청 정부의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는 영사관을 통하여 친일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친일 단체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량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친일 단체를 통한 토지 약탈에 대해 1911년 중국의 『민립보(民立報)』는 “연길에 거류하는 일본인은 한인들을 부추겨 조선인회(朝鮮人會)를 설립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니 원래 이회는 이전의 일진회를 고쳐 만든 것으로서, 그들은 전문적으로 연길의 황지를 사들이는 것을 중지로 하고 있다. 지금 연길·용정촌 등 곳에는 이 회가 이미 성립되었는데, 안에는 이사, 참사 등의 각 임원들이 있고 세월신(歲月薪)은 일본 돈으로 32 원이며 일본 돈을 내어 땅을 사는 일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연(駐延) 일영사(日領事)에게 거금을 발급하였고 암암리에 한인들을 시켜 도처에서 화인을 기편하여 땅을 도매하고 있다. …… 현재 많은 한인들이 도처에서 화인들로부터 땅을 구매하고 있지만 실제상 구매에서 한인은 이름만을 내건 데 불과하고 일본인이 모두 사들이는 것이다. 연변 관헌이 만약 신속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연길의 풍운은 멀지 않아 곧 변하게 될 것이다”⁷³라고 지적하였다.

간도 구제회는 일제가 한인들을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설립한 식민금융기관이다. 1911년 5월 용정촌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기회로 설립된 간도 구제회는 피해본 한인들을 구제한다는 미명하

73 『民立報』 1911. 1. 19. 「一進會餘毒」,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4卷(上), 810쪽.

에 그들에게 토지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그리고 만약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토지와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영세한 한인들의 토지를 대량 점거했다. 뿐만 아니라 간도 구제회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직접 토지 등 부동산 매입에 대량 투자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하기도 하였다. 1911년부터 1913년까지의 3년간 간도 구제회는 총 자금의 50%를 직접 토지 매입에 지출하였다.⁷⁴ 이와 같이 일제는 간도 구제회를 통해 북간도의 토지를 다량 점유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수많은 한인들은 점차 일본 식민회사의 전농(佃農)으로 전락되어 갔다.

한편 '간도협약'을 통하여 북간도가 청국의 영토로 재확정되고 상부지 외 북간도 거주 한인들에 대한 청국의 관할권도 인정되자, 청 정부는 지방 행정기구를 재정돈함과 동시에 한인들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제정, 실시하기 시작했다. 청 정부는 '간도협약' 체결 이튿날인 9월 5일 혼춘부도통을 길림동남로병비도로 개칭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연길청을 연길부로, 화룡육분방경력을 화룡현으로 각각 승격하고, 혼춘에는 혼춘청을, 배초구에는 왕청현을 새로 증설하였다. 그리고 1910년 1월에는 동남로병비도관서를 혼춘으로부터 한인들이 집거하고 있는 국자가로 옮겨왔다. 청조의 이러한 조치는 '간도협약' 이후 일제가 용정춘에 총영사관을 그리고 국자가, 혼춘, 두도구, 배초구 등지에 영사 분관을 설치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임과 동시에 지방 행정기구의 체계화 과정이기도 하였다.

청 정부는 지방 행정체계를 재정돈하는 한편 '간도협약'의 규정에

74 『間島關係(開放及調査)』 1, 고려서림(1990), 196~287쪽.

따라 일제의 영사 재판권과 한인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청 외무부는 9월 12일 동삼성총독과 봉천, 길림순무에게 “1) 간지거주(墾地居民) 즉 상부지 내에 거주하되 경작하는 토지가 상부지 밖에 있는 자는 ‘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관헌의 재판을 받는다. 2) 도문강 이북의 잡거지 밖에 거주하는 한인은 일률적으로 중국 지방 관헌의 보호와 재판을 받는다”는 ‘연변변무선후사의(延邊邊務善後事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일제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⁷⁵

‘간도협약’ 체결 후 한인사회의 획기적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동년 말 청 정부의 「대청국적조례(大清國籍條例)」 제정이었다. 본 「조례」는 도합 5장 20조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외국인들의 입적법에 대한 규정은 1) 중국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2) 20세 이상으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해당되는 자, 3) 품행이 단정한 자, 4)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예능(藝能)이 있어 능히 자립할 수 있는 자, 5)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입적 후 본국 국적을 소실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다.⁷⁶ 그러나 이상의 조건을 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선 한인들의 거주 연한 문제이다. 대체로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청조가 이민실변을 실시한 1880년대로부터 이주를 시작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20세기 초에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10년 이상을 전제로 할 때, 대부분의 한인들이 입적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상당한 재산이나 예능의 소지 여부 문제이다. 한인들이 조선국 내에서 북

75 王藝生(1932), 『六十年來中國與日本』 5, 大公報社, 220~221쪽.

76 『東方雜誌』 第26卷 第4號, 129~130쪽.

간도로 이주한 것은 주로 경제적인 원인에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한인 이주민의 절대 대부분은 맨주먹으로 이곳에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겨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이주민의 90% 이상이 농민 출신이어서 농업을 제외한 기타 예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세 번째는 입적 후 본국의 국적을 상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구한국시대(舊韓國時代)의 법령에 의하면 한국인의 국적 이탈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국 측이 한인들의 본국 국적 이탈을 반드시 요구할 경우 한인들의 중국 국적 가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동남로병비도(東南路兵備道)는 1910년 9월 새로운 「입적세칙(入籍細則)」을 제정, 공표하였다.⁷⁷ 본 세칙에서는 입적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5년으로 수정하였으며, 품행이 단정하거나 입적 후 확실히 본국의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서는 거주 기한이 5년이 되지 않아도 지방 관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인호들의 문패도 원래의 기호(寄戶)에서 신정호(新正戶)와 신부호(新副戶)로 바꾸어 입적자와 비입적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적세칙」은 한인들이 입적 후 반드시 본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한다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으며, 입적 신청 시 제출하는 감결(甘結)에서도 ‘원진기본국권리(願盡棄本國權利)’라는 구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청 정부가 차후 일본이 한인들의 국적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동남로도도는 「입적세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77 吉林省檔案館檔案 吉林東省, 「東南路呈報韓人入籍并調查及善後方法」 檔案番號 1857卷 34號.

「한제세칙(限制細則)」⁷⁸과 「취체세칙(取締細則)」⁷⁹을 제정하였다. 1909년 ‘간도협약’에서 고려령과 가야하를 기준하여 북간도 지역을 잡거구와 비잡거구로 획분하여 한인들의 비잡거구 내의 거주와 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분할 관리 원칙을 제정하였기에, 본 「세칙」들도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잡거구역에서는 한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잡거구역에서는 한인들에 대한 취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시기 청 정부는 어디까지나 ‘간도협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인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여 일제의 토지약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 동남로도는 「잡거구 및 비잡거구 거주 한민에 대한 갑을양종(甲乙兩種) 방법」을 비밀리에 작성하여 각 현 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본 「방법」은 잡거구역 내에 거주한 한교(韓僑)는 토지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의 관할과 법률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중지하에 잡거구 내 거주 한민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1) 입적을 권유하여 본 조약과의 관계를 이탈하도록 한다. 2) 관황(官荒)의 조종(租種)에 있어서 잡거민이 이미 사간(私墾)하여 숙지(熟地)로 된 지단(地段)만을 허락한다. 3) 화인(華人)들이 조종(租種)하는 관황(官荒)에는 한교(韓僑)들의 경작을 금지토록 한다. 4) 동삼성식민총국(東三省殖民總局)에 요구하여 잡거구 내에 이민을 실시하여 잡거구의 토지를 점거함으로써 한교들의 생활력을 감소시킨다. 5) 각 자치기관에 밀령(密令)하여 인민들이 자치의 방법으로 한교들에게 토지매매를 금지

78 楊昭全·李鐵瓊 等編(1992),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鬭爭資料彙編』 上, 遼寧民族出版社, 58~59쪽.

79 吉林省檔案館檔案, 吉林東省, 「東南路呈報韓人入籍并調查及善後方法」 檔案所藏番號 1857卷 34號.

토록 한다. 그리고 비잡거구 지역의 한교들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전제로 1) 토지소유권을 세습(世襲)한 자에 대하여서는 입적을 권유하여 중국민이 되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교들은 토지소유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잡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2) 금후 한교들의 입적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3) 화민들은 한교들을 절대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경내(境內)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민들 중 입적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정부는 그들의 토지를 시가(時價)로 전부 회수하여 순수한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출경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⁸⁰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남로도는 잡거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하여서는 입적을 통하여 '간도협약'과의 관계, 다시 말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목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간도협약' 체결 이후 일제가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귀화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거주권 및 토지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내부적 대응방침으로 평가된다. 본 「방법」이 내부 문건으로 작성되고 지방 관청에만 극비로 전달되어 집행된 사실만 보아도 「방법」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⁸¹

'간도협약' 체결 후 동남로도는 비귀화 한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귀화 한인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면서 회유정책을

80 東南路道檔案資料, 「對待雜居區韓民甲乙兩種方法」, 宣統 3年 9月, 「3-1-266」, 延邊檔案館所藏.

81 延邊檔案館에 所藏되어 있는 東南路道檔案 「對待雜居區韓民甲乙兩種方法」 자료에는 '極秘'라는 官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方法」은 公표되지 않고 極비로 전달,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입적한 한인에 대하여서는 1년간 지조(地租)를 면제 주었으며, 고용인이 입적하면 황지 2, 3상을 부여한 후 숙지로 개간되면 황지(荒地)의 가격으로 토지세를 결산하기도 하였다.⁸²

이와 같이 ‘간도협약’ 체결 후 일본과 청 정부는 각기 저들의 방식대로 북간도 지역 한인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물론 이 시기 한인들이 둘러싼 청·일 간의 대립과 분쟁은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협약’의 체결은 국경 분쟁으로 말미암아 장기간 이증통치와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한인 이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개척한 북간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제2고향으로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결과 ‘간도협약’ 체결 직후 북간도 지역에서는 간민교육회, 간민회 등 한인 자치조직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2) 한인사회의 동향

1909년의 ‘간도협약’ 체결과 「대청국적조례」 제정, 1910년 한일합병, 1911년 신해혁명 발발, 1912년 중화민국 탄생 등 일련의 정치, 사회적 변화는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간도협약’ 체결 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입적을 전제로 한 자치 운동의 흥기였다. 사실 ‘간도협약’ 체결 전 한·청 간의 영토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한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조선인 혹은 조선 이주민, 월간민, 간민 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

82 北京古宮博物館 編(1964), 『清光緒朝中日交渉史料』 7, 文海出版社, 240쪽.

고 일부 귀화 입적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귀화를 단순한 토지 소유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계로 1900년대 초 러시아군과 이범윤 관리사가 왔을 때나 혹은 통감부 간도파출소 설치 시기에 적지 않은 귀화 한인들이 다시 축발(蓄髮)하고 백의를 바꾸어 입는 일들이 비밀비재 하였다.⁸³ 이러한 현상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인 이주민들이 대체로 몸은 북간도에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간도협약’이 체결되어 북간도 지역이 청국 영토로 확정되고 여기에 1910년 ‘한일합병’으로 한인들이 일시에 망국노로 전락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일제의 보호하에서 일본 신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청국에 입적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한 반일 지식과 당지의 유지들도 입적을 일제의 단속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수단으로, 나아가 중국 측의 지지하에 합법적인 한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귀화 입적을 단순한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상의 입적과 한인 자치를 목적인 정치적 입적 운동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1909년 9월 ‘간도협약’이 체결되고 이어 「대청국적조례」가 반포되자 자발적으로 입적하는 한인들이 급증하였는데, 화룡현은 수일 내에 176명이 입적 수속을 하였고, 북간도 전역에서는 2,389명이 귀화 입적을 자원하였다.⁸⁴ 그리고 1910년 정안립(鄭安立) 등 500여 명도 보증서 등 입적 서류를 연길현 관서에 제출하였다.⁸⁵

83 김해룡(1908), 『間島在住韓人の親族慣習及其他』, 필사본, 참조.

84 길림동남로병비도당안, 「詳覆韓民呈懇入籍各情形請示遵行由」, 선통 2년 10월 21일, 연변당안관소장, 4-1-136.

한인 자치를 위한 귀화 입적은 처음부터 청 정부와의 타협 속에서 이루어졌다. 1909년 청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북경에 헌정편사관(憲政編查館)과 자정원(資政院)을 설치하고 지방 자치를 권장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그 해 10월 이동춘, 박무림 등은 동남로병비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인들은 “언어, 습관, 성격이 중국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간도는 중국 땅에 속하지만 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⁸⁶ 이에 대해 길림순무는 한인들이 모두 귀화 입적한다면 임시 자치회의소 같은 기구는 가히 설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⁸⁷ 그러나 길림순무의 자치회의소 유희는 한인들의 민족 자치가 아니라 지방 자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후 1910년 3월 이동춘, 박찬의 등은 연길부 도빈과 ‘비밀협정’을 맺고 국자가에 ‘한인자치회’ 대신 간민교육회를 설립하기로 협의하고 「간민교육회장정」을 제정했다. 본 「장정」에서는 “본 회 내에 자치일부(自治一部)를 특설(特設)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비밀협정’에서는 북간도 한인들의 입적을 전제로 “자치권을 인허”하기로 협의하였다.⁸⁸ 그런데 동년 5월에 제정된 「시판간장(試辦簡章)」에서는 자치일부를 특설한다는 조항은 삭제되고 단체의 명칭도 간민교육회로부터 연길부 간민교육회로 변경되었다.

85 秋憲樹(1971), 『자료 : 한국독립운동사』 4(하), 연세대학교출판사, 1467~1477쪽.

86 조선총독부경무국, 『청국국경관계서』 제3책, 한국 정부기록보존소 ; 이성한(1991), 『근대동아정치력학』 금정사, 116쪽.

87 연변당안관소장 : 『爲密飭事』 선통원년 11월초 10일, 전종5-목록3-안권-621.

88 「局子街墾民教育會ニ關スル件」 1911. 2. 13. 『日本外務省文書』, MT, 11259, 166~169쪽[潘炳律(1998),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89쪽에서 재인용].

간민교육회는 표면적으로는 연길부 내 권학소의 부속기관으로서 잡거구역 간민 교육에 관한 자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밀협정’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간민교육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인 자치였다. 그러므로 간민교육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자 노력하였다. 간민교육회에서는 먼저 마을마다 순회 연설을 다니면서 이주민들을 각성시켜 사립학교를 건립하였으며, 1912년에는 소영자(小營子) 광성학교의 계봉우(桂奉瑀), 명동학교의 정재면(鄭載冕), 와룡동(臥龍洞) 창동학교의 남공선(南公善) 등 3인을 교과서 편찬위원으로 임명하여 민족 교육에 알맞은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간민교육회는 별도로 연구회와 임시 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민족 교육의 전문교사를 배양함과 동시에 『월보(月報)』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간민교육회는 중국 관헌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인들의 법적 문제가 야기되면 직접 중재를 맡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제 관헌들은 간민교육회를 한민 자치회의 ‘화신(化身)’이라 평가하였다.⁸⁹ 그러나 ‘비밀협정’에서 지부(知府) 도빈(陶彬)과 협의했던 ‘한인 자치’는 1911년 신해혁명의 발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간민교육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운동은 1912년 중화민국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13년 4월 26일 김약연, 이동춘 등은 간민교육회를 토대로 국자가에 한인 자치단체인 간민회 총회를 건립하고 연길, 화룡, 왕청현에 분회를 설치하였다. 간민회는 당시 한인들이 북간도 지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을 「간민회 조직총회소집통지서(懇民會組織總會召集通知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

89 潘炳律(1998), 앞의 책, 86쪽.

다. “우리가 중국 영역내에 존접(尊接)하여 식모여토(食毛茹土)한 지 40여 년 동안에 중국법률의 보호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은택(恩澤)에 목욕(沐浴)하여 도문강북(圖們江北)이 과연(果然) 우리의 제2강구(第二康衢)된 지 오랫동안이다. …… 민국공화(民國公和)가 성립된 이래 우리 간민도 병(並)히 공화(公和)의 행복을 향유하기 위하여 입적(立)의 변의를 주시며 토지에 대한 기득권까지 보호하신다 성언하셨으니 민국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다만 감복할 뿐이다.”⁹⁰ 그리고 간민회 회장 김약연도 동남로관찰사서에 올린 「건백안」에서 “백성이란 갈라지면 스스로 패하고 친목하면 스스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친목과 품행일치 달성을 종지로 세운 것입니다. …… 지금의 일반적인 민심을 살펴보면 십의 팔구는 점차 일치한데 모두 공화(公和)의 혜택을 누리며 최선을 보답하려는 마음입니다. 또 짐을 잃은 유랑민들이 날에 따라 더 깊이 향화(向化)하고 있으며 고향처럼 즐기는 심정입니다. 대중화민국 당국의 제공(提公)들이 한 집안처럼 대하는 그 은정에 깊이 감격되어 더 말할 바 없습니다. …… 한족(韓族)은 이 땅을 제이(第)고방(故邦)처럼 여기면서 의리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으로 고수(固守)하려 합니다.”⁹¹ 즉, 북간도의 한인들은 민국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차 민국 공민으로 향화(向化)하여 가고 있으며 이곳을 자신들의 제이(第)고방(故邦)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북간도의 한인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이미 북간도에 정착한 민국 공민으로서의 마음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약연의 이러한 인식은 청조 시기 ‘치발역복’을 전제로 한 ‘동화정책’의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라,

90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편(1996),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22~323쪽.

91 延邊檔案館藏書, 墾民會會長 金躍淵의 「建白案」第2號, 中華民國 2年 11月 20日.

민국 시기 한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사회의식과 민족 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간민회가 당시 귀화 입적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즉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과,⁹² 중국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간민회는 ‘간장(簡章)’에서 간민회 건립 목적은 ‘친선의 도모와 중국 법률의 연구’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간민회가 한인 자치단체가 아닌 순순한 민간단체로서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화민국은 ‘연성 자치(聯省自治)’와 지방 자치를 권장하였을 뿐 민족 자치는 제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간민회는 상술한 정의하에서 한인 자치의 실현을 시도하였을 뿐이다. 간민회가 실제로 추진했던 입적 운동, 호구 조사, 토지매매 참여, 사립학교의 건립과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⁹³이 바로 간민회가 단지 중국 법률 연구를 위한 민간적인 연구단체가 아니라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임을 충분히 증명하여 준다.

이와 같이 간민회가 지향했던 자치는 중화민국 정부의 산하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월강민이 아니라 중화민국의 정정당당한 공민으로서의 합법적인 한인(민족) 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치는 1920년대 남만지역(南滿地域)의 반일 단체들이 실시한 ‘자치’와는 성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만약 반일 단체들의 자치가 한인사

92 간민회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북간도 지역 종교계와 교육계 지도적 위치에 있는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최대 사명으로 지향했던 그들은 간민회의 자치운동을 통해 한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금후 해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93 김춘선(2001), 앞의 책, 159~164쪽.

회 내부에서 각 단체들 간의 관할 구역의 획분과 독립운동을 위한 인적 및 물적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간민회의 자치는 지방당국 산하 합법적인 자치단체로서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법적 권리와 생활의 향상을 위한 민족 자치의 구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간민회는 근근히 1년밖에 유지 못하고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자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되는 비운을 겪었다.⁹⁴

이와는 달리 이 시기 연의회를 비롯한 북간도 지역의 유림파들은 비록 반일, 친중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간민회와 같이 귀화 입적을 통한 한인의 자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간도협약’이 체결되자 즉시 연길변무공서에 탄원서를 올려 “무릇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을 얻으면 나라는 반드시 강성해지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는 반드시 쇠퇴해진다. …… 오늘의 이 간도 땅은 중화의 땅이며 간도의 백성은 중화의 백성이다”⁹⁵라고 호소하면서 자신들은 중화의 백성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림파들이 말하는 ‘중화’는 청국이 아니라 중화주의에 토대를 둔 명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체로 조선의 유림들은 명이 망한 후 조선을 소중화로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의 혈통은 중국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유림파들은 저들은 비록 중화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청 정부의 귀화 입적 정책과 간민회의 입적 운동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당시 간도 공교회지회 서기를 담당했던 김정규(金鼎奎)는 그의 「일기」에서 “간민회는 바로 한인

94 東南路觀察使署檔案資料, [吉林東南路觀察使署 布告 第12號], 中華民國 3年 4月 1日, 延邊檔案館所藏.

95 김정규(1994), 『野史』 권2, 隆熙3년 10월 11일자, 『龍淵 金鼎奎日記』 상, 한국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영인본, 360~362쪽.

회이다. 한인회라는 이름을 달고도 우리 백성을 중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려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 자신도 한국 사람이면서 우리에게 중국에 호적을 올리라고 권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일진회보다 더 심한 경우이다. 일진회는 단지 우리 땅을 넘겨주었을 뿐이지만, 지금 간민회는 종족을 속박하여 조상도 잊고 후손도 끊어버리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라고 혹평하였다.⁹⁶ 이와 같이 간민회는 입적을 통하여 한인들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반면 공교회를 비롯한 농무계, 사우계 등 유림파들은 대한제국의 재건만을 바라면서 입적 운동은 종족을 멸살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 간민회는 중화민국의 ‘연성자치제(聯省自治制)’ 실시와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사회 배경에 힘입어 한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학운동의 흐름을 타고 근대적 신식학교를 건립하여 학생들에게 근대문명의 전수와 함께 애국애족 정신과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민회의 이러한 활동은 북간도 지역에서 기존세력이라 할 수 있는 유림(儒林, 士林)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아냈다. 그것은 간민회가 추진했던 입적 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공화정치와 신문화교육이 유림들이 갖고 있는 ‘중화’사상과 복귀주의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결과 1910년대 북간도 지역의 한인사회는 그 전 시기와는 달리 크게는 친일, 친중 양 세력으로 분할되었으나 친중 세력 내부도 간민회를 비롯한 신진세력과

96 김정규(1994), 『野史』 권9, 1913. 6. 14, 『룡연김정규일기』,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492~493쪽.

유림파를 중심한 수구세력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간도협약’ 체결 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식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반일 친중이란 공통적인 목표하에서도 기독교, 천주교, 대종교를 중심한 공화세력과 공교를 중심한 수구세력 간에 이념상 일정한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간도협약’ 체결 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동향에서 자치 운동을 제외하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전민제’의 확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는 영사재판권과 한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약탈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한인 이주민들의 증가와 함께 더욱 확산되어 갔다. 이에 청 정부는 일제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각종 제한 조치를 제정하여 한인들의 토지 점유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1911년 동남로도에서 제정한 「잡거구 및 비잡거구 거주 한민(韓民)에 대한 갑을양종 방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입적하지 않고서도 경작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전민제’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민제’란 간단히 말하여 토지 구입 시, 입적하지 않은 한인들이 청인(淸人), 한인(漢人) 지주나 혹은 귀화한 한인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구입하는 형태로서 명의를 빌려준 지주나 귀화인(歸化人)이 ‘명의지주(名義地主)’가 되고, 실지로 토지를 구입한 비귀화인들이 ‘전민(佃民)’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민제’ 형식은 엄격한 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보면 토지소유권 형태가 아니라 영주경작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토지소유권은 귀화 한인에게만 한정되고 비귀화 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⁹⁷ ‘전민제’는 초기 비귀화 한인들이 화인(華人)들의 토지를

고가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였으나 ‘간도협약’ 체결 후 점차 귀화한인들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1911년 왕청현에서 최초로 ‘전민제’ 형식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건이 법정에 상정되었으나 지방 관원들은 이를 묵인하였다.⁹⁸ 당시 지방 관원들이 ‘전민제’를 묵인한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왕청현 지사 장조주는 “한민들이 입적하는 목적은 입적하여야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 내에서 개간한 대부분 황지는 모두 한민들을 모집하여 개간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만 간지권(墾地權)만 주어 간벽(墾闢)의 이익은 볼 수 있었으나 영지권은 주지 않아 토지가 한민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민은 지주에게 조량(租糧)을 납부하였을 뿐 국가의 대조(大租)와 지방 경학연(警學捐)은 모두 지주가 납부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주인은 여전히 화민이고 한민은 조호(租戶)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무리가 없는 듯 하다”⁹⁹고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전민제’는 그 후 북간도 지역 한인들이 대량의 경작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수한 ‘전지제도(典地制度)’로 자리잡아 갔다. 그러나 이러한 ‘전민제’는 1915년 일제가 「만몽조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간도협약’ 무효론(無效論)을 들고 나오자 청 정부의 취체 대상으로 주목되어 갖은 제재를 받으며 점차 소실되어 갔다.

97 廣瀨進(1936. 9),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朝鮮の特殊性(2)『月報』, 16卷 第9號, 115~116쪽.

98 張朝柱, 『汪清縣經政報告書』 2冊, 宣統 3年 6月 10日, 84쪽.

99 張朝柱, 위의 책, 84~88쪽.

4. 맺음말

1881년 청 정부는 북간도 지역에서 이민실변을 실시하면서 이미 북간도 개척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한인 이주민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 정부는 당시 한인 이주민들이 집거하고 있는 해란강 이남 지역에 통상총국, 무간국 등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한인들의 간황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 정부에서는 1882년 토문강·두만강·양강설(兩江說)을 제기하면서 북간도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두만강 국계에 대한 공동 사감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1885년과 1887년 조, 청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 두만강(토문강) 국경에 대한 감계를 진행하여 비록 두만강 원류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무산 이하는 두만강을 양국의 국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근거하여 청 정부는 1889년부터 두만강 북안에 4보 39사를 설치하여 한인 이주민들을 통일적으로 사, 갑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른바 ‘한인전간구역’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 시기 한인 이주민들은 봉금 시기와는 달리 치발역복을 전제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고 월간지역 내에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한인들의 이주와 개척은 두만강 상류로부터 점차 중류 지역인 회령, 종성, 온성대안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한인들이 개간, 소유한 토지도 초기의 2천여 상에서 6천여 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결과 1900년대 초 한인 이주민은 북간도 지역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했으며 어느 정도 안온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었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후 한국 정부는 청의 종속국이 아닌 자주독

립국으로서 한, 청 국경 문제와 한인 이주민 문제에 임했다. 1901년 한국 정부는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생명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두만강 연안의 6군에 진위대와 변계경무서를 설치하였으며, 1903년에는 이범윤을 북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한인 이주민들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이범윤의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길강군(吉強軍)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범윤과 사포대를 축출하였다. 같은 시기 연길청은 방곡령(防穀令)을 반포하여 북간도와 한국과의 양곡 매매를 금지시켰으며, 두만강 도선장(渡船場)을 봉쇄하였다. 청 정부의 상술한 조치, 특히 방곡령의 실시는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물론이고 당시 절대 대부분의 식량을 북간도에 의존하고 있는 조선의 무산·회령·종성 등 변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곤란을 가져다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변계경무서에 찾아가 이범윤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 청 양국의 지방 관원들은 1904년 6월 15일 「한중변계선후장정(韓中邊界善後章程)」을 체결하여 수년간의 국경 분쟁을 종식지었다.

그 후 1907년 일제의 간도 침입은 청 정부는 물론이고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에게도 또 다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주지하는 바, 간도 문제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국경 교섭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간도 문제'를 저들 대륙 침략 정책에 이용하자 '간도협약'은 조, 중 간의 국경 교섭보다도 오히려 일제의 대륙 침략과 중국 정부의 주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중, 일 간의 간도 분쟁도 표면상으로는 국경 문제, 즉 북간도 지역이 한국령이냐 아니면 중국령이냐 하는 영토 분쟁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이권 확보와 이에 대항한 중국 정부의 주권 보호가 핵심이었다. 결과 1909년 9월 4일

청일 양국은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간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는 단순히 일제의 대륙 침략의 이권을 확보하게 하였을 뿐 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인들의 기존 권리마저 상실케 하여 한인들에게 정치, 경제상으로 2중적 통치와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도협약’ 체결 후에도 한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싼 청일 간의 대립과 분쟁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협약’의 체결은 국경 분쟁으로 말미암아 장기간 이중통치와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한인 이주민들에 자신들이 개척한 북간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제2고향으로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과 ‘간도협약’ 체결 직후 북간도 지역 한인 이주민들은 청, 일 양국의 각종 제재와 단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생활상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간민교육회 간민회 등 단체들은 한인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쟁취하기 위하여 입적 운동, 자치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는 신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최 덕 규 (동북아역사재단)

2011년 11월 15일

5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이 글은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間島協約, 1909. 9. 4)’¹을 중심으로 포츠머스 조약(1905) 이후 제2차 러일협약(1910. 7. 4) 체결로 마무리된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복수전을 주창하던 러시아와 제2의 러일전쟁 준비를 선동했던 일본이 1910년에 이르러 제2차 러일협약 체결을 통하여 군사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문제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간도협약 체결을 분수령으로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영토 보전이 인정된 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대조적인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는 만주와 한국 문제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간도협약은 러일전쟁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중 간의 국경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간도 문제 연구를 국제관계라는

1 간도협약은 일본 측 명칭인 ‘間島에 관한 日清條約’의 줄임말로 중국에서는 ‘圖們江滿韓界務條款’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국내학계에서 일반화된 명칭인 ‘간도협약’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거시적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1908년 11월 30일 주미 일본대사 다카히라^[高平小五郎]는 미 국무장관 루트(E. Root)와 중국의 영토 보전과 상업상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루트-다카히라 협정(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이는 1907년 8월 18일 용정촌에 통감부 임시파출소를 설치하여 간도 영유권을 확보하려던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인데, 미국이 고수한 ‘중국의 영토 보전’ 원칙과 일본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상호 양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제2의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한·중·러 3국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전략거점 간도의 점령이 필수적이라 판단한 일본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철회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일본의 간도 침투가 만주 분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제국주의 열강이 일본을 적극 견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과 ‘중국의 영토보전(the territorial integrity of China) 원칙’은 일본의 간도 영유권 주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만주 침투는 열강의 간섭과 견제 속에서 그 속도와 강도가 조절되었기 때문에, 간도 문제를 한·중·일 3국 간의 문제로만 다뤄온 기존의 연구와 방법론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

2 김종건의 연구에 따르면, 백두산·간도 문제 관련 한중일의 연구는 1948년 이후 약 650여 편의 성과들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김종건(2007), 「백두산간도 역사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역사논총』 18호, 9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간도협약을 다룬 한국과 일본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바, 이는 국제관계사에 착목할 경우, 제국주의 열강의 외교와 대비한 일본 외교의 피동성과 소극성이 두드러질 것을 우려한 일본 연구자들의 고의적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연구 경향이 일정 부분 국내 연구에

그렇다면 제1차 러일협약(1907. 7. 30)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일 양국이 간도협약 조인 이후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해야 했던 원인과, 그것이 일본의 한국 강점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병합’을 인정하는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간도협약이었다. 이는 ‘중국의 영토 보전 원칙’을 제기한 미국의 만주정책과,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양립 불가능함을 인식한 일본과, 간도협약을 연해주 방위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러시아가 만주에서 양국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러일 양국은 1910년 7월 4일 만주의 현상 유지에 합의하는 ‘만주에 관한 러일협약’을 체결하고, 그 비밀 조문에 일본이 북만주와 몽골을 러시아의 특수 이해 지역임을 인정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병합’에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를 통해 만주 침투를 추진하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는 것도 세계사적 시각에서 ‘간도협약’이 갖는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최근 간도 문제 관련 국내의 연구는 ‘동북공정’으로 간도 영유권 주장이 대중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성준(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제43집; 배성준(2004), 「중국의 조청국경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이성환(2006),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6; 한철호(2003), 「근대한중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김춘선(2003), 「조선인의 동북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동향-중국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일본에서의 간도문제 연구현황은 이를 시기별로 요약 정리한 名和悦子(2008), 「日本の對間島政策의 방침 전환과 간도협약-内藤湖南의『間島問題調査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경인문화사 참조.

자 즉각 러시아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러시아가 주도한 제1차 러일협약과 구분할 수 있다. 만주 철도의 증립화에 대한 미 국무장관 녹스(Philander C. Knox)의 제안은, 만주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일본과 러시아에게 대미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토록 하였다. 그래서 주러 일본공사 모토노[本野一郎]가 제2차 러일협약 체결을 러시아에 제안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길림과 회령을 연결하는 길회 철도 부설권을 확보한 것은, 러시아에게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 방위에 심각한 위협이 됨으로써 막대한 방위 부담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 대한 방위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일본과의 타협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의 한국 강점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 글은 러일전쟁을 종결짓는 포츠머스 강화회의(1905) 직후부터 일본의 한국 강점(1910)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러일전쟁 전후처리 과정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간도협약을 정점으로 양 시기로 구분하였다. 전반기는 제2차 러일전쟁을 대비하여 만주 침략 거점으로서 간도를 확보하고자 한 일본과 '중국의 영토 보전'을 명분으로 일본의 만주 분할 계획을 저지하고자 한 제국주의 열강 간 대립의 시기였으며, 후반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 문제 개입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타협을 이루는 시기였다. 요컨대 간도협약(1909)은, 한중일 3국 간의 단순한 국경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산물이며,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강점을 묵인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 논점이다.

2. 일본의 만주 침략 정책과 간도 문제의 국제화

러일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곳이 만주였다. 당대의 선각자 신채호 역시 “현재 세계 경쟁이 동양에 집중하고 동양 문제는 만주가 전제되나니, 이 시대 만주는 열강 시선의 주집하는 장소”라고 파악하고 있었다.³ 이에 일본의 간도 문제 개입은 만주 침략 정책의 시발점으로 간도를 만주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던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따라서 한청 간의 국경 문제인 간도 문제는 일본의 개입을 통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잠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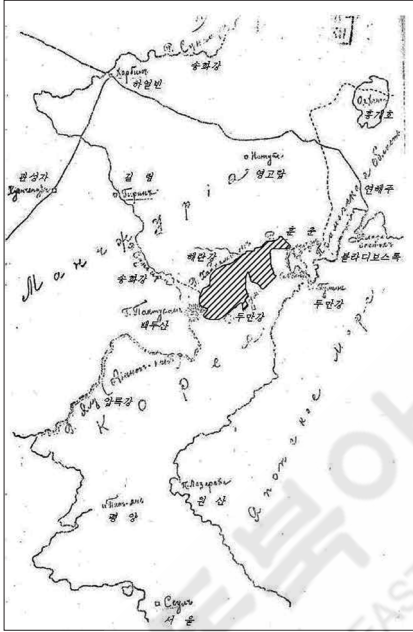
또한 제국주의 열강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러일전쟁 역시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담보될 수 없었던 상황 역시 간도 문제의 국제화에 일조했다. 게다가 1907년에 체결된 제1차 러일협약 역시 일본 군부 및 대일복수전을 강행하고자 한 러시아의 강경파 양측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러일전쟁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정세 불안은 지속되고 있었다. 일본의 군부는 러시아의 연해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대일협상 반대파는 일본이 함대와 군대의 증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만주와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이용하려 한다는 명분하에 일본과의 복수전을 준비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나섰다.⁴ 극우적 경향의

3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9, 20, 21, 22일, 滿洲問題에 就하야 再論함, 『단체 신채호전집』 제6권, 논설·사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730~734쪽].

언론들도 제1차 러일협약 체결 이후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 지역이 일본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대일투쟁을 재개해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⁵ 따라서 동북

아시아에서 러일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초점은 러일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만주와 한국 문제의 해결에 있었으며, 그만한 문제의 중심에는 일본의 만주 침투 거점이 될 수 있는 간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⁶

1906년 8월 30일 주한 러시아 총영사 플란손은 러일 간 불신의 단초가 간도 문제에 있음을 지적했다. 플란손의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1) 일본 신문들은 한국에서 있었던 6월 반일 봉기에 대해 러시아의 음모가



지도 1_ 주한 러시아 총영사 플란손이 간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 출처 : ГАРФ. Ф.818. Оп.1. Д.163. Л. 17. :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 Плансона, 30 Августа 1906 г.

4 РГАВМФ. Ф.418. Оп.2. Д.292. Л. 50~51.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 Бахматьева, 5 сентября 1907.

5 Московские ведомости, 13 сентября 1907 г.

6 ГАРФ. Ф.818. Оп.1. Д.163. Л. 16~19 :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 Плансона, 30 Августа 1906 г.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2) 일본 언론들은 한국 황실에 영향력이 있는 유학자 김승문(金昇文)이라는 자가 고종에게 러시아와 동맹계획을 제안했으며 그 계획에는 러시아에게 원조의 대가로 러시아로 하여금 두만강 상류의 간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고종은 이 계획을 승인했고 김승문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발하여 러시아 군 당국과 협상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러시아는 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섬이 한국령으로 공고화되길 바라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플란손은 서울에 부임하자마자 간도 문제 검토에 착수하였는데 한러 간의 비밀 협상 관련 소문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간도라는 섬은 두만강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1) 간도는 두만강 좌안의 국경지대를 지칭하는 것이며, 2) 이 지역은 만주의 일부이지만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주하면서 한청 간의 분쟁이 야기되었다”고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결국 플란손은 간도가 청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⁸

간도가 청국 영토라는 플란손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한청 간의 국경 논쟁의 핵심은 만·한 경계의 기준 설정인데, 중국인뿐 아니라 러시아인들은 두만강을 획계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송화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河)을 경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한국인들은 국경이 두만강을 따라간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 강이 동쪽으로 흐르지 않고 백두산 북쪽, 즉 해란

⁷ 국역 『梅泉野錄』 제5권, 光武10年(1906) 40, 金升文의 수감.

⁸ ГАРФ, Ф.818, Оп.1, Д.163, Л. 16~19 :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 Плансона, 30 Августа 1906 г.

강 상류인 두만강 건너편으로 국경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양대 지류 사이의 공간이 바로 간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바로 두만강과 송화강 상류 중간 지역인 이곳을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간도가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지도들은 한중 국경선이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직선으로, 즉 두만강 상류로 이어지며 여기서 강의 흐름을 따라 한러 국경이 시작되는 사볼로프카(Саволовк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 학자들은 중국 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한중 국경 문제는 한국 측의 무능과 태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플란손의 견해에 따르면, 청국 황제 광서제는 1712년 국경 획정을 지시한 바, 5월 15일 조청 공동조사단은 백두산 중턱까지 도달하여, 중국 대표단은 조사를 위하여 산 정상인 분수령까지 올라갔으나 조선 대표단은 나이가 많아 중국 대표단을 쫓아가기 위하여 근처 마을에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것이다. 조사 보고서와 지도가 작성되었으나 한국의 문서고에는 아마도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조사 부실과 문서 보존의 문제점이 향후 양국 간의 국경 획정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플란손은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싼 간도 문제는 1880년대의 조청 국경 담판과 1899년 한청 통상조약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으며, 1903년에 이르러 한청 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조사와 경계 획정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으나 러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이 계획이 보류되었음을 보고했다. 플란손은 강희제 시기의 “게으르고 불합리한 한국인 관리들을 대체하여 열정적인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그 역시 간도 문제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일본

통감부가 간도에 관심을 표명하고 특임관 나카이[中井]를 파견하여 현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만 간의 국경선 조정 문제가 조만간 제기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⁹

러시아가 간도 문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게 된 배경은 1905년 9월 21(10/4)일 국가방위위원회 의장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 대공(вел. кн.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의 주재로 열린 ‘포츠머스에서 체결된 일본과의 조약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각료회의 회의록’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¹⁰ 이 회의는 포츠머스(Portsmouth) 강화조약이 일반적인 표현들로 작성되었고 양국의 전권위원들 역시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문제들을 대부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조약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대표자들 간의 회의 소집을 짜르가 지시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육군참모총장 팔리친(Палицын Ф.Ф.)은 조약문 2조에서 “한국 국경상에 군사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이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하자, 협상 대표로 참석했던 비테(Витте С.Ю.)는 회담 당시 명확한 지역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국경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약이 효력을 발휘할 초기에는 국경 인접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지 않는

9 ГАРФ. Ф.818. Оп.1. Д.163. Л. 16~19 :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 Плансона, 30 Августа 1906 г.

10 РГИА. Ф.560. Оп.28. Д.321. Л.160~173 : Журнал Совещания 21 сентября 1905 года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вопросов, вытекающих из до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заключенного в Портсмуте 23 августа 1905г. 이날 회의에는 각료위원회 의장 비테(С.Витте), 재무상 코코프초프(В.Коковцов), 육군상 레디게르(А.Редигер), 해군상 비리료프(А.Бирилев), 육군참모총장 팔리친(Ф.Палицын) 그리고 부외상 오블렌스키(В.Обленский-Нелединский-Мелецки)가 참석하였다.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어도 국경에서 약 10km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결의하였다. 아울러 팔리친은 한국 북부의 일본 군대 주둔은 우수리강 남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매우 위협적이므로,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군수보급)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남우수리 지역의 군대 보급을 위해 모든 육우들이 한국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는 외교적인 방식으로 일본인들이 자국 군대를 한반도 북부에서 보다 남쪽으로 이동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팔리친의 지적에 대해 비테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나, 일본 정부와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었다. 결국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한러 접경지역에 일본 군대의 주둔을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러일 양국 간 우호 관계의 수립을 이 문제 해결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¹¹

이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남만주 지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포츠머스 강화회담 당시, 러시아는 동청철도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역시 철도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 하였다. 군대의 이동이나 예비 병력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할 경우, 단지 그들을 통과시켰을 뿐이지 결코 만주에 하차시키지는 않았음을 그 논거로 제시했다.

11 Там же.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시 한국에서 자국군대의 주둔 규모와 관련된 조약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했음을 상기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우수리지역에 충분한 군대를 유지시켜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와 청국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한 일본은 남만주에서 철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철도 기지를 일본에서 보다 가까운 우수리 남부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일본은 기존의 일본-황해-요동반도 노선과 더불어 일본-동해-한반도 북부-우수리강 남부로 연결되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만주로의 접근로가 훨씬 단축된 교통로의 확보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유럽러시아와 이중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철도 부설로 표출되었는데, 1908년 4월 러시아 의회(Дума)를 통과한 아무르 철도의 부설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다.¹² 따라서 한·중·러 3국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 간도 지역을 둘러싼 러일 간의 각축은 제1차 러일협약(1907) 체결 이후에도 양국관계를 여전히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다.

1906년 3월 29일 일본의 조선 주둔군 참모부가 육군성 및 외무성에 제출한 ‘간도에 관한 조사 개요’라는 보고서는 러일전쟁 이후 양국 간

12 РГАВМФ. Ф. 418. Оп. 2. Д.292. Л. 1~3 :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Унтербергера, М. Дикову, 24 марта 1908 г. 아무르철도 부설론의 대표적인 지지자였던 프리아무르주 총독 운테르베르케르는 해상 디코프에게 보낸 기밀 서신에서 프리아무르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를 위한 긴급 과제는 이곳으로의 한인이주의 금지와 아무르철도의 조속한 부설임을 강조하였다. 비록 진보적 성향의 르보프(Н.Н. Львов)가 아무르 철도는 유럽과 러시아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과 노력을 인위적으로 빼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던 반면 극우적 경향의 푸리슈케비치(В.М. Пуришкевич)는 의회의 단상에서 이 철도는 동방에 대한 지배를 우리에게 보장해줄 것인가 아니며 동방을 영원히 상실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힘주어 말하며 만장일치로 철도 부설안을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Слово, 20 марта 1908 г.).

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진정한 전후처리는 바로 간도 문제 해결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보고서에서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에 해당되며 물자가 풍부하다”고 전제한 후, 대 러시아 작전에 있어서 간도의 군사 및 물자 공급 능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공격을 취해 함북 방면에서 길림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우선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쉽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평가한 후, “이 지역이 조선과 청국 어느 쪽의 영토에 속하느냐는 조선 국토의 방위상 등한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조선 주치군의 대 러시아 작전 및 조선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간도의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¹³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북부, 특히 두만강 유역의 한러 국경지역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낌으로써 우호적인 대일관계 수립을 모색한 반면, 일본은 제2차 러일전쟁을 상정하고 북만주 침투의 교두보로서 간도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일본의 간도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러일전쟁 직후였다. 1906년 일본 제국군대 작전계획[明治39年度對露陸軍作戰計劃]은 대 러시아 주작전지역(主作戰地域)을 북만주로, 종작전지역(從作戰地域)을 함경도에서 길림성 동북부 및 남부 연해주에 걸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작전 수행을 위해 일군을 북관 지방에서 우수리 지방으로 진격시켜 적을 견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작전 계획은 대 러시아 작전 전개와 관련하여 간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¹⁴

13 國會圖書館 編(1975),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253~258쪽.

14 모리야마 시게노리, 김세민 역(1994), 『근대한일관계사연구』, 현암사, 244쪽.

“우리의 작전을 유리하게 지도하는 유일한 설비는 길림에서 장춘까지 부설하려는 철도를 연장하여 돈화(敦化), 국자가(局子街)를 거쳐 혼춘(琿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철도 부설은 만주에 있어서 일본의 세력권을 증대시키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병략상(兵略上)뿐만 아니라 정략상(政略上) 얻는 이익도 적지 않다.(중략) 간도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여 간도에서 일본의 자유 행동이 가능하면 우수리 방면에서의 우리의 작전을 아주 유리하게 지도할 수 있다. …… 장래 이 철도를 더욱 연장하여 나진항 또는 웅기에 도달하게 하면 부유한 간도의 물자와 북부 만주 및 함경도 물자는 경제상 아주 유리하게 운전(運轉)될 것이다. 이 연장 노선이 완성되어 동청(東淸), 봉안(奉安) 양 철도와 연계되어 3대망으로 만주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전략상 지대한 이익을 얻으며, 러시아는 이들 교통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군으로 송화강 이남에 작전을 전개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간도 문제의 해결은 원래 외교적인 문제이나 우리는 제국(일본) 장래를 위해 유리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것을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었다.¹⁵ 마침내 1907년 2월 주한 통감부의 이토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 주둔군 사령관의 동의를 얻어 사이토(齋藤季次郎) 중좌를 간도 책임자로 임명하고 간도 진출 계획을 진행시켰다. 일본은 한편으로 제1차 러일협약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러전쟁을 대비한 전략적 요충지인 간도의 확보에 착수했던 것이다.¹⁶

15 모리야마 시게노리, 김세민 역(1994), 위의 책, 244~245쪽.

16 秋月望, 「統監府間島派出所設置動機」, 『史叢』 제26집, 50~51쪽. 사이토는 국제법학자이며 변호사인 시노다(條田治策)와 함께 1907년 2월 동경에 사무실을 열고 파견대 조직에 착수했으며, 3월에는 통감부 및 조선군과의 협의를 위해

1907년 5월 27일 주한 러시아 총영사 플란손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동청철도 인근 지역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한, 엄청난 방위 부담 때문에 러일협약 체결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 것도 일본의 간도 진출 정책에 내재해 있는 대러 침략 정책의 본질을 꿰뚫은 결과였다. 그는 외무상 이즈볼스키(Извольский А.П.)에게 보내는 기밀보고서에서 “일본군이 두만강 연안에서 후퇴하고, 한반도 북부를 방대한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그들의 평화애호의 수사(修辭)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¹⁷ 그러나 1907년 7월 30일 러일협약 체결 직후 8월 18일 일본 정부가 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8월 19일 초대 파출소장 사이토를 회령에서 용정으로 파견함으로써, 플란손의 예견은 적중하고 말았다. 일본은 두만강 연안에서 후퇴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진출함으로써 제1차 러일협약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주 침략 의지를 노골화하였다.¹⁸ 아울러 일본이 1907년 6월 10일 인도차이나의 방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한 프랑스와 불일협약(Franco-Japanese Convention)에 서명하고 러시아와 러일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통적인 적성국이 사라진 상황 역시 그들의 공격적인 만주 침투 정책에 일조하였다. 독일의 외

경성에 왔다. 1907년 4월 사이토와 시모조가 간도에 파견되어 실정을 시찰하고 제출한 보고서는 대간도 정책의 기본이 되었는데 간도의 중심지인 南崗西部 馬鞍山의 南方平野內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었다.

17 ГАРФ. Ф. 818. Оп. 1. Д.164. Л. 43~45об : Письмо Плансона Извольскому, 14 мая, 1907 г.

18 Masato Matsui.(1972),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1, p. 48.

교가에서는 일본의 공격적인 만주 정책은 미국의 배신으로 러일전쟁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포츠머스에서 거의 빈손으로 돌아온 손해를 벌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평양 국가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¹⁹ 그렇다면 이제 만주 침략을 본격화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3. 제국주의 열강의 대일 견제와 간도협약 체결

1907년 8월 24일 주청 러시아 공사 포코틸로프(Д.Д. Покотилов)가 재무성에 보낸 전문은 일본을 견제하고 그들의 간도 침탈 계획을 좌절시킬 대안은 바로 미국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서 미일 간의 통상 마찰에 관해 보고한 이 전문은 전쟁을 통해 만주와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확보한 일본이 그 영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려 함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극히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²⁰ 포코틸로프의 전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외국인의 산업 및 통상권 보호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주청 미국 공사 록힐(W. Rockhill)인데, 그는 북경 주재 외국인 무역 대표들과 각서를 교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록힐의 문제 제

19 Luella J. Hall(1929), "The Abortive German-American-Chinese Entente of 1907~1908," *The Journal of Mordern History*, Vol.1, No.2, p. 222.

20 РГАВМФ, Ф. 418. Оп. 2. Д. 287. Л.19~19об : Донесение Д.С.С. Покотилова, Пекин, 11 августа 1907 г.

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후, 일관되게 침묵을 지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행동이 미국인들의 중국 통상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하도록 하였다²¹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지지한 미국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조치였다. 일본을 지원하여 러시아의 만주 독점 정책을 견제하고 문호 개방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미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했던 미국 루즈벨트(T.Roosevelt)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조기에 끝나 버린 전쟁의 후폭풍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는 미일 관계의 악화로 구체화되면서 미국 내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실망은 1907년 9월 17일 주미 러시아 대사 로젠(P.P.Розен)이 밴쿠버(Vancouver)의 중국인 및 일본인 거주구역에서 발생한 폭동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었다. 보고서에는 러일전쟁 이후 미일 간의 관계 악화가 궁극적으로 영일 관계의 변화까지 초래하였으며 그 일 예가 밴쿠버 폭동 사건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²² 로젠의 분석에 따르면, 밴쿠버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의 폭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황인종 이주민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의 급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외견상 경제적인 요인, 즉 황인종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감에서 표출된 것이지만 사실상 거주민이 적은 태평양 연안의 여러 주가 황인종에 의해 점거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이같은 인종주의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²³ 이는 일본의 침략성이 러일

21 Там же.

22 Там же. Л. 24~24об : Депеша Барона Розена, магнолия, 17 сентября 1907 г.

전쟁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영국과의 관계 악화로 발전하였고, 일본과 동맹 체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의 고립 정책 지지자 솔즈버리(R. Salisbury)경이 이를 “We bet our money on the wrong horse”라고 촌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종주의에 기반한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미국과 영국의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봉착한 일본은 그들의 만주 침략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고려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의 만주 정책 실험 무대가 된 간도 문제 역시 이러한 미일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청국 외무부에 독·미·청·러 4개국 협상안을 제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일(反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4개국 연대론은 1907년 중반에 체결된 아시아협약(불일, 러일, 영러협약)에서 제외된 독일과 일본의 만주 침투를 견제하고자 한 미국, 그리고 일본의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청국과 러시아를 결속시킴으로써 만주의 분할 방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본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있었다. 청국이 북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청·미·독 3국협상 체결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만주판(滿洲版) 3국 간섭’의 재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독일 역시 일본에 맞선 기독교 국가의 단결이라는 명분하에 1907년 9월 23일 주미 독일 대사 스텐버그(Baron Speck von Sternburg)를 통해 독·미 간 앙탕트 체결 가능성을 미국에 조회하기 시작하면서 독·미·청 간의 반일 연대 가능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²⁴ 1907년 10월 17일 스텐버그는 독일 재상 빌로프(Bülow)로부터 청국의 원세

23 РГАВМФ. Ф.418. Оп. 2. Д. 287. Л.22~23 : Депеша Барона Розена, 17 августа 1907 г.

24 Luella J. Hall(1929), p. 221.

개(袁世凱)가 주미, 주독 청국 공사들에게 미국과 청국 간의 동맹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전갈을 받은 바, 미 국무성에 독일은 미국 및 청국과 행동을 같이 할 의사가 있으며 일본에 맞서 중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및 문호 개방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²⁵ 따라서 일본의 간도파출소 설치를 계기로 일본의 침략에 맞선 독·미·청 3국 간의 공수 동맹 체결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만주에서의 전선은 일본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기 시작했다. 1907년 11월 21일 이토가 하야시 외상에게 보낸 전보에서 간도 문제에 대해 “청국이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떤 제3국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²⁶도 바로 이 같은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일 연대의 성립 가능성을 감지한 일본 정부가 현상 타개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았다. 독·미·청 3국동맹에 맞서든가 아니면 중국의 영토보전과 문호개방의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하든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 일본에게는 ‘중국의 영토보전’은 곧 간도의 영유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7년 10월 25일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 아오키 슈조(青木周藏)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3개항으로 구성된 미일협정 초안을 제출한 것은 일본 정부가 현상 타개책으로 대미 협상을 선택했음을 의미했다. 대미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한 일본 정부는 1) 국제통상고속도로인 태평양(the Pacific as an international highway of

25 모리야마 시게노리, 김세민 역(1994), 앞의 책, 249~251쪽. 獨美清 협정체결 논의를 배경으로 청국은 1907년 9월 23일 吉林督弁邊務를 신설하고 陳昭常과 吳祿貞의 지휘하에 2000명의 군대를 간도에 주둔시켰다.

26 이성환(2000, 여름),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大韓政治學會報』 제8집 1호, 253~254쪽; 日本外務省 編(1974), 日本外交文書 制40卷 2冊, 東京: 日本國際聯合協會, 156~158쪽.

commerce)을 미·일 양국이 통제하고, 2) 태평양에서 양국의 영토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존 질서를 유지하고, 3) 중국의 문호 개방과 영토 보전 원칙의 준수라는 미일협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독·미·청 3국 동맹 논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과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자 한 일본은 아오키의 후임으로 1908년 1월 11일 미국에서 평판이 좋던 다카히라[高平小五郎]를 주미 대사로 임명하여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했다.²⁷ 간도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발판으로 만주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 정부는 독·미·청 3국 동맹 성립 가능성이라는 역풍을 맞게 됨으로써 결국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908년 2월 8일 일본 각의에서 ‘간도 영유권은 2차 과제이고 조선인 보호가 우선 과제’라는 간도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이 확정된 것도 이 같은 정책 판단의 산물이었다. 이는 간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청국의 영토 보전, 문호 개방 및 상업상의 기회 균등을 약속한 고육책(苦肉策)인 바, 독·미·청 3국 협상 체제 수립을 와해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향후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미일 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1908년 4월 7일 일본의 하야시[林董] 외상은 주청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간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방침 전환을 예고하는 내부훈령 ‘간도문제해결안(間島問題解決案)’을 전달하였다. 이 해결안의 골자는 “1) 간도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잡거 허용, 2) 국자가에 일본 영사관 설치, 3) 조선인의 재판은 일본 영사관이 행할 것, 4) 길장철도(吉長鐵道)를 회령

²⁷ Thomas A. Bailey(1940), “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9, No.1, pp. 19~20.

(會寧)까지 연장할 것” 등이었다.²⁸ 이 가운데 영사 재판권과 철도 이권의 확보는 향후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를 둘러싼 대청 협상에서 가장 중시하게 될 항목이었다. 왜냐하면 영사 재판권의 경우, 제국주의 열강이 불평등조약을 통해 중국에 강박하여 얻어낸 특권이기 때문에, 일본 역시 전례에 따라 이를 중국에 강요함으로써 열강과 일본의 지위를 동일한 문명국 반열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청국과 일본의 위상을 달리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만주의 문호 개방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관철될 경우, 러일전쟁에서 피흘려 가며 획득한 거의 유일한 전리품인 남만주가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의 무대로 전략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철도 이권의 확보를 통해 이 지역을 확실하게 자국의 세력권으로 묶어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만주에 대한 열강의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문명국이라는 명분과 철도 이권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기하고자 하였다. 만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지 못할 경우,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 틀림없었다. 따라서 미일 협정 체결에 성공하여 양국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미일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만주에서의 기득권을 옹호하고자 한 일본과 공정 경쟁의 명분하에 일본의 기득권을 무시하고자 한 미국 간의 갈등은 잠재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향후 미일 간의 대립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는 만주 문제에 일찍부터 관여하고 있던 러시아가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 모리야마 시게노리, 김세민 역(1994), 앞의 책, 255쪽 ; 이성환(2000, 여름), 앞의 글, 255쪽.

일본과 청국 양국 공히 대미 접근을 추구하는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향후 열강 간의 상업적 경쟁무대가 될 만주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판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도 미일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청국 역시 독·미·청 협정 체결에 전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일(淸日) 양국의 구애를 동시에 받고 있던 미국은 양국 모두를 만족시킬 책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책략이란 일본에게 만주의 중립화를 승인하는 대가로 한국 병합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청국에게는 독·미·청 협정 체결을 무산시키는 반대급부로 불평등조약의 산물인 치외법권(治外法權)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미국은 청일 양국 가운데 오직 일본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한 청국의 반발은 만주의 중립화를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무마하고자 하였다.

1908년 6월 5일 러시아의 주청 상무관 폰 고이에르(Л.Фон Гойер)가 주청 러시아 공사관 일등서기관 아르센예프(Б.К.Арсеньев)에게 보낸 보고서는 최근에 나타난 미국의 극동 정책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²⁹ 상무관은 ‘매우 쇼킹’하지만 조만간 극동에 이해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고 전제한 후, 2~3달 전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치외법권의

29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Пекине. Оп. 761. Д. 489. Л. 166~172 : Донесение агента Мин.фин. в Китае Л.Фон Гойера первому секретарю миссии в Китае Б.К.Арсеньеву о намерении СШ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ав экстерриториальности в цинской империи, 5 июня 1908 г. //Россия и США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00~1917. под ред. акад. А.Н.Яковлева(М : МФД, 1999~이하 “Россия и США”로 약함), сс. 112~114.

포기'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 자국의 치외법권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완전한 치외법권의 포기라기보다는 단지 일본과 한국에서의 상표권 보호 협정에서 자국인의 치외법권을 포기했음을 지적했다.³⁰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권 및 특허권 위조를 저지른 미국 시민에 대한 일본 법정의 배타적인 재판권을 인정한 것은, 폰고이에르의 평가에 따르면, “의심의 여지없이 한국에서 미국의 치외법권 전반을 포기하기 위한 첫 조치”임에 틀림없었다. 이 조치는 일본의 보호국에서 치외법권을 포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 바, 여타 열강이 조만간 미국의 사례를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종말(Finis Coreae)’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서와는 달리, 청국에서 치외법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중립화는 반대했지만 만주의 중립화는 최우선의 과제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만주의 중립화는 문호 개방과 상업상의 기회 균등 원칙과 맞물려 있어 청국의 독립과 주권은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만주의 중립화를 위한 정치작업으로 청국의 주권을 손상시켰던 치외법권을 폐지하고 이를 여타 열강에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영사재판제도를 만주에서 배척하고자 하였다. 미국이 구상한 만주의 중립화는 문호 개방과 상공업상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

30 이 협정은 1908년 5월 19일 미국무부의 Robert Bacon과 주미일본대사 K.Takahira 간에 체결된 상표권보호 관련 미일협정을 의미한다.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etc., in Korea, signed at Washington, May 19, 1908,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 No.4, Supplement : Official Documents(Oct, 1908), pp. 356~358.

는 경제적 성격의 중립화였기 때문에, 청국 정부는 만주의 주권자로서 불가침의 권리를 가져야만 했던 것이다.³¹

이에 폰고이에르는 미국이 추진중인 치외법권 폐지 정책의 본질이 경제적 이권 확대에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치외법권의 폐지가 아시아 제국들의 가장 소중한 꿈이며 유럽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심볼(Symbol)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는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굴레에서 벗어나 문명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유럽 열강에 지불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했다. 샴(Siam) 제국의 경우, 1907년부터 프랑스의 영사 재판권 폐지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후자에게 3개 지방을 할양한 바 있었고, 1908년 영국 역시 샴과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샴은 영국에게 3개의 작은 주를 양보하며 그 조건으로 샴에서 영국 신민에 대한 치외법권 폐지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폰고이에르는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 영사 재판권 폐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청국 역시 영토적 야욕이 없는 미국에게 경제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치외법권의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사 재판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는 사례들이 향후 청국과 일본 간의 만주협약 체결 과정에 선례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만주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는 미국을 지

31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Пекине. Оп. 761. Д. 489. Л. 166~172 : Донесение агента Мин.фин. в Китае Л.Фон Гойера первому секретарю миссии в Китае Б.К.Арсеньеву о намерении СШ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ав экстерриториальности в цинской империи, 5 июня 1908 г. //Россия и США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00~1917. под ред. акад. А.Н.Яковлева.

렛대로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려는 중국과, 만주의 문호 개방과 상업상의 기회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대청 차관을 제공하고 만주철도를 중립화시키고자 한 미국의 정책은 양국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미청 관계를 공고화하는 고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³²

1908년 8월 30일 폰 고이에르는 구체화되기 시작한 미·청 양국 간의 접근 현상을 천착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북경공사관에 제출했다.³³ 폰고이에르는 7월부터 뉴욕헤럴드(New York Herald)지에 ‘미청동맹론(美清同盟論)’이 머리기사로 게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청국 정부는 미국 유학파인 봉천순무(奉天巡撫) 당소의(唐紹儀)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의화단의 배상금 탕감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대미 정치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 정치 협상은 만주 문제와 함대 건설이 주요 의제이며, 만주 문제와 관련, 당소 의는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요청할 예정이고, 일급 순양함 3척을 포함한 9척의 전함 건설을 미국에 주문할 예정이며, 2) 차관과 관련, 중국이 어떠한 양보와 담보를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자금은 만주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주민 이주 및 군대 양성에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폰고이에르는 미국이 청국에서 특별하고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열강의 이해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을

32 Там же.

33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Пекине. Оп. 761. Д. 489. Л. 166~172 : Донесение Л.Фон Гойера Арсеньеву о последствиях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нтерес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30 августа 1908 г.//Россия и США, сс. 119~120.

것이라 결론지었다.

미·청 관계가 긴밀해지자 1908년 7월에 성립한 제2차 카츠라(桂太郎) 내각은 간도 문제를 비롯한 만주 현안 해결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1908년 9월 25일 고무라(小村壽太郎) 외상의 ‘만주에 관한 제문제 해결 방침’이 각의에서 결정된 바, 이는 간도 문제, 법고문 철도, 대석교-영구 철도의 철거, 신봉 철도의 연장, 무순 및 연대 탄광, 그리고 안봉선 등 연선 광산이라는 미해결의 6안건을 일괄해서 청국 정부와 협상한다는 것이 그 골간이었다. 간도의 경우, 영유권 포기를 재확인하고 만주 문제와 일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0월 15일 간도에 대해 실력 행사를 주장하는 등 강경 입장을 취했던 하야시를 온건한 이주인(伊集院彦吉)으로 교체하면서 교섭의 새로운 진전을 기도하였다.³⁴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당소외가 미국 방문길에 동경에 들러 고무라 외상과 회담을 가짐으로써 간도 문제 해결의 운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를 이용하려는 청국의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간도 문제 해결의 큰 틀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회담에서 당소외는 만주 6안건 가운데 간도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국이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경계의 확정 즉 영토적 주권 확보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고무라는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조선인 보호의 목적을 관철할 결심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회담은 “양국 정부가 무게를 두는 곳이 서로 다른 이상, 본 건의 타협은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³⁵ 결국 간도 문제를 둘러싼 청·일 양국 간 논쟁

34 모리야마 시게노리, 김세민 역(1994), 앞의 책, 256~257쪽.

35 이성환(2000년, 여름), 앞의 글, 257쪽.

의 해법은 미국의 만주 정책 틀 속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소와의 미국행과 맞물려 1908년 10월 26일 주미 일본 대사 다카히라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함으로써 만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재확인되었다. 미일협약 체결을 위해 미 국무장관 루트와 다카히라 간의 약 3주간 지속된 협상은 1908년 11월 30일 루트-다카히라 협정 체결로 귀결되었는데,³⁶ 이는 당소위가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자 했던 일본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1) 태평양상의 통상 자유와 평화적인 발전, 2) 중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3) 중국에서 통상 및 산업상의 기회 균등”을 명시한 루트-다카히라 협정(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은 미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잘 계산된 협정으로 평가받았다. 주영 미국 대사 화이트로 레이드(Whitelaw Reid)는 이 협정이 미일 간의 전쟁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청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영국의 투자 그룹들은 이 협정이 문호 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반면 청국의 원세개는 주청 미국 공사 록힐이 이 협정문을 보여주자, 당소위가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협정 체결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며, 미국이 청국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면 독·미·청 협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³⁷ 결국 루트-다카히라 협정체결은 청국에서 원세개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1909년 1월 2일 신임 주미 독일 대사 베른스트르프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 후, 루즈벨트가 독·미·청 협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협정의 체결을 거절한 원인을

³⁶ Thomas A. Bailey(1940), pp. 25~29.

³⁷ Thomas A. Bailey(1940), pp. 30~31.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었다. 1) 독일의 카이저는 정치·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미국의 반일 감정을 인종적인 편견으로 오해하고 이를 과대 평가했으며, 2) 루즈벨트는 황화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 문화의 숭배자이자 일본 육군과 해군의 용맹성을 숭상하고 있으며, 3) 루즈벨트는 청국과 조선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들 국민들은 그가 숭상했던 호전적인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4) 일본이 기대 밖으로 오만해지고 영국 또한 일본을 견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단지 일시적으로 독일과 미국이 가까워졌을 뿐이었다고 결론 내렸다.³⁸ 결국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독·미·청 협정을 통한 대일 견제보다는 미일 협정 체결을 통해 조약의 틀 속에서 일본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루트-다카히라 협정 체결이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미칠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의 동청철도회사가 청국에서 획득한 조차지에서 독자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려는 구상과 관련되어 있던 바, 청국의 영토인 하얼빈에서 철도회사 경영진이 통제하는 행정체제 수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08년 1월 중국정부가 러시아의 이같은 조치에 항의한 바 있었으나, 러시아는 동청철도회사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1896년 9월 8일 러청조약 6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문제 제기를 묵살한 바 있었다. 그러나 하얼빈 주재 미국 영사 피셔(Fred D. Fisher)는 동청철도회사가 하얼빈에 대한 행정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하얼빈에서 러시아의 행정체제 수립을

38 Luella J. Hall(1929), pp. 233~234.

둘러싼 미·중·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³⁹ 결국 만주의 남과 북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동시에 기득권을 공고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이들을 견제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은 것은 공통된 현상이었다.

1908년 4월 9일 미 국무장관 루트는 주미 러시아 대사 로젠에게 보낸 각서에서, 중국은 철도협정(1898. 9. 8)에 따라 단지 철도 부설과 운영권을 러시아에 양도했을 뿐임을 지적하고, 후자가 만주에서 중국의 최고법 및 동등한 원칙들을 훼손할 수 있는 우선권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러시아가 “중국의 주권과 중국이 미국에게 조약을 통해 부여한 1) 미국인들이 중국 영토에서 거주하고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및 2) 영사 재판권과 치외법권을 훼손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나섰던 것이다.⁴⁰ 따라서 러시아는 태평양과 동아시아 문제에서 미일의 공동 행동을 약속한 루트-다카히라 협정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방향타가 되었던 바, 짜르 정부는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대미 접근과 대청 접근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에 접근하여 루트-다카히라 협정의 위력을 무력화시키는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기득권 강화에 주력하는가 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었다.

39 АВПРИ. Ф. Канцелярия Мид. Оп. 470. 1908 г. Д. 139. Л. 92~93об : Но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Э.Рута на имя посла в США Р.Р.Розена о введен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Харбине, 9 апреля 1908 г.//Россия и США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00~1917, под ред. акад. А.Н.Яковлева, сс. 110~112.

40 Там же.

러시아는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미일협정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문제를 상정하여 제출된 주일 공사 말렙스키-말레비치(Н.А.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ц)와 주미 대사 로젠의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였다. 주일 공사는 루트-다카히라 협정이 중국 문제에 대해 미일 양국의 군사적 간섭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미일협정에 러시아의 참여는 결국 미·일·러 3국의 연합함대에 의한 태평양의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바, 함대가 없는 러시아는 결국 미일에 이 임무를 위임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러시아에게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⁴¹ 주미 대사 로젠 역시 외상 이즈볼스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1909. 3. 15) 루트-다카히라 협정에 러시아가 참가하는 것은 중국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러시아가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때 의존해야 할 유일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며 일본의 침략에 대항할 방책은 러·청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거였다.⁴² 이는 러일전쟁의 패배로 귀결된 동아시아 정책은 전직 재무상 비테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었던 바,

41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Пекине. Оп. 761, Д. 1061. Л. 77~79 : Письмо Н.А.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ц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П.Извольскому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присоединения России к японо-американскому соглашению, 11 декабря 1908 г.//Россия и США, сс. 128~130.

42 АВПРИ. Ф. Канцелярия Мид. Оп. 470. 1909 г. Д. 138. Л. 68~72. Донесение Р.Р.Розена А.П.Извольскому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присоединения России в соглашении Рут-Такахира, 15 марта 1909 г.//Россия и США, сс. 133~136.

철도의 부설과 은행을 통하여 인접 국가의 광범위한 영토를 복속시켰다는 오만에 근거한 ‘기존의 정책’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로젠의 입장이 드러나 있었다.⁴³ 따라서 1909년 초반기 러일 양국은 만주에서 각각 자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었다.

먼저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공식화한 일본은 만주 현안 문제 타결에 착수했다. 1909년 1월초부터 2월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간도 문제를 포함한 만주 현안 타결을 위한 청일회담이 개최되었다. 일본이 교섭 초반부터 간도 양보 의사를 밝힌 것은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통해 중국의 영토 보전을 공약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일본 측 협상 대표 이쥬인 공사는 청국 전권대표 양둔언(梁敦彥)에게 간도 문제와 관련 1) 조선인과 일본인의 잡거 허용, 2) 영사관 설치와 일본인 영사에 의한 조선인과 일본인 보호, 3)조선인과 일본인의 기득권 인정, 4) 간도 지방 무역의 자유, 5) 길장선의 회령 연장안에 중국이 동의하고 ‘만주 5안건’에 대해 승인하면, 간도의 귀속은 양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청국 전권대표는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청국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간도의 영유권은 유명무실하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영사 재판권 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1908년 3월 23일 간도 문제를 헤이그 중재 재판에 회부할 것임을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나섰다.⁴⁴ 미국이 만주에 대한 청국의 주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

43 Там же.

44 모리야마 시게노리, 김세민 역(1994), 앞의 책, 259쪽 ; 이성환(2000, 여름), 앞의 글, 257쪽.

본의 영사 재판권 요구는 청국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었다. 따라서 간도 문제의 해결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새로운 방식의 해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착 상태에 있던 청일 간의 대화가 재개된 것은 영국의 역할이 컸다. 이는 1908년 9월 26일 당소(唐所)의 영국의 폴링(Pauling and Company)철도회사와 남만주의 금주(錦州)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을 체결한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 1909년 4월까지 이 계약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이 회사가 현지 지반 조사 및 탐사를 위한 기술자 파견을 앞두고 철도 부설 권역이 일본의 세력권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주청 영국 공사 조든(J.A.Jordan)에게 조회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회사는 주청 일본 공사가 철도를 부설하지 말아야 할 범위에 대한 확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영국 정부는 만주에서 동맹국 일본과의 이해 충돌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했다. 영국 외상 그레이(E. Grey)는 만주철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는데, 첫째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하여 만주에서 특권을 얻기 위해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 위해 철도를 독점하려는 의지는 수긍할 수 있으며, 둘째, 중국은 만주에서 일본의 지위를 손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금제철도 문제 역시 영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중국의 음모라는 것이다.⁴⁵ 이에 1909년 7월 20일 그레이는 주영 일본 대사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를 접견하여 만주철도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그레이는 가토가 만

45 E.W. Edwards(1966), "Great Britain and the Manchurian Railways Question, 1909~1910,"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81, No.321, pp. 744~745.

주에서의 철도 발전이 남만주철도의 교통망을 흔들어놓아 철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공감하고, 남만철도는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 얻은 유일한 전리품임을 인정했다. 이에 8월 13일 그레이는 주청 영국 공사 조든에게 1) 중국이 일본과 함께 만주에서 철도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만일 중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⁴⁶ 나아가 8월 20일 주영 일본 대사 가토가 “일본은 중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지만 중국이 주도할 경우 협상을 준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움에 따라 조든에게 이주인과 어떤 조치를 취할 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⁴⁷

마침내 1909년 9월 2일 영국외무성 관리 롬볼드(Rumbold)는 가토가 비록 금제철도(錦齊鐵道)가 신법철도(新法鐵道)보다 남만주철도에 위협적이지만, 일본이 금제철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청국이 신법철도를 포기하는데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그레이에게 보고했다. 신법철도 포기는 일본이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만주 5안건(滿洲五案件에 관한 日清協約文)에 포함된 내용기도 하였다. 이에 영국이 증재한 청일 간의 외교적 타협은 마침내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과 ‘만주 5안건에 관한 청일협약’체결로 귀결되었다.⁴⁸ 그 결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제1조에서는

46 E.W. Edwards(1966), pp. 746~747. Grey to Jordan, Private, 13 Aug. 1909, F.O. 800/43; 일본 정부 역시 1909년 8월 13일 “잡거지 조선인에 관해서는 굳이 재판권의 보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간도문제에 관한 중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청일교섭은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다[이성환(2000. 여름), 앞의 글].

47 E.W. Edwards(1966), Rumbold to Grey, 2 Sept. 1909, F.O. 371/636.

48 國會圖書館 編(1975),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滿

두만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설정하였고, 제4조에서 잡거지 거주한인에 대한 일본의 영사 재판권이 배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간도협약’은 제국주의 열강, 중국, 일본 간의 타협과 이해 조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었다.

4.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안과 제2차 러일협약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내용의 핵심은 일본이 영사 재판권을 포기하는 대신 길장철도(吉長鐵道)를 한국의 회령까지 연장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사 재판권을 포기하고 이권을 얻는 현상은 1907년부터 아시아에서 보편화되었지만, 길림(吉林)과 한국 북부의 회령(會寧)을 연결하는 길회철도(吉會鐵道) 문제는, 러일전쟁 직후 열린 특별각료회의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러시아의 연해주 방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간도협약 체결 후인 9월 21일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는 주러 일본 공사 구리노에게 간도협약에 나타난 일본의 만주철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가 철도라고 하는 것은 안봉선이 아니라 길림에서 연장하여 조선 국경에 이르는 노선을 말한다”고 한 것은 간도협약 제6조에 규정된 길장선 연장이 러시아에 미칠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이었다.⁴⁹ 러시아 외무성에서는 길회철도가 동청철도에

洲五案件에 관한 日清協約文, 清韓兩國國境에 관한 日清協約調印書, 250~253쪽.

49 이성환(2000, 여름), 앞의 글, 260쪽.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주일 러시아 공사 말랩스키-말레비치는 이 철도가 시베리아 변경지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⁵⁰

짜르 정부는 1908년 4월 아무르철도 부설을 결정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유럽러시아 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1909년 9월 극동을 시찰한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чев)의 보고서는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 지역의 방위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1909년 12월 11일에 열린 특별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된 '1909년 가을 재무상의 극동 순방 관련 상주서'는 이를 결재한 짜르 니콜라이 II세조차 "인정하기 부끄럽다. 4년 동안 아무것도 원상 복구된 것이 없다"니"라고 탄식하고 있었고, 12월 3일 육군상에게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즉각적 대책마련을 지시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토크를 발트함대 기지인 크론슈타트 수준으로 요새화시킬 것을 주문했던 것이다.⁵¹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이 러일협약(1907)에 근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일본이 향후 러시아의 영토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침략을 제어할 실질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짜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아킬레스건이었음을 의미했다.⁵² 따라서 일본이 길회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하자,

50 E. W. Edwards(1966), p. 755.

51 РГИА. Ф. 1276. Оп. 20. Д. 39. Л. 161~169 : Особый журнал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28 ноября 1909 г. По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му докладу Мин. Фин.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г.

52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Пекине Оп. 761. Д. 1061. Л. 77~79 : Письмо Н.А.Малевого-Малевича Извольскому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присоединения России к японо-американскому соглашению, 11 декабря 1908 г.

아무르철도가 완공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요새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짜르 정부는 연해주와 태평양 연안의 영토들을 방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이즈볼스키는 동아시아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즉 미국과 유럽 열강의 후원하에 만주를 중립화시킴으로써 일본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만주 중립화론(滿洲中立化論)과 일본과의 동맹 체결을 통해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미국 및 유럽 열강의 침투를 저지한다는 대일동맹론(對日同盟論)이 그것이었다. 아울러 제 3의 길로서 일본에 대한 대중접근론(對中接近論)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즈볼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러일전쟁을 야기함으로써 과거의 적국들과 전장에서 다시 한번 조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적극 지지할 동맹국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즈볼스키는 상술한 3가지 노선 가운데 일본과의 기존 협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짜르 역시 일본이 중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할 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즈볼스키의 견해에 동조하였다.⁵³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1909년 11월 28일 주러 미국 대사 록힐과 일본 공사 모토노가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코코프초프가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후, 작성한 그의 극동 순방 결과 보고서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즈볼스키와 코코프초프는 록힐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일 접근을 지지하고

53 РГИА. Ф. 1276. Оп. 5. Д. 610. Л. 1~5. 짜르는 이즈볼스키의 상주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본인에게는 이제 러시아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할지 명확해졌다. 이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섰다. 이즈볼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아마도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선전포고하지 않을 것이며 하얼빈으로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을 것이나 일본은 이 문제에 있어 훨씬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코코프초프 역시 그가 만주를 시찰하면서 그곳의 방위력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음을 알고 경악한 바 있었음을 밝히고 일본과의 공동 보조를 취할 토대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상을 제외한 모든 각료들이 이즈볼스키의 의견에 동조하였는데, 1) 동청철도를 자국의 관할하에 두고, 2) 원동 지역의 자유 무역항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며, 3) 연해주의 방위를 강화하고, 4)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과의 충돌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동의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미국보다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이즈볼스키의 주장이 특별회의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⁵⁴

그러나 대일접근론과 더불어 대미접근론 역시 러시아 정가에서 여전히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즈볼스키의 구상은 즉각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러일 양국이 협상 체결을 통하여 동아시아 시장을 양분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고자 하였던 미국은 1909년 12월 27일 국무장관 녹스(P. C. Knox)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에 양해 각서를 발송하고, ‘만주철도의 상업적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약 한 달 전 록힐이 이즈볼스키에게 제안한 바 있었던 ‘만주에 부설되었거나

54 Аварин В. (1931~1934), Империализм в Маньчжурии. Т. 1-2. М.-Л., с. 123.

부설 예정인 모든 철도를 국제 관할 하에 중국 정부에 이관시키거나 직접 국제 신디케이트의 관리하에 두는 문제'에 대한 의향을 재차 타진하고 나섰다. 이는 만주철도를 국제 신디케이트의 공동 관할하에 둠으로써 모든 국가의 상업상의 기회 균등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으나 사실상 만주에서 러일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의미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다. 록힐과 녹스의 제안은 내용상 동일하였으나 전자가 비밀 문서의 형식을 띠었다면 후자는 이를 공개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미국의 제안을 둘러싼 동조자들과 반대파들 간의 논쟁은 언론의 지면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데 기여했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제안한 '만주철도의 상업적 중립화' 방안에 대한 답신안 검토를 위한 특별각료회의(1910년 1월 13일)는 대미 접근보다는 대일 접근 방향으로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⁶ 각료회의는 금애철도(錦愛鐵道)의 부설과 만주에서의 여타 철도 매입과 부설을 위해 만들어질 국제 금융신디케이트 설립에 대한 미국측 제안에 대해 외무상으로 하여금 재무상과 협의 후 러시아 측의 수정안 작성을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이즈볼스키는 자신은 적극적인 동아시아 정책론자가 아님을 밝힌 후, 동청철도와 같은 거대한 러시아 기업을 국제 신디케이트에 이관하는 것은 이를 부설하기 위해 러시아 인민의 피땀 흘린 모든 희생과 관련, 훗날 자손들이

55 Бестужев И.В.(1961), Борьба в Ро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политики 1906~1910. М, с. 367.

56 РГИА, Ф. 1276, Оп. 20, Д. 40, Л. 14~151об : Особый журнал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30 дек, 1909 г.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оект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на его предложение торговойнейтрализации маньчжур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현 정부를 비난할 것임이 틀림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외무상의 의견에 따르면, 주러 미국 대사 록힐은 철도의 중립화가 러일 양국 간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만주에서 러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언급했지만, 한국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감안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영토를 위협할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⁵⁷ 이에 그는 만주에 남아 있는 일본인들이 러시아로 진출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주철도의 중립화는 단지 위험성만 극대화시킬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일본 역시 그들이 포츠머스에서 획득한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빼앗으려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이즈볼스키는 만주의 중립화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반대해야 할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일본이 국제 신디케이트에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일본 정부와 비밀 의견 교환을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이제까지 동청철도는 우리의 원동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므로 아무르철도가 완공될 때까지 상황이 상당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청철도의 매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이에 재무상 코프초프 역시 미국이 추진 중인 금주(錦州)와 아이훈(愛輝)을 잇는 금애철도 부설은 동청철도에 매우 불리한데, 이 새로운 노선이 몽골 동부에서

57 РГИА, Ф. 1276. Оп. 20. Д. 40. Л. 149~151об : Особый журнал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30 дек. 1909 г.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оект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на его предложение торговой нейтрализации маньчжур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적재되는 우리의 철도 화물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및 여객 운송이 새로운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육군 상도 금애철도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 후, 이는 남쪽으로부터 러시아를 침략할 수 있는 남만철도와 더불어 제2의 노선을 열어주는 의미로 블라고베셴스크(Благовещенск) 지역에 러시아의 강력한 요새 건설을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방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각료회의는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결정은 1910년 1월 21일 러일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의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10년 2월 17일 말렙스키-말레비치 주일 공사가 이즈볼스키에게 만주에서 미러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고한 것도 사실상 미국에 대한 러일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주일 공사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일본의 침략성이 아니라 만주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미국의 계획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만주철도 중립화 계획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청·영·미에 이미 알려져 있으나 러시아의 입장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항한 앙탕트 체결에 원칙적인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던 것이다. 이즈볼스키가 주러 일본 공사 모토노와 새로운 러일협약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도 바로 미국의 집요한 만주 침투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에 일본 측은 한일 병합을 러시아가 인정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동아시아에서 양국이 점유한 지역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러일 군사동맹의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그 대가로 몽골을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한일 병합과

일본과의 공개적인 동맹은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양국 간의 이 같은 의견 대립은 협정 체결을 2개월 이상 지연시켰다. 주일 러시아 공사 말렙스키-말레비치는 일본의 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게 현상 유지 원칙의 수용을 설득 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병합이 러시아에 나쁜 인상을 심어 줄 것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협정 체결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견 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그러나 1910년 5월 6일 말렙스키-말레비치는 일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하였고 며칠 후 러시아 각료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일본의 조건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⁸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원인에 대해 훗날 트루베츠코이 공(Князь С.Н.Трубецко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문제는 일본이 러일협약이 결렬될 경우,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한국과 만주에서 병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인 바, 이에 대응할 상황에 있지 못했던 러시아는 양보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었다.⁵⁹

그 결과 1910년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태프트와 녹스의 ‘달러 외교’에 따른 집요한 미국의 만주 침투에 대항하여 러일 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일본은 러시아와 공식적인 동맹 체결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포기한 반면 공개한 협정 내용은 현상 유지에 관한 언급과 더불어 1907년도 협정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편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양보의 기조를 유지했으며 제2차 협정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비밀 조문

58 Поливанов А.А.(1924), Из дневников и воспоминаний по должности военного министра и его помощника, М., с. 98.

59 Русская мысль(1910), No. 11, с. 173.

에서 향후 상대 측의 특별 이익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일본의 한국 병합을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러일 양국의 특수 이익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일본과 더불어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가로 일본은 몽골과 북만주가 러시아의 특수 이해 지역임을 인정하였다.⁶⁰ 따라서 제2차 러일협약은 러시아에게는 한국을 몽골과 교환하였음을 의미했다. 러일전쟁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대륙 진출을 지지하고자 한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책의 보루였던 한국을 포기하는 대가로 몽골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러일협약이 체결된 지 한달 후, 1910년 8월 16일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 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독촉하였으며, 8월 22일 데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 합병 조약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한국과 몽골의 교환을 통해 일본과 우호관계를 확립한 짜르 정부는 동아시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종일관 고수했던 '일본의 대륙 진출 저지'라는 원칙을 포기하기에 이른 바, 대한 해협을 경계하여 전개된 양국 간의 대립과 협력의 관계는 이제 그 무대를 동아시아 대륙으로 옮겨 재연되게 되었다.

60 Grimm Э.Д.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руг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1927, сс. 176~177.

5. 맺음말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세계 곳곳의 영토 분쟁은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식민지 침탈 정책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제국주의 열강이 현지 주민의 의사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열강 간의 타협에 의해 식민지 영토를 분할하고 점거했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간도협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러일전쟁 이후 열강 간의 이해 조정과 타협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전제조건이었지만, 간도협약에서 비롯된 제2차 러일협약은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도협약, 제2차 러일협약 그리고 일본의 한국 강점으로 이어지는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을 국제관계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 상관관계를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간도협약(1909)은 일본이 만주의 이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중국에 간도를 양보함으로써 체결된 한·중·일 간의 국경 문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인 만주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 간의 이해 조정과 타협의 결과였다. 간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중국 분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제국주의 열강은 동아시아 최대의 정치·경제 이권이 걸려있는 중국의 현상 유지를 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그리고 문호 개방(Open Door)의 원칙이 조약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었다는 명분으로,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변경은 일본에게 허락했지만 만주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의 현상 유지 정책과 일본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양립될 수 없었다. 요컨대 만주의 분할과

이에 근거한 세력권 확보 경쟁이 이해 당사국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열강의 만주 인식은, 일본의 간도 진출과 간도 영유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간도 문제는 제국주의 열강의 견제와 간섭에 의해 통제되고 내용이 규정되었다.

간도협약은 제2차 러일협약 체결의 출발점이었고 제2차 러일협약은 러일전쟁 전후처리의 완결판이었다. 미국이 주창한 ‘중국의 영토 보전과 문호 개방, 그리고 상공업상의 기회 균등 원칙’은 양날의 칼이었던 바, 일본의 만주 침투를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만주에서 정치·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이기도 했다. 1909년 미국이 제안한 ‘만주철도의 상업적 중립화안(Neutralization of all the railways in Manchuria)’은 국제 자본 신디케이트가 만주철도를 매입하고 이를 열강이 공동 관리하자는 구상이 그 핵심이었는데, 그 본질은 남만주와 분만주를 각각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고 있던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 달러 외교를 통해 미국이 만주철도를 관할하려는데 있었다. 이는 미국의 집요한 만주 침투에 대항하여 러일 양국 간의 공동전선 구축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이를 문서화한 제2차 러일협약 체결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 러일협약(1907)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했으나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제1차 러일협약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제1차 러일협약은 일본이 향후 러시아의 영토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러시아 스스로 일본의 침략을 제어할 군사력이 미비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길림과 회령을 연결하는 길회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것은 러시아로 하여금 금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재차 대일 협상

에 착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1860) 이래 이제까지 견지해왔던 한국의 독립 원칙을 포기하고 일본의 조선 병합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재 신채호의 대한매일신보(1910년 1월 12일) 사설 「만주(滿洲)와 일본(日本)」은 간도 문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청국과 일본 간 협약이 된 소문이 낭자하니 더 사나운 호랑이의 태도를 가지고 사방을 엿보는 구미 열강국이 어찌 이 시대에 이익이 모인 중국 내륙에 제일 긴요한 땅이 되는 만주 천지에서 아라사와 일본 두 나라만 마음대로 뛰놀게 맡겨두며, 또 어찌 동방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의 활개 짓을 앉아서 보리오. …… 오호(嗚呼)라 일본(日本)의 대정치가(大政治家), 대외교가(對外交家) 이등(伊藤) 공(公)도 이미 죽고 또 이 문제가 평지에 갑자기 일어나니 저 일본인들은 장차 어떤 대책을 잡고자 하는지.

일본인(日本人)이여 세계(世界)는 세계인(世界人)의 세계(世界)라 일본(日本)의 독주(獨走)를 허가하지 않으니 진정한 동양 평화의 대책을 잡고 일본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동양의 행복을 유지함이 어찌 상책(上策)이 아니겠는가.”⁶¹

61 『대한매일신보』 1910. 1. 12. 『단재 신채호전집』, 제6권 논설·사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448~449쪽].

화이질서에서의 경계지대와 국제법적 '국경'

이키츠키 노조미 (메이지학원대학)

2025
10월 10일

동북아시아사학회
2025년 가을 학술대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사학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는 전근대의 전통적인 지역 질서하에 있었던 동아시아가 국제법적인 질서와 접촉이 깊어져 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화이적 질서하에서 통치가 미치는 범위와 역사적 기억에 의해 형성되어 있었던 ‘자기 영역의 한계선’은, 국제법하에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의 국경’으로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거기서는 화이적인 통치의 한계선이 그대로 국제법의 경계선으로 연속하여 이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통치 대상이 되었던 ‘백성’의 거주 범위에 변화가 생겨, 근대적인 자기 인식의 발생에 의해 그때까지의 역사적인 영유의 기억과 ‘교화’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 관념이 ‘장소’의 영유와 주권의 배타적 행사라는 형태로 이행하는 과도적인 단계를 맞이하였다.

조청(朝淸) 간 경계의 문제도 그 당초부터 국제법에 있어서 ‘국경’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근대로의 이행기를 전후하는 두만강·압록강 연안의 상황을 이러한 변화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명확한 선에서 고정적으로 구분하는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경’의 설정이 전근대의 경계와 영역 의식

의 단순한 형태·형상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2. 월강에 대한 대응의 변천

1) 압록강·두만강의 한계선(1840~1850년대)

압록강·두만강의 북측 연강(沿江) 지대는 봉금된 무인지대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인삼이나 목재, 사금 등을 목적으로 침입하는 청국인(한족)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광(道光) 연간(1821~1850)에는 농경을 목적으로 산동·직예 방면에서 유입되는 한족이 개간을 시작하게 되었고 압록강의 대안에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1842년(도광 22년·현종 8년), 상토진(上土鎭)과 만포진(滿浦鎭) 대안에 임시 가옥을 설치하여 개간을 하고 있던 청국인을 발견한 조선 정부의 문의를 받았던 청국의 예부는 성경장군(盛京將軍)에게 조사하여 선처할 것을 명령하였다.¹ 그 이전인 1714년에 두만강 측인 경원, 훈융(訓戎)의 대안 부분에 청국 측의 침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선에서 북경 예부에 문의하여 철거시키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고,² 1748년에도 훈융진 대안에 침입한 청국인의 배제를 조선이 청국에게 요청하고 있다.³ 어느 경우든 청국의 손에 의해 배제되고 있고 1842년의 상토진·만포진 대안의

1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請禁止對境造舍墾田咨, 道光 22年 4月 21日.

2 『同文彙考』原編, 疆界, 請撤毀訓戎鎭越邊房屋咨, 康熙 53年 12月 15日.

3 『同文彙考』原編, 疆界, 請禁訓戎對境造舍墾田咨, 乾隆 13年 7月初 9日.

침입자도 같은 방식으로 배제되었다. 그 후의 조사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많은 주거와 개간지가 발견되어 배제되었는데,⁴ 청국 정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그 이후 봄 가을로 2회, 성수위(城守尉)나 협령(協領) 등을 파견하여 순찰시키는 ‘통순제(統巡制)’를 압록강 중류 지역 대안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⁵

그런데 조선 측이 제기했던 몇 가지 자문(咨文)에는 두만강을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부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후일 조선 측이 경계하천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해란강의 합류점보다 하류 부분을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에 조선의 위정자가 ‘토문강’은 두만강 전체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적어도 훈융(현재의 함경북도 세절군 훈융리)보다도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토문(土門)’을 두만강의 다른 이름으로서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토문’은 ‘두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후일의 감계 교섭에서의 조선 측 주장과 모순된다. 이러한 조선 측의 대응은 특히 중앙 레벨에서 변경 지리에 대한 인식과 파악의 부정확성과 불충분성을 보여주고 있다.

4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盛京禮部研鞫墾構犯人咨, 道光 22年 10月 18日, 榆樹林子卡倫界內靉江西岸距江一里水曲流川에서窩棚12개所, 草房56間, 墾田51段, 1200余畝, 帽兒山卡倫界內距江二里石湖溝에서 窩棚6개所, 草房27間, 墾田6段, 1000余畝, 帽兒山卡倫界內距江三里樺皮甸子에서 窩棚10개所, 草房15間, 墾田7段, 1100余畝 등이 발견되어 처분되었다.

5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盛京禮部研鞫墾構犯人咨, 道光 22年 10月 18日,

2) 조선 측으로부터의 월강과 엄벌에 의한 억제(1860년대)

조선 왕조 말기의 전정·군정·환곡 등의 기능 상실은 특히 변경 지방인 압록강·두만강 일대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었고, 북경조약에서 연해주는 청국에서 러시아로 할양된 철종 말년 경부터 두만강을 건너 간 조선 농민이 대안—청국령뿐만 아니라 러시아령으로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⁶

1864년 2월, 5명의 러시아인이 경흥부에 통상을 요구해 온 것을 경흥부사 윤모는 지방관의 재량권 밖이라고 되거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이 러시아인의 도래와 관련하여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령에 들어가 러시아인들과 통모하였다고 하여 김홍순과 최수학이 처형당하였다.⁷ 이 당시 조선 정부는 두만강 하류 지역의 대안은 러시아령이며 조선인이 월강하여 그 지역으로 건너가고 있던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조선 정부에서는 자국의 강역 한계선인 두만강·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엄금하고 있었는데, 농민의 월강뿐만 아니라 지방관에 대해서도 중앙의 명령 없이 두만강·압록강 대안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굳게 금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864년 8월에 두만강 유역 경흥부의 부사 신명익이 소실된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서 두만강의 대안에서 목재를 채벌하는 것

6 田川孝三(1944), 「近代北鮮農村會と流民問題」, 朝鮮史編修會研究彙纂 第一輯, 『近代朝鮮史研究』; 牛丸潤亮·田村懋磨編(1927), 『最近間島事情』, 朝鮮及朝鮮人社, 92~93쪽.

7 『日省錄』 甲子(1864, 同治 3) 3月 2日條, 5月 15日條, 6月 26日條.

을 혼춘협령에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북경 예부로부터의 지조(知照)에 의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처벌하였다.⁸ 나아가 이듬해 발생한 유배 죄인의 월강 도망 사건을 계기로 월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금지함과 동시에 월강 도망하는 자는 ‘선참후계(先斬後啓)’를 허락한다는 조치가 취해졌다.⁹

한편 압록강 연강(沿江)의 상황에 대해서는, 1868년(고종 5년) 10월 평안도 청북(淸北) 암행어사 서경순의 상계¹⁰에도 보이듯이, 대안에 청국인 유입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 측과의 접촉이 증대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이듬해 1869년 5월에 한성부 좌윤 정주응을 관서 4군찰변사로 임명하여 현지 상황의 파악과 대응책의 강구를 명하였는데,¹¹ 이미 월강을 근절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청국 측에서 유입자의 증가와 보조를 맞춰 1860년대 이후 조선 측 주민의 월강도 점차 증가하였다. 압록강 대안에 대한 조사 기록으로 1872년에 작성된 『강북일기(江北日記)』¹²에 의하면 오래된 월강자는 십수 년 전에 이미 월강하였고, 3년 정도 전—즉 1869년 경—부터 급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8 『日省錄』 甲子(1864, 同治 3) 8月 10日條, 19日條.

9 『日省錄』 乙丑(1865, 同治 4) 10月 10日條, 丙寅(1866, 同治 5) 5月 24日條.

10 『日省錄』 戊辰(高宗 5年) 10月 26日條.

11 『日省錄』 己巳(高宗 6年) 5月 29日條.

12 『江北日記』는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사료로서 34丁 1冊의 筆寫本으로, 彩色地圖1葉이 付屬되어 있다. 연구로서는, 崔康賢(1977), 「解題」, 『國學資料』 No.26; 柳承宙(1978), 「朝鮮後期, 西間島 移住民에 대한 一考察」: 『江北日記』의 解題에 붙여, 『亞細亞研究』 通卷59號가 있다. 원문은 『亞細亞研究』 通卷59號 및 高句麗研究財團(2004), 『朝鮮時代 北方史 資料集』에 수록되어 있다.

압록강 월강에 대해서는 『만주 및 시베리아 지방의 조선인 사정』¹³과 영국인 헨리·제임스의 기록¹⁴에 삼림 벌채가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벌채에 많은 월강 조선인도 종사하고 있는 것이 『강북일기』의 기록에도 보인다.¹⁵

압록강 중류 지역 북안에는 ‘회상(會上)’이라는 주민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청국 측의 유력 이주자와, 월강 조선인으로 청국의 풍습을 흉내 내어 변발을 한 ‘가호(假胡)’라고 불리는 조선인이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월강 조선인 중에는 조선 측으로 쇠퇴를 바라는 자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귀환했을 경우의 엄벌을 두려워하여 강 건너에 머물고 있다는 기록이 『강북일기』에 보인다.

조선의 지방관이 압록강을 한계선으로서 엄수하고 월강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억지하려고 하였던 것과 강 건너쪽과의 공적인 관련을 맺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두만강 연강도 마찬가지였다. 『강북일기』에 기록된 월강 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1871년 후창군(厚昌郡)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는 북경 예부로부터 압록강 북안의 지리 정보 제공을 요청 받았는데, ‘강역유한(疆域有限)’, 즉 압록강이 조선의 북한(北限)이라고 회답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¹⁶ 또 한편으로 『강북일기』에서 보여지듯이, 조선의 지방관 레벨에서는 대안

13 朝鮮總督府內務局, 『滿洲及西比利亞地方に於ける朝鮮人情』, 大正 12年 7月.
 14 滿鐵弘報課譯, 『滿洲踏査行』大陸叢書第六卷, 昭和 16年. 原本은 Henry Evan Murchison James(1888), *The Long White Mountain*.
 15 『江北日記』 7月 2日條, “我罪亦當万死, 而尙未歸者, 猶有畏法惡死之心也, 惡死之心人皆有之, 故鴨綠以北之來居者, 附命於胡忍所附忍, 晝夜痛哭, …… 邊禁之法, 去來一般而來易去難, 是亦天之所使耶.”
 16 『同文彙考』原編續, 疆界, 回咨, 同治 11年 6月 19日.

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비공식으로 한계선을 넘어가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변경 정책의 전환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1860년대 전후부터 시작되는 조선 측에서의 압록강·두만강 월강에 대한 ‘관(官)’의 대응은 1870년대 초까지는 ‘엄벌에 의한 억지 정책’이 그 중심이었다. 또 압록강·두만강을 자국 강역의 북방 한계로 보고 관민의 구분 없이 월경(월강)을 금지하는 것으로 두만강·압록강 안 쪽에 폐쇄적으로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쇄환수령·위무정책으로의 전환(1871~1875)

1866년 10월에 경원부 아산진에서 월강 왕래 혐의를 받았던 조선 농민이 지방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월강 도망하고, 그 후 수백 명이 대안에서 내습하여 도망간 조선인의 처자와 재산을 반출하여 돌아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소동을 틈타 75명이 대안으로 이주하였다. 조선 정부는 북경 예부에 자보(咨報)함과 동시에 청국 측 지방관에게 도망한 조선인의 수색을 요청하였다. 동시기에 일어난 러시아에 의한 카륜(卡倫: 관문) 설치와 러시아인에 의한 교역 요청에 대해서도 이를 거절하고 연강 지대의 경계를 엄중히 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함으로써¹⁷ 조선 정부가 자국의 권한 행사를 두만강 남쪽으로 한정하려고 했던 점을 알 수 있다.

17 『日省錄』 丙寅(1866, 同治 5) 12月 13日條, 29日條.

그런데 청국 정부는 조선인이 러시아 영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1864년에는 파악하고 있었고,¹⁸ 1865년 길림장군의 보고에서는, 천 수백여 명의 조선인이 러시아 측의 권유로 길심하(吉心河)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⁹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말한 자보에 대한 북경 예부로부터의 회답 내용으로 조선에 전달되었고, 조선 정부는 자국민이 러시아 영내로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청국과 러시아 간의 경계를 처음으로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조선과 러시아 간의 경계가 분명해진 것도 이 일련의 문서 교환에 의해서였다.²⁰

청국에서는 길림장군에게 두만강 좌안 일대의 조사·탐색을 명하고, 그 결과 러시아 영내에 청국 혹은 러시아 복장을 입고 농경·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남녀가 천 명 정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조선 정부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었다.²¹

앞서 설명하였듯이 1860년대는 두만강을 월강한 조선인이 청국 측에 의해 체포당한 경우, 조선 정부는 청국 측에 그 송환을 요구하여 조선 측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통례였고, 두만강 대안에 청국으로부터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국 측 관헌의 손으로 배제하도록 조선 측이 자청(咨請)해 오고 있었다. 이때에도 조선의 공권력은 두만강 월변에는 관

18 『同治朝籌辦始末』 卷26, 據吉林將軍密函俄人正招集朝鮮人墾地並招集游民前往淘金, 總理衙門恭親王等又奏, 同治 3年 6月 24日.

19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二, 我國人, 禮部知會逃越村民及俄人築室請飭吉林將軍確查辦理總理衙門議奏咨原奏.

20 拙稿(1991. 3), 「朝露國境の成立と朝鮮の反應」, 『國際學研究』 第8號.

21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二, 我國人, 禮部知會因北地逃民按圖查奏咨原奏, 同治 6年 6月 1日.

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원칙에 의해 청국의 조사와 송환을 기대할 뿐이었다. 다만 월강자 중 스스로 귀환한 자에 대해서만큼은 면죄를 함으로써 엄벌주의에서 회유적인 대응책²²으로 전환하는 징조가 나타났다.

청국은 다수의 조선인이 러시아 영내에 이주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1869년에 길림장군 부명아(雷明阿)가 청국의 중개로 월경 조선인을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송환시키는 교섭을 행할 것을 총리아문에 건의하고,²³ 북경 예부에서는 11월 7일자로 조선 정부에 대해서 러시아 영내의 월강 조선인을 조선에 송환하기 위한 교섭을 러시아와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통고하였다.²⁴ 조선 정부는 송환을 받아들일 것을 승인한다는 자문을 청국에 보냄²⁵과 동시에, 월강의 원인이기도 하였던 북방 농촌의 피폐 구제책을 강구하라고 명하였다.²⁶ 그러나 이듬해 1870년 봄에 혼춘협령에 의한 러시아 이사관과의 조선인 쇄환 교섭은 실패하고 조선 정부가 영회차사원(領回差使員)으로 혼춘에 파견한 김광우는 그 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²⁷ 1871년이 되어서 이번에는 영고탑(寧古塔) 관내에서 발견된 다수의 조선 월강민의 송환에 대해서 청국으로부터 송환 허가 요청을 받은 조선 정부는 3월에 다시 김광우를 영

22 『日省錄』 丁卯(1867, 同治 6) 3月 15日條.

23 『清季中日韓關係史料』 92總署收吉林將軍富明阿文「鮮民越界潛投俄國聚集農嚴杵河棘心河等處達千余人」.

24 『同文考略續』 犯越我國人.

25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二, 我國人「回咨」 同治 8年 11月 26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 97附件 1, 「朝鮮國王咨覆原文」.

26 『日省錄』, 己巳(1869, 同治 8) 11月 23日條.

27 『日省錄』, 己巳(1869, 同治 8) 11月 23日條.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10, 「朝鮮差官抵琿春請領俄界逃人而俄廓米薩爾拒絕遣還」, 115附件 2 「派遣金光雨等往領逃民琿春協領以俄官無意遣還令返」.

회차사원으로 영고답에 파견하였다. 김광우는 청국 측 지방관과 함께 수색을 하여 조선 월경민 454명을 조선으로 호송하여 귀환시켰다. 당시 조선 정부는 엄벌이 아니라 식량과 의복을 배급하는 등 회유적인 방침으로 대하였다.²⁸ 그 이후 ‘범월(犯越)’만을 행한 월강민에 대해서는 송환·쇄환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지 않고 위무·회유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유책으로의 전환은 거의 동시기에 압록강 측에서도 나타난다. 『강북일기』에는 후창에서 파견되어 있던 최종범, 김태홍, 임석근이 조선에서 온 월강민들에게 조선으로 귀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²⁹ 거기서도 엄벌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860년대 후반에서 1870년대에 걸쳐서의 변경 문제에 대한 조선 측의 관심은 조선인의 월강·월경 억지와 월강 조선인의 쇄환 문제였다. 그러나 엄벌에 의해 월강을 억제하고 청국의 손으로 송환되던 자국의 월강민을 엄벌에 처한다는 변경 정책의 구도는 1871년 이후 위무·회유책으로 전환되었다.

28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二, 我國人, 「報北地逃越流民派員領回咨」 同治 10年 2月 1日. 『日省錄』, 辛未(1871, 同治 10) 1月 28日條, 5月 28日條, 7月 20日條.

29 凡人之有過改之爲善, 如君之人蓋與此間諸人歸國違功乎, 今歸國則雖恥而事宜, 若不歸待死則失議而愈恥(『江北日記』 6月 9日條).

4) 월강하여 행한 적극 초래 정책(1876~1880)

1876년이 되자 조선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변경 정책으로 전환하여 월강 조선인의 귀환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안무사 김유연을 두만강 대안의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두만강·압록강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고 엄벌주의로 대처한다는 변경 정책은 파기되었고, 경계 내에 스스로를 봉쇄하던 전통적인 정책으로는 이미 월강한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러한 전환을 초래하였다. 동시에 일본에서 들어온 정보도 그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875년에 도발적인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일본은, 다음 해 2월에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고, 7월에 수호조규 부록 및 통상장정에 조인하였다. 이 교섭을 담당했던 외무대승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는 영의정 이최응, 우의정 김병학과의 면담에서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우려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월경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³⁰ 이 정보만으로 조선이 변경 정책을 전환한 것은 아니겠지만, 북방 변경 지방의 월경민 대책에 대해서 내린 고종의 교서 중에 미야모토의 북방 월변 지방의 상황 설명이 명기되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무사 김유연은 8월 초에 서울을 출발했다. 고종은 변경 도망민의 안무·초래(招來)만이 아니라, 연강 지역 관리의 부패 방지와 과중한 세금 부담의 시정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북부 농촌의 재건을 지시하였

30 『宮本大丞朝鮮理事官始末』卷4, 朝鮮理事日記. 또, 일본이 러시아 세력의 남하와 관련하여 간도·시베리아 방면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田川孝三(1944), 앞의 책, 604~606쪽.

다. 그와 동시에 청국·러시아와의 경계 지방에 대한 탐색을 명하고 있다.³¹ 이 지시는 그때까지 두만강까지만이라고 스스로 한정하고 있었던 관심을 대안으로까지 확대하였던 것이다.

월변 현지에서의 초무 공작의 결과, 약 140명의 월경 조선인이 스스로 귀환하였고 연강 지방의 지방 관제의 개폐, 제 폐해의 제거 등의 개혁도 단행되었다.³² 또 러시아·청국의 경계 접양 지방에 대한 탐사 결과도 보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두만강 속의 고이도(古珥島)에 대한 입경(入耕) 허가는 주목할 만하다.³³ 경흥 대안에 있는 고이도는 17세기에 강의 흐름이 바뀌어 조선 측 육지에서 분리된 것으로서, 분리 직후에 조선 측은 청국 측과 협의하여 비석을 설치하여 자국 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조선 농민의 거주·입경은 허락되지 않았다. 고이도에 대한 입경 허가는 화이세계에 있어서 책봉의 경계선으로서의 '경계'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의 통치·관할의 북방 한계, 간광(間曠)지대의 자국 측 라인으로서의 경계에서 인접한 타국과의 접선으로서의 경계인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1 『日省錄』 丙子(1876, 光緒 2) 8月 10日條.

32 『日省錄』 丙子(1876, 光緒 2) 12月 11日條, 丁丑(1877, 光緒 3), 正月 30日條, 2月 25日條, 3月 5日條.

33 『日省錄』 丁丑(1877, 光緒 3) 正月 30日條.

5) 청국에 의한 봉금정책 전환과 월강 조선인의 호적 편입 기도(1881~1882)

전술한 바와 같이, 압록강 측에서는 1842년에 상토진과 만포진 대안에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통순제'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1846년에 다시 상토진 대안에 청국 측의 침입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통순제' 실시 이후도 침입자의 적발 총수는 계속 늘어날 뿐이었다.³⁴ 이듬해 북경에서 파견된 흠차호부시랑 연준(兪俊) 공부우시랑 명훈(明訓) 등이 성경장군 혁상(奕湘)과 함께 현지를 시찰하고,³⁵ '통순제'의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조선 측 지방관과 합류하여 합동으로 단속을 시키게 되었다. 이것이 '통순회초제(統巡會哨制)'이다.³⁶

그러나 한편으로 엄격한 단속 일변도로는 인심의 이반과 강압적인 배제에 의한 혼란이 예상된다 하여 청국의 지방관은 성숙한 개간지와 개간에 적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지방관의 관리하에 경작을 허가하는 방침으로 전환함으로써 봉금지에서의 사적인 개간을 묵인하게 되었다.³⁷ 그 이후 청국인의 유입은 한층 더 증가하였고, 1867년에 개간하고 있던 청국인이 성경 호부에 납세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청국 정부는 봉금정책을 전환하여 압록강 측의 무인지대에 청국인의 입식을 공인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서 백두산 산록을

34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盛京禮部知會奉上諭咨, 道光二十六年十一月六日.

35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一, 盛京禮部知會江界越邊查勘完竣情形議奏咨, 道光27年6月18日.

36 拙稿(1983. 4), 「鴨綠江北岸의統巡會哨について」, 『東洋史論集』第11號,

37 『滿洲共產匪の研究』第三編 第二節 鮮人移住史.

우회하여 두만강 측에도 유입되고 있었던 청국인의 이동도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청국에 의한 두만강 대안에 대한 봉금정책의 해제는 이보다 10년 이상 경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 1881년 청국은 ‘토문강(土門江)’ 북안의 개간을 자국민에게 공인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을 조선 정부에게 통고하였다.³⁸ 이는 조선이 두만강 북측 연강에 대한 불법잠입자의 적발·배제 등의 봉금정책 유지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인의 월강 입식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이 조치에 따라, 새로이 개간을 공인한 두만강 북안, 혼춘·돈화 일대의 조사를 행한 청국 지방관은 거기서 농경을 하고 있던 다수의 조선 농민을 발견하였다.

이듬해인 1882년 길림장군 희원(希元) 등은 혼춘·돈화 일대의 이들 조선 농민을 청국의 호적에 편입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북경 예부에서 이를 조선 정부에 통고하였다.³⁹ 조선 정부는 일단은 그것에 동의한다는 회답을 보냈지만 8월이 되자 방침을 바꿔 ‘토문강’ 북안의 조선 농민을 조선으로 쇠환시켜 달라고 청국 정부에 요청하였다.⁴⁰

그런데 조청 양국은 둘 다 그 자문(咨文) 안에 양국의 경계를 ‘토문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 정부는 쇠환 요청을 하는 자문 중에, “……第念土門一江分爲兩界……”⁴¹라고 ‘토문(土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38 韓國史料研究所(1970),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日帝統治史料』 9~10쪽,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132쪽.

39 篠田前掲書, 134쪽. 『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三, (98), (98)附件 1, (99), (100).

40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8月 7日, 11日條. 『光緒中日交涉史料』(169) 光緒8年 12月 25日付.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 133~136쪽에 자세히 나와있다.

있다. 후일 조선 측은 경계는 ‘토문강’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어느 강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청국 측과 다투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양국 공히 공통의 경계 인식·지리 인식에서 있었다고 이해—혹은 오해—하고 ‘토문강’이라고 쓰고 있었다. 조선 측, 특히 중앙의 위정자들이 ‘토문강’을 두만강의 별칭이라고 이해해서 사용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두만강 이외의 다른 강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던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에서 보낸 자문에는 조선 유민을 쇄환하여 조선 지방관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조선 정부가 두만강을 기준으로 조선 지방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선으로 삼고 있었던 것—적어도 대청 관계 속에서는⁴²—을 고려해 볼 때, 당시에 조선 중앙의 위정자는 토문(土門)·두만(豆滿)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국 측은 ‘토문강’을 도문강(圖們江), 즉 두만강의 이칭(異稱)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83년 4월, 둔화지현(敦化知縣) 팽광예(彭光譽)는 길림장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토문강’—청국 측의 인식에서는 도문강(圖們江) 즉 두만강—이북의 조선 농민에게 대해

41 『光緒中日交涉史料』(169), 光緒 8年 12月 25日付.

42 두만강 이북에서 경작하고 있던 조선인에게 함경도 관찰사가 지권(地券)을 발행하고 부책(簿冊)에 등록하고 있던 것이 청국 측의 조사 당시 발각되었다[篠田孝三(1944), 앞의 책, 134쪽]. 이 사실은 조선 지방관의 권한이 두만강 북안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선은 두만강 북안으로의 도항·경작을 엄금하고 있고,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두만강 북안으로 청국인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국의 예부에 연락하여 배제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경위가 있다. 이러한 변경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대청 통고는 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대청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두만강을 공권력 행사의 북방한계(北限)로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으로 쇠환할 것이라고 고시하였다.⁴³

3. 화이적 경계관과 국제법의 점진적 수용

1) 쇠환에 대한 반발과 감계 회담(1883~1887)

월강하였던 조선 농민에 대한 쇠환 고시가 나왔을 때, 전년도 천진에서 체결된 조중수륙무역장정의 후속 장정 협의를 위해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두만강 연강 지방에 체재하고 있었다. 어윤중에게 부과된 임무는 유민 쇠환과 경계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윤중의 체재 중에 두만강 연안의 조선인 주민이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비문에 의거하여 ‘토문’은 ‘두만’과는 다른 강이라는 설을 주장하며, ‘분계강(分界江)’-조선 주민은 해란강(海蘭江)이라고 함-이남의 조선인을 쇠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호소문을 제출하였다.⁴⁴ 어윤중은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스스로도 하인들에게 실지 조사를 시키

43 『北輿要選』 下, 探界公文攷. 『北輿要選』에 대해서는 『領土問題研究』 創刊號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3)에 해제와 원문 영인 및 한국어 번역이 게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03년에 金魯奎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당시 간도 관찰사로서 파견되었던 李範允이, 이 지역이 조선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을 의뢰한 것이다.

44 『北輿要選』, “探界公文攷, ……土門者分界處土門也, 圖們者慶源以下海處也…….”

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종성부사 명의의 조회문(照會文)을 돈화현에 송부하고, 청국 측이 주장하는 두만강 경계설을 부정하고 두만강과 '토문강'은 별도의 강이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⁴⁵ 이 조회가 조선 지방관에 의한 청국 측이 제시한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문건이다. 10월에 귀경한 어윤중은 고종에게 그 주임무였던 무역장정 체결을 보고함과 동시에, 두만강·토문강 별류설(別流說)에 의해 경계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무역 지역을 장정 중에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의문이 생긴 지역은 고려시대 윤관이 구축했던 공험진(公險鎭)의 고지(故地)이며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⁴⁶

이와 같이 조선은 두만강 북안의 조선인 주민의 쇠환 문제를 계기로 하여 현지 주민의 합소(合訴)에 의해 두만강과 해란강 사이에 있는 토지가 자국의 강역에 포함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청국에서도 돈화지현 팽광예가 혼춘부도통과 합동으로 관할의 귀속을 결정하기 위해 실지 조사를 행하였는데,⁴⁷ 혼춘에 관아(官衙)

45 9월이 되어 이 照會文과 지도가 현지에서 서울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송부되었다(『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20年 9月 18日條). 조회문은 『北輿要選』探界公文攷에 그 일부가, 또 篠田孝三(1994), 앞의 책 및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041附件 1(光緒 11年 7月初 9日)에 전문이 기재되어 있다. 후자는 1885년 2월에 朝鮮冬至使가 가져 온 것이라고 付載되어 있다.

46 『從政年表』 高宗 20年 10月初 4日條. 조선 측의 기록에는 언급이 없지만, 길림 조선 간의 무역장정 교섭 때에 '土門江' 북안의 조선 주민 쇠환에 어윤중이 동의했다고 하는 인식을 청국 측은 주장하고 있다(『清季中日韓關係史料』 1047).

47 『清季中日韓關係史料』 792.

가 설치된 이후 조선과의 경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어, 청국에서도 조청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수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조선과 청국 쌍방에서 경계를 확인·확정할 필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도 작용하여 조선이 요청하고 청국이 이에 응하는 형태로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감계(勘界) 회담이 개최되었다.

2) 감계 회담 당시 국제법 논리의 맹아

화이세계질서에 있어서는, ‘화(華)’와 ‘이(夷)’의 경계는 원리적으로는 ‘화’의 황제의 재하(裁下)에 의해서 정해진다. 1712년 목극등(穆克登)에 의한 백두산 정계비도 그 단적인 한 사례이다. 그로부터 170년 뒤, 청국이 주장하는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청 간의 경계를 양국의 교섭에 의해 확정 짓기 위해 안건을 제시한 조선의 자세는, 이 화이원리와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당초 청국으로부터의 조선 월강민 쇄환에 응하고 있었던 조선 정부는, 그 후 두만강 북안의 조선 농민을 그대로 잔류시키는 방향에서 자국의 유민 문제와 변경 지방의 농촌 피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로 전환되어 갔다. 그 배경에는 청국의 경계 주장을 논파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적 경위와 지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판단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세계관이 변화하여 화이의 논리에 입각한 관계로부터 ‘사영교섭 무대무소(四瀛交涉 無大無小)’⁴⁸라는

48 「の副護軍池見龍の上疏」, 『承政院日記』 高宗 21年(1884) 6月 17日條.

새로운 관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대무소’라고 하는 세계 인식은, ‘대소지분(大小之分)’이라는 그때까지의 조선과 청국 간의 관계의 원칙을 크게 변경시키는 것이었다. 즉 화이적 종속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국제법적인 ‘개량’을 부분적으로 덧붙여, 새로운 조청 관계를 구축하려는 흐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1880년대의 경계 교섭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 정부—김윤식이나 어윤중—가 청국의 교섭 창구를 예부가 아닌 ‘북양대신 이홍장’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국에서는 조청 간에 설정되어 있던 무인지대가 유인화한 것에서 비롯되어 현재화한 책봉 영역의 한계선 문제이며, 화이질서상의 문제로서 예부의 주관 아래 해결할 것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감계 회담의 전년도인 1886년이 되어 북양대신 이홍장이 감계 교섭의 청국 측 창구를 주차조선교섭통상시의(時宜) 원세개로 한다고 외무독판 김윤식에게 통고하고 있다. 새로운 창구가 되었던 원세개는 김윤식에게 ‘차지안민(借地安民)’, 즉 조선 측이 경계를 양보하면 한편으로 청국 측은 자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경작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조선 측의 수세(收稅) 대행권, 소송·통치권의 행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하였다.⁵⁰ 이 ‘차지안민’은 결국 1887년 감계 회담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조선 측에서는 그 후에도 ‘차지(借地)’와 두만강 경계 문제를 연결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차지안민’은 ‘영토·영역’과 ‘주권 행

49 秋月望(1989), 「中朝勘界交渉の發端と展開」, 『朝鮮學報』 192輯 參照.

50 秋月望(1989), 위의 글.

사'의 연동성을 중요시하던 국제법적 논리만으로 본다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구상이었고 '사대자소(事大者小)'의 논리와 '화(華)의 은혜' 등의 화이적 논리에 대한 조선 위정자들의 과도한 의타심과 국제법 논리의 불충분한 이해에 의거하고 있는 타협적인 제안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청국 측은 조선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무산(茂山)에서 하류의 두만강에 대해서는 이미 양국 국경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하고 그 이후 두만강 북안에 월강해 있던 조선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3) 청국 호적으로의 편입 압력과 '치발역복'

1888년 가을, 회령과 중성의 두만강 대안에서 조선인이 재배해서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반입하려던 곡물이 차압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⁵¹ 그 후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반입은 인정되었는데,⁵² 이듬해 2월이 되어서 원세개가 조선의 지방관이 월강 조선 농민에게 과세를 하고 좌수(座首)나 서차인(書差人)을 가지주(假地主)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해 왔다.⁵³ 조선 정부는 7월에 전 중성 부사 목승석과 전 회령 부사 김재용을 면직하고,⁵⁴ 지방관이 '월간(越墾)' 조선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원세개에게 회답하였다. 그러나 한

51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第8卷, 淸案1870, 「淸稅員秦煥이 扣留한 會寧鍾城 地方韓民의 放出에 關한 札函」.

52 『舊韓國外交文書』 第8卷, 淸案1, 871, 「八七〇에 關한 回答」.

53 『舊韓國外交文書』 第8卷, 淸案1, 899, 「會寧鍾城地方 韓民의 越江稼穡한 米穀扣留事件 捏造에 關한 照會」.

54 『日省錄』 己丑(高宗 26年) 7月 8日條.

편으로 두만강 대안에서 조선 농민이 경작하는 것은 청국에 의한 ‘일시 동홀(一視同恤)’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조선 측이 그 수확분을 반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화이질서의 논리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도 있다.

1889년 가을, 청국은 월강 조선인에 대하여, ‘치발역복(薙髮易服)’과 청국의 호적에 편입할 것을 강요하는 압력을 강화했다. 청국의 지방관이 조선인의 월강을 엄격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이미 월강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거주자에게는 ‘치발역복을 하면 급전(給田)을 할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쫓아내겠다’는 강경 방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듬해 5월에서 6월에 걸쳐, 청국의 변계관 엽지부(葉知府)가 월강 조선인 거주자에게 변발을 강요하고 청국의 호적에 편입시킨다는 고시를 하였다.⁵⁵ 함경북도 안무사 남정순에게서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는 원세개에게 조선인을 청국의 호적에 편입하는 것에 대한 수속상의 불비(不備)를 지적하고, 북양대신·길림장군에게 전보를 보내 편적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⁶ 그러나 원세개는 월강 조선인의 청국 호적으로의 편입과 ‘치발역복’은 1882년에 실시했어야 할 것이 감계 회담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 정부의 항의와 편적 중지 요구를 거절하였다.⁵⁷ 청국이 중앙·지방(길림)·조선(원세개)에서 연계하여 고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에 비해, 조선 정부는 ‘일시동홀’ 등의 화이적인 ‘자소(字小)’ 논리에 의존한 대응과 자국민의 월강 방지와 월강 조선인의 소환에 노

55 『舊韓國外交文書』 第8卷, 淸案1, 1233, 「吉林等處居住朝鮮人에 薙髮變服強要에 對한 抗議件」.

56 『日省錄』 甲子(1864, 同治 3) 3月 2日條, 5月 15日條, 6月 26日條.

57 『舊韓國外交文書』 第8卷, 淸案1, 1235, 「吉林等處 朝鮮人에 對한 薙髮變服令 中止要請의 拒否」.

력할 수밖에 없었다.⁵⁸

1898년이 되자, 대한제국(1897년 10월에 개칭, 이하 한국)과 청국 간에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한 통상조약 체결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 해 가을에 함경북도 종성 거주 전 오위장군 오삼갑 등이 상소하여 조선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월강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관리하고, 주청 공사를 파견하는 것에 맞추어 조청 간의 경계에 대해 「조약장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⁹ 오삼갑의 상소에 대해 조회를 받은 외부(外部)에서는 통상조약 교섭과 함께 경계의 확정과 월강 지대로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급무라고 하여 대한제국 황제의 재하(裁下)를 기다린다고 하였다.⁶⁰ 한편 내부(內部)에서는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에게 훈령을 내려 백두산 정계비를 중심으로 한 관계 지역의 지형이나 하천에 대해서 답사를 명하였다.

이러한 월강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은 압록강 측에서도 보여진다. 1898년 초, 대안으로부터 소환이 곤란한 월강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구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평안북도 관찰사에게 훈령이 내려졌고,⁶¹ 압록강 대안 지역에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시켰다는 기사가 『황성신문(皇城新聞)』에도 보여진다.⁶² 또 위원(謂

58 『日省錄』 辛卯(高宗 28年) 8月 4日條; 『日省錄』 辛卯(高宗 28年) 5月 15日條; 『承政院日記』 光緒 19年 12月 28日條.

59 『北輿要選』 下, 查界公文攷, 『皇城新聞』 光武 2年 10月 20日別報. 이 상소는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 가을에 함경북도 관찰사 趙存禹가 정리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北輿要選』 下, 察界公文攷에 인용되어 있는 「北甌山下畔嶺分界江 長引江兀口江形更」 參照.

60 『皇城新聞』 光武 3年 2月 23日雜報. 韓淸通商條約交涉은 이 해(1898) 1월 30일에 조선을 방문한 청국 전권공사 徐壽明과의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61 『皇城新聞』 및 1898年 1月 16日의 『獨立新聞』.

原)으로 관원을 파견하여 그때까지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던 월강 조선인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경계가 현안 사항이 되고 있던 두만강 측뿐만 아니라 압록강 측에서도 대안으로 월강한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월강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 한편으로 러시아령으로의 조선인 월강민의 이동도 계속되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점차 늘어나는⁶³ 가운데 1898년 여름에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조선인 조치룡 등 14명이 조선 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그 안에 「만국에 통행하는 규례」 즉 국제법을 근거로 러시아령으로 한국 정부 관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⁶⁴ 나아가 이듬해 여름에는 시베리아 거주하는 김정 이 외부(外部)에 ‘외교관’을 파견해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⁵

시베리아로 이동한 조선인 중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도 강화되는 가운데,⁶⁶ 재러 조선인들의 본국 정부에 대한 관리 파견 요청은 월강민의 의식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월강 초기의 ‘범죄자’, ‘도망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62 『皇城新聞』光武 3年 12月 19日雜報.

63 『皇城新聞』光武 3年 10月 26日雜報. 말미에 『朝鮮新報』라는 기사가 있다. 朝鮮新報에 관해서는 未詳.

64 20일 후의 『皇城新聞』에 한국 정부가 파견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는데, 실제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光武 2年 9月 26日雜報.

65 『皇城新聞』光武 3年 8月 22日雜報.

66 1899년 8월에는 러시아의 黑龍江總督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시내에서 조선인 및 중국인 거주 제한 규칙을 발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일정구역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였다. 『皇城新聞』光武 3年 9月 30日雜報.

‘이주민’으로서의 권리 의식이 싹트고 있었다는 점, 또 동시에 국제법에 입각한 ‘자국민 보호’ 원칙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거주권 등을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 영내의 월강자만이 아니라 월강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월강민이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관들보다도 오히려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4) 이범윤·서상무의 월강 주재

1900년에 발발했던 의화단 사건은 조선·청국 경계 지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군의 남하와 청국 피난민의 유입 그리고 청군 병사의 이탈·탈주 등으로, 압록강·두만강 연강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국 정부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 진위대대를 설치하고,⁶⁷ 군을 의주, 강계, 벽동, 후창, 삼수, 갑산 등으로 이주, 증파하는 등 두만강·압록강의 수비를 강화하였다.⁶⁸ 그 한편으로 청국 공권력의 대폭적인 후퇴 속에서 한국 정부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월강 조선인으로부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져 갔다. 1901년 1월에는 내부(內部)에 ‘영관(領官)’의 파견 요청이 있었고, 외부 및 원수부에도 현지 주민으로부터 군대 파견 요청이 있었다.⁶⁹

67 『日省錄』光武 4年 6月 4日.

68 『皇城新聞』光武 4年 6月 18日, 6月 30日, 7月 20日 雜報.

69 『皇城新聞』光武 5年 3月 1日 雜報.

이에 응하는 형태로 한국 정부는 2월에 ‘간황변호(墾荒邊戶)’ 보호를 명목으로 함경도 변계에 경무서를 설치한다는 칙령 제5호를 발하였다.⁷⁰ 이 경찰서는 두만강 남측에 설치되었는데, 관할 범위는 대안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1902년이 되자 월강하여 활동하는 변계경무서의 관원과 청국 관원 그리고 주민 사이의 마찰은 한층 더 커졌다. 청국은 주한 공사 허태신(許台身)을 통하여 한국 측 관원의 활동에 대해서 재삼 한국 정부에 항의하였는데, 한국 측은 관원의 월강은 어디까지나 대안에서 넘어 온 ‘비적’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반론하였다.

한편 압록강 측에서는 서상무가 ‘변경탐찰관(邊境探察官)’⁷¹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압록강 대안에 건너갔을 때 ‘청국항비(淸國嚮匪)’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납치된 사람들은 청국 측 군관에 의해 구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상무 등의 월강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압록강 대안에 조선 측의 관서를 설치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청국은 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서상무는 그대로 압록강 연강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두만강 방면에서는 이 해 5월 21일에 이범윤이 ‘북간도시찰원’에 임명되어 6월 23일에 두만강을 건넜다. 이범윤은 ‘너희들도 황은에 감송하여 귀인은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알려주고, 점차 향화(向化)에 따르고 또 그 편적(編籍)을 피하고, 인천우로(仁天雨露)에 일절함영(一切涵泳)함을 선(宣)으로 삼는다’는 고시를 내걸었다.⁷² 고시에는

70 『日省錄』 光武 4年 12月 28日.

71 徐相懋의 관직명은 청국에 제출한 조회문에는 ‘邊界探察官’으로 되어 있는데, 『皇城新聞』에는 ‘江北流寓民管理事務官’ 혹은 ‘西間島管理’라고 나오고 있다.

72 『朝鮮統治史料』 第1卷, 521~522쪽.

‘교화’, ‘은혜’라는 중화 시스템 이데올로기 일변도로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언급은 없었다. 다만 고시의 내용에는 전근대의 화이질서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화로서의 청국의 상대화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만강을 넘어 활동을 시작한 이범윤은 긴박한 현지의 실정을 보고 일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군대의 대동을 요구하였지만, 원수부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⁷³ 한편으로, 이범윤의 요청에 응하여 외부에서는 주한 청국 공사에게 조회하여 이범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⁷⁴ 이에 대해 청국 공사는 개항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한국 관원의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다.⁷⁵ 이러한 일련의 응수는 바로 국제법 질서하에서의 ‘외교’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청국 측 관헌에 의해 조선 월강민에 대한 치발(雉髮)을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혼춘부도통으로부터 함경북도 교계관 채현식 앞으로 두만강 북안의 조선인에 대해서 ‘경인년(1890)의 예’에 따라 일률적으로 치발을 시키겠다는 조회가 왔다. 한국 정부는 월강 조선인에 대한 치발의 강요는 한청조약 제12관의 ‘변민 중에 이미 월간(越墾)한 자는 그 안업을 허락하고 생명 재산을 보전한다’라는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법에 입각하여 치발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⁷⁶ 또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에게 조정을 의뢰하였고,⁷⁷ 러

73 『朝鮮統治史料』 第1卷, 522쪽, 「訓令咸北道光武六年八月再電報中派兵保護事 元帥府照覆에 不爲認許 恐以知悉事」.

74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 淸案 2, 2296, 「視察官李範允에 對한 淸官의 阻礙 禁止 및 吉璉各衙門에 보낼 咨文의 擲下要請의 件」.

75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 淸案 2, 2297, 「同右回答 및 咨文一對 具送의 件」.

76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 淸案 2, 2267, 「越墾韓民에 對한 一律雉髮令 撤銷

시아 공사는 혼춘의 청국 관리에게 주의를 환기하였다.⁷⁸ 또 7월에도 '간도' 거주 조선인에 대해서 치발역복의 고시⁷⁹가 발해졌는데, 그 후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두만강·압록강 대안에 있어서 조선 측의 관민의 대응과 사고방식에는, 중화 시스템 이데올로기에 국제법 질서·논리가 부가되어 양자의 혼재가 각각의 단계와 입장에 따라 색깔이나 농담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저하게 나타났다.

4. 일본의 침략적 개입

1) 일본 간섭의 시작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압록강·두만강 북측 지역의 긴장은 단숨에 긴박해졌고 청국 정부로서는 이 지역에서 조선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불측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허태신은 2월과 3월에 이범윤·서상무의 즉시 소환을 요구하는 조희문을 보내고 있는데⁸⁰ 조선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 직후에 청국은 한·청 양국에서

要請의件」, 『皇城新聞』光武 6年 6月 17日, 7月 8日雜報.

77 『舊韓國外交文書』第18卷, 俄案 2, 1873, 「滿洲流入韓民에게 淸國이 薙髮 强要하는데 對한 露側의 居中調停要望事」.

78 『舊韓國外交文書』第18卷, 俄案 2, 1882, 「在滿韓民의 被壓迫에 對한 露調停要請에 관한 照覆」.

79 『皇城新聞』光武 3年 9月 30日 雜報.

관원을 파견하여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자고 하는 제안을 전해 왔다. 경흥감리 황우영은 외부대신 이도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此時異於前日勘界亟應照明清使特派通明幹局人爲勘界使另拆局
外外國人爲顧問官帶同前往同地一切踏勘而授照公法考驗碑界申明舊
限公限繪圖則彼必不能強項而亦自退聽矣 ……⁸¹

그는 의견서에서 국제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외국인 고문관을 입회시키자고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청국은 다시 한번 감계 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 6월에 양국 간의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현상유지를 약속한 「중한변계선후장정(中韓邊界善後章程)」이 체결되었다.

일본이 이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한국과 청국이 감계 교섭을 재개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기였다.

한국 황제에게서 이 두만강 경계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러일전쟁 종결 후에 일본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⁸² 이 황제로부터의 자문은 의

80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 清案2, 2481, 「隱城對岸 清兵의 韓兵拉殺復抗議에 對한 反論 및 李範允의 調回 再要請」, 2482, 「徐相懋의 越境行序에 抗議 및 卽速 撤回要請의 件」, 『皇城新聞』 光武 8年 3月 4日 雜報,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 清案2, 2481, 「隱城對岸 清兵의 韓兵拉殺復抗議에 對한 反論 및 李範允의 調回 再要請」.

81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1쪽, 明治 36年 11月 20日付 外務大臣 小村壽太郎에게 보낸 「慶興監理 黃祐永이 間島問題에 關하여 外部大臣 李道率에게 內 呈한 意見書」.

국민 고문관을 입회시키는 것이 득책이라고 진언했던, 앞에서 말했던 황우영의 의견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 [小村壽太郎]는 7월 4일에 주청 일본 공사에게 훈령하여 한국과 청국과의 경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청국 정부에게 요구 하라고 지시하고, 또 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한청 경계지대에서 한국 측 관민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할 것을 지시하였다.⁸³ 주한 청국 공사 허태신은 8월 3일자로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 관원의 파견을 정지할 것, 또 그 동안 현지에서의 분쟁 방지에 노력할 것을 전달 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 9월 이후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는 11월을 전후하여 고무라 주타로와 나이토 토라지로 [內藤虎次郎=內藤湖南]에게 국경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였다고 추측된다.⁸⁴ 다음해 1월말에는 육군참모본부로부터 다시 한 번 똑 같은 내용의 의뢰가 나이토에게 있었고,⁸⁵ 1906년(명치 39년) 2월 19일자로 『간도문제조사서(間島問題調査書)』⁸⁶를 제출하고 있다. 조사서 안에서 나이토 자신이 “자료에 근거하

82 『高宗時代史』 6, 光武 8年 5月 21日.

83 『高宗時代史』 6, 光武 8年 7月 4日.

84 『內藤湖南全集』 第6卷에 內藤乾吉의 解題에, 內藤虎次郎의 1906年 1月 28日 자 葉書에 “參謀本部에는 明日 午前 十時에 가기로 되어 있다”고 하며, 2月 9日자 편지에는, “參謀本부의 용건은 역시 전 外務大臣에게서 依賴 받은 것과 같은 滿韓國境問題에 관한 調査依賴로서 目下 書籍 研究는 거의 종결하였고 어제부터 調査書 起草에 착수하였기에 아마도 오는 11일까지는 탈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 外務大臣 小村壽太郎로부터의 의뢰에 대하여 內藤乾吉는 1905年 11月 下旬에서 12月 下旬까지 內藤가 小村 特命全權大使의 고문으로서 北京에 체재하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85 『內藤湖南全集』 第6卷.

86 韓國國會圖書館 編(1975),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388쪽.

고 있는 문서는 극히 드물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단기간 내에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지만 그럼에도 해결 방안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다.

이상의 역사 및 지리상으로 살펴본 관찰 결과 정계비가 존재하는 분수령에서부터 布爾哈圖河, 즉 분계강의 발원지인 哈爾巴嶺, 즉 下畔嶺에 이르는 산맥 이남 및 布爾哈圖河가 두만강에 합류하는 곳에서부터 서남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서둘러서 지방관을 배치하고 수비병을 파견하는 것이 목하 긴요한 조치라고 믿는다.

이것이 일본의 손에 의한 최초의 조사 연구인데 극히 불충분한 사료로 인해서 졸속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원래 외무대신이 의뢰한 조사였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육군참모본부에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1906년 1월초에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이 성립되고 외무대신이 고무라에서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로 교체되었던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팽창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이 간도에 관한 조사 연구에는 당초부터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라는 바이어스(bias)가 걸려 있었던 것이 된다.

나이토는 같은 해 7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외무성 촉탁으로서 경성, 봉천으로 조사 여행을 떠났다. 『간도문제조사서(間島問題調查書)』에서도 한국 및 청국의 사료 조사를 금후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얻어 실행에 옮겼던 것일 것이다. 외무성에는 1907년 11월초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⁸⁷ 같은 해

8월 25일자로 나온 『한국동북강역고략(韓國東北疆域歌略)』⁸⁸이 그 사료 조사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나이토는 1908년에 조선반도 북부에서 길림까지 조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와는 별도의 계통으로 국가주의자들에 의한 것도 나타났다.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직후에 구니토모 시게아키(國友重章), 네즈 하지메(根津一), 시바 시로(柴四朗), 토야마 미츠루(頭山滿),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 등이 간도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갖고 도쿄에서 스즈키 신타로(鈴木信太郎)(나중에 간도임시파출소 총무과원으로서 역사연구를 담당)에게서 문제의 경위와 현황을 듣고 간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⁸⁹ 그 중에서도 나카이 기타로는 한국 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간도를 답사할 것을 제안하여 그 허가를 얻어서 회령수비대의 일본군 보병과 통역 등 전부 13명을 동원하여 액수색(額木索) 방면까지 조사를 하고 1906년에 조사보고서를 이토 히로부미 통감, 하세가와 사령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⁹⁰ 이러한 민간 주도의 현지조사와 맞물려서 일본인의 간도 진출이 시작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안동중화공사(安東中和公司) 주인인 나카노 지로(中野二郎)가 청국의 천보산 광무국 총변 정광제(程光第)와 천보산 광산 채굴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고,⁹¹ 같은 달에는 회령의 무역상 시부사와 요시지로(澁澤義二郎)가

87 「北韓·吉林旅行日記」內藤戊申解題(『朝鮮學報』21·22合併號 1961. 10).

88 『內藤湖南全集』第6卷 所收.

89 永井勝三(1925), 『北鮮間島史』, 358쪽.

90 이러한 움직임은 一進會의 활동과 연동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李盛煥(1991), 『近代東아시아의政治力學』, 錦正社, 50~56, 67쪽.

91 『日本外交文書』40-2, 857, 「天寶山鑛山採掘に關する中野二郎と清國官憲と

잡화상점을 국자가에 개설하였는데 청국 관헌의 방해로 인해 이듬해 3월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⁹²

한편 한국 주차군 참모부는 참고자료로 작성한 『간도(間島)에 관한 조사서(調査書) 개요』⁹³를 1906년 4월 16일에 사이온지 긴모치 외무대신에게 제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간도가 갖는 군사상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이 청국, 한국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 국토방위상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간도의 군사적인 중요성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나카이 기타로의 조사와 한국 주차군의 의견서는 연구라기보다는 현황의 파악으로서 영유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결론을 지어놓고 행한 조사 보고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의 임시 간도파출소 등의 조사,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2) 임시 간도파출소 시기의 연구

1906년 11월 18일자로 한국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이토 통감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敝邦與滿州邊界一案은 曩與駐我京清國公使로 迭經交涉하여 請派員查勘에 尙未了案而按韓清條約第十二款에 邊民已經越墾者聽其安業俾

の契約書寫送付の件」.

92 永井勝三(1925), 앞의 책, 359쪽.

93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316쪽.

保性命財產等因이온바 現下墾島이 時被馬賊及無賴輩의 欺負凌虐호야 該居民이 切乞保護不止호나 事係外交호오니 貴은 特念該居民之情形호오서, 貴國政府에서 派員前往호야 撫緩居民케호실 事로 轉飭淸國호심을爲要⁹⁴

이 공문은 관련 참고자료와 더불어 12월 12일자로 하야시 타다스 [林董] 외무대신에게 전송되었고 동시에 이토 통감은 간도독무청(間島督務廳) 설치와 헌병대의 파견을 건의하였는데 거기에는 독무청 관제와 예산 안도 첨부되어 있었다.⁹⁵ 통감부에서는 바로 간도독무청의 편성에 착수하였고 한국 주차군사령부 소속 사이토 기지로[齋藤季治郎] 중좌를 문관(文)으로 임명하여 책임자로 삼고 연말에는 러일전쟁에서 국제법 고문으로 종군하였던 시노다 지사쿠를 총무과장으로 하여 그 아래서 스즈키 신타로가 역사적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대청국 외교상의 배려에서 명칭이 간도독무청에서 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이하, 파출소로 약칭함)로 변경되었고, 대 러시아 외교의 배려에서 파출소 설치가 몇 달 연기되었지만 1907년 8월 23일 용정에 파출소가 설치되었다.

파출소에서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사료 조사 등이 행해졌다. 즉 결론이 이미 내려진 조사 연구였다. 그 중심을 담당할 것이 스즈키 신타로로서 스즈키는 파출소 건설에 앞서 한국 정부 소장 사료를 조사하여 7월에 『청한국경문제(淸韓國境問題)의 연혁(沿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파출소 설치 후인 9월에는 측량기사 등을 백두산에 파견하여 정계비와 그 주변의 실지 조사를 행하였다. 또 청국

94 『朝鮮統治史料』 第1卷, 508쪽.

95 『朝鮮統治史料』 第1卷, 510~545쪽.

측이 존재를 주장하고 있던 국경석의 확인과 감계 회담 당시의 무산 군수 지창한으로부터 구술 조사를 행하는 등 사료 수집과 조사 활동을 행하였다.⁹⁶

나중에 시노다 지사쿠는 1938년에 낙랑서원에서 『백두산 정계비』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파출소에서 근무 기간 중에 행한 조사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시노다의 『백두산 정계비』에서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백두산 정계비의 설립, 1880년대에 두 번에 걸친 감계 회담에서 1909년의 청일협약 체결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 점에서 침략적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였지만 그 후의 간도 연구의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 시노다는 ‘간도의 영토권을(청일협약과의 교환 조건으로) 양보한 것은 분명히 우리 외교의 실책’이라고 하면서도, 『간도문제의 회고』⁹⁷에서 영유권의 소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간도는 청한 양국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

그리고 압록강 대안에 관해 청국이 자국 영토로 삼았기 때문에 두만강 대안에 대해서는 한국 영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시노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다만 “공인(파출소 총무과장)으로서 간도에서 활동할 당시 이십수 년간 한국인이 주장해온 한국 영토설을 지지하고, 두만강 이북을 완전한 청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청국에 대항해 온 것은 국가를 위

96 派出所殘務整理所,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1910, 第5章.

97 シリーズ：滿蒙パンフレット 第14號, 大連 中日文化協會 1930, 本文에 前述한 『白頭山定界碑』에도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법 학자로서 시노다의 견해는 화이질서하에서의 다양한 교섭을 섭렵하고 현지의 지형을 자세하게 관찰하였지만 거기에서 국제법적인 국경을 정하는 주권국가의 영유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08년 9월 25일 각의 결정에서 한국의 간도 영유 주장은 곤란하며 오히려 이것을 대청외교 속에서 교섭 재료로 삼아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굳어졌다.

간도 문제는 청한 양국의 오랜 현안인 바 본건에 관한 한국의 주장은 그 근거가 극히 희박하여 강희(년) 정계(비) 이후 청한 교섭의 역사와 청국이 한국보다 먼저 행정을 그 지방에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⁹⁸

즉 군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요지라는 군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는 없지만 화이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청국과 거래하는 재료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나이토 토라지로는 1908년 8월에서 10월까지 회령, 용정, 국자기를 거쳐 합이파령(哈爾巴嶺)에서 돈화, 길림을 답사하고 이듬해 1909년 2월에 『간도문제사견(間島問題私見)』, 『간도문제협정안사의(間島問題協定案私議)』⁹⁹를 제출하고 있다. 그 중에는 “간도 즉 연길청 관내에 있어

98 『日本外交年並主要文書』 上, 309쪽, 「滿州に關する對清諸問題解決方針決定の件」.

서 청국의 영토는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교환 문제로서 청국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제 조건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1906년 단계에서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했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의향에 따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노다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간도 영유를 주장해 보기는 했으나 국제법적 견지에서 영토와 국경의 귀추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 사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맺음말

‘국경’선 긋기가 확정되지 않은 채 1887년 이후 조선과 청국 사이에는 ‘대소지분’, ‘일시동홀’이라는 중화적인 논리와 국제법에서의 국가 주권의 논리가 혼재하는 가운데 주민의 거주, 생활권이라는 자국민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마찰과 대립이 계속되었다.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군의 진주와 치안의 악화, 난민의 발생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조선 측은 압록강, 두만강 연강의 경비체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의 방위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강 대안으로의 영향력 확대라는 의미에서도 커다란 전기(轉機)가 되었다.

한편, 조선 월강민의 의식도 ‘범법자’에서 ‘이주자’로 변화하였고, 자국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 월강민의 입장에서 주권이 미치는 범

99 모두 『內藤湖南全集』第6卷 所收.

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주자’에 대한 국제법상의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편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당초에는 화이의 논리, 교화·진흥의 시점에서 대응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윽고 점점 대청 교섭에 있어서 국제법적 근거에 의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월강 조선인, 연강 지방관, 대한제국 정부 모두가 화이적인 질서의 식과 국제법 논리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그 혼재의 상태도 입장이나 시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는 매우 다종다양한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월강민들이 20세기에 들어가기 전후의 시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원용하면서—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자신들의 권리 방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조선(대한제국)에 있어서 국제법 수용의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변경 지대의 움직임에 상세히 보도해 왔던 『황성신문(皇城新聞)』은 국제법상의 정당성을 반복하여 주장함과 동시에 선춘령(先春嶺)과 발해에 대한 역사 서술 그리고 ‘간도’ 지방의 개간의 공적, 조선인 거주민의 실적, 나아가 인구수가 많은 것을 들어 영유권 주장을 전개하게 되었던 점은 현재의 한국과도 연결되는 영유 의식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은 1909년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도 있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일본의 침략적 개입은 오늘날의 경계 문제의 커다란 논점의 하나가 되어 있다. 다만 일본의 침략적 의도와 경계에 관한 판단과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조선에 대한 침략뿐만이 아니라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고찰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침략이 국제법과 화이 시스템의 논리적 모순과 격차를 이용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면, 20세기 초 수년간 일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경계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근대 조선의 영토 의식, 영유 의식은 역사적 지리적인 지식과 인식의 전근대로부터의 계승에 의해서만 확인되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는 가운데 그 질서에 있어서의 논리를 역사의식과 영유 인식에 포함시키면서, 근대라고 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갔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번역 : 서민교(고려대학교)

극동지역 한인과 러시아 국경 통과 문제

A. I. 페트로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서평
2019년 1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는 17세기부터 태평양 연안에 정착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부재로 인해 1689년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대(對) 프리아무르 진출을 150년 이상 지체시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창’으로서 ‘캄차트카로 통하는 루트 탐색’에 고심하던 표트르 I세는 오흐츠크(Okhotsk)항을 개항했으며,¹ 카흐타(Kyakhta) 조약에 따라 러·중 간 모든 무역활동은 카흐타 지역에 집중되었다.

러·중은 양국 간 국경 및 무역에 관한 아이훈 조약(1858년)과 베이징 조약(1860년), 그리고 한카(Khanka) 의정서(1861년)를 체결함으로써 아무르강 좌안과 우수리강 우안이 러시아령이 되었다. 그 후 국경은 순가차(Sungacha)강 상류로부터 한카호수를 지나 벨렌헤(Belekhe)강(투르강)까지, 이어서 산악지역을 통과하여 후비투(Khubitu)강 하구에 이르고 투멘-올라(Tumen-ula)강까지 나아가 강을 따라 20리(중국 1리는 0.5km : 講註)를 지나 투멘-올라강 하류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조약 및 추후 체결된 양국

1 И.И. Барткова(1983), Расселение на Тихоокеанском побережье, Владивосток :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с. 13~15.

간 합의서들은 러·중 양국 국민들에게 전 국경지역에 걸쳐 양 지역의 50베르스타(1베르스타는 약 1.06km : 譯註)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케 하여 러시아의 발전에 기여한 한편, 이전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인, 중국인 및 한인들 간의 접촉을 가능케 했다. 이는 상기 언급한 각종 조약 체결 직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러시아인들의 아무르 지역 및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 덕분에 가능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주가 이루어진 원인은 정부의 특혜 때문이었다. 1861년 정부 특별령에 따라 자비로 아무르주와 연해주에 이주한 러시아인 이외에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인들은 10회 징집 기간 동안 징집이 유예되었으며, 내외국인 모두 20년간 인두세와 토지세를 면제받았다. 그리고 이주자들은 100데샤티나(1데샤티나는 1.09헥타르 : 譯註)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극동지역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자크 용병이 소집되었다. 1858년 자바이칼 카자크 용병대를 기반으로 아무르 카자크 용병대가 편성되었으며, 그 후 1889년 우수리스크 카자크 용병대가 분리, 독립적으로 편성되었다. 1860년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에서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kray) 남쪽 해안으로 파견된 동시베리아 제4기동대대 지휘관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노브고룟스크 초소를 구축했다. 이어서 우수리 강변에도 새로운 초소들이 들어서고 한카호수 북서쪽에는 ‘투리 로크’ 초소가 배치되었으며, 1863년에는 그 주위에 동일한 명칭의 ‘투리 로크’ 마을이 조성되어 도로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초소와 연결되었다.² ‘푸딘(Fudin, Vetka, Pavlovckaya)’이라는 명칭의 첫 번째 러시아

2 В.М. Кабузан(1985),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 в XVII-начале XX вв. (1640

농촌 마을이 들어선 곳은 1861년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인들의 유주노-우수리스크주 초기 정착은 자바이칼주와 아무르주에서 온 이주민들에 의해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 유럽 지역 출신의 이주농들은 1880년대 초 비로소 해로를 통해 오텐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이 곳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한인들과 노브고랏스크 초소 러시아 장병들의 첫 접촉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862년 12월 21일 노브고랏스크 초소장 체르카프스키(I. F. Cherkavsky) 소령과 상시 접촉을 유지했던 블라디보스토크 초소장 부라체크(E. S. Burachek) 중위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일부 한인들이 가족과 함께 우리 땅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들을 유인한 것은 20년 간의 면세 혜택이었으나, 그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각은 중국 관리들의 짓으로, 그들은 각 가정으로부터 많은 양의 은전을 탈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봄에 한인들의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생각이다.”³ 그러나 한인들의 이주는 이보다 1년 늦은 1864년에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여러 고문서에서 확인되었으며, 라고자(A. F. Ragoza)와 같은 저명한 학자의 저술에도 언급돼 있다. “1864년도에 농민 이주자들 외에 전혀 예기치 않게 조선에서 포시에트만 인근으로 첫 이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유입은 현지 주민들의 호응과 조선 내의 굶주림 등으로 인해 더

~1917), Историк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М. : Наука, с. 63.

3 E. C. Бурачек(1999), Воспоминания заамурского моряка. Жизн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861~1862 гг., Бурачек В. В. До и после Влади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 Общество изучения Амурского края, с. 195.

육 빈번해졌다.”⁴

오랫동안 한인 이주민들이 정착을 선호했던 포시에트 지역은 황량한 저지대로 탈리미호수를 비롯해 많은 호수와 연계되어 곳곳에 늪이 조성돼 있어,⁵ 한인들이 고국에서 익숙해 있던 농사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1867년 러시아는 상징적인 가격에 알래스카를 내주고, 프리아무르(아무르강 연안)와 프리모르(연해) 지역 발전에 힘을 집중했다. 따라서 극동지역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는 곧 러시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수립한 이주정책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868년 소위 ‘만자전투[Manzi War]’가 발발하면서 중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 변하게 되었

4 A. Ф. Рагоза(1891), Краткий очерк занятия Амурского края и развития боевых сил Приаму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Составил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дполковник Рагоза, по указанию командующего войсками Приаму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Хабаровка :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Приаму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с. 112. 많은 자료에 1860년 우수리스크 변경주가 러시아황제의 통치하에 들어오면서, 단 한 명의 한인들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한인들이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에 훨씬 오래 전부터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고대 한국사 연구자들과의 논쟁은 사양한다. 예를 들면, Chang Byongil은 “(고고학적 유물과 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고대 이야기에는 수천 년 전 알타이 산에 거주하던 종족들이 시베리아와 만주를 거쳐 동쪽방향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퉁구스족으로 보이는 그들 중 일부가 떠돌던 중 현재의 한반도에 이르게 되었다. 새로운 땅이 맘에 들었던 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이 흘러 이곳의 지배종족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Byongil Chang(1979, 11), 「전통 한국의 정신적 지평」, UNESCO Courier, p. 4 참조.

5 Б.А. Сушков(1958),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моря и их побережья.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Владивосток : Примо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 32.

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도록 하겠다.

1869년 대규모 자연 재해로 인해 한인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동시베리아 총독은 당해년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864년부터 조선 내 인구 밀집과 당국의 과도한 중과세로 한인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1869년 가을 조선 북부지역의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한인들의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1870년 1월 1일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에 이주한 한인들의 수는 6,000명에 이르렀으며, 당국은 이들을 국경지역으로부터 멀리 분산시킬 계획이었다.”⁶

국립 고문서국 공식문서에 기록돼 있는 ‘계획(이주한인들을 국경으로부터 멀리 분산시킬 계획)’은 매우 초기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시베리아 총독의 이러한 직접적인 ‘계획’은 황제에게 보내는 모든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는 주 당국의 최고위층이 이웃나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가져오는 문제를 잘 깨닫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당국의 희망사항으로 끝났을 뿐, 보고서에는 아무런 해명이나 보충설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은 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 근거한다. 총독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국을 떠난 한인들은 전통적인 법률에 따라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귀환할 수 없게 되어 조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러시아인들의 이해관계와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당국은 조선의 영향력이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인들의 러시아

6 РГИА, ф. 1281, оп. 7, д. 101 (1870 г.), л. 88. 행정적 지리적 관점에서 극동지역의 각 주는 1884년 이전까지 이르쿠츠크에 행정수도를 둔 동시베리아 총독부 관할이었다.

이주를 허용하게 되었다.”⁷ 이와 관련하여 1870년 최고위 당국이 이주 한인들을 ‘국경으로부터 멀리’ 분산시킬 ‘계획’을 수립한 것은 러시아 국경지역에 인접국가 출신의 대규모 민족집단이 형성될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총독은 다시 한번 황제에게 한인 이주민들에게 우호정책을 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다. 여기에 ‘한카호수와 포시에트만 사이’에 ‘어느 곳에서든 접근할 수 있고, 개방된’⁸ 러시아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언급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신의 영토에 한인들의 영구 정착을 허용하는 허가장을 받으려는 극동지방 행정당국의 바람을 입증해 준다. 이는 ‘이주 한인들의 이해관계가 러시아인들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국경은 조선 정부의 오랜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장기간 폐쇄된 상태였다. 프르제발스키(N.M. Przhevalsky)는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에 대해 “조선 정부는 한인들의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매우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로 통하는 길목에서 잡힌 한인들을 사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소지한 비단을 내버린 채 밤에 남몰래 투멘-올라강을 건넌다. 그 후에는 러시아 병사들의 보호 아래 노브고랏스크 항구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된다. 조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러시아인들과의 관계를 회피하

7 РГИА, ф. 1281, оп. 7, д. 101 (1870 г.), л. 88~88 об.

8 Н.М. Пржевальский(1990), Путешествие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1867~1869 гг. Владивосток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 305. 본 저서는 모스크바 Географгиз 출판사에서 1947년 Пржевальский Н.М. Путешествие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1867~1869 гг.로 출판된 바 있다.

는지는 국경 인접 지역의 경흥 부사가 러시아인들에게 아무것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선인들에 대한 협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인들이 러시아의 국경 초소가 있는 강 좌안을 건널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흥 부사의 이러한 엄명에도 불구하고, 경흥부 주민들은 강이 얼어붙는 동절기 야밤에 초소 병사들에게 놀러 오곤 한다”⁹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인들의 이주는 계속되어 1869년 말에서 1870년 초 한인 이주자들은 102가구에 달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자신들의 비용으로 아무르주에 이주하여 아무르강 지류에 있는 사마르카 지역에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을 이뤄 정착했다. 마을의 건립에는 16,570루블 56코페크가 소요되었다.¹⁰

1878년 7등문관 비스레네프(Vislenny)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에 한인 6,142명이 거주했으며, 그중 남성은 3,374명, 여성은 2,768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1,284명은 세례를 받았다.¹¹ 동지역 내 중국인들은 5,793명이었다. 그밖에 인구조사에 포

9 Н.М. Пржевальский(1990), сс. 132~133.

10 А.В. Кириллов(1895), Корейцы села Благословенного //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ого отдела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ыпуск 1. Хабаровск : Без издательства, с. 7. См. также : А.И. ; Петров(1987),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его хозяй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ус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864~февраль 1917 гг.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АН СССР, сс. 12~13.

11 Сборник главнейших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сточною Сибирью. Издается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Д.Г. Анучина. Том IV. Иностранче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Выпуск 2. Корейцы и инородцы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Иркутск :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1884, с. 3.

표1 연해주 한인 분포도, 1878년

지역	마을 수	농가 수	주민 수			정교 수용자
			남자	여자	소계	
한카	8	596	1,543	1,283	2,826	727
수이푹	9	612	1,620	1,338	2,958	537
수창	3	62	211	147	358	20
총계	20	1,270	3,374	2,768	6,142	1,284

출처 : Том IV. Инородче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Выпуск 2. Корейцы и инородцы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Иркутск :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1884, с. 3.

합된 1,212명은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 원주민들이었다.¹² 한인들의 권역별 분포도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비슬레네프가 한카 지역에 등록한 한인 마을은 다음과 같다. 시넬리코보(92가구, 404명), 산쨌카우(12가구, 59명), 우샤가우(5가구, 28명), 함발루가(12가구, 54명), 푸틸롭프카(173가구, 799명), 크로우놉카(103가구, 484명), 코르사콥카(147가구, 698명), 카자케비체보(52가구, 300명).¹³

12 Том IV. Инородче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Выпуск 2. Корейцы и инородцы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Иркутск :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1884, с. 4.

13 Том IV. Инородче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Выпуск 2. Корейцы и инородцы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Иркутск :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1884, сс. 8 ~85. 당시 만주에도 이후 수십년 간의 상황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정착해 있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과거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조성된 만주-조선 간 중립지대 비옥한 지대로 몰렸다. 이것은 1869~1870년 조선의 대 흉작 및 기근으로 야기된 한인 농민들의 이주와 관련이 있었다. 1875년 이 지역에 영농증명서를 받은 중국인 이주민들의 수는 6천명 이상이었

국경 수비는 이후에도 매우 소홀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과 동시대인들의 입증 자료는 적지 않다. 안콥스키(Yu.M. Yankovsky)는 아버지 M.I. 안콥스키(M.I. Yankovsky)의 가족사를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버지의 부모님들은 포시에트의 황량하고 이름없는 반도에 정착하였는데, 그 즈음 한인들이 베르흐네 시제미 마을을 형성하여 안콥스키의 농장과 더불어 국경의 완충지 역할을 했다. 한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 홍후즈(화북/만주의 마적)의 조공자가 되었다. 그러나 조공이 부족할 때면 홍후즈는 한인들을 살해했다. 그럴 때면 한인들은 안콥스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안콥스키는 한인들과 자신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홍후즈들과 ‘정의의 투쟁’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콥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는 수차에 걸쳐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노동자들과 이웃 정착자들을 규합하여 악당들을 몰아냈으며, 때로는 국경을 넘기도 했다.”¹⁴

1884년 러시아와 조선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 후 1885년 프리아무르 총독부 최고위 행정당국 대표들이 모두 모여 열었던 하바롭스크 회의에서 한인들이 영주 목적을 위해 프리아무르 변경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즉, 이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 가족이 이주하고자 할 때는 사안별로 양국 외교대표부가 판단하게 된 것이다. 본 하바롭스크 회의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제법

다. 1875~1877년 이곳에는 4개 군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토지 1,730,000무(1무는 667m²)가 개량되었다. История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XVII-XX вв. Книга 1. Маньчжурия в эпоху феодализма(XVII-начало XX в.) Владивосток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7, с. 265 참조.

14 Ю.М. Янковский(1990), Полвека охоты на тигров, Владивосток : Издательство «Уссури», с. 14.

에 따라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¹⁵ 그러나 회의가 포시에트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러·중 국경 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포시에트 지역이 그곳에 거주하던 한인들과 함께 사실상 중국 관할로 넘어갈 가능성이 논의된 것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주 한인들이 러시아 당국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대규모 한인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¹⁶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조·러 회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러시아 정부는 프리아무르 변경주 한인들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선 당국과 합의하고자 했다. 두만강 양안에 거주하던 한인 농민들이 국경 통과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이유를 들며 두만강을 자유롭게 왕래해 왔다는 사실 또한 프리아무르 변경주 당국에 상당한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으며,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15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В.Д. Песоцкий(1913),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Отчет поручика 1-го Сибирского стрелкового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полка В.Д. Песоцкого //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 11а. Хабаровск : Типография Канцелярии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сс. 111~112. 이러한 종류의 저작물은 학술용이 아닌 정부 부처 및 관리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작성된 것임을 유의해야 함. 따라서 당시 사용된 용어나 형식 등은 매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고, 채택된 법령과 국제협약 등을 통한 검증이 요구됨.

16 Колонизация Сибири в связи с общим переселенческим вопросом, СПб. : Издание канцелярии Комитета Министров(1900), с. 326.

서 이러한 문제는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4년 후 1888년 8월 8일 조·러 통상조약 서명에 앞서 이뤄진 회담 중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게 되었다. 양측 외교부 간 상호 양보와 타협 결과 “1884년 6월 25일 이전에 러시아 땅에 정착한 모든 이주 한인들은 러시아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따라서 첫 번째 조·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러시아에 정착한 한인들은 일정 기한 이후 조국으로 ‘귀환해야’ 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재입국하는 한인들은 제반 국경 통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되는 동안 1888년 5월 17일 러시아에서는 프리아무르 변경주 총독에게 관내 거주 중인 한인들과 중국인들이 러시아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상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실험적으로 총독 재량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이 채택되었다.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총독부가 이미 1885년부터 도입한 상태였다. 한인들에 관해서는 총독 코르프(A.N. Korf) 백작이 연해주에 일시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1889년 1월 1일부터 과세 및 거주 규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890년 3월 1일 이전까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지정된 기한 이전에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은 조선 당국으로부터 해외 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¹⁷

당시 행정부 문건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이주 한인들은 양순한 농민들로, 아무르주와 프리아무르주 당국에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

17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ф. Чиновник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части, оп. 579, д. 307, л. 405.

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지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인들은 일부 노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일 또한 능숙하게 잘했다. 이렇게 해서 1889년 러시아 병사들과 한인들이 합심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한카호수 인근의 카멘-리볼로프(Kamen-Rybolov)를 연결하는 총길이 460베르스타의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배경으로 1870년대부터 조·러 국경지역에는 매우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소문은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에 이주를 원하거나, 러시아로 돈벌이를 떠나고자 하던 한인들에게 확산되었다. 또한 러시아 측 국경 수비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크라스노셀스크(Krasnoselsk) 초소에는 이주한인들로 구성된 단위대가 근무할 정도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이주한 중국인들의 상황은 달랐다. 그들 중에는 흥후즈, 밀수업자 및 범죄인 등 사행심이 강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일부 중국인들은 만주국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¹⁹ 더구나

18 Обз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889 год. Приложение к Вспомогательнейшему отчету. Владивосток, 1890, с. 18. См. также : М.А. Ковальчук(2005), Грунтовые дорог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середина XVII – начало XX вв). Хабаровск :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с. 29.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은 라즈돌니(Раздольный)에서 노보키예스크(Новокиевск)까지 총 연장 178 베르스타에 이르는 도로를 강과 개울을 건너는 교량과 함께 건설했다. 자세한 것은 А.Ф. Рагоза(1891), Посыетский участок //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Азии. Выпуск 45. СПб., с. 58. См. также главу 《Натуральные и денежные пови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 : А.И. Петров(200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сс. 166~182 참조.

중국인들은 러시아에 머물며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이 자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러시아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 추가조약 제1조에 대한 중국 측의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우수리스크 변경주 내무국이 러시아와 중국 관리들 사이에 양분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²⁰

예를 들면 우수리스크 변경주에 남아 있던 중국인들은 베이징 조약에 따라 사냥과 어로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지만, 아스콜데 섬의 금광 개발은 다수의 중국인을 끌어들였다. 1867년 블라디보스토크 당국은 많은 중국인들을 섬에서 격리시킬 수 있었으나 다음 시즌에 그들은 다시 몰려왔고, 이번에는 무기를 든 채 대항할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동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프(M.S. Korsakov) 중장은 자신의 1868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 1882년 바라바쉬(Я.Ф. Барабаш)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첸-차이(У-чен-цай)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우리 관내에 중국인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시 수사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있다는 우연한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혹스러워했는데, 이는 그러한 일이 비정상적이며 비합법적이라는 점을 지적 받기 전에 스스로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См. : Я.Ф. Барабаш(1883), Записка о Маньчжу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Барабаша. (По данным, добытым при поездке в Гирин в 1882 г.) //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Азии. Выпуск 1, СПб. : Военная типография(в здании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 6.

20 Я.Ф. Барабаш(1883), с. 110.

중국 이주민들은 금광 개발이 장애에 부딪히자 일부 현지 주민(Manz족)들의 도움을 받던 자들이 강도와 약탈을 일삼아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이전까지 평화롭게 지내오던 중국 이주민들의 이러한 무질서를 보고 정착민과 일시적인 이주민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으며, 현지 당국은 향후 중국인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국경기마대 및 인민위원회 창설을 통한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 국경수비 체제 개선, 변강주의 區 분할 및 각 區에 군·민국 창설, 행정당국의 강화, 변강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 당국의 구조 개편 등에 대해 보고하기에 이르렀다.²¹

1870년대 말 1880년대 초 일리이스크(Илииск)주에 대한 견해 차로 인해 러·중 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국경 주위에 중국군이 집중 배치됨으로써 이러한 긴장 상태는 극동지역에서도 두드러졌다. 이에 러시아 측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연해주 거주 ‘러시아인과 한인들의 식량 공급’을 위해 곡물 및 기타 식량자원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체결 후 국경지역의 긴장상태는 차츰 완화되었다. 그런데 만주 당국이 갑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일례로 연해주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만주 당국은 ‘1860년 조약에 따라 지도상에 표기된 붉은 선 서쪽 중국령 국경표주 И(И)와 Л(Л) 사이 세 지역에 ‘초소’를 운영하는 러시아 병영이 있는 듯하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민원을 북경에 제기했다. 참모본부의 바라바쉬(Ya.F. Barabash) 대령

21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отчет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ью за 1868 год // РГИА, ф. 1281, оп. 7, д. 106, л. 52 об. 53.

은 중국 국경담당 장관 우 다첸(U Dachen)에게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근거 없는 정보를 입수했는지 수차에 걸쳐 문의했지만, 그는 매번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²²

1880년 4월 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리아무르 변경주 관련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러·중 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소집되어, 특히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경주에 정착한 ‘러시아인들과 한인들의 안전보장과 식량 공급’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채택된 결정에 따라 지역 당국은 러시아인들과 한인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 5만푸드(1푸드는 16.38kg : 譯註) 이상의 식량자원을 조달해야 했다.²³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880년 8월 16일 카멘-리볼로프(Kamen-Rybolov) 초소에 있던 동시베리아 본부 소속 지형측량사 포포프(A. Popov)는 초소 인근지역 관할 한인들의 수를 마을별로 노브고룟스키 초소에 보고했다.²⁴

1882년 중국은 투멘-올라(Tumen-Ula)강 좌안 포시에트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했다. 만주인들은 이를 통해서 조선과 러시아를 갈라놓고, 자신들의 해양진출로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듬해 양측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서 러시아는 한인마을 사벨롭카(Savelovka)가 실수로 중국 영토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공동위 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지 못하여 북경에 협의차 떠나버렸다. 결국 1886

22 Я.Ф. Барабаш(1883), сс. 4, 17.

23 Сборник главнейших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сточною Сибирью, Том I, Вып. 1, Иркутск, 1884, с. 4.

24 РГИАДВ, ф. 6, оп. 1, д. 78, л. 65.

년 새로운 국경획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연해주 주지사 바라노프(I.G. Baranov)가, 중국 측 수석대표는 우다첸이 맡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한인마을 사벨롭카가 중국에 귀속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이 내용을 제1의정서에 기록했다. 1860년대 말 이주 한인들로서 이미 러시아 국적 취득을 기다리던 사벨롭카 주민들은 러시아 영토로 이주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그들은 이미 익숙해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중국 측 관할로 귀속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경획정위원회는 중국인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국경선 재설정을 위한 국경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회담을 통해 의정서를 채택했다. 노보키예프스크 의정서(Novokievsk Protocol)라 불리는 본 문건은 총 9개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1의정서(General Protocol)는 1886년 6월 22일(7월 4일) 서명되어 9월 투멘-올라 하구에서부터 한카호수까지의 국경이 획정되었다.²⁵

25 Границы Китая :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д редакцией академика РАН В.С. Мясникова и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Е.Д. Степанова(2001), М. : «Памятники 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сс. 119~125 ; В.С. Мясников(1997),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XVII-XX вв.). Хабаровск : Приамур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с. 329. См. также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 3-х томах. Четверто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издание. Т. 2. К-Р. М. : «Наука». 1985, с. 353 ; А.П. Деревянко(1999), Открытие и освоение русскими Приамурья и Приморья (XVII в.-1860 г.) // Записки Амур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общества краеведов. Выпуск 9. Благовещенск : Издательство АмГУ, с. 23. 바라노프(И.Г. Баранов)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А.И. Петров(2000), Военный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이 시기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이주 한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1883년 6월 24일 열린 한 ‘특별회의’에서는 우수리스크 변경주가 ‘직업적’으로 강탈을 일삼는 중국인 도적떼(홍후즈)들의 습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경 일대에 “코자크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농민과 이주 한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²⁶ 이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가 이주 한인들을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려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벨롭카 문제’는 비록 ‘사소한’²⁷ 일에 불과했지만, 러·중 관계가 첨예하게 긴장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좋지 않은 선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조선 간 외교 수립 직전까지 러시아 영토 내에 정착해 살고 있던 모든 한인들은 사실상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전시 혹은 비상시 한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해 식량을 공급해줘야 했다. 그러나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조선 간의 국경이 특별히 보호되지 않은 탓에 러시아에 이

Иосиф Гаврилович Баранов // Вес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Владивосток, № 2, сс. 51~60.

26 Сборник главнейших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сточною Сибирью. Том I. Вып. 1. Иркутск, 1884, с. 239.

27 А.Ф. Рагоза(1891), Краткий очерк занятия Амурского края и развития боевых сил Приаму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Хабаровка :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Приаму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с. 47.

주를 원했던 한인들은 언제 어느 곳이든 편리한 곳에서 자유롭게 국경을 횡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초 중국과 무력 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사태가 있는 후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러시아 정부’는 해로(오뎃사-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유럽 지역의 러시아 농민들을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미리 언급하자면, 1901년 이전까지 이 루트를 통해서 55,000명 이상이 이주했으며,²⁸ 1860년부터 1915년까지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연해주로 이주한 인구수는 총 27만 7,162명(아무르주 : 17만 419명)이었다.²⁹

따라서 1880년대부터 포시에트뿐 아니라 상기 언급한 지역으로 한인들이 더 이상 이주를 원치 않는다는 견해가 극동지역에 확산되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한인들이 더 이상 포시에트 지역에 정착하기

28 З.И. Сидоркина(1997),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ладивосток : Дальнаука, с. 8.

29 Е.А. Заплава(2006),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селения Приамурья и Приморь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 начале XX в. // История освоения Россией Приамурья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региона, В 2-х томах, Т. 1,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 Издательство Комсомольского-на-Аму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280, 2006년 4월 14~15일 콤포스몰스크-나-아무레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자료.

30 제정러시아 당시 한인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부 저자 역시 1880년대 극동지역에 한인들이 더 이상 이주하기를 꺼려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견해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짜르 정부의 해로를 통한 러시아 농민들의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로의 이주 개시 결정이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연해주 지역의 토지개간 여건 및 기후가 러시아의 유럽 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러시아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우 놀란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때로는 수년간 다져진 농업기술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

를 원치 않는다는 견해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으며, 주 당국이나 총독부에서 도 이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당국 고위급 인사들 간의 서한이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일례로 연해주 지사는 1886년 4월 21일 자 제3601호 서한에서 프리아무르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유주노-우수리스크 경찰서장이 4월 10일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금년도 조선으로부터의 이주가 특히 많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며, 국경이 폐쇄되지 않고 이주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이주자들은 마을 별로 즉각 흩어져 농가 오두막들을 세우고 있고, 나홀로 이주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러시아인 마을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일급이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도로를 탐사하던 중 라즈돌노예(Rozdolnoe) 방향으로 향하던 일단의 한인들을 만났으나 통역사가 없어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

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우수리스크 변강주로 이주 후 러시아 농민들이 놀란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또 다른 여러 이유 중 도로 부재, 홍후즈 등을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상기 견해의 지지자들은 유럽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 토지이용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해로를 통해 이주해 온 러시아 농민들의 정착 예정지 중 한 곳은 포시에트였다. 동시베리아 총독은 내무장관에게 보내는 1884년 1월 17일 자 전문에서 일차 이주민들의 정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연해주] 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와 포시에트 사이, 그리고 [카멘-] 리볼로프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줄 것이다’[E.V. Соболевская(2007), О переселении крестьян морским путем // Записки Клуба Родовед. Выпуск 19. Владивосток : Примо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бъединенный музей имени В.К. Арсеньева, с. 43]. A.A. Кауфман(1905), Переселение и колонизация, СПб., сс. 318~122 ; П.А. Минакир, В.П. Рензин, О.М. Чичканов(1986), Экономи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ерспективы ускорения. Хабаровск : Хабаров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с. 8~10 등 참조.

니다.’ 이에 대해 한인 이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그들에게 신규 주거지를 마련토록 허용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허용해야 하는지, 혹은 한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 역내 일시 체류를 허용할 것인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 단위 이주자들은 국경 밖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각하의 하명을 기다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이미 공론화 돼 있는 것처럼 한인들이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앞으로 한인들의 유입을 단호히 막고 이를 위해 국경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인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정착하여 주변의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고하고자 합니다.”³¹

1889년 4월 30일 제1560호 답신에서 총독은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하고 있다. “나는 금년도에 우리 땅에 이주한 가족 단위의 한인들을 다시 국경 밖으로 귀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비가족 단위의 나홀로 이주자들에게 중국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문제 또한 조선과 사전 접촉이 필요한 바,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요, 이러한 상황이니 금년도 유입한 한인들 또한 이전에 이주해 온 한인들과 동일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재량에 따라 정착지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당국으로서는 한인들을 정착시키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 지정해줄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³²

31 РГИАДВ. Ф. 702, Оп. 1, Д. 69А, Л. 7~7 об.

32 РГИАДВ. Ф. 702, Оп. 1, Д. 69А, Л. 8~9. 1884년 프리아무르 주 총독부 창설 당시 유주노-우수리스크 구에는 55개 농촌마을과 촌락이 있었으며, 18

1892년 유주노-우수리스크구(Okrug)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수는 총 15,731명으로, 총 9,214데샤티나를 개간하여 1인당 약 0.6데샤티나를 개간한 반면, 4,676명의 중국인들은 총 953데샤티나를 개간하여 1인당 개간면적은 0.2데샤티나였다.³³

1917년 혁명 초기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수는 10만 명으로 주로 연해주 남부, 즉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주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한인들의 인구밀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이만(Iman) 군에는 1915년 당시 약 2,000여 명의 이주 한인들이 농사를 지었다.³⁴ 이 지역 대부분의 한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흔히 반(半)불법적인 상황에서 생활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극동지역의 국경 수비 및 이민 관리, 반출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 상태는 매우 소홀했다. 일례로 만주와의 국경선 총 길이가 1,500베르스타 이상이었던 연해주에 물자 이동 관리소는 겨우 셋이었다. 상인들은 원할 경우 규모와 관계 없이 수 많은 도로와 오솔길을 따라 얼마든지 관리소를 우회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은 더욱 열악했다. 사람이든 물자든 양국 간 국경 통과 지점은 크라스노셀스크(Krasnoselsk) 관리소 단 하나였으며, 이 관리소는 조선의 해안에서 유주노-우수리스크 변강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하

개 한인마을, 10개 카자흐마을, 2개 초소가 있었다. РГИАДВ. ф. 702. оп. 1. д. 21. л. 1~1 об 참조.

33 Обз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892 год. Приложение к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му отчету. Владивосток, 1893, сс. 2~3.

34 Из истории заселения Дальнереченского района.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Владивосток, 2005, с. 103. 이만 군은 1909년 6월 17일 유주노-우수리스크군 북동쪽에 창설되었음.

고 있었다. 하연(Khaen), 계왕(Kevan), 정선, 회령, 부령에서 출발한 도로는 모두 경흥으로 합류했고, 그곳에서 보노키엥스크를 통해 가면 크라스노셀스크 관리소를 지나는 것보다 하절기에는 50베르스타, 동절기에는 60베르스타나 더 가까웠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조·러 교역 물자만이 크라스노셀스크를 지나게 되었다. 더구나 두만강은 하절기에는 얇은 여울을, 동절기에는 얼음 위를 지나 언제든 통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라스노셀스크 관리소는 조선과의 무역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해주 당국은 조선의 경흥 관리소 자료를 활용했다.³⁵ 경흥 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1894년 조선의 대(對)러 수출량은 43,465.32루블로 1893년 대비 1,516.03루블이 줄어들었다. 반면, 조선의 대(對)러 수입량은 90,789.28루블로 전년대비 63,702.57루블 감소했다. 그러나 경흥 관리소 자료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경흥 관리소를 통해 러시아로 들어간 대형유각수(주로 소)는 1,424두로 기록된데 반해, 크라스노셀스크 관리소를 통해 러시아에 유입된 수는 1,700두였다.³⁶

1898년 연해주 주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1894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크라스노셀스크 관리소는 조선과의 무역 관련 자료를 전혀

35 Обз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894 год. Приложение к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му отчету. Владивосток, 1895, с. 24.

36 Обз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894 год. Приложение к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му отчету. Владивосток, 1895, сс. 30~31. 다른 자료에 따르면, 1894년 한 해 동안 조선에서 총 1,943두의 대형유각수가 러시아로 공급되었다. О.А. Устюгова(2001), Развитие мясной торговли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80~90-е гг. XIX в. //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убежах. Т. 1. Благовещенск : Издательство АмГУ, с. 565 참조.

제출하지 않았다. 이유는 조선인들이 관리소를 무시하고 편리하고 가까운 두만강을 건너기 때문이었다.³⁷ 이와 같이 국경은 매우 허술했으며, 조선 농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통과할 수 있었다.

1917년 극동지역 한인의 수는 10만 명에 달했다. 그들 대부분은 거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도회지에 거주하며 광업, 어업, 탄광 근로자의 비중은 10%를 넘지 않았다. 당시 역내 가장 큰 도시였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약 5,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했는데,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전체 인구(111,706명) 중 4.5%에 해당했다.³⁸

극동공화국 헌법에는 국적, 인종, 성, 신앙, 출신 및 재산 상태에 무관한 만민평등원칙이 규정돼 있었다. 그 외에 헌법은 한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에게 민족·문화적 자치를 허용했다. 룩스(K.Ya. Luks)가 장관으로 재직했던 소수민족부는 한인 이주민들의 지위, 특히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위해 ‘한인 민족·문화 자치기구에 관한 령’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에게도 극동공화국의 완전한 국민이 된 한인들과 함께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부여되었다.³⁹

내전과 외세 간섭기에 극동지역의 러시아 및 극동공화국의 국경은

37 Обз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895 год. Приложение к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му отчету. Владивосток, 1896, с. 31.

38 Б.И. Мухачев(1999),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еков. Историк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сс. 36~37.

39 А.И. Петров(1992), Корейцы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е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Итоги и уроки».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и сообщений. 5~9 октября 1992 г.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с. 127.

보호되지 않았고, 세관은 오로지 형식적인 기능만을 수행했다. 그 결과 밀수업자들의 활동이 왕성해졌다. 1920년 봄부터 연해주 관내 만주 인접 국경지대에서는 무장 홍후즈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한인들을 포함한 우수리스크 변경주 농민들을 강탈,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들과의 투쟁에는 오직 양민들이 직접 나서야 했는데, 그 외엔 다른 방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21년 3월 17일 자 극동 공화국 총사령관의 명령으로 트로이츠크코삽스크(Troytskosavsk), 악션스크(Akshinsk) 등에 네르친스코자붓스크(Nerchinskoyavodsk), 블라고베셴스크(Vlagoveshensk), 하바롭스크 국경지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4월에는 극동지역 국경 수비를 위한 ‘극동공화국 국경수비대’라는 명칭의 군대 창설이 완료되었다. 이 국경수비대의 지휘는 각 국경지대 수장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도 국경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문제는 필요한 인력 및 자원 부족에 있었다.⁴¹

1920년대 극동지역 국경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홍후즈와 백군집단

40 А.И. Чугунов(1980), Борьба на границе, 1917~1928. Из истории пограничных войск СССР. М. : 《Мысль》, сс. 65~66. 이 문제와 극동공화국의 對中 관계 중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Г.С. Каретина(1992),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Китай // Из ис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сс.144~157.

41 일레로 И.К. Малов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군의 물자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고급지휘관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지휘관 직책은 이전의 콜차크(Kolchak) 반란군 출신 장교들이 맡았다. 그들은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지휘관들 중 1/3을 차지했으나, 모두가 부하들로부터의 정치적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И.К. Малов(1973),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рревармии ДВР //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Воспоминания ветеранов. М. : 《Наука》, с. 264 참조.

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뿐 아니라 소비에트 국경 초소를 침범하는 등 중국 국경수비대에 의해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1924년 9월 26일 7명의 중국군 병사가 국경을 침범하여 2명의 소비에트 국경수비대원을 공격하고, 국경 표지를 소비에트 영토 쪽으로 1km 이상 옮겨놓았다.⁴² 이러한 사건은 이 외에도 셀 수 없었다.⁴³

극동공화국이 소연방으로 편입될 당시(1922년 11월) ‘극동지역의 뚜렷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볼셰비키정권은 ‘농민들의 결정적 ‘계급’ 분화가 최소한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극동지역 공산주의자들은 전술 측면에서 개인자본의 허용, 토지임차 및 노동력 고용 등에 대해 중앙에서보다 더 많은 타협을 해야 했다.⁴⁴

42 И.К. Малов(1973), сс. 82~83. 北사할린과 관련, 일본군 지휘부는 1925년 5월 14일에서야 지휘본부 깃발을 내렸다. В.Я. Аболтин(1981),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Северном Сахалине // За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ыпуск 1, Составители Б.И. Мухачев и М.М. Свирид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 с. 384 참조. 일본의 北사할린 점령에 대해서는 А.М. Пашков(1973), Участие пограничников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1925~1935 гг.) //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клады и сообщения, прочитанные на 2-й сесс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чтений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екабре 197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нижн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сс. 168~175 참조.

43 А.Г. Смирнов(2006), Тихоокеанский рубеж. Из истории охр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России в Приморье и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Владивосток : 《Русский Остров》, сс. 41~59.

44 Л.И. Проскурина(2004), Власть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крестьянство в 20~30-е годы XX века // Вглядываясь в прошло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общество в конце 1917~1950-е годы XX в.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Книга 2,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сс. 149~150.

완벽하지는 않지만 1923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프리모르 지역 거주 한인인은 총 10만 6,609명이었다. 그러다가 1926년 그 수는 11만 480명으로 늘어났으며 1927년 1월 1일 현재 한인들의 수는 17만 명이었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 당시 제정러시아 국적 취득자를 포함하여 소비에트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의 수는 약 40%였으며 한인들 중 공산주의자들의 수도 상당했다. 1934년 연해주 거주 한인들 중 공산주의자들의 수(2,279명)는 러시아인(6,279명) 다음으로 2위였으며, 지역 당 조직원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3위는 우크라이나인(1,127명, 10.6%)이었다. 포시에트에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수가 288명으로 지역 당 조직원 중 79.8%였다(러시아인 공산주의자 47명, 우크라이나인 13명, 중국인 2명, 민족불명인 자의 수는 13명이었다).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수는 수창 지역 당조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275명, 69.3%). 그 밖에 수창 지구당에는 러시아인 104명, 우크라이나인 13명이 공산주의자였고, 중국인 공산주의자는 한 명도 없었다.⁴⁵

공산당의 대내외 정책은 국가를 독립으로 이끌었다. 공산당의 세계 혁명 노선은 국제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우 이곳에는 일반적인 원인 외에 특수 요인이 있었고, 이러한 특수 요인은 상당 부분 한인들과 연관돼 있었다. 한인들의 예정된 귀화 및 빈농 한인들을 위한 농지 분배 결과, 당국은 한인들의 신규 해외 유입을 중단

4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ф. п 1, оп. 1, д. 228, л. 9. 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 формально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с. 20. октября 1932 г. по 5 июня 1939 г. См., например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деление на 1 июня 1984 года. Владивосток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исполком, 1984, с. 5.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4년 10월 2일 열린 ‘한인들에 대한 토지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해주 토지국 기능직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현재 프리모르 현(Gubernya)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 신규 이주 한인들에 관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만 예정된 계획이 성공리에 이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장 좋은 문제 해결방안은 현재 현 내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토지 분배를 최종 완료하는 순간까지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당국에 신고 없이는 한인들의 유입을 금하여 아무 곳이나 정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토지국이 지정한 특별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인들의 유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1923년 실시된 농촌 지역 인구조사가 한인들의 소재와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한인 대표들에게도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를 정확히 산출하고, 토지를 분배할 때 등록명부에 포함된 한인들에게만 토지를 분배해야 할 것이다. 한 차례 배분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받지 못하며, 해당 지역에 정주를 원하지 않는 한인들은 점유지로부터 강제 퇴거해야 한다. 한인들의 수 파악은 그들의 분포도 작성 책임을 맡은 토지국 직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진다.”⁴⁶

1920년대 말 극동지역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점 더 폐쇄되어 갔다. 이에 대한 대외정책상의 ‘경중’을 올린 것은 1929년 소·중 간

46 РГИАДВ, ф. р-2422, оп. 1, д. 1486, л. 92~93 об. 1923년 한인 18,378 가구 중 극동지역에 거주 등록된 최소한 10,000가구에 토지 배분이 시급히 필요했다(191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인 등록 가구 수는 9,308가구였다).

동중철도 분쟁이었다. 국경 수비는 기존의 초소 강화 및 신규 초소 설치 외에 기마순찰대를 신설함으로써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잘 닦인 오솔길을 이용하여 특히 간도를 비롯한 만주에 거주하는 친척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했는데 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다.

1930년대 소비에트 극동지방은 외국인들에게뿐 아니라 거주, 출장, 근무 등의 특별한 목적 외에는 일반 소비에트 국민들에게도 극도로 폐쇄된 지역이었다. 스탈린 정부는 군국주의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인들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로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다.⁴⁷

우리는 한인들의 예를 통해서 러시아와 소련의 극동지역 이민 및 이민정책상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극동지역은 제정러시아 시대의 완전 개방과 접근성, 스탈린 통치기의 점진적이고 완전한 폐쇄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정책상의 차이였다.

※ 번역 : 성종환(한국토르플센터)

47 소비에트 극동지역에서의 일본 정보당국의 첩보활동 강화 및 이에 대한 한인과 중국인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Ю.М. Зайцев(2008), Контр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защите объектов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ССР(1930-е гг.) // Россия и АТР, Владивосток, № 2, сс. 128~138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초판 1쇄 인쇄 2009년 12월 7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12월 11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62-4-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